

家族缺損의 類型別 特徵과
家族政策의 接近方案

孔世權
曹愛姐
許美暎

韓國保健社會研究院

머 리 말

인간은 대개 家庭을 準據로 家族과 더불어 살면서 삶의 質을 추구한다. 즉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식이 부모의 보호아래 성장하고, 부모는 老後를 자식에게 의존하는 生活樣式과 實踐倫理를 우리는 家族制度로 지칭한다. 이러한 점은 家庭을 原初的 福祉單位로, 家族은 福祉具現의 同伴者의 性格을 의미한다.

가족은 個人과 社會를 媒介하는 共同體로 건전한 가족생활은 개인의 안정과 복지는 물론 사회의 안정과 복지와도 밀접한 관계를 이룬다. 특히 산업화에 따른 家族機能의 社會化에서 가족의 社會參與 擴大는 사회가 가족을 돕지 않고는 생활이 어려운 共助體制가 강조된다. 이처럼 가족과 사회의 유기적 관계는 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家族도 開發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 가족과 사회간의 不均衡 내지 不調和로 가족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로 波及될 것이 明若觀火 하다.

韓國社會는 지난 한 世代를 걸친 급속한 經濟發展 過程에서 많은 변화를 거듭했다. 농촌이 도시로 변하고, 공장이 늘어나면서 道路가 새로 뚫렸다. 그뿐만 아니라 個人役割의 多樣化와 함께 가정과 일터의 분리로 父母子息간이 떨어져 살게 되었고, 個人主義 意識에 따른 離婚의 증가와 不意의 事故로 인한 死別 등은 缺損家庭을 증가시켜 왔다. 이러한 가운데 가족도 변화하게 되었고, 核家族化 現象도 뚜렷해졌다. 그러나 과연 核家族는 무엇을 의미하며, 왜 가족이 解體되고 缺損家族의 問題가 무엇인지는 綜合的인 檢討가 이루어진 바 없다.

家族解體가 늘어나면서 政府는 가족이 돌볼 수 없는 無依託者를 對象으로 施設保護 내지 生活保護를 강구해 왔다. 그러나 福祉制度가

家族制度를 대신하기 어렵다는 점은 家族解體를 예방하지 않는 福祉制度는 한계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産業化로 인한 解體家族과 생활자립이 어려운 零細家族을 사회가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福祉制度로 본다면 이러한 제도에는 家族制度를 개선하기 위한 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 연구는 현대가족의 문제점을 綜合的으로 검토하면서 家族政策의 基本方向과 政策骨格 및 接近方法을 開發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다. 과연 오늘날의 가족은 무엇이 문제이고, 그러한 문제는 왜 나타나며, 이를 위해 국가나 사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동 연구는 전국적으로 缺損家族生活實態調査를 실시했고, 일선 福祉要員과의 實務會議를 통한 問題診斷이 이루어졌으며, 또 學界 專門家와 政策세미나도 가졌다.

동 연구를 위한 이러한 多角的인 接近은 이 연구가 研究者의 努力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뜻한다. 유엔은 1994년을 “세계 家庭의 해”로 정하면서 범 세계적으로 가족에 대한 關心의 促求와 국가 차원의 家族政策 開發을 권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保健福祉부와 三星生命 公益財團은 家族政策開發에 관한 연구를 提案하면서 연구자금은 公益財團의 財政支援으로, 전국조사는 保健福祉부의 行政支援으로, 또 연구수행은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이 담당하는 3者間의 役割分擔의 體制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保健福祉부의 金明淑 家庭福祉審議官과 朴騎駿 前 家庭福祉課長, 盧然弘 家庭福祉 擔當 書記官은 조사원 훈련, 조사지도 및 정책세미나의 주제별 토의를 맡아주었다. 또 동 연구는 본 연구원 孔世權 研究委員의 책임하에 曹愛姐 責任研究員 및 許美暎 主任研究員이 담당했다. 그 외에도 동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金初江(梨花女大), 李東媛(梨花女大) 및 張慶燮(서울大) 教授의 유익한 助言이 있었고,

연구결과의 檢讀은 卞俗榮 博士와 李顯松 博士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제 報告書의 發刊에 즈음하여 研究陣들은 그동안 동 연구를 위해서 物心兩面으로 協力과 助言을 아끼지 않았던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 특히 전국규모의 調査가 없이는 이러한 연구가 어렵다는 점에서 缺損家族의 生活實態調査를 맡아 주었던 일선 동·읍·면단위 社會福祉 專門要員 및 家庭福祉 擔當要員의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이 연구는 缺損家族에 관한 包括的 分析이나 家族政策의 기초를 構築하기 위한 점에서 많은 制限点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가족생활을 통한 삶의 質 향상이라는 측면과 정책과제의 구체적 개발을 위한 多角的인 研究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본 보고서에는 家族缺損에 대한 概念定立과 缺損家族의 生活實態 및 向後 家族政策의 課題와 方向 등을 제시하고 있어 가족정책 關聯 部處와 學界 專門家 등에게도 一讀을 권하고 싶다.

끝으로 본 報告書에 수록된 內容은 연구에 참여한 研究陣의 意見으로 研究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5年 7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長 延 河 清

目 次

머 리 말

第1章 序 論	17
第1節 研究背景	17
第2節 研究目的 및 方法	20
1. 研究目的	20
2. 研究方法	21
第2章 理論的 背景	32
第1節 家族의 觀點과 爭點	32
第2節 産業化와 家族의 變化	35
1. 人口變化와 家族形態	37
2. 經濟發展과 家族生活	39
3. 缺損家族의 增加	42
第3節 家族缺損의 原因	46
1. 離婚의 增加	47
2. 家族分化	50
3. 家庭破壞	51
4. 個人主義	54
第3章 概念定立	57
第1節 家族缺損의 概念	57
1. 家族缺損의 定義	59
2. 家族缺損의 力動性	63

第2節 用語定義 및 研究의 制限點	67
1. 用語의 定義	67
2. 研究의 制限點	71
第4章 家口의 類型別 特徵	73
第1節 家口類型의 分類	74
第2節 家口類型別 特性	79
1. 家口規模	79
2. 家口主 特性	82
第3節 家口類型別 生活樣相	85
1. 住居形態	85
2. 經濟狀態	87
第4節 家口類型別 生計實態	95
1. 生活費 充當方法	95
2. 生活自立 및 依存	97
第5節 家口類型別 生活問題	99
1. 負擔 生活費目	99
2. 生活問題	100
3. 生活에 대한 自體評價	102
第6節 家口의 構造機能的 不均衡	105
1. 家口構造의 特徵	105
2. 家口의 生計類型	107
第5章 缺損家口의 生計類型	110
第1節 缺損家口의 一般特性	111
1. 缺損家口의 地域別 分布	111
2. 缺損對象의 個人特性	112
3. 缺損家口의 生活樣相	115

第2節 缺損家口의 缺損原因	119
1. 缺損類型別 解婚原因	120
2. 家族形成 및 解體時期	127
第3節 缺損家口의 生計類型	131
1. 缺損家口의 生計實態	131
2. 家族收入 家口	135
3. 政府支援家口	139
第4節 缺損家口의 生活問題	143
1. 生活問題	143
2. 生活에 대한 自體評價	145
第5節 缺損家口의 福祉問題	149
1. 缺損家口의 特徵	149
2. 缺損類型別 解婚原因	150
3. 家族缺損의 豫防 및 對應	151
第6章 家庭福祉事業의 現況과 問題	153
第1節 家庭福祉事業의 現況	153
1. 家庭福祉事業의 基本方向	155
2. 家庭福祉事業의 主要內容	156
3. 家庭福祉事業 組織	158
第2節 人力 및 豫算	161
1. 從事人力의 特性	161
2. 事業別 豫算規模	163
第3節 家庭福祉의 問題點	165
1. 福祉需要의 多樣化	166
2. 法的·制度的 問題	167
3. 福祉서비스의 問題	169

第7章 家族政策의 方向과 課題	172
第1節 政策背景	172
第2節 政策骨格	178
1. 概念的 定義	178
2. 政策目標	180
3. 基本骨格	181
第3節 接近方案	183
1. 接近戰略	183
2. 事業開發	187
3. 接近方法	189
第4節 法的·制度的 支援	195
1. 家族 關聯法의 現況	195
2. 家族福祉基本法 制定	198
第5節 地域中心 福祉體制 構築	199
1. 地域化의 必要性	199
2. 體制構築	200
3. 組織改編	202
第6節 社會的 支援方案	207
1. 支援의 必要性	207
2. 家族價値의 定立	209
第8章 結論 및 提言	213
第1節 問題의 提起	213
第2節 家族問題와 缺損實態	215
第3節 家族政策의 接近方案	219
第4節 家族政策을 위한 提言	223

參考文獻	227
附 錄	233
附 錄 I: 家族政策의 方向과 課題 세미나	235
1. 세미나 結果要約	237
2. 主題發表 및 討議內容 要約	242
3. 發表資料	275
4. 開會辭 및 祝辭	423
5. 日程表	429
附 錄 II: 缺損家族의 生活實態 調查	433
1. 調查地域	435
2. 市道別 調查要員數	441
3. 調查票	443

表 目 次

<表 1-1>	地域別 調査員 訓練日程	25
<表 1-2>	家口調査結果	26
<表 1-3>	缺損家口 調査結果	26
<表 1-4>	推計人口(1994) 및 調査人口(1994)間 性別, 年齡別 分布	27
<表 1-5>	推計人口 및 調査人口間 差異比較	28
<表 1-6>	家口員의 性別, 年齡構成 分布	29
<表 1-7>	家口員의 地域 및 性別, 年齡그룹別 構成 分布	29
<表 1-8>	滿 6歲以上 家口員의 地域別, 性別 教育水準 分布	30
<表 1-9>	滿 15歲以上 家口員의 地域別, 性別 結婚狀態 分布	30
<表 2-1>	入養兒의 發生要因別 分布: 1958~1992	44
<表 3-1>	家族의 構造, 機能 및 價値의 類型別 特性	63
<表 4-1>	家口主의 配偶狀態別 生活自立 與否別 分布	77
<表 4-2>	家口類型別 生活自立與否	78
<表 4-3>	最近 地域別 家口規模 變化樣相	79
<表 4-4>	家口類型別 家口員 및 家族員 規模	80
<表 4-5>	家口類型別 分居家口率 및 分居家族員 規模	81
<表 4-6>	生計自立與否別 分居家口率	82
<表 4-7>	家口類型別 家口主의 特性	83
<表 4-8>	生計自立 與否別 家口主의 特性	84
<表 4-9>	家口類型別 自家所有 與否	86
<表 4-10>	家口類型別 煖房形態	87
<表 4-11>	地域 및 家口類型別 月平均 生活費	89

<表 4-12> 生計自立與否別 月平均 生活費	89
<表 4-13> 家口類型別 貯蓄現況	91
<表 4-14> 家口類型別 負債現況	92
<表 4-15> 生計自立與否別 貯蓄 및 負債率	93
<表 4-16> 生計自立與否別 貯蓄額 및 負債額	93
<表 4-17> 家口類型別 負債事由	94
<表 4-18> 家口類型別 生活費 充當方法	96
<表 4-19> 家族收入으로 生活하는 家口分布	97
<表 4-20> 家口類型別 生活費 充當方法: 家族收入 中心	98
<表 4-21> 家口類型別 家族收入 및 政府支援으로 生活하는 家口率	99
<表 4-22> 家口類型別 負擔이 되는 生活費目	101
<表 4-23> 家口類型別 家庭內에서 가장 큰 問題	102
<表 4-24> 家口類型別 生活水準의 自體評價	103
<表 4-25> 家口類型別 生活滿足의 自體評價	104
<表 4-26> 家口類型別 生活展望의 自體評價	104
<表 5-1> 缺損家口の 地域別 分布	112
<表 5-2> 偏父母의 個人特性	113
<表 5-3> 缺損兒童의 個人特性	114
<表 5-4> 缺損兒童 父母의 特性	116
<表 5-5> 缺損家口の 生活樣相	117
<表 5-6> 地域別, 缺損類型別 負債事由	118
<表 5-7> 地域別 缺損類型別 解婚原因	122
<表 5-8> 缺損類型別 死別原因 및 離婚事由	124
<表 5-9> 地域別 缺損類型別 死別原因 및 離婚事由	125
<表 5-10> 其他 缺損家口の 同居兒 父母의 生存與否, 別居理由, 接觸頻度 및 再婚與否	126

<表 5-11> 偏父母家口의 解婚原因別 平均 結婚年齡, 解婚年齡 및 現在年齡	128
<表 5-12> 其他 缺損家口 兒童의 父母의 解婚原因別 平均 結婚年齡, 解婚年齡 및 現在年齡	130
<表 5-13> 缺損類型 및 解婚原因別 平均 結婚期間	130
<表 5-14> 地域別 缺損類型別 生活費 充當方法	132
<表 5-15> 地域別 缺損類型別 生活自立與否	133
<表 5-16> 缺損類型別 家族收入 家口의 全體 缺損家口에 대한 比率	135
<表 5-17> 缺損類型別 家族收入으로만 生活하는 家口 關聯事項	137
<表 5-18> 缺損類型別 家族收入 및 其他方法으로 生活하는 家口 關聯事項	138
<表 5-19> 缺損類型別 政府支援 對象 關聯事項	140
<表 5-20> 缺損類型別 生活依存 家口中 政府支援 받는 家口의 比率	141
<表 5-21> 缺損類型別 政府 非支援 對象 關聯事項	142
<表 5-22> 缺損類型別 政府 非支援 對象이면서 選定經驗 없는 對象 關聯事項	142
<表 5-23> 地域別, 缺損類型別 負擔되는 生活費目	143
<表 5-24> 地域別, 缺損類型別 生活에서의 어려움	144
<表 5-25> 缺損類型別 生活水準, 生活滿足 및 生活展望	146
<表 5-26> 地域別 缺損類型別 生活水準, 生活滿足 및 生活展望	147
<表 5-27> 缺損類型別 生活依存 與否別 生活水準, 生活滿足 및 生活 展望	148
<表 6-1> 對象別 主要 家庭福祉事業	154
<表 6-2> 家庭福祉分野 事業別 豫算分布: 1995	164
<表 6-3> 洞·邑·面 單位의 社會福祉要員의 兼任 業務量	170

<表 7-1> 家族關聯法の 類型	196
<表 7-2> 家族關聯 社會福祉事業法の 主要內容 및 制定時期	197
<表 7-3> 福祉類型別 對象區分	197
<表 7-4> 地域中心 家族開發院의 業務內容	202

그림 目次

[그림 3-1] 家族缺損의 構造, 機能 및 價値의 複合關係	62
[그림 4-1] 家口의 構造·機能的 關係	75
[그림 6-1] 現行 家庭福祉事業의 傳達體系	159
[그림 7-1] 家族政策의 基本骨格과 部門別 相互關係	182
[그림 7-2] 家族政策에서 家族과 社會의 理論的 役割分擔 模型	185
[그림 7-3] 家族政策 接近을 위한 地域社會 中心 組織體系	193
[그림 7-4] 地域社會中心(區·市·郡 單位)의 家族開發院 組織(案)	204
[그림 7-5] 保健福祉部 家族福祉關聯 組織의 改編案	206

第1章 序 論

第1節 研究背景

家族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家庭을 생활의 準據로 삼으면서 家族과 더불어 살고 있지만 家族에 관한 學問的 定義는 쉽지 않다. 이는 가족의 複合性 내지 多樣性에 연유한다. 국어사전은 家族을 “夫婦를 중심으로 한 家庭을 이루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으며, 西歐社會는 가족을 “男便과 婦人, 그리고 그 子女로 구성되는 單位”로 지칭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 만으로 家族의 定義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것은 血緣關係와 同居形態를 어떻게 숨쉴시키느냐는 점에서 意味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家族은 存在하고, 그러한 集團의 關係는 대개 부부나 부모자식간이라는 점에서 親熟感을 갖는다. 특히 한국사회는 儒敎文化를 배경으로 家族中心의 生活를 영위하면서 가족에 대한 관심은 有別하다. 그렇다고 가족이 儒敎圈의 專有物만은 아니다. 人類歷史가 異性之合의 婚姻制度로 발전되어 왔듯이 家族制度는 어느 사회에서나 普遍性을 지닌다.

인간이 家族制度를 만들고, 그러한 틀에 安住하면서 이에 대한 批判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한 비판은 대개 家族制度가 인간의 欲求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인간이 가족제도를 包容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緣由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결국 人間은 홀로 살 수 없기에 結婚을 통해 夫婦關係를 맺고, 子息을 낳아 키우며, 서로가 依存하는 가운데 가족은 존재하게 되는지 모른다. 家庭을 準據로, 家族과 더불어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行態라면 우리는 가족에

대한 批判에 앞서 가족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關心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男便과 婦人이 서로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父母와 子息이 어떠한 關係를 이루고 있는지가 그것이다. 그것은 家族이 構成員 相互間의 關係를 基礎로 하며, 그 관계는 共同體의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생활은 成員間의 努力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家庭이라는 울타리내 생활은 私的 領域으로 여기면서 사회와의 有機的인 關係를 이룬다. 이러한 점은 産業化와 함께 더욱 뚜렷해졌다. 전통사회와는 달리 가정에서 쓰여지는 대부분의 消費財가 工場에서 만들어졌고, 이를 생산하기 위한 就業形態가 家庭과 일터를 분리시켰다. 또한 教育은 學校가, 疾病은 病院이 專擔하는 등 機能의 分化和 役割의 專門化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점은 가족생활이란 일정한 틀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時代的 狀況에 따라서 家族制度도 可變性을 지녀야 하는 점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家族生活은 社會·環境的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고, 家族制度는 生活樣式의 변화와 함께 修正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家族은 어떠한가? 現代家族을 核家族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核家族은 대개 夫婦나, 夫婦와 子女만으로 구성된 형태이다. 그러나 婚期의 遲延과 離婚의 增加, 役割의 多樣化, 그리고 壽命의 延長 등에서 未婚家族, 離婚家族, 獨身家族 또는 老人家族도 불가피해 졌다. 따라서 核家族化는 規模의 縮小化와 形態의 多樣化로만 생각할 수 없다. 家族形態의 變化는 獨立的 現象이 아니라 從屬的 現象일 수 있다. 生産機能의 企業化와 함께 就業과 學校教育이 보편화되고, 이를 위한 해결이 居住地內에서 容易치 못할 경우 家族의 分居形態가 이루어 진다. 또 教育 및 就業과 같은 婚前役割의 多樣化에 따른 婚期의 遲延과 結婚後 養育負擔을 경감하기 위한 出産調節은 子女規模를 축소 시킨다. 바로 이러한 점이 核家族化를 促進시키는 要

인이며, 핵가족 형태는 나름대로의 長點과 短點, 그리고 핵가족화에 따른 問題點도 排除할 수 없다.

이처럼 가족생활이 社會·環境的 要因등 많은 外部要因에 의해 변화되면서 주목되는 점은 家族의 瓦解 내지 解體이다. 여기서 家族의 瓦解는 結束이 느슨해 짐을, 그 解體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가족의 瓦解와 解體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 家族의 結束이 協力關係로 이루어지고, 共同體의 維持가 성원간의 結束으로 가능한 것이라면 役割의 多樣化에 따른 家族分化는 한 가족이 함께 지내는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情緒的 紐帶(ties of affection)가 柔弱해지는 것에 있다. 이러한 점은 夫婦間도 각자의 주장을 달리하고 役割補完이 원활치 못할 때 離婚을 受容하며, 또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은 家族缺損은 물론 解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다. 그 뿐만 아니라 出產調節의 普遍化에서 부부들은 자식을 두지 않거나 아들이 없는 경우도 나타나면서 자신들의 노후를 자식에게 의존할 수 없을 때 老後扶養의 문제는 물론 父系制度의 유지도 어렵게 되는 경우가 나타난다.

현대사회에서 核家族化는 그 裏面에 가족의 缺損과 解體가 수반되고 있음이 불가피한 현상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이제까지 福祉制度는 가족이 돌볼 수 없는 對象을 위주로 救貧的 형태를 취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救貧的 福祉는 自活을 위한 機能的 福祉가 隋伴되지 않는 한 貧困의 世襲은 피할 수 없는 惡循環의 고리에 묶이어질 수 밖에 없다. 더 더욱 憂慮되는 점은 急速한 社會變化에서 家族의 解體와 缺損의 증가는 일정한 福祉資源 配分の 몫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家庭을 福祉의 原初的 單位로, 家族을 福祉의 先導者로 여기면서 解體와 缺損을 豫防하기 위한 生活改善, 役割開發, 問題治療 등 家族開發을 기초로 하는 機能福祉와 缺損家族의 自活을 위한 再活福祉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機能福祉는 가족의 機能調整, 役割開發 및 價値定立 등을 통한 합리적인 생활을 이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再活福祉는 基盤造成 및 役割支援을 통한 生活自立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家族政策의 범주인 것이며, 문제예방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家族開發은 問題解決을 위한 救貧福祉(최근 복지사업)의 先行課題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산업화와 함께 役割擴大를 위한 保育制度 開發과 看病制度 導入, 그리고 家事支援(과출부제, 심부름 센터 및 출장연회 서비스 등)의 다양화 등은 최근에 이를 수록 救貧福祉에서 機能福祉로의 轉換을 요구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말하자면 가족생활이 家族과 社會의 有機的인 관계로 가능케 되면서 이제 가족은 더 이상 私的 領域으로만 존재할 수 없고, 사회변화와 함께 家族開發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第2節 研究目的 및 方法

1. 研究目的

本 研究는 가족이 돌볼 수 없는 老人, 兒童 또는 婦女를 대상으로 가난을 救濟하기 위한 현재의 救貧福祉를 家族解體를 豫防하며 生活의 質을 높이기 위한 機能福祉로의 轉換을 위한 새로운 家族政策을 開發하는데 目的을 둔다. 이러한 점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生産機能의 企業化와 個人役割의 專門化, 農村人口의 都市化, 人口構造의 老齡化 및 家族解體의 增加 등 여러 요인이 家族形態의 多樣化를 촉진시키고 있다. 여기서 家族解體의 增加는 社會保護를 요하는 對象의 增加를 뜻하고, 가족이 돌볼 수 없는 대상을 위주로 하는 현재의 救貧的

形態가 앞으로 解體의 豫防과 缺損의 保護 그리고 生活의 質을 높이기 위한 家族開發이 並行되지 않는 한 福祉需要는 감당하기 어려운 限界性을 내포하게 된다는 데 根據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족의 本質과 變化의 樣相을 개관하면서 현대 가족이 어떠한 狀況에 있고, 어떻게 生活을 영위하며, 무엇이 問題인지를 分析하여 향후 家族政策의 定立, 政策手段의 開發 및 推進戰略을 模索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文獻의 考察과 既存資料의 分析, 그리고 별도의 調査研究를 병행하였다. 調査研究는 전국의 약 20,000가구에 대한 家族形態 및 生活實態에 관한 조사(缺損家族의 生活實態調査)와 아울러 결혼가족으로 구분되는 가구에 대해선 별도의 追跡調査를 並行한 소위 多段追跡調査(multi-stage retrospective survey)의 形態를 취하였다.

또한 家族政策을 開發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존 家庭福祉事業에 관한 行政資料의 分析, 事例調査(家庭福祉事業 從事員 業務實態調査)의 실시, 政策模型開發에 관한 實務會議 및 政策手段 開發을 위한 세미나 등이 병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순히 가족생활 실태 파악이나 가족문제의 원인규명에 그치지 않고 現代家族의 問題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國家나 社會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家族政策은 왜 필요하며, 政策骨格은 어떻게 짜여져야 하고, 이를 위한 政策手段과 推進戰略은 어떻게 構築되어야 하는지를 開發함으로써 政策轉換의 契機를 삼기 위함이다.

2. 研究方法

本 研究는 關聯文獻의 고찰, 既存資料의 분석 그리고 별도의 調査研究가 병행되었다. 여기서 既存資料 分析은 매 5년마다 실시된 人口 및 住宅센서스 資料를 비롯한 1986년 韓國人口保健研究院이 실시한

한국의 家族生活週期調査, 1989년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이 실시한 韓國 家族機能研究調査, 1991년 같은 연구원이 실시한 全國 出産力 및 家族 保健實態調査 및 1993년 같은 연구원이 실시한 一線 家庭福祉業務實態調査 資料 등이다. 또 본 연구를 위해 고안된 조사는 全國 缺損家族의 生活實態調査이다. 그 외 政策開發을 위한 現地診斷 및 懇談會議 및 일선 공무원과의 會議와 政策開發 세미나(家族政策의 方向과 課題, 1994)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역시 본 연구를 위해 활용되었다.

2-1. 全國 缺損家族의 生活實態 調査

1) 標本對象: 標本은 전국을 대상으로 抽出된 167개 調査區(enumerated districts)에 所在하는 약 20,000가구이다. 標本抽出은 1991년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이 全國 出産力 및 家族保健實態調査를 위해 선정한 167개 調査區를 그대로 활용했다. 동 조사구는 약 80가구 내외로 구성되는 표본단위로 行政單位와는 관계없이 선정된 지역이다. 그러나 본 조사는 洞·邑·面 행정단위에서 근무하는 社會福祉專門要員 또는 家庭福祉 擔當要員을 調査員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들 조사구중 여러 행정구역으로 중복, 구성된 지역은 많은 지역을 포함한 행정구역중심으로 任意調整하였다. 따라서 調整된 調査區는 농촌지역의 경우 行政 里單位가 되고, 도시지역은 洞의 統單位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統 및 里單位는 지역에 따라서 偏差가 많아 200가구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 이들 調査區는 班의 순서를 기초로 比例抽出하여 120가구 이내가 되도록 다시 조정하였다.

2) 調査內容: 조사내용은 研究目的을 충족시키기 위해 별도로 設計한 調査票에 의거했다. 調査票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家口形態, 家族特性, 住居樣相 및 生活實態를 중심으로 한 家族生活調査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 가구중 缺損家族에 대한 家族關係 및 缺損原

因, 生計活動, 依存樣相을 중심으로 한 缺損家族調查 이다. 이러한 二元的 調査는 외형적으로 結손가족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먼저 가족생활조사를 통해 結손가족을 구분하고, 다음 結손가족에 대한 별도의 調査를 실시한 것이다. 따라서 가족생활조사에서 結손가족이 아닌 가구는 가족생활조사만을, 結손가족은 가족생활조사와 結손가족조사를 병행하였다.

調査票의 構成은 家口員 및 家族員 사항에서 현재 同居中인 가구원의 수를 파악한 후 이들 모든 가구원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여기서 家族員은 血緣關係를 기초로, 家口員은 同居關係를 기초로 하였고, 同居概念은 1개월 이상 같이 사는 모든 食口, 즉 宿食을 같이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를 기초로 각각의 가구원에 대하여는 性別區分, 家口主와의 關係, 年齡 및 生年月日, 教育程度, 結婚狀態, 活動狀態(健康狀態), 職業區分 및 宗教狀態를 조사토록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가구원과 가족원중 혹시 빠진 경우가 없는지를 확인토록 하여 빠진 경우는 보완토록 했고, 가족원중 혹시 떨어져 사는 경우가 있는지를 파악토록 하여 떨어져 사는 가족원이 있을 경우는 앞에서와 같은 모든 사항을 조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결과의 信憑性을 가늠할 수 있는 指標로 調査에서 應答은 누가 하였는지를 應答者 欄에 표시토록 했다. 또 家口調査는 그 자체로만 의미를 지니지 않고, 結손여부와 結손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調査票 右端에 結손가족을 표시토록 했다. 한편 住居事項은 현재 살고 있는 住宅의 所有關係, 使用中인 房의 數, 文化用品 所有與否, 煖房施設의 形態, 現 住宅에서의 居住期間, 그리고 住居移動 與否를 조사하였고, 주거이동의 경우는 移動時期와 移動理由 등을 추가조사하였다. 生計實態는 월평균 生活費와 생활비의 承擔형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生活費目, 貯蓄與否와 월평균 저

축약, 負債與否와 부채액 및 그 원인, 생활에서 주요 걱정거리, 生活水準에 대한 自體評價, 생활에 대한 滿足度 및 앞으로의 生活展望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缺損家族을 위한 調査內容은 (1) 가족이 떨어져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2) 친족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그리고 (3) 국가의 지원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生活實態를 파악토록 했다. 여기서 가족이 떨어져 생활을 하는 경우는 生計 主擔當者의 就業形態와 收入內譯 및 生計充足에 관한 내용이 위주가 되었고, 친족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누가, 얼마만큼,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또 국가의 지원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경우는 언제부터, 얼마만큼,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와 이러한 支援에 대한 滿足與否를 중심으로 했다. 그 외 결손가족은 缺損類型別로 결손전후의 가족관계, 가족특성과 결손원인 및 생활문제 등을 중심으로 조사내용을 구성했다.

3) 調査員 選拔: 본 조사를 위한 調査員 選拔은 標本地域이 포함된 洞·邑·面 單位에서 근무하는 家庭福祉 내지는 社會福祉 專門要員중 조사활동이 가능한 要員으로 하였다. 調査員 選拔은 保健福祉部 家庭福祉課가 주관해서 市·道 家庭福祉課를 통해 조사지역이 포함된 해당지역의 복지요원중 조사업무에 적합한 요원을 추천, 선정토록 하였다. 한편 동 조사를 위한 調査指導는 市·道 單位의 家庭福祉分野에서 근무하는 公務員이 담당토록 하였다.

4) 調査員 訓練: 조사를 위한 지도원 및 조사원 훈련은 調査目的, 調査方法, 調査內容, 調査票 記入要領 및 追求調査 등을 기초로 1일 6시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保健福祉部 家庭福祉課 職員과 본 연구진이 공동으로 실시했다. 訓練內容은 연구의 중요성과 표본지역의 범위, 면접기술, 조사내용, 조사표 기입요령, 면접불능시 추구조사 요령 및

<表 1-1> 地域別 調査員 訓練日程

훈련일자	대상지역	대상인원	훈련장소
1994. 6. 14	경기도	지도원: 1명 조사원: 20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1994. 6. 16	대전·충북·충남	지도원: 3명 조사원: 17명	충남도청 여성회관 강당
1994. 6. 17	광주·전북·전남	지도원: 3명 조사원: 21명	전남도청 회의실
1994. 6. 20	대구·경북	지도원: 2명 조사원: 22명	경북도청 회의실
1994. 6. 21	부산·경남·제주도	지도원: 3명 조사원: 32명	부산시 아동청소년 회관 소강당
1994. 6. 23	서울·인천·강원도	지도원: 3명 조사원: 55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
계	15개 시·도	182명	

조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하였다. 訓練場所는 조사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 및 강원 등의 지역은 韓國保健社會研究院 大會議室에서 실시했고, 대전, 충북 및 충남 등의 지역은 大田市에 소재한 忠淸南道 社會福祉會館에서, 광주, 전북 및 전남 지역은 全羅南道 道廳會議室에서, 대구 및 경북지역은 慶尙北道 會議室에서 그리고 부산·경남 및 제주지역은 釜山市에 소재한 釜山兒童靑少年會館에서 실시했다. 지역별 조사원 訓練日程은 <表 1-1>과 같다.

5) 調査方法: 동 조사는 별도 設計된 調査票를 기초로 調査員에 의한 追究 面接調査의 형태를 취했다. 조사원은 일선 洞·邑·面에 근무하는 社會福祉 專門要員 및 家庭福祉 擔當要員이며, 面接調査는 먼저 家口調査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缺損與否를 파악하고, 缺損家族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는 多段方法을 택했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지도원이 현지조사의 문제점 해결과 조사내용에 대

한 점검을 통해 착오와 누락을 최대한 방지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6) 調査期間: 동 조사를 위한 조사기간은 1994년 6월 22일부터 1994년 7월 10일까지 실시되었다.

7) 調査資料整理: 동 조사자료는 10일간의 자료정리후 별도로 작성한 符號化指針書에 의한 符號化作業이 이루어졌다. 동 작업은 별도 선발한 20명의 요원들에 의해 1994년 8월 8일 부터 8월 31일 까지 20일간 실시되었다.

8) 調査結果: 동 調査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表 1-2> 家口調査結果

(단위: 가구)

지역	가구조사			
	계	조사완료	조사미완	조사완료율(%)
전국	20,040	17,275	2,765	86.2
도시	14,400	12,227	2,173	84.9
농촌	5,640	5,048	592	89.5

<表 1-3> 缺損家口 調査結果

(단위: 가구)

지역	결손가구 조사			
	계	조사완료	조사미완	조사완료율(%)
전국	1,449	889	560	61.4
도시	1,001	614	387	61.3
농촌	448	275	173	61.4

9) 家口調査 結果의 人口學的 特性: 調査結果의 人口學的 特性分析은 조사자료의 質的 評價(quality of survey data)를 위한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즉 전국 인구분포와 조사결과인구분포는 얼마 만큼 차이

<表 1-4> 推計人口(1994) 및 調査人口(1994)間 性別, 年齡別 分布

(단위: %)

연령	1994 추계치 ¹⁾			1994 조사치 ²⁾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0- 4	7.4	7.8	7.1	6.4	6.9	5.9
5-14	16.3	17.0	15.8	16.7	17.5	15.9
15-24	19.1	19.5	18.5	18.2	18.1	18.1
25-34	19.0	19.3	18.8	17.0	17.1	16.9
35-44	15.1	15.3	14.8	15.2	15.1	15.1
45-54	10.1	10.2	10.0	11.8	11.5	12.0
55-64	7.5	7.0	7.9	8.7	8.6	8.8
65-74	3.8	3.1	4.6	4.1	3.8	4.6
75+	1.7	1.0	2.3	1.9	1.2	2.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1) 韓國保健社會研究院, 『第7次 經濟社會開發 5個年計劃 2次試案, 總括 部門: 人口分野計劃』, 1991.

2) 韓國保健社會研究院, 『缺損家族의 生活實態調査』, 1994.

를 나타내고 있는 점은 중요하다. 본 조사에서 調査完了된 가구는 17,275 가구로 이들 가구에 居住(常住概念)하는 人口는 60,590명(도시:44,171명, 농촌:16,419명)으로 이들 조사인구와 같은 해 추계인구의 비교는 <表 1-4> 및 <表 1-5>와 같다. 여기서 1994년 推計人口는 統計廳이 1990년 인구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한 推計結果이다. 推計人口와 調査人口間 相對的 差異指數(index of relative difference: IRD)는 4.57(남자: 6.23, 여자: 4.23)이며, 不一致 指數(index of dissimilarity)는 3.90(남자: 4.20, 여자: 3.55)으로 두 자료간 95퍼센트내에서 一致性을 보여주고 있다.

동 조사에서 나타난 人口의 地域別 性別 年齡別 분포는 <表 1-6>과 같다. 여기서 地域別 人口構成의 特徵은 농촌지역의 10세 미만 人口는 10.8퍼센트인데 비해 도시지역은 14.3퍼센트를 점유하며, 70세 이상은 農村地域이 6.9퍼센트인데 비해 都市地域은 2.5퍼센트로 農老都少 現象이

<表 1-5> 推計人口 및 調査人口間 差異比較

연령	상대적 차이 ¹⁾			불일치 차이 ²⁾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0- 4	88.47	88.46	83.10	-1.00	-0.90	-1.20
5-14	102.45	102.94	100.63	+0.40	+0.50	+0.10
15-24	95.29	92.82	97.84	-0.90	-1.40	-0.40
25-34	89.47	88.60	89.89	-2.00	-2.20	-1.90
35-44	100.66	98.96	102.03	+0.10	-0.20	+0.30
45-54	116.83	112.75	120.00	+1.70	+1.30	+2.00
55-64	116.00	122.86	111.39	+1.20	+1.60	+0.90
65-74	107.89	122.58	100.00	+0.30	+0.70	+0.00
75+	111.76	120.00	113.04	+0.20	+0.20	+0.30
절대치 총계	82.36	112.29	76.26	7.80	8.40	7.10
상대적 차이지수	4.57	6.23	4.23	-	-	-
불일치 지수	-	-	-	3.90	4.20	3.55

註: 1) 상대적 차이지수(Index of Relative Difference: IRD)는 $1/2 \times \frac{\sum | \frac{r2a}{r1a} \times 100 - 100 |}{n}$

2) 불일치 지수(Index of Dissimilarity: ID)는 $1/2 \times \sum | r2a - r1a |$ 에 의함.

여기서 r1a는 1994년 추계인구, r2a는 1994년 결혼가족실태조사 인구임.

資料: 1) 韓國保健社會研究院, 『第7次 經濟社會開發 5個年計劃 2次試案, 總括部門: 人口分野計劃』, 1991.

2) 韓國保健社會研究院, 『缺損家族의 生活實態調査』, 1994.

현저하다. 따라서 농촌의 65세 이상 人口는 11.3퍼센트, 15세미만 人口는 20.3퍼센트로 扶養指數는 46.1인데 비해 도시의 65세 이상 人口는 4.1퍼센트, 15세미만 人口는 24.2퍼센트로 扶養指數는 39.5를 나타내고 있다. 6세 이상 人口의 教育水準은 중학교 이상이 1/2을 상회하며,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여 도시는 75퍼센트인데 비해 농촌은 50퍼센트 정도로써, 이는 농촌지역이 노령층으로 구성되어 이들의 낮은 教育水準에 의한 결과이다. 또 配偶狀態는 62퍼센트가 有配偶 狀態이며, 未婚은 29퍼센트이다.

<表 1-6> 家口員の性別, 年齢構成 分布

(단위: %)

연령	전국(N=60,163) ¹⁾			도시(N=43,816)			농촌(N=16,347)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0-4	6.4	6.9	5.9	7.1	7.7	6.5	4.5	4.8	4.1
5-9	6.9	7.2	6.7	7.2	7.3	7.0	6.3	6.7	6.0
10-14	9.8	10.3	9.2	9.9	10.4	9.4	9.5	10.1	8.9
15-19	9.2	9.3	9.0	9.1	9.2	9.0	9.2	9.4	9.1
20-24	9.0	8.8	9.1	9.7	9.4	10.1	7.0	7.4	6.5
25-29	8.1	8.3	7.9	9.1	9.1	9.1	5.6	6.3	4.9
30-34	8.9	8.8	9.0	9.7	9.7	9.8	6.7	6.4	7.0
35-39	8.5	8.4	8.6	9.1	8.9	9.3	6.8	6.9	6.7
40-44	6.7	6.9	6.5	7.0	7.1	6.9	5.9	6.1	5.7
45-49	5.6	5.6	5.7	5.6	5.6	5.5	5.8	5.5	6.2
50-54	6.1	5.9	6.3	5.5	5.5	5.5	7.7	7.1	8.3
55-59	5.2	5.4	5.1	4.2	4.5	4.0	7.9	8.0	7.9
60-64	3.5	3.2	3.7	2.6	2.5	2.8	5.8	5.4	6.3
65-69	2.4	2.2	2.7	1.7	1.4	1.9	4.3	4.1	4.6
70-74	1.7	1.6	1.9	1.2	1.0	1.3	3.3	3.2	3.4
75+	1.9	1.2	2.6	1.3	0.7	1.8	3.6	2.6	4.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註: 1) 무응답 427명 제외.

<表 1-7> 家口員の地域 및 性別, 年齢그룹別 構成 分布

(단위: %)

연령	전국(N=60,163) ¹⁾			도시(N=43,816)			농촌(N=16,347)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0-14	23.1	24.4	21.8	24.2	25.4	22.9	20.3	21.6	19.0
15-64	70.8	70.6	71.0	71.7	71.4	72.0	68.5	68.5	68.4
65+	6.1	5.0	7.2	4.1	3.2	5.1	11.3	9.9	12.6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양지수	41.2			39.5			46.1		
성비		99.6			99.8			98.0	

註: 1) 무응답 427명 제외.

<表 1-8> 滿 6歲以上 家口員의 地域別, 性別 教育水準 分布

(단위: %)

교육수준	전국(N=55,171) ¹⁾			도시(N=39,716)			농촌(N=15,455)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미취학	0.8	0.9	0.8	0.8	0.9	0.8	0.8	0.7	0.8
무 학	7.4	3.9	10.7	4.1	1.7	6.5	15.8	9.7	21.6
국민학교	24.0	21.8	26.1	20.1	17.7	22.6	33.8	32.6	34.9
중학교	18.3	17.9	18.7	18.4	17.3	19.5	18.0	19.3	16.8
고등학교	34.5	36.1	32.9	37.9	38.8	37.1	25.6	28.9	22.3
대학이상	15.1	19.5	10.8	18.6	23.7	13.6	6.1	8.7	3.6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註: 1) 무응답 772명 제외.

<表 1-9> 滿 15歲以上 家口員의 地域別, 性別 結婚狀態 分布

(단위: %)

결혼상태	전국(N=46,137) ¹⁾			도시(N=33,114)			농촌(N=13,023)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미 혼	28.9	33.2	24.7	30.6	34.6	26.7	24.4	29.6	19.6
유배우	62.1	63.2	61.1	61.6	62.3	61.0	63.3	65.3	61.3
사 별	7.5	2.3	12.6	6.2	1.7	10.5	11.0	3.6	18.0
이혼 및 기타	1.5	1.4	1.6	1.6	1.4	1.8	1.3	1.5	1.1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註: 1) 무응답 550명 제외.

2-2. 家族政策開發을 위한 세미나 開催(家族政策의 方向과 課題)

동 세미나는 保健福祉部의 主管과 三星生命 公益財團의 後援下에 1994. 12. 8-12. 9 까지 2일간 韓國保健社會研究院 大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동 세미나는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날로 증가되는 家族問題를 단순히 가족단위의 私的인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社會問題로써 생각하여

이를 위한 能動的인 政策이 要求된다는 인식하에 家族問題를 綜合的으로 檢討하고 이를 위한 家族政策開發에 焦點을 두고 실시된 것이다.

동 세미나는 6개 主題發表와 各 主題別 討議 및 全體 主題에 대한 綜合討議 형식으로 進行되었으며, 各 主題는 다음과 같다. 이 외 동 세미나와 관련된 내용중 구체적인 사항은 <附錄 I>에서 설명된다.

- 1) 缺損家族의 類型別 福祉要求
- 2) 少年少女家族의 福祉支援 方案
- 3) 健康한 家族像 定立을 위한 放送의 役割
- 4) 先進國 家族政策의 敎訓
- 5) 家族福祉의 女性政策的 意義
- 6) 家族政策의 基本骨格과 接近方案

第2章 理論的 背景

第1節 家族의 觀點과 爭點

파슨즈(Parsons, 1971)는 傳統社會를 대규모 親族單位가 支配하는 社會로 규정하고 親族間 紐帶를 통한 家族中心生活로 특징지었다. 産業化와 都市化로 인한 社會制度의 發展은 가족기능중 많은 부분을 社會가 代行하면서 成員의 役割分化는 家族의 分化로 소위 核家族 形態의 出現이 예고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社會·環境的 適應이라는 相互作用의 결과에 의한 것으로 家族의 變化와 解體는 家族週期和 社會變化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家族週期는 生活週期에 따른 결혼과 출산, 양육과 교육, 취업과 분가, 그리고 사별과 사망 등의 人口學的 側面을 뜻하며, 社會變化는 産業化, 도시화 및 세속화 등의 社會·環境的 變化가 家族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어쨌든 家族은 변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변화가 家族生活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는 점은 주요 관심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家族의 變化와 解體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가족의 生活週期에 따른 形成과 成長, 擴大와 縮小, 그리고 消滅과 解體라는 自體的 變化보다는 産業化에 따른 構造, 機能 및 價値에 의한 影響的 變化에 둔다. 즉 晩婚과 低出産에 의한 자녀규모의 축소, 기능의 분화 및 역할의 다양화에 따른 生活의 獨立이나 자율성 강조, 개인주의 의식에 따른 紐帶弱化, 離婚增加 그리고 생활의 孤立化 등이 그것이다. 말하자면 현대가족은 가족간의 관계에 의한 생활보다 사회와의 관계에 의한 생활이 강화되면서 가족간의 紐帶弱化는

家族解體를 부추기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은 버제스와 러크(Burgess & Locke, 1963)에 의해서도 지적되고 있다. 즉, 가족을 에워싼 사회·환경적 변화는 가족간의 緊張과 葛藤을 조장하면서 이를 調整하지 못할 때 解體가 불가피해 지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이 어떠한 형태를 이루고, 어떻게 생활하건 그 자체가 問題일 수는 없다. 家族의 本質이 獨立된 生活과 그러한 생활로 滿足을 추구하는데 있다면 그렇지 못한 경우에 問題가 된다. 우리는 어떠한 共同體도 이의 존속을 위해서는 利益을 위한 目標, 合意된 價値, 維持를 위한 協力, 그리고 협력에 따른 秩序가 요구된다고 본다. 이는 共同體의 生理가 개인의 협력을 전제로 하고 價値나 協力 그리고 秩序 등은 어떤 면에서 개인에 대한 統制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가족의 경우도 例外일 수 없다. 전통가족이 家父長的 權威主義의 “이데올로기”로 家族秩序를 유지했다면 현대가족은 自律化와 個人化를 강조하면서 共同體의 秩序를 위해 合意된 理念은 무엇일까? 家族의 有用性 弱化는 과연 앞으로 가족이 필요치 않게 될 것을 의미하는가?

오늘날 家庭教育을 生活教育과 關係教育으로 구분한다면 生活教育은 있어도 關係教育은 退化된 상태이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집에 사느냐 하는 物質的인 富와 생활의 便宜性에는 관심이 많지만 부부간이 어떻게, 부모자식이 어떻게 해야 하며, 친족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物質的 生活에는 관심이 많지만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家族關係는 관심 밖이라는 것이다. “잘 산다”것은 물질적 豊饒만을 강조하고, 마음과 행위는 중요시 하지 않는다.

現代家族은 부모자식이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편히 살기 위해 떨어져 산다. 父母는 子息에게 依存하지 않으려 하고, 자식은 부모 모시기를 忌避한다. 부모는 자식과 떨어져 살면서도 자식이 잘 살

기만을 祈願하면서 홀로 살다가 죽은지 일주일 후에 이웃에 의해 발견되어 葬禮를 치루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처럼 가족을 잃은 가정, 자식을 두지 않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다. 가족과 떨어져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1990년 인구센서스에서는 獨身家口가 11.4퍼센트나 되고, 또 아들이 없어도 된다는 부부는 38.9퍼센트에 이른다(安啓春, 1995; 李時伯, 1995). 이러한 현상이 곧 家族崩壞일 수 있다.

家族의 變化에 따른 觀點은 나름대로 다양하다. 현대가족에서 개인에 대한 統制力의 弱화가 개인의 自律性を 增大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그 결과는 개인주의 의식과 家族의 分化로 가족이 돌볼 수 없는 對象을 증가시키고 있다. 家族制度에서 規範의 끈이 끊겨진 관계의 단절은 從屬的 位置에 있는 아동과 노인 그리고 여성의 일부는 依存할 곳을 잃게 된다. 이를 위해 국가는 福祉의 그물을 새로 짜야 하지만 그러한 그물이 모든 대상을 감싸기 어렵다. 결국 福祉制度가 가정을 대신하기 어렵다면 이는 家族制度를 고쳐서라도 새로운 삶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施策이 家族政策이다. 즉 가족정책은 깨어진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慈善策에서 보다 가족을 보호하며, 가족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豫防策이 보다 더 중요시 될 수 있다. 家族政策은 1970년대 이후 所得 再分配, 出產調節 外 의존적 가족에 대한 서비스, 즉 아동복지 및 여성복지 등을 중심으로 한 가족을 위한 시책으로 카머맨과 칸(Kammerman & Kahn, 1978)에 의해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政策은 가족을 위한 家族福祉의 統合概念으로 이해되고, 生活改善을 통한 家族開發에는 관심을 갖지 못한 상태에 있다. 여기서 家族福祉는 缺損家族의 生活保護나 依存家族의 役割支援의 의미를 내포하며, 家族開發은 機能調整, 役割開發 및 價値定立을 통한 缺損豫防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가족을 私的 生活單位로 여기면서 사회적 干

涉을 禁忌視해 온 慣行에 연유한다.

가족에 대한 爭點은 산업화와 함께 家族이 자체의 노력만으로 독립된 생활이 어렵게 되는데 있다. 가족과 사회의 유기적 관계는 그것이 사회의 干涉이 아니라 相互補完의 의미를 지닌다. 말하자면 出産調節, 託兒制度, 家事支援 및 家庭看護 등은 干涉이 아닌 生活改善과 役割補完을 誘導하는 家族開發을 의미한다. 결국 現代家族이 가족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한 社會條件을 조성하면서 社會條件에 따라서 가족의 構造와 機能을 달리하게 되었음은 社會가 家族을 지원하면서 가족이 사회에 참여하기 위한 共助體制가 요구되는 점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점을 構造化하는 것이 家族政策인 것이다

第2節 産業化와 家族의 變化

일반적으로 家族은 社會構成의 基本單位인 동시에 血緣·生活 共同體로 생각한다. 사회구성의 기본단위는 家族으로써 이들이 모여 社會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家族과 社會의 불가분성을 뜻하며, 혈연·생활 공동체는 私的인 生活單位라는 점에서 獨立性 내지 特有性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을 보는 視覺은 다양해질 수 있다. 즉 社會發展과 함께 가족의 모든 機能을 사회가 代行할 수 있다면 家族制度는 필요치 않다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이와는 반대로 아무리 社會가 發展한다 하더라도 出産과 養育, 그리고 情緒的 紐帶와 같은 家族의 固有機能을 社會가 代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家族制度는 어떠한 형태로 건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가능케 된다(李效再, 1993).

가족에 대한 觀點 내지 爭點이 어떻든 人類歷史는 家族制度和 함께 발전되어 왔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대부분의 인간은 家庭을 準據

로 家族과 더불어 살고 있다. 家族制度는 인간의 기본적 慾求와 정서적 安定을 종합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삶의 準據로서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성을 지닌다. 마치 異性之合인 婚姻制度를 기초로 性的 慾求의 충족, 夫婦間 役割補完을 통한 生活의 自立, 出産과 養育을 통한 世代連繫, 그리고 實踐倫理를 기초로 한 社會化 등 多機能的 生活共同體를 構造化하기 위한 틀이 그것이다. 가족은 個人과 社會와의 연결 고리의 역할을 담당한다. 즉 가족은 個人的 成長과 發展은 물론 이러한 개인들이 社會發展을 주도하도록 함과 社會발전이 개인생활에 유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媒介的 機能과 役割을 담당한다. 따라서 家族의 變化는 개인의 成長과 發展, 가족과의 役割關係, 그리고 社會的 生存條件 등 복합적인 관계로 이루어진다.

韓國家族은 儒敎文化의 영향으로 父系中心의 家父長制를 유지하는 가족중심의 생활을 강조하여 왔다. 家長인 父는 가족의 統率權, 財産權 및 代表權을 독점하면서 家系繼承과 아울러 家格을 높이는 것으로 여겨왔다(李光奎, 1989). 이는 朝鮮朝에 유교를 國敎로 삼으면서 가족중심의 經濟基盤(가족농업 중심)을 유지해 온데 연유한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급격한 社會變化, 즉 日帝의 植民地, 2次 世界大戰, 解放에 이은 南北間의 國土分斷, 6.25動亂, 그리고 産業化라는 거센 회오리가 개인과 사회는 물론 가족의 변화를 촉진시켰다. 植民期와 大戰期, 解放期 그리고 動亂期는 젊은 층의 流浪과 徵用 및 戰爭參與 등으로 가족의 離散과 相逢, 남편과 자식 그리고 부모를 잃게 되는 家族缺損이 증가했고, 産業化期에는 가족기능의 社會化, 개인역할의 多樣化 그리고 가정과괴의 增加 등으로 가족의 分化와 解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家族의 變化는 개인의 集合인 가족 자체의 변화와 가족을 구성단위로 하는 社會와의 관계에 의한 것으로 대별할 수 있다. 前者는 개인

의 生活週기와 함께 家族週期(family life cycle)의 변화를 뜻하며, 後者は 戰爭과 災難 또는 産業化와 같은 社會的 壓力에 의한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에서 가족 자체에 의한 점은 家族制度나 生活慣習에 의해서 受容되지만 社會的 壓力에 의한 점은 이에 대한 對應 또는 受容이 어려울 때 가족생활은 많은 問題가 뒤따른다. 즉 戰爭과 災難 또는 不意의 事故 등은 불가피한 것이라 할지라도 산업화에 따른 家族機能의 社會化에서 就業이 어렵거나, 敎育 및 醫療 등에 대한 서비스 受惠가 원활치 못하다면 이는 일종의 가족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일 수도 있다. 이처럼 産業化는 전통적 가족기능을 選別的으로 사회가 代行하면서 가족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산업화가 가족생활에 미친 영향은 다음 몇가지 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1. 人口變化와 家族形態

人口는 인간의 集合概念으로, 그 변동은 出生, 死亡 및 移動과 같은 요인에 의해 설명된다. 또 家族은 인간의 生活 共同體로 결혼을 통한 形成, 출산을 통한 擴大, 이동을 통한 分化, 그리고 사망을 통한 縮小로 변화된다. 말하자면 社會的 觀點의 人間集團을 人口로 본다면 生活單位는 家口나 家族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人口變化는 家族生活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변화된 인구는 다시 家族生活에 影響을 주는 불가분의 관계를 이룬다. 이러한 점에서 人口研究는 家族研究를 기초로 體系化될 수 있고, 人口政策 역시 家族制度가 존속되는 한 家族政策을 통해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를 수록 人口變動은 어떤 양상을 나타내고, 이로 인한 가족에 대한 영향은 어떠한 것일까?

최근 韓國에서 人口變化의 특징은 出産力의 低下, 平均壽命의 延長 그리고 人口의 都市集中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出産力은

1960년 6.0수준의 合計出生率(total fertility rate: TFR)이 1990년에 1.6 수준으로 低下되면서 부인들은 평균 2명이하의 子女를 두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산업화에서 婚前役割의 다양화로 結婚年齡의 上昇, 1960년대 초기부터 실시한 家族計劃事業의 성공적 推進, 그리고 원치 않는 妊娠에 대한 人工妊娠中絶의 開放化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孔世權 外, 1992).

保健醫療의 發展과 生活水準의 向上으로 평균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던 영아사망율이 1960년에 약 60이 최근에 12.8(1986-1987: Han SH, 1989, 보건복지부, 1994)로, 平均壽命은 약 55세(남자:53.0세, 여자:57.7세)에서 약 71세(1990년 남자:67.4세, 여자:75.4세)로 상승되었다. 다시 말해서 지난 30년간 영아사망율의 급격한 감소는 평균여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한편 人口의 都市集中은 都市據點 産業化에서 向都離農 現象이 비롯되었고, 이에 부가해서 産業地域의 都市化 및 周邊地域의 都市編入 등 都市地域의 擴大로 가속화 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1960년의 전체 인구중 도시거주율이 28퍼센트였으나 1990년에는 74퍼센트로 증가하면서 人口構造는 都少農老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出生率 및 死亡率의 低下, 그리고 人口의 都市集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人口現象이 인간생활의 力動的 斷面이라면 生活行態(life behavior)는 어떻게 달라진 것일까? 經驗的 차원에서 人口變動은 多産多死의 類型이 多産少死 그리고 少産少死의 類型으로 轉換되어 왔다. 이러한 점은 出産力과 死亡力이 獨立的인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關係가 있음을 뜻한다. 어느 시대나 인간은 健康하고 오랜 삶을 영위해 왔듯이 生存條件이 劣惡한 狀態에서는 많이 죽을 수 밖에 없어 種族維持를 위해 多産多死 形態가 불가피 했다. 그러나 生存條件의 改善과 함께 保健醫療가 發展되면서 死亡力은 減少

되고 부부들이 많은 자녀를 두게되어 多産少死 形態가 나타났고, 여기서 多子女는 子女養育이 어렵다는 점에서 出産調節로 인해 人口類型은 少産少死 形態로 변하게 된 것이다. 한편 人口의 都市集中은 산업화와 함께 都市가 확보하고 있는 教育과 就業 그리고 文化 등 生存條件의 有用性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手段을 추구하기 위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서 家族의 構造, 機能 및 價値觀도 변하고 있다. 적은 자녀수를 두면서 가족은 規模縮小와 役割變化가 나타났고, 壽命延長은 生活週期를 변화시켰다. 個人役割의 多樣化 및 人口의 都市集中은 父母子息間 分居形態를 조장했고, 就業을 통한 經濟的 自立은 生活의 獨立으로 이어지면서 個人主義的 價値觀이 澎湃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점에서 現代家族의 특징은 構造의 多樣化, 機能의 專門化 그리고 共同體 意識의 弱化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Parsons, 1949, 1955 and 1964). 물론 家族의 變化는 인구변동이 가족생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人口變動에 의한 영향보다 産業化에 따른 영향이 支配的이라 하겠다. 産業化는 選別的으로 전통적 가족기능을 사회기능으로 代置하면서 役割과 形態 및 價値의 變化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2. 經濟發展과 家族生活

經濟發展과 家族制度와의 관계는 오랫동안 學者들의 관심사였다. 唯物論的 立場의 엥겔스나 마르크스는 家族이 生産양식인 것으로, 이는 資本主義 경제구조 유지에 필요한 노동력 再生産 單位인 것으로 설명 하였다. 그러나 構造機能論者(Parsons, 1955 and 1964; Goode, 1964)들은 가족의 構造, 機能 및 役割이 사회의 다른 부분의 變化에 適應을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즉 산업화와 함께 生産機能의 企業化에서 가족은 經濟機能 뿐만 아니라 福祉機能도 약화되고, 個人役割의 다

양화와 함께 이루어지기 시작한 核家族化 現象에서 親族間의 紐帶弱화는 자녀의 養育과 社會化 機能 그리고 성인에 대한 情緒的 支援機能이 중요시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命題는 모든 가족이 획일적일 수 없기에 그 후 많은 批判이 뒤따랐지만 産業化에 따른 가족의 변화에 새로운 理論을 제시한 점 만은 분명하다.

어떻든 家族機能의 社會적 代行體制에서 가족원의 役割과 價値觀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점은 主要 關心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계획적인 産業化를 추진하면서 특징적 현상은 인구의 都市集中과 적은 자녀수를 위한 出産調節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전통 관습과 관계없이 社會變化에 適應을 위해 住居形態, 生活樣式 및 結婚行態에 많은 변화를 준 것이 분명하다. 즉 慢性的 貧困狀態에서 經濟的 豊饒를 추구하기 위한 就業과 이러한 취업을 가능케 하기 위한 教育이 父母子息間 分居形態를 조장했고, 就學과 就業의 有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晩婚形態도 불가피 했다. 즉 個人役割의 多樣化 내지 專門化에서 개인의 自律性은 강조되고, 세대간 연계를 이루면서 대가족 중심의 集團生活은 부부중심의 核家族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經濟發展이 家庭生活에 미친 영향은 物質的 豊饒와 生活의 便宜性이 제공된 대신 個人役割의 다양화로 家族間 分化現象을 초래한 점이다. 家族中心 生産體制의 企業化는 가정과 일터를 분리시켰고, 家事勞動의 機械化 및 出産調節로 인한 少子女 形成은 부부의 養育負擔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 뿐만 아니라 부인도 생산참여를 위한 就業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은 教育을 받아야 하는 등 役割轉換이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短縮시키면서 分居樣相도 불가피해 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役割協力에 의했던 가족생활이 役割補完으로 가능케 되면서 役割分化는 住居分化로 이어진 점이다.

가족성원의 役割分化와 함께 시작된 住居形態의 多樣化는 그 자체

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족의 본질이 공동체적 생활을 통한 나름대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집단이라면, 이러한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집단은 역할분화와 함께 個人主義的 성향으로 役割補完이 원활치 못하게 된다면 이러한 집단은 와해 내지 해체의 위험도 피할 수 없게 된다.

經濟開發과 家族變化을 논하면서 보다 특징적인 점은 農村家族의 變化일 수 있다. 도시거점 산업화에서 농촌지역은 農業資源(인력, 토지 및 자원)의 脫農現象을 경험케 했다. 脫農現象은 농업자원이 공업화로 移行됨을 의미한다. 즉 농업인구가 공업인구로, 농업지역이 공장지역으로, 그리고 농업자본이 공업자본으로 바뀌면서 잔유 농촌가족은 어떤 형태를 유지하고, 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는 주요관심이 아닐 수 없다. 최양부(1993)는 “農村家族의 解體와 消滅”에 관한 사례연구에서 산업화와 함께 농촌가족은 젊은 층의 이농으로 노동력 부족은 물론 가족의 노령화, 그리고 전통적으로 대물림 해 왔던 世代間 營農 繼承의 斷絶이 초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양상은 경제개발 초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개발초기는 농업의 현대화라는 旗幟아래 소위 “綠色革命”과 함께 協同農業이 강구되었고, 그 결과는 農村經濟 뿐만 아니라 國家經濟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어느 사회에서나 産業化는 농업을 根幹으로 하기 보다 商工業 내지 서비스業이 중점을 이루면서 工業化의 進展과 함께 産業構造의 改編은 농업사회는 물론 농촌가족의 相對的 落後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의 농촌가족은 高齡期 核家族 形態가 增加(孔世權 外, 1993)하면서 전체 가구중 노인이 있는 가구는 41퍼센트(도시:23%), 노인 독신만으로 사는 가구는 8퍼센트(도시:2%)를 점유하고(李佳玉 外, 1994), 이러한 노인가족은 대부분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經濟發展에 따른 家族機能의 社會的 代行에서 대부분의 성원은 낮이면 學校나 일터에서 지내고, 맞벌이 부부는 모두 직장에서 생활을 한다. 따라서 가족이 함께 지내는 시간은 대개 밤이나 주말로 한정되고 있다. 모든 가족이 다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家庭과 일터의 分離는 가정을 일종의 휴식처로, 食事を 같이 하는 場所로, 또는 가정밖의 생활을 준비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經濟發展과 함께 生活樣式의 變化는 가족의 有用성과 이에 대한 認識을 새롭게 하고 있다. 따라서 多子女는 이를 資産으로 생각하기 보다 養育의 負擔이나 消費의 增加로 생각하면서 적은 자녀를 두거나 딸만 두는 경우가 늘어나고, 女性의 役割擴大는 夫婦關係의 平等化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처럼 經濟發展이 家族生活에 미친 영향은 生活의 豊饒를 제공한 대신 家族의 分化로 인한 凝集力의 弱化和 함께 家族解體를 부추긴 점이 그것이다.

3. 缺損家族의 增加

家族의 分化 및 解體 등 構造的 缺損이 生活의 自立이 어려운 機能的 缺損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여기서 配偶者의 死亡, 夫婦間 離婚, 父母子息間 別居 및 자녀의 遺棄 등은 어떠한 狀態에 있을까? 1966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는 偏父母와 子女로 구성되는 가구는 39만에서 1990년에는 89만으로 두 배 이상 증가되어 전체 家口 중 약 1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편부모 가구의 發生은 配偶者 死亡에 의한 것이 84.1퍼센트, 夫婦間 離婚에 의한 것이 6.2퍼센트, 配偶者의 遺棄에 의한 것이 6.4퍼센트, 그리고 別居에 의한 것이 3.2퍼센트로 추정된다(金貞子 外, 1984). 또 父母子息間 別居는 1960년 이전까지 子女가 結婚後 약 1/4만이 別居狀態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약 2/3가 별거형태를 이루고(金敏子 外, 1991), 子女遺棄는 정부가 보

호하는 소년/소녀가족만도 1985년에 4천9백세대 였으나 1993년은 7천3백세대로 증가하고 있다(金應錫 外, 1994).

이처럼 家族의 分化와 함께 離婚의 增加 및 각종 事故로 인한 死亡은 편부모 가족, 노인 독신가족, 그리고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 가족의 發生原因이 되고 있다. 여기서 偏父母 家族은 결손가족의 主軸을 이루며, 오늘날의 새로운 類型이 아니다. 1960년 이전까지만 해도 戰爭이나 疾病으로 인한 配偶者의 死亡으로 편부모와 자녀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편부모 가족은 英國의 경우도 1971~1973년 간 전체가 구중 8퍼센트에 불과했으나 1981~1983년 간은 13퍼센트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GHS Monitor 84/1, 안병철, 1992).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産業化 이전까지만 해도 戰爭이나 疾病에 의한 配偶者 死亡이 偏父母 家族의 發生원인이었으나 최근에 이를수록 각종 事故나, 離婚, 遺棄 및 別居에 의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統計廳, 1993).

편부모 가족의 또 다른 형태는 未婚出産으로 인한 未婚母 家族의 증가이다. 이러한 미혼모 가족의 發生機轉은 複雜多樣하여 精確한 수를 파악할 수 없지만 婚前妊娠의 증가 및 未婚母 상담건수의 증가(金根祚, 1986)에서도 類推할 수 있다. 婚前妊娠 經驗率은 1991년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의 조사에서 既婚婦人 중 20퍼센트에 달하며(孔世權 外, 1992), 이러한 임신의 약 1/3이 人工妊娠中絶로 終結되고 있는 양상이다. 물론 모든 婚前妊娠이 모두 未婚母로 歸結되는 것은 아니다. 婚前 關係가 원만한 結婚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로 인한 出産은 未婚母나 棄兒로 나타나게 됨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최근 未婚母 相談 및 入養兒의 原因에서도 엿볼 수 있다(表 2-1 참조). 未婚母 相談件數는 1981년 2,882건이 1985년 4,681건으로 증가했고, 또 1960년 초까지만 해도 입양아의 2/3가 기아였으나 최근에는 未婚母에 의한 出産이 4/5를 차지하고 있음은 이를 立證

한다고 하겠다. 특히 未婚母는 결혼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81~1985년간 홀트 아동복지회가 입양상담을 한 未婚母는 부모 중 한쪽 또는 모두 사망했던 가족의 경우가 전체 未婚母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음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金根祚, 1986).

偏父母 家族의 增加는 국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一般的 趨勢라 하겠다. 偏父母 家族의 증가는 서유럽의 많은 국가들(Cockburn & Hecllo, 1974)에서와 같이 미국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미국은 영국보다 離婚率이 좀 높은 편으로 偏父母 家族의 비율도 높다. 영국은 1981년 16세 이하 兒童의 6퍼센트가 偏父母와 같이 살고 있는데 비해 미국은 1970년대 말에 18세 미만 兒童 중 19퍼센트가 偏父母와 같이 살고 있다. 偏父母 家口의 家口主는 대부분이 女性이며, 이들 가구의 약 2/3는 父母가 離婚을 하였거나 別居를 한 경우이고, 15퍼센트는 未婚母에 의한 것이며, 나머지 10퍼센트는 아버지가 死亡한 것으로 報告되고 있다(Levitan and Belous, 1981). 이러한 점은 한국의 人口動態申告資料에서도 離婚率의 증가와 함께 離婚 家口主의 비율이 증가(統計廳, 1991)하고 있는 점에서 離婚母나 未婚母의 증가를 생각할 수 있다.

<表 2-1> 入養兒의 發生要因別 分布: 1958~1992

(단위: 명)

시 기	연 평 균 입양아수	발 생 요 인		
		미혼모	기아	결혼가정
1958~1960	900	10.7	65.0	24.3
1961~1970	1,148	21.5	60.8	17.8
1971~1980	6,355	42.0	35.0	23.0
1981~1985	10,101	65.4	17.3	17.2
1986~1990	8,246	81.8	6.6	11.6
1991~1992	3,336	82.1	8.2	9.7

資料: 정기원·김만지, 『우리나라 入養의 實態分析』,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3.

偏父母와 子女로 구성되는 形態가 構造的 缺損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父母가 모두 死亡한 無依託 靑少年 家族, 그리고 老人 獨身 家族도 제외될 수 없다. 특히 최근에 이를 수록 子女의 必要性에 대한 意識이 弱化되면서, “반드시 자녀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경우는 15~49세 기혼부인 중 10퍼센트에 달하고, “아들이 없어도 된다”는 경우는 28퍼센트에 이르며, 또 老後에 子女와 別居를 選好하는 경우는 72퍼센트에 이르고 있다(孔世權 外, 1992). 子女를 두지 않거나, 子女가 結婚後 부모와 別居하는 形態는 서로의 便宜性(83%)을 위한 것이지만 그러한 형태가 固着될 경우 부모의 노후는 또 다른 缺損家族으로 남게 될 危險性을 배제할 수 없다.

個人役割의 多樣化 및 個人意識의 普遍化에서 가족이라는 묶음은 夫婦間 또는 父母子息間이 死亡이나 別居로 헤어져야 하고, 이로 인해 生活의 自立이 어렵게 된다면 家族缺損은 社會的 要因이나 家族的 要因의 複合産物일 수 있다. 특히 出産力의 低下와 死亡構造의 變化, 그리고 平均壽命의 延長에 따른 家族生活週期(family life cycle)의 變化에서 이러한 양상은 보다 심화될 것을 의심치 않게 된다. 그것은 役割의 專門化, 離婚의 增加 및 分居의 普遍化에서 家族間 同居는 어렵고, 극도의 個人主義 및 便宜主義는 子女遺棄 및 家庭破壞로 缺損家族을 증가시키는 要因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손가족은 그 자체로만 남지 않는다. 偏父母 家族은 再婚이 이루어지고, 靑少年 家族은 成長과 함께 새로운 家族을 이루며, 老人家族은 解體된다.

최근 調査(孔世權 外, 1992)에서 離婚婦人의 再婚率은 41퍼센트에 이른다. 再婚時 平均年齡은 부인이 29.6세이고, 남편이 36.4세이다. 離婚婦人의 再婚率은 농촌지역이 76.2퍼센트인데 비해서 도시지역은 33.7퍼센트이며,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자녀를 두지 않은 경우나 적을 수록, 그리고 직업을 갖지 않은 경우에 높다(徐文姬, 1993). 그러나 離

婚男子의 再婚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찾을 수 없지만 人口센서스에서 35~39세 男性의 연령별 有配偶率이 95퍼센트에 이르고 있음은 離婚男子의 再婚率이 離婚婦人의 再婚率 보다 훨씬 높다는 점은 쉽게 類推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離婚男性의 6명중 5명이, 그리고 離婚女性의 4명중 1명이 재혼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재혼은 이혼 후 3년내에 1/2이 이루어진다(Cherlin, 1981).

이처럼 산업화와 함께 結婚의 自律化和 分居의 普遍化(주거이동의 증가), 그리고 각종 事故의 增加 등은 가족이 일정한 形態로만 維持될 수 없고, 多樣的 形態의 출현이 불가피 해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외형적 形態만을 기준으로 하여 缺損家族으로 烙印하기 보다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受容하는 認識의 轉換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즉 가족은 누구와 함께 사느냐는 構造的 側面보다 生活을 自立할 수 있느냐는 機能的 側面이 중요할 수 있다. 그것은 앞으로 사회구조가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代案形態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족이 어떻게 생활하며, 어떻게 유지되느냐에 관심이 모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第3節 家族缺損의 原因

家族缺損이 個人問題로 인해 나타나고, 그 結果가 社會病理로 이어지고 있다면 사회병리는 다시 家族問題 뿐만 아니라 個人問題를 派生시키는 要因이 된다. 이처럼 個人과 家族 그리고 社會와의 不可分의 관계는 가족이 개인과 사회를 媒介한다는 점에서 家族의 安定이 個人의 安定은 물론 社會의 安定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러나 家族問題는 복잡·다양해서 劃一化하기 어렵다. 다만 觀念的 次元은 構造的 分化, 役割의 混亂, 價値의 葛藤으로 要約할 수 있지만 窮極的인 점은

家族解體이다. 가족해체는 가족분화로 생활자립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원래 家族은 問題의 單位가 아니라 問題의 解決을 위한 單位이다. 그러나 인간이 問題를 안고 태어났듯이 그러한 問題를 共同으로 解決하기 위한 것이 家族이다.

家族은 問題의 露出을 禁忌視하면서 자체적 解決을 本質로 삼는다. 따라서 가족은 問題를 隱蔽하면서 表面上 아무런 問題가 없는 것 처럼 僞裝하는 경우가 많다. 家族問題는 대개 家庭條件 및 家族關係를 중심으로 한 內部問題와 社會條件 및 役割關係를 중심으로 한 外部問題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분제를 家族問題로, 또 외부분제는 社會問題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가족문제인 동시에 사회문제인 것이다. 이처럼 문제의 복합성은 개인문제와 가족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靑少年의 非行과 家出, 未婚母의 發生과 子女遺棄, 人身賣買와 家庭破壞 그리고 夫婦의 非行과 離婚도 따지고 보면 個人行動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그 책임은 가정에 있다는 점에서 가족 문제로 지칭하기도 하고 개인문제로 삼기도 한다.

1. 離婚의 增加

西洋文化가 個人尊重의 文化라면 東洋文化는 家族中心의 文化일 수 있다. 그렇다고 가족은 동양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人類가 異性之合의 婚姻制度로 이어져 왔듯이 家族制度는 어느 사회에서나 普遍性을 지닌다(李光奎, 1989). 家族制度는 婚姻制度, 入養制度, 相續制度 및 分家制度 등 인간생활을 構造化시킨 틀이다. 말하자면 가족은 關係를 기초로 共同生活을 목표로 한다. 共同生活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한 存在로 여기면서 相互作用에 의해서 유지되듯 必要性的 弱화나 關係의 斷折은 訣別의 위험도 배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家族은 分家가 이루어지고, 解體도 불가피한 것이다. 家族關係는 夫婦間 愛情關係, 母

子間 授乳關係, 成員間 扶養關係 등 복잡하다. 가족관계의 핵심은 夫婦關係이다. 결혼이 부부됨과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듯 공동생활은 부부간의 협력에 의한 생활자립과 가족부양, 자녀양육 및 사회활동 등을 포괄한다. 전통가족이 父系制度를 유지하면서 父子關係를 中心의 軸으로 삼았다면 현대가족은 핵가족화와 함께 부부관계가 중심의 軸을 이룬다. 부부관계의 중요성은 平均壽命 延長과 家族週期の 變化에서도 엿볼 수 있다. 결혼후 부부가 偕老할 수 있는 期間은 지난 반세기간 약 38년이 약 43년으로 5년이 연장 되었다. 또 子女들의 成婚後 부부만의 生活週期는 1년 미만이 22년으로 늘어남(孔世權 外, 1993)으로써 부부관계는 노후에 보다 중요시 된다.

그러나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변화는 女性들의 教育水準 向上과 就業擴大 이다. 부인취업은 단순한 經濟活動 參與만이 아니라 취업을 통한 經濟的 自立이 依存關係를 벗어나 平等關係로 轉換되는 契機가 마련된 점이다. 따라서 부부관계의 同伴者的 友愛關係는 家父長的 從屬關係의 逆機能的 側面은 물론 平等이 保障되지 않는 한 夫婦葛藤은 離婚의 危險性을 배제하지 않는다. 부인취업은 부인들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다가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전통적으로 수행해 오던 子女 養育과 家事役割을 감당하면서 취업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취업은 남편이나 가족으로부터 同意가 요구되고,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役割의 二重性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결국 부인취업은 가족의 지원과 직장이 포용하지 않는 한 就業과 家事중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사회는 儒敎文化의 영향으로 일정 年齡에 달하면 結婚을 하고, 결혼후는 偕老해야 한다는 皆婚意識과 同居意識이 慣習化 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화에 따른 婚前役割의 多樣化와 個人主義 意識은 晩婚의 性向과 함께 離婚率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離婚數는

1960년에 약 7천건이었으나 1970년에는 약 1만 2천건으로, 1980년에는 약 2만 3천건으로 그리고 1990년은 약 3만 9천건으로 증가하면서 結婚當 離婚率은 1960년 약 3.8퍼센트가 1990년 10.3퍼센트로 증가하고 있다. 離婚率의 增加를 놓고 學者들은 近代的 個人主義와 保守의 家族主義의 葛藤現象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徐文姬의 “離婚과 再婚에 미치는 社會人口學的 要因”(徐文姬, 1993) 연구는 離婚率이 개인에 대한 統制가 이루어지지 않는 核家族形態에서 부부간 價値觀 差異로 비롯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價値觀의 差異로 인한 離婚은 晚婚과 自律婚에서 盛行하고, 離婚이 結婚初期에 盛行하고 있다. 따라서 離婚婦人의 약 41퍼센트가 再婚을 하고, 再婚率은 젊을 수록, 초혼기간이 짧을 수록 그리고 子女負擔이 적을 수록 높다. 이처럼 結婚의 自律化와 함께 離婚이 自律化되고, 再婚率도 증가하고 있음은 結婚意識은 물론 家族意識의 個人化를 의미한다. 즉 부부관계나 가족관계가 개인을 만족시킬 수 없을 때 關係의 斷折은 물론 가족의 破棄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왜 이혼은 불가피해지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결혼은 寄與意識 보다 期待意識이 강한 것이 아닐까? 플레처(Fletcher, 1973)는 夫婦關係가 相互配慮와 協力으로 개인의 발전과 自律性 保障 그리고 서로에게 滿足을 주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사회의 복잡성과 불안성은 結婚에도 滿足을 期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친족으로부터 고립된 核家族과 競爭社會에서 살아남기 위한 緊張感, 여성취업의 보편화에 따른 二重役割, 부부관계의 相對的 利己主義가 그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부부들은 滿足스럽지 못한 結婚을 지속하느냐 아니면 不滿스러운 결혼을 清算하느냐는 機會構造, 즉 結婚의 굴레로부터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는지와 자신의 人生을 再構造化할 代案이 있는지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2. 家族分化

産業化로 인한 생산기능의 기업화에서 취업으로 인한 가정과 일터의 분리로 가족이 함께 지내는 시간의 단축과 가족의 분화를 촉진시켜 왔다. 따라서 家族解體는 離婚이나 死別과 같은 解婚要因에 의한 것 만으로 생각할 수 없다. 가족의 본질이 共同生活에 있다면 住居와 分化는 扶養關係의 斷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일종의 家族解體가 아닐 수 없다. 특히 都市據點 産業化는 젊은 층의 離農으로 농촌가족을 分化를 촉진시켜 農村家族의 老齡化와 扶養瓦解를 가속화 시켰다.

家族分化는 農村 뿐만 아니라 都市에서도 빈번했지만 向都離農이 특징적이다. 1960년 한국의 총 인구중 농촌인구는 72퍼센트였고, 14세 미만은 44퍼센트, 65세 이상은 3.9퍼센트로 扶養比가 89수준에 달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1990은 농촌인구가 26퍼센트로 14세 미만은 24퍼센트, 65세 이상은 9.1퍼센트로 扶養比는 48수준으로 감소되었다. 家族의 世代構成은 1960년에 1世代 構成이 6.7퍼센트, 3世代 以上은 32.3퍼센트 였으나 1991년에 1世代 構成은 30.6퍼센트(도시:21.7%), 3世代 以上은 15.4퍼센트(도시:9.8%)로 도시 보다 훨씬 높다. 家口主의 平均年齡은 농촌이 50세(도시:42세)에 달하고, 女性 家口主는 약 17퍼센트(도시:14%) 이다(孔世權 外 1992).

農村社會의 人口現象이 家族分化의 斷面이라면 家族間 交流狀態는 어떠할까? 최근 농촌가족의 일부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경우 分居家族이 本來家族의 訪問은 年평균 16회에 불과하다. 가족간 정기적 經濟支援은 분거가족이 본래가족을 支援하는 경우가 4퍼센트에 불과한 반면 本來家族이 分居家族을 支援하는 경우는 7퍼센트 수준으로 농촌가족이 도시가족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은 농촌가족이 대개 父母로 구성되고, 분거된 도시가족은 子女로 구성되어 자녀의 부모에 대한 지원보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지원이 많음을 엿볼 수 있다. 부모

자식간 分居樣相은 최근에 이를 수록 보편화 되고 있다. 結婚한 婦人의 媿父母와의 同居率은 1960년 이전 結婚코호트에서 82퍼센트 였고, 이 중 男便이 長男인 경우는 92퍼센트였다. 그러나 1980년 이후 結婚코호트에서는 동거율이 31퍼센트로 감소했고, 男便이 長男인 경우는 47퍼센트이다. 父母子息間 동거는 長男이 次男보다 다소 높지만 최근에 이를 수록 감소 추세로 傳統規範과 관계없이 교육이나 취업 등 社會的 理由(38%)와 동거의 불편 등 個人的 理由(32%)로 증가하고 있다(金敏子 外, 1991).

여기서 우리는 산업화의 象徴的 이데올로기를 物質主義와 個人主義로 생각한다면 이는 전통적 人間中心의 家族主義와 對立理念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은 傳統家族이 自給自足 形態로 “우리”를 강조해 왔던 반면 現代家族은 個人中心의 分業形態에서 “나”만을 강조하는 점에서도 엇볼 수 있다. 個人役割로 生活自立이 가능해지면서 가족에 대한 依存減少는 개인주의 의식과 함께 家族分化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국 家族分化는 世代分化를 뜻하며, 世代分化는 가족의 連繫性 斷折 및 扶養體系 瓦解로 이어져 家族解體로 歸結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족해체는 부부간 해혼과 같은 구조적 측면만으로 생각할 수 없다. 가족분화로 인한 機能的 生活自立이 어렵거나, 精神的 孤立과 疏外를 느낀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3. 家庭破壞

가족의 변화가 社會的 要因에 의한 점이 支配的이라면 家庭破壞와 社會病理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社會病理는 社會秩序의 威脅, 社會體制의 脫線(deviant behavior), 또는 反社會的 要件으로 治療 내지 改善을 요하는 점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가정과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병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 家庭破壞와 관련된 社會病理는 먼저

倫理意識 崩壞를 들 수 있다. 倫理意識은 人間價値의 意識을 말한다. 가족은 결혼과 성, 임신, 출산 및 양육 등 일련의 再生産過程을 연결고리로 한다. 그러나 性文化의 開放으로 性을 快樂의 道具로 삼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인간의 再生産 秩序의 紊亂이 주요 사회문제로 波及되고 있다. 結婚의 範疇를 넘어선 婚前 및 婚外の 性은 性病(AIDS 등)의 蔓延과 妊娠中絶의 盛行, 未婚母 發生 및 子女遺棄 등 人命을 輕視하는 풍조가 인간의 존엄성마저 弱化시키고 있다.

최근의 조사결과는 未婚男性 勤勞者의 78퍼센트, 未婚男子 대학생의 36퍼센트가 婚前 性經驗을 갖고, 性關係는 근로자의 경우 80퍼센트가, 대학생의 경우는 74퍼센트가 淪落女性과의 관계였다(林鍾權 外 1994). 이와는 달리 中學校 3학년 男學生의 6퍼센트, 또 高等學校 3학년 男學生의 15퍼센트가 婚前 性經驗率을 나타내고 있음은 婚前 性行爲에 대한 주요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結婚과 性, 出産 그리고 養育 등을 構造化 한 틀이 家族制度라고 생각할 때 婚前·婚外の 性은 反家族的 要因이 아닐 수 없다.

男女間의 性에서 婚内の 性을 부부간 사랑과 평등 그리고 재생산을 위한 것으로 본다면 婚外の 性은 단순한 性的 慾望 즉 “에로스”에 의한 것으로, 이는 바로 性의 二重性이다. 性의 二重性은 快樂과 再生産을 달리 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性倫理나 性道德은 性이 재생산 질서가 유지될 때만 倫理的이고, 道德的일 수 있지만 이러한 점은 이중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랑이 전제된 結婚만이 道德的이고, 婚內 性만이 倫理的일 때 사랑이 식어진 結婚은 非道德的이고, 그 기간의 性은 모두가 非倫理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性의 微妙性은 性問題에도 微妙性이 뒤따른다. 어느 사회나 성문제는 대개 倫理나 道德에 의존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倫理나 道德은 拘束力을 지니기 보다 良心에 호소하면서 社會的, 煽情的 霧圍氣 統制나

不法 性行爲 禁止 등에서 주축을 이룰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性的 開放은 性倫理의 失蹤을 의미하며, 婚外 性은 未婚層의 婚前 性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物質主義와 個人主義 및 享樂文化에서 煽情效果를 이용한 廣告, 性을 매개로 한 商業 그리고 煽情的 大衆媒體의 氾濫에서 賣淫行爲는 뒤따를 수 밖에 없고, 靑少年의 性問題는 예외일 수 없다. 靑少年 性문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건을 내포한다. 첫째는 婚前役割의 다양화와 結婚年齡의 상승에 따른 性露出期間(sexual exposure period)의 延長, 둘째는 性教育의 不在와 異性交際의 自律化, 셋째는 性的 開放과 性産業의 氾濫(음란잡지, 영상매체, 숙박시설 및 매춘시장 등)에 따른 煽情的 雰圍氣라 하겠다.

그렇다면 性的 自律이 個人과 家族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부부 관계를 떠난 婚前 및 婚外 性은 성병의 만연과 임신중절율의 증가, 미혼모 발생, 자녀유기 및 이혼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家族價値는 물론 인간의 尊嚴性 마저 轉落시키고 있다. 최근 婚外 性으로 인한 性病은 婚前 性 經驗者의 약 22퍼센트(林鐘權 外, 1994)를 차지하고, 婚前妊娠의 임신중절율은 약 88퍼센트(孔世權 外, 1992)에 달하고 있다. 또 婚前妊娠의 出産은 대개 未婚母로 남겨져 子女遺棄가 늘어나 전체 入養兒의 86퍼센트가 婚前出産(保健社會部, 1994)에 의한 것으로 推定된다. 기혼부부의 婚外 性은 離婚으로 이어져 離婚事由중 配偶者 不貞(23%)이 전체 이혼건수의 약 1/4(徐文姬, 1993)에 접근하고 있다. 이처럼 結婚範疇를 넘어선 婚前 및 婚外의 性은 그 결과가 再生産 秩序와 家族價値의 혼란은 물론 인간의 尊嚴性을 喪失케 하는 社會病理로 작용한다.

家庭破壞는 社會病理 뿐만 아니라 각종 社會的 要因에 의한 死亡과 不具도 家族缺損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 死亡과 不具에 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은 어렵지만 이러한 樣相은 死亡 및 死因統計를 통해 類推될 수 있다. 1990년 統計廳이 발표한 死亡者는 25萬 5千件이다.

이들 死亡者의 死亡時 平均年齡은 56.8歲이며, 男子는 52.4歲, 女子는 67.1歲였다. 또 전체 死亡者중 20-59歲에 死亡한 경우는 34퍼센트이며, 性別로 男子는 43퍼센트, 女子는 23퍼센트이다. 여기서 우리는 男子의 경우 약 1/2이 60歲 以前에 死亡하고 있으며, 20-59歲의 既婚層에서 每年 약 1/3이 死別로 인한 解婚이 增加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統計廳, 1990 및 1993).

死亡原因 역시 최근에 이를 수록 壽命延長과 함께 疾病構造의 變化로 退行性 疾患으로 인한 死亡이 증가하고 있지만 男子은 30-40代에서 不意의 事故(주로 交通事故 및 산업사고)나 惡性新生物(癌)로 인한 사망이 主種을 이루고, 그 결과는 意外性 偏母家庭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交通事故는 每年 약 26萬件을 헤아리고 이 중 死亡者는 약 1萬 3千件, 負傷者는 약 33萬件을 上廻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다. 産業 및 災害로 인한 不意의 中毒과 溺死 및 自殺 등을 합하면 每年 事故死는 3萬件을 上廻하고, 負傷者는 10萬件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死亡은 약 3/4이 男子이고, 이들이 30-40代에 集約되어 있음은 그 累積現象이 엄청난 家族問題이며, 또 家族缺損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처럼 家庭破壞는 個人의 逸脫과 非行, 또는 社會的 要因에 의한 것으로 그 結果가 家族問題이고, 그 현상은 社會病理인 것이다.

4. 個人主義

産業化와 함께 가족과 사회는 有機性이 강조된다. 傳統家族이 그들만의 독립된 생활을 영위했다면 現代家族은 社會와의 有機的인 관계로 생활이 가능케 되었다. 가족과 사회와 유기성의 강조는 가정경제 뿐만이 아니라 가족가치 및 개인역할도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변할 수 밖에 없음을 뜻한다. 사회가 변하면서 가족이 변하고, 개인역할도

달라지는 가운데 일부층은 현대가족을 危機로 보는 見解도 있다. 이는 獨身率 및 離婚率의 增加, 靑少年 非行 및 老人層의 孤立과 疏外 등에 기초를 둔다(전병재, 1994). 따지고 보면 家族問題의 根源은 개인역할의 다양화에 따른 個人主義 意識이 共同體 意識을 弱화시킨데 기인한다. 결국 家族보다 個人을 중시하며, 가족이 돌보아야 할 對象을 돌볼 수 없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개인만을 생각하는 個人主義 意識은 왜 나타나고 있을까? 唯物論的 立場은 人類의 궁극적 결정을 生産과 再生産에 의한 것으로 본다. 生産은 인간이 生存하는데 필요한 生存手段의 造成을, 再生産은 種의 繁殖을 의미한다. 생산과 재생산은 전통가족이 모두 共有했다. 그러나 근대가족은 생산기능을 기업이 전담하고, 가족은 재생산 기능만을 감당한다. 가정과 생산의 분리는 그 자체로 한정되지 않는다. 生産追求를 위한 就業이 役割分化로 家族分化를 부추겼다. 그 결과가 再生産의 調節과 個人主義 意識을 고취시켰다. 따라서 전통가족이 生産과 消費를 共有하면서 서로를 소중히 여겼다면 현대가족은 개인중심의 취업형태로 친족과 이웃을 멀리하고, 가족도 떨어져 살면서 서로를 귀찮은 存在로 여기는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競爭相對가 되지 않는 가장 가까운 친구를 夫婦로, 부부관계를 友愛關係(companionship)로 지칭한다. 그러나 부부간 友愛는 教育水準 向上, 就業率 增加 및 核家族化에서 平等이 基本要件이며, 그러한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때 葛藤도 피할 수 없다. 부부관계의 平等化는 家族의 個人化(personalization of the family)를 뜻하며, 가족의 個人化는 가족생활이 合意와 協力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근대가족은 가족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관심을 갖게된다. 즉 개인을 우선하는 가족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가족을 우선하는 개인이어야 하는 점이다.

실로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가족이 어떻게 維持되어야 하느냐는 점은 주요 관심이 아닐 수 없다. 부모에 대한 恭敬意識이 약화되고, 자녀의 養育을 忌避하는 것도 個人主義의 증거다. 부부간도 打算과 條件만 앞세우며, 父母役割을 회피하려는 것도 個人主義 意識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家庭을 安息處로 그리고 社會化의 産室로 생각한다. 가정이 체구실을 못하면서 울타리가 무너질 때 사회의 安定은 期待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가족에 대한 認識이 새로워져야 하고, 무엇이 問題인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거나 자신의 病을 헤아리지 못할 때 家庭問題도 인식하기 어렵다. 우리의 內房文化(안방문화)가 안방에서 자신만을 생각하는 家父長的 權威(멋대로의 버릇)가 社會의 公共秩序를 해치는 社會病理로 나타나고 있다면 個人主義는 그릇된 家族主義의 産物일 수 있다.

第3章 概念定立

第1節 家族缺損의 概念

家族制度는 인간의 存續과 生活을 構造化하기 위한 일종의 社會制度로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성을 지닌다. 모든 生物이 각기 나름대로 種族維持 및 生活樣式(life style)을 달리하듯 이러한 점은 인간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다. 인간은 결혼을 통해 부부관계를 맺고,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서로를 도우며 依存하는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血緣中心의 集團을 家族으로, 이들의 生活準據를 家庭으로 삼는다. 즉 家族制度는 婚姻制度, 相續制度, 分嫁制度, 養子制度 및 家系繼承 등 가족의 형성과 유지에 관한 점을 기초로 한다. 말하자면 家族制度는 家族生活을 構造化하기 위한 原初的 制度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는 대부분의 인간이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普遍性이고, 둘째는 社會制度가 家族機能을 대신할 수 없는 特有性이며, 셋째는 가족이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多機能性이다.

그러나 人間이 家族制度를 만들고, 그러한 틀에 安住하면서 주요 관심은 成員間의 葛藤이다. 家族葛藤은 가족성원이 다양한 階層으로 구성될 수 밖에 없는 점에서 이들간 權力, 條件 및 意識 등의 相對的 차이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러한 葛藤은 家族中心의 生活에서 보다 個人中心의 生活에서 표면화될 수 있다. 傳統家族이 家父長制度를 유지하면서 가족갈등을 制度的 側面으로 統制해 왔다면 現代家族은 個人役割의 多樣化와 함께 가족의 統制에서 벗어나면서 나타나는 現象이다. 말하자면 가족의 共同生活을 성원이 같은 일을 해서 함께 사는

役割協力에 의해서 보다 다른 일을 하면서 같이 사는 役割補完으로 가능케 되면서 個人的 發展과 權利 및 自律의 주장을 家族이 包容할 수 없거나, 充足시켜주지 못할 때 葛藤은 深化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산업화와 함께 個人役割의 다양화는 개인들이 家族보다 個人을 우선하는 의식을 갖게 했다. 그러나 가족의 本質이 개인의 成長과 發展 그리고 福祉 등을 共同努力으로 추구하려는데 있다면 共同體內에서 個人主義는 對立關係를 이룬다. 西歐社會가 개인을 尊重하는 個人主義의 家族制度를 발전시켜 왔다면, 東洋社會는 家族을 重視하는 共同體的 家族制度를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文化的 特殊性은 이제 通信技術의 발달과 地理的 移動의 頻繁으로 더 이상 특정 지역의 專有物 만으로 남게 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한국의 경우도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敬老孝親 思想의 退潮, 家父長的 權威主義의 弱화 그리고 個人主義的 價値觀의 澎湃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家族은 制度만으로 묶여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機能과 役割 그리고 價値를 전제로 이루어짐이 분명하다. 즉 生計維持를 위한 生産活動, 世代連繫를 위한 子女出産, 共同生活을 위한 扶養關係 그리고 社會化를 위한 子女教育 및 家族支援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생활이 영위되고, 유지된다. 또 共同生活은 성원간의 合意와, 서로를 위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말하자면 家族이 왜 필요한 것이고, 성원간에 어떠한 관계를 이루며, 각자는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關係意識, 役割意識 및 責任意識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가족의 共同生活은 그 機能과 役割 및 價値가 각기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틀로 묶여져 均衡과 調和를 이룰 때 생활도 원만해 질 수 있다.

가족생활은 力動性이 전제된다. 가족의 변화는 그 자체에 의한 변화와 사회와의 관계에 의한 변화 등 複合性을 지닌다. 家族變化에 대

한 파슨스(Parsons, 1964)의 命題는 산업화와 함께 가족기능의 사회화에서 家族福祉의 중요성이 減少되고, 子女養育, 社會化 및 情緒支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親族集團의 崩壞와 함께 核家族 形態의 普遍化, 또 女性役割이 가정내에서 가정밖으로 擴大된 점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점은 가족생활이 또 다른 틀로 構築되지 않고는 維持되기가 어려움을 뜻한다. 그것은 家族의 변화가 外形만이 아닌 그 機能과 役割 및 價値 등을 포함하면서 이제까지의 制度로 包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家族缺損은 缺損이 象徴的 의미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變形(構造變化 내지 解體)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독립된 생활의 構造·機能的 側面(生活의 自立與否)을 의미하는지는 論爭의 여지가 있다.

1. 家族缺損의 定義

일반적으로 缺損이란 용어의 語意는 缺陷이 있거나 채워지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缺損家族은 偏父家族, 偏母家族 및 부모가 모두 없는 未婚家族 등으로 지칭하고, 零細家族은 생활자립이 어려운 가족으로 불리운다. 이러한 점에서 缺損家族을 構造的 側面的 解婚狀態로 간주한다면 零細家族은 機能的 側面的 不栓狀態일 수 있다. 어떠한 用語이던 客觀的 合意만 이루어 졌다면 문제시 할 필요는 없지만 缺損家族을 夫婦간의 離別과 같은 특정 定型이 깨어진 상태(broken family)만으로 지칭하는 것은 가족의 本質上 制限性을 지닌다. 가족은 構造, 機能 및 價値 등을 기초로 共同生活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즉 結婚을 통해 家族을 이루고, 子女를 낳아 키우면서 成원간의 協力으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면서 삶의 가치를 창출하려 한다.

이러한 가족의 獨立性 내지 特殊性은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家族이 構造, 機能 및 價値를 전제로 獨立된 生活을 영위한다면 個人은 肉體와 意識 및 役割을 기초로 독자적 행동을 영위한다. 이처럼 個

이와 같은 病因論은 가족의 경우에서도 類似性을 생각할 수 있다. 가족이 개인의 欲求를 共同努力으로 充足시키면서 獨立된 生活를 영위하기 위한 共同體라면 이러한 단위는 일정한 구조와 기능 및 역할 그리고 가치관을 필수로 한다. 즉 인간이 부모로부터 태어나 부모의 保護아래 成長하고, 成長後는 生活의 自立과 結婚, 자녀의 出産과 養育, 자녀의 結婚과 分嫁, 그리고 配偶者의 死亡과 나머지 자신의 死亡과 함께 家族이 解體되듯 개인과 가족은 共生關係를 이루면서 生活週期(life cycle)를 같이 한다. 따라서 家族은 個人의 協力없이 存立될 수 없고, 個人은 家族의 도움없이 살아갈 수 없다. 말하자면 個人은 家族에 의해서, 家族과 더불어 사는 生活로, 또 家族은 個人을 위해, 個人과 함께 하는 生活로 點綴된다. 따라서 家族은 구성원인 個人의 肉體的 疾病이나 不具, 精神的 葛藤이나 異常, 社會的 逸脫이나 非行, 그리고 事故나 死亡 등이 가족생활에 負擔은 물론 缺損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病因論은 가족의 경우에서도 類似性을 생각할 수 있다. 가족이 개인의 欲求를 共同努力으로 充足시키면서 獨立된 生活를 영위하기 위한 共同體라면 이러한 단위는 일정한 구조와 기능 및 역할 그리고 가치관을 필수로 한다. 즉 인간이 부모로부터 태어나 부모의 保護아래 成長하고, 成長後는 生活의 自立과 結婚, 자녀의 出産과 養育, 자녀의 結婚과 分嫁, 그리고 配偶者의 死亡과 나머지 자신의 死亡과 함께 家族이 解體되듯 개인과 가족은 共生關係를 이루면서 生活週期(life cycle)를 같이 한다. 따라서 家族은 個人의 協力없이 存立될 수 없고, 個人은 家族의 도움없이 살아갈 수 없다. 말하자면 個人은 家族에 의해서, 家族과 더불어 사는 生活로, 또 家族은 個人을 위해, 個人과 함께 하는 生活로 點綴된다. 따라서 家族은 구성원인 個人의 肉體的 疾病이나 不具, 精神的 葛藤이나 異常, 社會的 逸脫이나 非行, 그리고 事故나 死亡 등이 가족생활에 負擔은 물론 缺損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家族缺損은 家族으로서 갖추어야 할 要件未備, 機能喪失, 그리고 意識缺如 등을 뜻한다. 즉 配偶者 또는 扶養者의 不具나 死亡으로 독립된 생활이 어려운 構造的 缺損, 성원간의 協力이 이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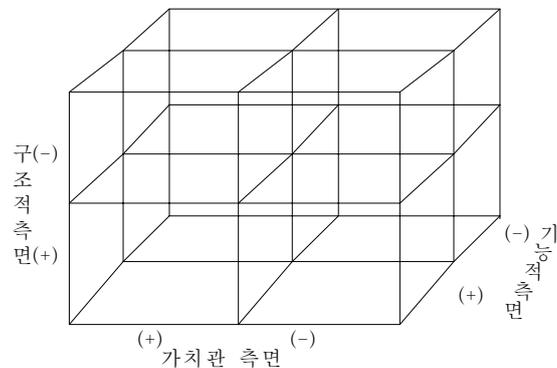
지지 않는 役割不全 그리고 가족간 葛藤과 對立으로 共同生活이 어려운 價値乖離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家族은 실제 어떤 家族이 正常이고, 어떤 家族이 缺損인지 구분에 모호한 경우가 많다. 家族缺損의 모호성은 가족이 개인의 집단이라는 複合性 내지 多樣性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個人的 健康과 疾病, 가족의 正常과 缺損이라는 相對的 概念은 일정한 조건이 전제되지 않고는 二分化에 모호성을 피할 수 없다.

健康과 疾病, 正常과 缺損의 二分法的 論理는 질병과 결손은 治療나 補正으로 정상회복이 가능할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다. 여기서 疾病과 缺損을 결부시켜 논의하려는 것은 疾病概念을 援用하여 缺損概念을 定立해 보려는데 있다. 즉 개인의 肉體的 側面을 가족의 構造的 측면으로, 개인의 精神的 側面을 가족의 價値觀 側面으로 그리고 개인의 社會的 側面을 가족의 機能的 側面으로 간주하면서 가족결손이 어떠한 경우인지를 규정해 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家族缺損의 定義는 구조, 기능 및 가치관을 전제로 한다. 즉 가족단위에서 부부간 解婚與否 및 성원의 不具有無, 성원간 협력에 의한 獨立된 生活與否 그리고 성원간 葛藤과 對立으로 共同生活의 支障有無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가족 共同體는 構造, 機能 및 價値의 一體性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瓦解나 解體도 불가피해 진다. 가족의 構造, 機能 및 價値의 複合關係는 [그림 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이 세가지 條件이 모두 正常(여기서 正常이란 일반적으로 期待되는 肯定的 狀態를 뜻함)인 경우는 正常家族으로, 이 세가지 條件중 한가지 또는 두가지가 缺損인 경우는 部分缺損으로, 그리고 이 세가지 條件이 모두 결손인 경우는 完全缺損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족의 缺損類型別 特性은 <表 3-1>과 같다. 正常家族은 일반적으로 期待되는 構造, 機能 및 價

值를 갖춘 家族을 말한다. 즉 부부와 자녀 또는 친족으로 構成되고, 성원간의 協力으로 經濟的 自立을 영위하며, 자녀의 養育과 教育 그리고 扶養을 자체적으로 감당하면서 和睦하고 安定된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部分缺損은 構造, 機能 및 價値중 어느 한가지 條件(소위 편부모 가족, 영세가족 또는 갈등가족 등)이나, 두가지 條件(소위 영세 갈등가족, 편부모 갈등가족 또는 편부모 영세가족 등)의 缺陷을 갖는 家族을 뜻하며, 完全缺損은 이 세가지 조건이 모두 缺陷인 狀態(소위 파탄가족)의 가족을 의미한다.

그러나 가족에 관한 有用性 내지 그 자체에 대한 價値觀은 缺損概念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킨다. 최근 부부가족이 “安息인가?, 아니면 監獄인가?”에 대한 論爭은 가족이 愛情과 親密 그리고 安定을 제공하는 대신 束縛과 差別 그리고 榨取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二重構造에 대한 相反된 觀點(Parsons, 1955; Goode, 1963; Hunt and Hunt, 1974; Smith, 1975)이다. 말하자면 가족이 個人的 要求를 共同努力으로 해결



註: 여기서 構造的 側面の +는 夫婦同居, -는 夫婦解婚을, 機能的 側面の +는 生活獨立, -는 生活依存을, 그리고 價値觀 側面の +는 家族協力, -는 家族葛藤을 의미함.

[그림 3-1] 家族缺損의 構造, 機能 및 價値의 複合關係

<表 3-1> 家族의 構造, 機能 및 價値의 類型別 特性

안정성	가족형태	구조적	기능적	가치관
1	정상가족	+	+	+
2	갈등가족	+	+	-
3	영세가족	+	-	+
4	영세갈등가족	+	-	-
5	편부모정상가족	-	+	+
6	편부모갈등가족	-	+	-
7	편부모영세가족	-	-	+
8	완전결혼가족	-	-	-

註: 여기서 1은 典型的 安定家族을, 2는 家庭不和가 지속되는 葛藤家族을, 3은 生活의 獨立이 어려운 零細家族을, 4는 生活의 獨立이 어렵고, 家庭不和가 지속되는 零細 葛藤家族을, 5는 偏父母狀態의 正常家族을, 6은 獨立된 生活을 하는 偏父母 葛藤家族을, 7은 家族關係가 원만한 偏父母 零細家族을, 그리고 8은 構造, 機能 및 價値觀면에서 完全缺損 家族을 의미함.

하러는데 목적이 있다면 산업화에 따른 機能分化는 이러한 점을 滿足 시켜주지 못하거나 價値表現에 기반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批判이다. 이러한 점은 離婚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不幸한 結婚의 解決로 離婚이 받아들여 지면서 偏父母나 獨身 등 缺損家族이 나타나고, 幸福을 전제로 했던 結婚이 離婚보다 더 不幸하다면 이는 결혼 당사자는 물론 그들 가족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 家族病理가 아닐 수 없다.

2. 家族缺損의 力動性

缺損은 正常의 相對的 概念이다. 正常은 특정 個體나 事物이 갖추어야 할 要件의 具備를, 그리고 缺損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점에서 正常家族은 생활에 불편이 없고, 成員의 協力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각자의 일에 아무런 支障을 주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家族이 社會와의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은 構成員 각자에 의해서, 또 社會的 條件에 의해서 可變性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가족 구성원의 특성과 생활주기의 단계에 따라서, 또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가족생활은 정상일 수도 있고, 비정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어떠한 가족도 일정한 狀態만을 維持할 수 없듯이 가족생활은 正常과 缺損이 反復되어지는 가운데 유지된다. 따라서 家族缺損은 특정 상황에서 家族問題의 結果的 現象일 수 있다. 즉 구조의 결합, 역할의 상실 및 가치의 혼란 등으로 關係의 不調和로 인한 機能의 障礙가 그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家族問題는 成원간의 關係를 기초로 하는 微視的 接近과 사회와의 關係를 기초로 하는 巨視的 接近으로 구분된다. 이처럼 가족문제가 關係에 의해서 나타남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性格을 달리할 수 있다. 전통가족이 가족중심의 생활로 가족문제가 가족관계에서 主種을 이루었다면, 근대가족은 개인중심의 생활로 사회와의 關係에 의한 것이 主種을 이룬다.

家族問題가 社會와의 關係에서 主種을 이루면서 이를 위한 해결도 가족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가족문제는 이제 私의 問題가 아니라 일종의 社會問題로 간주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구조가 분업화, 기계화 및 전문화되면서 가족의 구조, 기능 및 가치도 변할 수 밖에 없음은 가족생활이 또 다른 틀에 의해서 再調整되어야 함을 뜻한다. 이는 개인역할의 다양화로 가족의 統制力이 약화되면서 核家族化 현상과 家族解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고 가족의 분화와 응집력 약화를 결손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가족이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고, 독자적 생활을 기본요건으로 한다면 가족결손은 해혼이나, 독자적 생활이 어려운 경우로 간주할 수 있다.

家族의 力動性을 고려하면 缺損도 특정 시점에서의 斷片的 現象일 수 있다. 어떠한 가족도 正常만으로 지속될 수 없다면 正常에는 缺損의 危險이 排除될 수 없고, 缺損은 그러한 狀態만으로 지속될 수 없

다. 이러한 점에서 정상가족은 늘 정상유지를 위한 노력과 결손가족은 정상회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 가족생활일 수 있다. 말하자면 인간이 일정한 수명을 누려야 하듯 어느 가족도 영속적일 수 없음은 정상과 缺損이 反復되는 가운데 생활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家族의 力動性은 이를 구성하는 個人的 生活週期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인간이 結婚을 통해 家族을 이루고, 夫婦간의 役割補完으로 생활을 영위한다면 離婚이나 死別로 인한 解婚은 夫婦의 역할보완이 기대될 수 없는 機能障敳가 뒤따른다. 이러한 점이 構造的 缺損이 機能的 缺損으로 이어지는 實例일 수 있다.

가족의 缺損與否는 가족의 共同生活에서 그 구조나 기능 및 가치의 正의 關係냐? 아니면 否의 關係냐? 하는 점에서 論議될 수 있다. 개인의 健康과 疾病도 어떠한 상태가 정상이고, 어떠한 상태가 질병인지 모호성이 뒤따르듯 가족의 정상과 결손도 이러한 점은 다를 바 없다. 다만 개인의 건강과 질병에서 질병은 치료를 위한 점에 초점이 모아지듯 가족의 정상과 결손에서도 결손은 보호 내지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가족의 力動性 내지 複合性은 결손개념을 보다 모호하게 한다. 따라서 家族缺損에 관한 理論的 論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산업화와 함께 人間의 삶의 質을 논의하면서 삶 자체가 家庭을 準據로, 家族의 協力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家族缺損에 대한 論議도 多角的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현대가족은 어떠한 모습으로 存在하고 있을까? 가족은 대개 夫婦나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集團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夫婦와 자녀중심은 가족의 再生産期 形態에 불과하다. 그 후는 자녀의 성장과 함께 扶養關係에 따라서 再調整 된다. 가족의 변화는 結婚과 解婚, 出生과 死亡, 入養과 分家, 그리고 分居와 同居 등 社會·人口學的 요인과 複合的 關係를 이룬다. 가족의 변화에서 주목되는 점은 자녀수

의 縮小와 개인역할의 多樣化로 인한 가족분화이다. 가족분화는 核家族化로 지칭되는 경우도 있다. 가족형태는 초기의 學者들이 주장하던 性關係 및 父母關係를 기초로 한 肉體的, 精神的 그리고 社會的 依存性(Linton, 1949)을 기초로 한 概念과 다르다. 현대의 核家族은 性關係 및 父母關係에서 보다 役割關係로 調整되는 경우가 많다. 젊은 층이 부부중심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裏面에 노인층은 獨身이 나타나고, 취학이나 취업에 따른 未婚家口나 解婚으로 인한 偏父母 家族도 증가하고 있다.

머독(Murdock, 1968)은 250개 사회의 比較研究에서 核家族을 “인간의 보편적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이는 하나의 자율단위로 형성할 수도 있고, 또는 더 큰 친족집단에 포함할 수도 있다고 했다. 가족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건 그것이 문제일 수 없다. 가족의 본질이 독립된 생활과 그러한 생활로 만족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드 보스(De Vos, 1989)는 현대가족이 더 이상 개인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거나, 個人的 價値表現에 文化의 基盤이 되지 못하고, 또 부모들의 個人主義가 가족의 有用性 마저 弱化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가족은 再生産에서 보다 生産追求를 위한 점에서 급속한 變化가 이루어지면서 共同體 意識의 弱化 및 扶養機能의 瓦解가 家族解體를 조장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여기서 우리의 關心은 가족이 과연 必要에 의해서 社會制度로 構造化 한 것이라면 機能調整과 價値定立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다. 家族機能의 分化와 함께 개인들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家族形態의 多樣化에서 사회의 일각에서는 가족을 사회조직으로 代置시키기 위한 代案的 形態가 摸索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러한 勢力은 自我實現, 性的 自由, 女性解放, 社會主義的 次元에서 많다. 이러한 점은 분명히 再生産過程을 통해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社會化 過程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그 힘은 意外로 강할 수 있다.

第2節 用語定義 및 研究의 制限點

1. 用語의 定義

본 研究에서 관련 用語는 다음과 같은 점을 기초로 했다.

1) 家族: 家族은 觀點에 따라서 範圍를 달리한다. 그러나 본 연구와 關聯調查에서 家族은 가족원이 생각하는 血緣中心의 모든 對象을 가족으로 간주하였고, 이는 같이 사는 同居의 경우와 떨어져 사는 分居의 경우로 구분했다.

2) 家口: 家口는 血緣을 고려치 않는 同居概念, 즉 宿食을 같이 하는 경우에 의거했다. 따라서 가구는 한 가족이 한 가구를 이루는 경우도 있고, 한 가족이 비혈연과 동거하는 경우, 또는 가족의 일부가 떨어져 사는 경우도 있다.

3) 同居 및 分居: 同居는 1개월을 基準으로 과거 1개월 이상을 같이 살아왔거나 앞으로 1개월 이상을 같이 살 계획인 경우로, 分居는 同居와 반대로 과거 1개월 이상 떨어져 산 경우와 또 앞으로 1개월 이상 떨어져 살 계획인 경우로 간주했다.

4) 缺損家族: 缺損家族은 일반적으로 結婚의 解體로 인한 偏父나 偏母, 또는 父母의 死亡이나 遺棄로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경우를, 그리고 생활의 자립이 어려운 경우는 零細家口로 지칭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이 結婚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러한 가족은 生活의 自立을 기본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解婚의 경우는 構造的 缺損으로, 생활의 의존은 機能的 缺損으로 간주하면서 이 두 變數의 複合關係를 기초로 完全缺損(夫婦解婚과 生活依存), 部分缺損(夫婦解婚과 生活自立 및 有配偶 및 生活依存) 그리고 正常家族(有配偶 生活自立) 등으로 操作的 定義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기서 구조적 결손, 즉 해혼은 실제 가족구성에서 다양성을 내포한다. 配偶者와의 解婚은 偏父母와 未

婚子女로 한 가구를 이루는 경우, 解婚後 獨身으로 살거나 기타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 미혼으로 독립된 가구를 이루는 경우, 노년기에서 배우자와 이별후 독신이나 기타 미혼자녀 및 미혼 손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등 다양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조적 결손은 家口主의 配偶關係를 기초로 편의상 有配偶家口, 無配偶家口로 구분하고, 無配偶 家口는 偏父 또는 偏母와 未婚子女로 構成하는 경우, 父母의 死亡이나 遺棄로 인한 缺損兒童의 경우, 老年期에서 無配偶이고 미혼자녀 및 기타 가족과 사는 경우 등 정부의 福祉對象을 고려해서 구분했다.

5) 家口主: 본 연구에서 家口主는 가족의 生計를 責任지고 있거나 家口원이 家口主로 지칭하는 경우를 말한다.

6) 家族解體: 家族解體는 포괄적 意味로 사용했다. 즉 夫婦間 離婚, 配偶者의 死亡 및 家族의 遺棄로 가족중 夫婦關係를 이루는 경우가 없는 가족, 또는 家庭破綻으로 가족이 依存할 곳이 없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7) 家族分化: 家族分化는 가족의 分居, 分嫁 및 逸脫 등을 말한다. 즉 부부간 또는 부모자식간이 社會·經濟的 理由나 가정 또는 개인적 이유로 독립된 가구를 이루는 경우를 말한다.

8) 家族開發: 家族開發은 가족의 사회적 적합성 제고를 위한 가족원의 役割開發 및 生活改善 등 포괄적 의미를 내포한다. 즉 사회발전과 함께 가족생활의 能率提高, 便宜提高 및 質的 向上을 위한 構造調整(出產調節 및 分家調整), 機能分擔(사회조직과의 연계로 家族機能의 효율적 분담체제 구축, 즉 교육확대, 취업확대, 보육확대, 의료확대 및 여가선용 등), 役割開發(가사 효율화 및 능률화를 위한 성원간 협력체제 구축과 기술개발 등) 및 價値定立(공동체 의식, 윤리의식 및 우애 의식 고취)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家族共同體가 일종의 독립된 생활단위로, 獨立生活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構造의 伸縮性과 機能

의 適切性, 役割의 調和 및 價値의 合意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9) 家族福祉: 家族福祉는 가족원이 가정생활을 통해 生活의 安定과 個人의 發展 및 生活의 滿足을 누릴 수 있는 제반조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條件은 肉體的, 精神的 物質的 차원을 포괄하며, 복지여건 조성은 가족원의 자체적 노력을 원칙으로 하면서 국가나 사회가 가족을 위한 지원과 보호는 家族福祉事業인 것이다. 따라서 국가나 사회의 가족복지사업은 정상가족을 위한 생활의 질적 향상과 결손가족을 위한 생활보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0) 機能福祉: 機能福祉는 새로운 造語로서 家族은 原初的 福祉單位로 家族福祉는 가족이 자체에 의한 追求를 원칙으로, 이를 위한 機能調整 및 役割開發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家族機能의 일부를 社會가 代行하고, 또 專門化가 이루어지면서 가족은 機能調整 및 役割開發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生活이 어렵다는 점에 근거한다. 예를 들어 出產調節을 통한 적정 자녀수의 維持와 개인들의 社會參與 擴大를 위한 役割開發, 가구단위의 生活自立을 위한 役割分擔, 生活의 質的 향상을 위한 生活改善 및 가족의 共同生活을 위한 紐帶強化 등 가구단위의 獨立된 生活과 그러한 生活로 삶의 質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을 機能福祉로 간주했다.

11) 缺損福祉: 缺損福祉는 機能福祉의 對照概念으로 缺損家族이나 無依託 對象을 위해 베푸는 生活保護, 役割支援 및 情緒支援 등을 말한다. 다시 말해 자체적 獨立된 生活이 어려운 家族이나 특정 對象에게 이들의 필요한 要件을 제공함으로써 生活을 營爲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이제까지 政府가 零細家族, 偏父母 家族 또는 少年少女 世帶 등 脆弱階層에게 베풀어 온 救貧福祉 및 保護福祉가 모두 缺損福祉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12) 家族政策: 家族政策은 國家가 家族을 위해 베푸는 각종 施策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意圖的으로 가족 자체의 機能調整, 役割開發 및 價値定立 등을 유도하여 構造調整과 生活改善으로 家族缺損을 豫防하기 위한 정책이나, 또 社會的 支援을 통한 所得保障, 役割支援으로 결손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그리고 非意圖的으로 가족과 관련된 정책, 이를테면 주택정책, 교육정책, 보건정책, 고용정책 및 복지정책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家族政策은 社會政策의 下位概念에서 국가가 가족의 본질을 고려한 가족을 위한, 가족의 요구에 따른 정책으로 정의할 수 있다.

13) 機能調整: 가족은 독립된 생활을 위한 일정한 機能을 必須로 한다. 가족기능은 생존요건의 生産機能, 세대연계를 위한 再生産 機能, 사회관계를 위한 社會化 機能 및 공동생활을 위한 扶養機能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자체의 調整(예: 출산조절)이나 사회나 가족의 役割分擔을 통한 調整(맞벌이 부부, 保育事業 및 在家서비스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14) 役割開發: 役割開發은 특정 機能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각종 家族機能을 원활히 하기 위한 技術開發이나, 機能變化에 따른 役割調整 및 役割分擔 등을 의미한다. 즉 가족의 共同生活과 社會生活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知識과 技術을 제공함으로써 주어진 役割을 원활히 修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이 그것이다. 예를 들면 生活의 合理化를 위한 出産調節, 家事的 機械化 및 自動化, 婦人就業을 위한 役割開發, 夫婦間 役割調整 및 役割分擔, 役割代置로 社會的 役割支援(保育支援, 看病支援 및 家事支援)의 수용 등을 생각할 수 있다.

15) 價値定立: 家族價値는 廣範하다. 그러나 본 研究는 家族價値를 制限的 意味이긴 하지만 家族에 대한 認識과 이의 必要性 및 關係에서 責任과 義務 등 가족과 관련된 諸側面의 慣行과 認識으로 한정

다. 즉 個人에게 家族은 왜 필요한 것이고, 家族은 個人을 위해서 그리고 個人은 家族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生活規範 내지 實踐倫理가 그것이다. 이러한 점은 個人主義 意識 澎湃에서 共同體 意識 弱화에 따른 가족간 紐帶強化와 인간의 尊嚴性 意識 高취를 위한 점에서 價値定立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研究의 制限點

어떠한 社會科學 研究도 모든 要件을 만족시키기 어렵듯이 본 연구 역시 많은 制限點을 내포한다. 본 研究의 制限點은 첫째로 이제까지 가족에 관한 연구가 現象學的 측면에서 접근이 많았고, 構造·機能的 側面的 접근은 흔치 않았던 점에서 先行研究의 경험을 참고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점은 缺損家族과 이들 가족의 問題點을 論議하는데 있어서 缺損定義와 類型別 分類 및 問題點을 독자적으로 整理하는데 체계적이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즉 家族缺損을 조사하는데 缺損 類型別 문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으면 老年期の 缺損에 관한 조사항목을 구체화시켜 多角的 分析이 가능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점이다.

다음은 複合성을 내포하는 家族의 構造, 機能 및 價値는 특정 變數로 劃一化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본 연구가 理論的 틀에서 價値變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調査는 價値變數의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를 除外시킨 점이다. 또 家族의 構造·機能的 측면도 構造變數는 家族員 數나 構成形態 및 生活週期 등 多樣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夫婦關係(이를테면 解婚與否)만을 기초로 했고, 機能變數 역시 生産과 再生産, 社會化 및 扶養 등으로 다양하지만 生活自立 與否만을 기초로 한 점이다.

셋째는 본 연구가 研究接近에서 文獻考察, 調査研究 및 政策세미나

등 비교적 다양한 형태를 취하긴 했지만 研究目的을 政策開發에 초점을 두면서 특정 연구만으로 이를 連繫시키려는 했다는 점에서 調査資料의 分析內容과 政策開發은 相互 有機性을 기하기 어려웠다. 말하자면 政策開發은 다양한 研究結果를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이를 특정 研究로 包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 한가지 연구로 政策開發로 誘導하려 했던 점이다. 이러한 점은 開發된 政策骨格의 理論的 틀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政策骨格은 政策手段과 接近方法이 뒷받침 되어야 하고, 또 이는 現實性과 適切性이 前提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研究가 제시한 政策骨格은 實驗研究를 통한 檢證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批判의 여지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본 研究는 缺損實態와 家族政策의 理論的 側面 보다 行政的 측면에서 家族缺損을 어떻게 理解하고, 家族政策은 어떠한 점을 考慮해야 하는지에 대한 점에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것은 이제까지 가족연구가 理論的 측면에 集中됨으로써 政策開發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면 政策開發에 초점을 둔 研究는 理論的 뒷받침이 부족했던 結果와 다를 바 없다. 결국 政策開發은 1+1=2의 公式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구를 토대로 가능할 수 있고, 또 開發된 政策은 실제 國民에게 영향을 주기까지 복잡한 過程에서 意圖했던 점과 얼마든지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政策研究의 理論的 客觀化와 說得力은 副次研究를 통한 調査資料의 多角的 分析과 政策檢證을 통해 이루어질 課題인 것이다.

第4章 家口の 類型別 特徴

生活單位로서 家族(family)과 家口(household)는 구분된다. 家族은 혈연 공동체로, 家口는 생활공동체로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 家族이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입양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라면 家口는 가족과 그의 비혈연이 共同生活을 영위하는 집단이다. 이처럼 住居 및 生活을 기초로 가족과 가구는 그 관계에 의해서 구분된다. 따라서 한 가족은 한 가구로 구성되는 家族家口(family-household)가 있는가 하면, 血緣과 非血緣이 宿食을 같이하는 混合家口(common-household)도 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족이 떨어져 두 가구를 이루는 分居家族(separated-family)도 있고, 한 가족이 떨어져 살면서 비혈연과 같이 사는 複合家族(compound family)도 있다. 또 家族은 世代(generation)를 중심으로 夫婦家族(conjugal family)이나 核家族(nuclear family) 또는 擴大家族(extended family)으로, 結婚狀態를 중심으로 偏父母 家族(one-parent family)이나 同性愛 家族(lesbian family)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처럼 多機能의 複合關係를 이루는 家族의 分類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족이 結婚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生活의 獨立을 기본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家口主의 配偶狀態와 生活自立 與否 등 두 變數를 기초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점은 최근 家族福祉가 편부모 가정과 같은 構造的 缺損이나 생활이 어려운 영세가정과 같은 機能的 缺損을 위주로 한다는 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물론 가족이 構造, 機能 및 價値의 複合體라는 점은 본 연구에서 배우상태나 생활자립 만으로 그 특성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

나 산업화에 따른 核家族化 現象과 취학이나 취업에 따른 分居現象 그리고 이혼 및 사별에 따른 解體現象에서 가구주의 배우관계와 생활자립은 가족의 구조기능적 측면에서 주요한 의미를 내포한다고 하겠다. 즉 부부관계가 해체된 가족, 부부관계를 이루고 있는 가족 그리고 부부관계를 이루지 않은 가구가 각각 어떻게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가 그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本 章에서는 현대가족의 結婚狀態와 生活自立을 기초로 한 構造·機能的 關係를 검토코저 한다.

第1節 家口類型的 分類

원래 가족은 構造, 機能 및 價値의 複合體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족의 결손을 構造·機能的 측면에서 일부 變數만을 기초로 접근했다.

여기서 構造는 夫婦間 解婚與否에 관한 것이고, 機能은 생활의 自立與否에 관한 것이다. 말하자면 가족이 結婚을 기초로 生活의 自立을 基本要件으로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結婚의 解體는 構造的 缺損으로, 그리고 生活의 依存은 機能的 缺損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缺損家族은 아직 명확한 概念定義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偏父나 偏母 또는 靑少年 家族(세칭 少年/少女 家長 家族)을 결손가족으로 지칭하고, 解婚狀態가 아니더라도 생활자립이 어려운 경우는 零細家族으로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가족의 構造·機能的 變化는 산업화에 따른 機能의 分化가 構造의 多樣化로 이어지는 점이 일반적 추세이다. 機能의 分化는 생산기능의 企業化, 교육기능의 制度化, 복지기능의 專門化 등을 뜻하며, 構造의 多樣化는 소자녀 형성, 핵가족화 현상 그리고 생활주기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 물론 가족의 기능은 생산과 교육 및 복지만으로 한정할 수

없고, 구조는 규모나 주기만으로 지칭될 수 없다. 인간이 홀로 살 수 없기에 결혼을 통해 夫婦關係를 맺고,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서로의 협력으로 共生關係를 유지하는 것이 가족이라면 夫婦關係 維持와 生活自立은 主要變數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두 변수의 交叉關係를 보면 [그림 4-1]과 같다.

		구조적 측면		
		유배우(+)	무배우(-)	
기능적 측면	생활자립(+)	+, +(a) 72.7%	+, -(b) 14.6%	87.3%
	생활의존(-)	-, +(c) 5.9%	-, -(d) 6.8%	12.7%
		78.6%	21.4%	100.0%

[그림 4-1] 家口의 構造·機能的 關係

[그림 4-1]에서 가구의 構造的 側面은 家口主의 結婚狀態를 중심으로 한 것이며, 機能的 側面은 生活自立 與否를 기초로 한 것이다. 가구주의 結婚狀態는 부부가 동거중인 경우와 사별, 이혼 및 별거로 인한 해혼상태나 미혼상태를 의미하며, 生活自立은 가구주나 가족의 수입 또는 재산소득으로 생활하는 경우와 가구주 또는 가족의 수입이나 재산소득 외 친족이나 정부 또는 사회단체의 도움으로 생활하는 경우이다. 이 그림에서 a는 有配偶 狀態에서 生活을 自立하고 있는 경우를, b는 解婚狀態에서 生活을 自立하고 있는 경우를, c는 有配偶 狀態에서 生活을 依存하고 있는 경우를, 그리고 d는 解婚狀態에서 生活을 依存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양상을 전국을 대상으로 한 調查結果(缺損家族生活實態調查에서 夫婦간의 同居與否와 생활비 充當 形態를 기초로 함)를 적용할 때 a의 경우는 73퍼센트, b의 경우는 15

퍼센트, c의 경우는 6퍼센트 그리고 d의 경우는 7퍼센트였다. 즉, 전국적으로 가구주가 有配偶 狀態인 경우는 79퍼센트이며, 生活을 自立하는 家口는 87퍼센트이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無配偶 狀態에서 生活을 自立하고 있는 構造的 缺損家口(15%)와 有配偶 狀態에서 生活을 의존하고 있는 機能的 缺損家口(6%), 그리고 無配偶 狀態에서 生活을 의존하고 있는 構造·機能的 缺損家口(7%) 이다.

다음은 앞에서 분류한 가구중 無配偶 家口를 세분하여 生活自立 與否를 살펴본 것이다. 가구주의 配偶狀態는 有配偶와 無配偶로 대별할 수 있으며, 무배우는 解婚狀態와 未婚狀態로, 또 해혼상태는 未婚子女와의 同居與否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최근에 이를 수록 미혼가구 및 해혼가구의 증가와 해혼가구중 편부모 및 노인가구의 증가를 감안한 것이다. 이러한 분류에서 가구주가 有配偶 狀態인 경우는 전국적으로 79퍼센트를 차지하고, 無配偶 狀態인 경우는 17퍼센트, 그리고 未婚狀態인 경우는 5퍼센트 이다. 여기서 가구주가 無配偶 狀態에서 未婚子女가 있는 경우(偏父母)와 없는 경우(其他 解婚)는 각각 8퍼센트 이다. 이를 地域別로 보면 도시가구중 가구주의 無配偶 狀態는 15퍼센트(미혼자녀와 동거:8.3%, 미혼자녀와 비동거:6.2%)인 반면 농촌가구는 22퍼센트(미혼자녀 동거:8.9%, 미혼자녀 비동거:13.4%)를 차지하고, 未婚家口는 도시에서 6퍼센트인 반면 농촌에서는 2퍼센트로 대조를 이룬다.

有配偶 家口主의 生計類型을 지역별로 보면 도시가구중 生計를 自立하고 있는 경우가 3/4을 차지하고, 농촌가구중 2/3를 점유한다. 無配偶 狀態의 가구주가 生計를 의존하고 있는 構造機能的 缺損은 도시가구중 5퍼센트에 불과하지만 농촌가구에서는 10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또한 가구주가 有配偶 狀態이면서 生計를 의존하고 있는 소위 零細家口는 도시가구중 4퍼센트에 불과하지만 농촌가구에서는 10퍼센트로

두배 이상이고, 無配偶 狀態에서 生計를 自立하고 있는 경우는 도시가구중 10퍼센트, 농촌가구중 12퍼센트로 비슷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도시가구의 生活自立은 91퍼센트 수준이지만 농촌가구는 79퍼센트 수준이고, 가구주의 解婚狀態는 도시가구의 1/5, 농촌가구의 1/4에 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때 급속한 産業化·都市化에서 농촌가구의 相對的 貧困化와 解體現象이 얼마만큼 심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즉 젊은 층이 취학이나 취업을 위해 도시로 떠난 농촌에는 늙은 부모들이 남아 家族農을 경영하고 있지만 그러한 영농으로 생활자립이 어려운 경우가 그것일 수 있다. 따라서 농촌가구중 약 3/4이 배우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13퍼센트는 미혼자녀가 없는 老人家口(무배우 무자녀 가구)로 구성되고, 이들 가구중 1/2은 생활을 의존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가구의 生活 依存率은 9퍼센트에 불과하지만 농촌가구는 21퍼센트에 이르며, 농촌가구의 1/5이 의존상태에 있고, 또 1/4이 해체상태임은 농촌가구의 自生力 低下와 解體現象이 현저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家口의 構造的 缺損은 解婚狀態 만으로는 제한적 의미를 지닌다.

<表 4-1> 家口主의 配偶狀態別 生活自立 與否別 分布 (단위: %, 가구)

	유배우 가구주	무배우 가구주		미혼 가구주	전체
		미혼자녀유	미혼자녀무		
전국	78.5(13,451)	8.4(1,444)	8.3(1,416)	4.7(801)	100.0(17,112) ¹⁾
생활자립	72.7(12,439)	6.0(1,034)	4.6(781)	4.0(684)	87.3(14,938)
생활의존	5.9(1,012)	2.4(410)	3.7(635)	0.7(117)	12.7(2,174)
도시	79.9(9,659)	8.3(999)	6.2(746)	5.7(690)	100.0(12,094)
생활자립	75.7(9,159)	6.3(762)	3.7(448)	5.0(605)	90.7(10,974)
생활의존	4.1(500)	2.0(237)	2.5(298)	0.7(85)	9.3(1,120)
농촌	75.6(3,792)	8.9(445)	13.4(670)	2.2(111)	100.0(5,018)
생활자립	65.4(3,280)	5.4(272)	6.6(333)	1.6(79)	79.0(3,964)
생활의존	10.2(512)	3.4(173)	6.7(337)	0.6(32)	21.0(1,054)

註: 1) 무응답 163가구 제외.

<表 4-2> 家口類型別 生活自立與否

(단위: %)

	유배우 가구	무배우 가구		미혼 가구	전체
		미혼자녀유	미혼자녀무		
전국	(13,451)	(1,444)	(1,416)	(801)	(17,112) ¹⁾
생활자립	92.5	71.6	55.2	85.4	87.3
생활의존	7.5	28.4	44.8	14.6	12.7
도시	(9,656)	(999)	(746)	(690)	(12,094)
생활자립	94.8	76.3	60.1	87.7	90.7
생활의존	5.2	23.7	39.9	12.3	9.3
농촌	(3,792)	(445)	(670)	(111)	(5,018)
생활자립	86.5	61.1	49.7	71.2	79.0
생활의존	13.5	38.9	50.3	28.8	21.0

註: 1) 무응답 163가구 제외.

가구의 配偶狀態別 生活依存率은 무배우 가구중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에서 높고, 도시에서 보다 농촌에서 높다. 즉 가구가 有配偶 狀態에서 生活依存率은 전국적으로 8퍼센트 (소위 영세가구)에 불과하지만 無配偶 狀態에서 미혼자녀가 있는 偏父母 家口는 28퍼센트, 미혼자녀가 없는 경우(解婚家口, 老人家口 및 其他 家口)는 45퍼센트, 그리고 未婚狀態의 경우는 15퍼센트에 이른다. 이러한 양상의 地域別 差異는 有配偶 家口中 生活依存家口는 도시에서는 5퍼센트에 불과하지만 농촌에서는 14퍼센트에 이른다. 또 無配偶 狀態인 偏父母 및 少年/少女 家口의 生活依存은 도시에서 24퍼센트, 농촌에서 39퍼센트이고, 其他家口(無配偶 家口中 未婚子女가 없는 경우)의 生活依存은 도시에서 40퍼센트, 농촌에서 50퍼센트, 그리고 未婚家口의 生活依存은 도시에서 12퍼센트, 농촌에서 29퍼센트로 農村의 貧困現象이 현저하다.

第2節 家口類型別 特性

1. 家口規模

家口類型別 家口規模는 <表 4-3>과 같다. 동 표에서 전국적으로 平均 家口員數는 3.5명 수준으로 이는 도시가구에서 3.6명, 농촌가구는 3.3명이다. 평균 가구원수는 최근에 이를 수록 家族의 分化와 出産率의 低下로 축소현상이 현저하다. 1960년 평균 가구원수는 5.6명 수준이었으나 1980년은 4.6명, 1990년은 3.7명, 그리고 본 조사는 3.5명이다. 이러한 양상은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서 보다 현저하다. 1970년 도시가구는 4.9명, 농촌가구는 5.5명이었으나 1980년에는 도시가구가 4.4명, 농촌가구는 4.7명으로, 1990년은 도시, 농촌이 모두 3.7명으로 같은 수준을 유지한 이래 1994년은 도시 3.6명, 농촌 3.3명으로 농촌지역에서 축소현상이 현저함을 보여주고 있다.

<表 4-3> 最近 地域別 家口規模 變化樣相

(단위: 명)

지역	1960	1970	1980	1990	1994
전국	5.6	5.2	4.6	3.7	3.5
도시	-	4.9	4.4	3.7	3.6
농촌	-	5.5	4.7	3.7	3.3

資料: 經濟企劃院, 年度別 『人口 및 住宅센서스報告』, 1963, 1972, 1982, 1992
 韓國保健社會研究院, 『缺損家族의 生活實態調査』 結果, 1995.

家口類型別 家口規模는 유배우 가구가 3.9명인데 비해 무배우 가구 중 결손가구는 3.0명, 기타가구는 2.0명, 그리고 미혼가구는 1.4명이다. 또 무배우 가구중 기타가구의 경우는 도시지역이 2.2명인 반면 농촌지역은 1.8명으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동거가족과 분거가족을

합한 總家族規模는 유배우가구가 4.1명, 무배우 결혼가구는 3.3명, 무배우 기타가구는 2.2명, 미혼가구는 1.5명으로 家口規模 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地域別로는 유배우가구는 도시·농촌별 차이가 없으나 무배우 결혼가구는 차이가 가장 많다. 즉 도시가구는 3.2명인데 비해 농촌가구는 3.5명으로 농촌가구에서 분거가족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전국적으로 가족이 함께 살지 않고 일부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경우, 즉 分居家口率은 전체 가구중 14퍼센트에 이르며, 이는 家口類型別로 무배우 결혼가구가 18퍼센트로 가장 높고, 다음은 유배우 가구가 14퍼센트. 그리고 기타가구가 13퍼센트이다. 地域別 分居家口率은 도시(8.5%)에서 보다 농촌(26.3%)에서 높아, 농촌에서는 4가구중 1가구가 일부 가족이 떨어져 사는 실정이다. 가족의 分居樣相은 결혼가구중 약 1/3이, 기타가구중 약 1/5이 떨어져 사는 경우이다. 平均 分居家族數는 1.56명에 달하며, 이는 地域別로 도시(1.36명)에서 보다 농촌(1.71명)에서 많고, 이들의 분거는 就學 및 就業과 관련된다.

<表 4-4> 家口類型別 家口員 및 家族員 規模

(단위: 명)

	유배우 가구	무배우가구		미혼 가구	전체
		결혼가구	기타가구		
가구원수					
전국	3.85	3.02	1.99	1.41	3.51
도시	3.95	3.01	2.19	1.39	3.61
농촌	3.59	3.03	1.76	1.57	3.25
동거가족원수					
전국	3.84	3.00	1.98	1.39	3.50
도시	3.94	2.98	2.18	1.37	3.60
농촌	3.59	3.02	1.76	1.51	3.25
총가족원수 ¹⁾					
전국	4.05	3.25	2.21	1.49	3.71
도시	4.05	3.14	2.30	1.47	3.72
농촌	4.06	3.50	2.11	1.62	3.70

註: 1) 동거가족원과 분거가족원을 합한 경우임.

이러한 점에서 젊은 층의 向都離農과 農村家族의 缺損은 無關할 수 없다. 취학과 취업을 위한 인구의 도시집중은 상대적으로 農村人口의 老齡化를 촉진시켰고, 노인들로 구성되는 농촌가족은 배우자의 사별로 인한 老人獨身 내지는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게 된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무배우 가구중 결혼가구의 분거율은 30퍼센트에 달하고, 이는 유배우 가구에서도 28퍼센트, 그리고 무배우 기타가구는 20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다. 가구의 分居樣相은 취학이나 취업 등 社會的 要因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를 수록 壽命延長과 자녀의 經濟的 自立과도 관련을 가지며, 부모자식간 便宜性을 위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家口의 生計類型別로 본 分居家口率은 생활을 依存하고 있는 가구일 수록 높다. 유배우 가구중 생활을 依存하고 있는 경우는 약 24퍼센트가 가구원중 일부가 분거형태를 이루고 있는 반면, 自立하고 있는 경우는 13퍼센트에 불과하다. 이러한 양상은 무배우 기타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비슷하다.

<表 4-5> 家口類型別 分居家口率 및 分居家族員 規模

	유배우 가구	무배우 가구		미혼 가구	전체
		결혼가구	기타가구		
분거가구율(%)					
전국	13.7	18.0	13.4	5.8	13.7
도시	8.3	12.9	7.5	5.8	8.5
농촌	27.5	29.5	20.1	6.3	26.3
분거가족원(명) ¹⁾					
전국	1.56	1.43	1.68	1.81	1.56
도시	1.35	1.23	1.57	1.83	1.36
농촌	1.72	1.62	1.73	1.71	1.71

註: 1) 분거가족원이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함.

<表 4-6> 生計自立與否別 分居家口率

(단위: %)

	유배우		무배우 결혼		무배우 기타		미 혼	
	자립	의존	자립	의존	자립	의존	자립	의존
전국	12.9	23.7	16.9	20.7	15.4	11.2	5.4	8.5
도시	7.9	16.2	13.1	11.8	8.5	6.0	5.3	9.4
농촌	27.0	31.1	27.6	32.9	24.6	15.7	6.3	6.3

특히 농촌의 결혼가구중 생활을 依存하고 있는 경우는 약 1/3이 가족중 일부가 떨어져 살고 있다. 가족중 일부가 떨어져 사는 경우는 취학이나 취업 외에도 같이 살 수 없는 가정사정도 있음을 고려할 때 缺損과 分居는 보다 多角的인 分析이 要求된다.

2. 家口主 特性

家口類型別 家口主의 特性은 전체 가구중 女性이 家口主로 되어 있는 경우가 15퍼센트를 점유한다. 특히 無配偶 缺損家口(70.3%)와 其他家口(71.6%)는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가 70퍼센트를 상회하며, 未婚家口도 31퍼센트에 달한다. 이러한 양상은 대부분의 가족결혼이 편모가족 내지는 여성노인 가족이 많은데 연유한다. 家口主의 平均年齡은 유배우 가구가 46세인데 비해 결혼가구는 50세, 기타가구는 63세, 그리고 미혼가구는 30세로 다양하다. 즉 결혼가구는 가구주가 50세 이상인 경우가 49퍼센트에 달하며, 기타가구는 88퍼센트인데 비해 미혼가구는 30세 미만이 61퍼센트이다.

家口主의 教育水準은 유배우 가구에서 高等學校 이상이 60퍼센트인 반면 결혼가구는 國民學校 이하가 46퍼센트, 기타가구는 64퍼센트로 대조를 이룬다. 가구주의 日常生活 活動狀態(physical living activity)는 活動不可率은 유배우 가구중 1퍼센트에 불과하지만 무배우 기타가구는 6퍼센트, 결혼

<表 4-7> 家口類型別 家口主의 特性

(단위: %)

	유배우 가구	무배우 가구		미혼 가구	전체
		결혼가구	기타가구		
성					
남자	97.9	29.7	28.4	69.0	85.0
여자	2.1	70.3	71.6	31.0	15.0
연령					
-29	6.2	3.6	0.6	61.2	8.0
30-34	14.1	7.0	1.4	18.3	12.7
35-39	16.1	12.0	2.9	9.3	14.3
40-44	14.0	14.0	2.8	3.8	12.6
45-49	11.5	14.5	4.6	1.5	10.7
50+	38.2	48.8	87.8	6.0	41.6
평균(세)	46.0	49.5	62.7	30.2	46.9
교육수준					
국민학교 이하	20.6	46.3	64.3	5.5	23.6
중학교	18.8	26.0	18.2	13.0	19.0
고등학교	40.6	22.6	13.8	48.3	38.5
대학이상	20.0	5.0	3.7	33.2	18.9
활동여부					
활동불가	1.1	2.4	5.6	1.6	1.6
불편하나 활동가능	5.8	18.2	34.9	4.1	9.2
정상활동 가능	93.1	79.4	59.6	94.3	89.2
직업					
무직	9.1	18.5	43.8	7.5	12.7
전문·사무직	36.4	12.1	4.8	49.0	32.2
판매·서비스직	17.5	19.7	8.5	13.5	16.8
농·어업	17.9	13.9	20.0	2.7	17.0
기능직	9.7	6.3	2.1	12.2	8.9
단순노무직·기타	9.3	29.7	21.0	15.1	12.3
종교					
없음	45.1	44.0	38.6	61.0	45.2
불교	31.1	33.5	42.2	16.6	31.5
개신교	15.4	14.6	10.7	15.6	14.9
가톨릭	6.5	6.4	5.8	6.2	6.4
기타	1.9	1.6	2.6	0.6	1.9
(실수)	(13,517)	(1,449)	(1,423)	(804)	(17,193)

가구는 2퍼센트를 점유한다. 家口主의 就業樣相은 전체적으로 직업이 없는 경우가 13퍼센트이며, 家口類型別로 유배우 가구의 가구주중 9퍼센트가 직업이 없고, 무배우 결혼가구는 19퍼센트, 그리고 기타가구는 44퍼센트에 달한다. 직업을 가진 경우는 有配偶 家口主의 職種이 전문·사무직(36.4%)과 판매·서비스직(17.5%) 및 농업분야(17.9%)의 종사자가 대부분인 반면 무배우 결혼가구는 단순노무직(27.9%)과 판매·서비스직(19.7%)에서, 또 무배우 기타가구는 단순노무직(21.0%)과 농업분야(20.0%)의 종사자가 40퍼센트를 상회한다.

生計類型別 家口主의 特性은 생활을 依存하는 가구에서 女性 家口主率이 높다. 이러한 점은 가구주가 高齡, 低學力 및 無職인 것과 유관하다. 즉 가구주가 高齡일 경우 남편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고,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는 無職과 低學歷 그리고 일상생활에 불편도 높을 수 있다. 따라서 무배우 가구중 생활의존은 가구주가 女性이고 高齡과 일상생활에서 불편으로 마땅한 직업을 가질 수 없기에 생활을 依存해야 하는 경우인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무배우 기타가구에서 특징적이다. 무배우 기타가구중 생활의존가구의 가구주 연령은 평균 67세이고,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는 80퍼센트, 직업이 없고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경우는 약 60퍼센트 정도이다.

<表 4-8> 生計自立 與否別 家口主의 特性

가구주 특성	유배우		무배우결혼		무배우 기타		미혼	
	자립	의존	자립	의존	자립	의존	자립	의존
여성가구주율(%)	2.1	2.3	69.3	72.2	65.3	79.7	30.0	36.8
평균연령(세)	44.8	60.6	49.2	50.3	59.4	66.9	29.6	34.0
고교이상 교육수준(%)	62.5	32.1	29.3	23.0	20.5	10.7	81.9	78.6
생활활동 불편율(%)	4.8	31.5	15.2	33.6	24.8	59.4	2.2	26.5
직업이 없는 율(%)	6.4	41.9	14.5	28.6	29.8	61.3	3.0	33.0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가족의 構造的 缺損이 생활의 依存과 같은 機能的 缺損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무배우 가구가 유배우 가구에 비해 가구원수도 적고, 대개 女性이 家口主로서 생계를 책임지며, 高齡과 낮은 教育水準으로 구성되고, 또 직업을 갖지 않거나 직업을 가졌더라도 單純勞務職에 종사함으로써 생계자립이 어렵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다. 특히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무배우 가구가 많은 대신 도시는 미혼가구가 많은 점은 농촌을 떠난 젊은 층들이 도시에서 새로운 가구를 형성하고, 반대로 농촌에는 노부모만 남게된 점과 일치한다고 하겠다.

第3節 家口類型別 生活樣相

1. 住居形態

家口類型別 生活樣相은 몇가지 指標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자기집을 가진 自家所有率은 <表 4-9>와 같이 전국 가구중 57퍼센트 수준이다. 이는 도시가구가 46퍼센트인데 비해 농촌가구는 82퍼센트이다. 家口類型別 自家所有率은 유배우가구가 59퍼센트, 무배우가구의 결혼가구는 55퍼센트, 기타가구는 64퍼센트 그리고 미혼가구는 14퍼센트이다. 이러한 양상은 무배우 기타가구의 가구주가 주로 高齡이고 農村地域에 분포되어 自家所有率이 높게 나타난다. 地域別 住居樣相은 도시지역에서 傳貫(38.0%)와 月貫(14.2%)가 과반수를 차지하며, 傳月貫率은 미혼가구(85.4%)가 가장 높고, 다음은 결혼가구(53.5%) 그리고 기타가구(50.7%)의 順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은 대부분(81.8%) 자기 집을 소유하고 傳月貫는 15퍼센트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다. 家口類型別로는 미혼가구의 傳月貫率(47.7%)이 높고, 나머지 가구들은 自家所有率이 80퍼센트를 넘고 있다.

<表 4-9> 家口類型別 自家所有 與否

(단위: %)

	유배우 가구	무배우 가구		미혼 가구	전체
		결혼가구	기타가구		
전국	(13,485)	(1,443)	(1,421)	(803)	(17,152)
자가	58.6	54.5	64.3	13.6	56.6
전세	30.9	24.7	16.3	42.2	29.7
월세	9.1	16.9	15.1	38.9	11.6
기타	1.5	3.9	4.4	5.4	2.1
도시	(9,683)	(998)	(749)	(692)	(12,122)
자가	49.2	42.8	46.1	9.4	46.2
전세	38.9	32.4	25.9	45.8	38.0
월세	10.8	21.1	24.8	40.6	14.2
기타	1.1	3.7	3.2	4.2	1.6
농촌	(3,802)	(445)	(672)	(111)	(5,030)
자가	82.7	80.7	84.5	39.6	81.8
전세	10.3	7.6	5.5	19.8	9.6
월세	4.6	7.4	4.2	27.9	5.3
기타	2.4	4.3	5.8	12.6	3.3

家口類型別 煖房形態는 전체 가구중 기름이나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74퍼센트를 점유하고, 채래식 아궁이 사용이나 연탄사용은 25퍼센트이다. 기름 및 가스사용은 도시가구중 79퍼센트, 농촌가구중 61퍼센트이며, 이는 家口類型別로 유배우 가구중 78퍼센트(도시:82.8%, 농촌:67.2%), 결혼가구중 60퍼센트(도시:67.3%, 농촌:44.7%), 기타가구중 48퍼센트(도시:55.7%, 농촌:38.7%) 그리고 미혼가구중 64퍼센트(도시:66.3%, 농촌:45.3%)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煖房形態는 지역적 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가구의 생활형편에 따라서 다소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유배우 가구보다 무배우 가구에서 연탄사용율이 높고, 결혼가구보다 기타가구에서 연탄사용

율이 높음은 家庭經濟와 관련이 있음을 예시하는 점이 아닐 수 없다.

<表 4-10> 家口類型別 煖房形態

(단위: %)

	유배우 가구	무배우 가구		미혼 가구	전체
		결혼가구	기타가구		
전국	(13,456)	(1,438)	(1,414)	(794)	(17,102)
채래식/연탄	20.7	37.9	51.2	35.3	25.3
기름/가스	78.4	60.3	47.7	63.5	73.7
기 타	0.9	1.8	1.1	1.3	1.0
도시	(9,660)	(993)	(745)	(688)	(12,086)
채래식/연탄	16.1	30.5	43.5	32.8	19.9
기름/가스	82.8	67.3	55.7	66.3	79.0
기 타	1.0	2.2	0.8	0.9	1.1
농촌	(3,796)	(445)	(669)	(106)	(5,016)
채래식/연탄	32.3	54.4	59.8	50.9	38.3
기름/가스	67.2	44.7	38.7	45.3	60.9
기 타	0.5	0.9	1.5	3.8	0.7

2. 經濟狀態

2-1. 月平均 生活費

전체 가구의 月平均 生活費는 67만 9천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서 生活費 推定은 調查時 質問에서 “귀 닥의 월평균 생활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衣食住와 관련된 費用 및 教育費, 醫療費, 公課金, 交通費, 利子 등 모두 포함)”의 형태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 전국 가구의 月平均 生活費는 67만 9천원으로 도시가구는 74만 7천원, 농촌가구는 51만 7천원이다. 이는 家計支出을 근거로 한 것이긴 하지만 1992년 統計廳의 都市勤勞者 家口의 月平均 所得 135만 6천원, 農水産部의 月平均 農家所得 120만 8천원 보다 낮고, 朴純一(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4)의 전국 4인가구의 平均 最低生計費 66만 7천원 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어떻든 동 결과는 生計費 推定을 위한 것이 아니고, 家口類型別 生活水準을 파악하기 위한 것 이지만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동일한 推定方法이 아니더라도 1988년 統計廳의 調査에서 月平均 家口所得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가 19퍼센트(도시:21.9%, 농촌:12.0%)인 반면 동 조사는 23퍼센트(도시:28.2%, 농촌:11.5%)로 추정되어 都農間·階層間 隔差가 심화되지 않았는지 의구심을 갖게된다. 이와 관련 가구유형별 月平均 生活費는 유배우 가구가 74만 5천원, 결손가구는 52만 2천원, 기타가구는 37만 3천원 그리고 미혼가구는 40만 3천원으로 결손가족의 평균 가구원수 3.02명, 기타가구의 1.99명, 미혼가구 1.41명을 감안하면 결손가족의 생계가 相對的 貧困狀態에 있다고 할 수 있다.

地域別, 家口類型別 月平均 生活費는 도시지역 유배우 가구가 81만원인데 비해 농촌지역 유배우 가구는 57만 8천원 수준이다. 또 결손가구는 도시가 57만 2천원, 농촌이 41만원, 기타가구는 도시가 45만 8천원, 농촌이 27만9천원, 미혼가구는 도시가 41만 6천원, 농촌이 31만 6천원으로 기타가구에서 地域間 差異가 심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월 평균 생활비가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국적으로 11퍼센트 수준이며, 이는 도시가구가 6퍼센트 수준인데 비해 농촌가구는 23퍼센트로 구성면에서 농촌이 두배에 이른다.

이러한 양상은 生計自立 與否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有配偶 家口중 生計自立의 경우 月平均 生活費는 약 76만원 인데 비해 生計依存의 경우는 약 52만원 수준이다. 月平均 生活費가 가장 낮은 경우는 無配偶 其他家口의 生活依存의 경우로 약 22만원(도시:27만원, 농촌:18만원)으로 最低生計費에도 미치지 못한다.

<表 4-11> 地域 및 家口類型別 月平均 生活費

(단위: %)

	유배우 가구	무배우 가구		미혼 가구	전체
		결혼가구	기타가구		
전국	(13,326)	(1,428)	(1,406)	(794)	(16,954)
-19만원	2.1	4.3	29.2	7.6	4.8
20-29만원	3.5	9.7	21.2	15.9	6.1
30-49만원	17.6	35.5	22.3	48.2	20.9
50-69만원	25.7	27.0	12.7	19.9	24.5
70-99만원	23.6	12.4	7.1	4.9	20.4
100만원 ⁺	27.5	11.1	7.5	3.5	23.3
평균(만원)	74.5	52.2	37.3	40.3	67.9
도시	(9,566)	(988)	(741)	(684)	(11,979)
-19만원	0.6	1.5	14.3	5.0	1.8
20-29만원	1.7	5.5	20.9	14.3	3.9
30-49만원	13.4	32.8	28.3	50.7	18.0
50-69만원	25.5	31.8	15.7	21.2	25.2
70-99만원	25.9	15.2	9.9	5.0	22.8
100만원 ⁺	32.9	13.3	10.9	3.8	28.2
평균(만원)	81.0	57.2	45.8	41.6	74.7
농촌	(3,760)	(440)	(665)	(110)	(4,975)
-19만원	6.0	10.7	45.7	23.6	12.1
20-29만원	8.1	19.1	21.5	25.5	11.3
30-49만원	28.2	41.6	15.5	32.7	27.8
50-69만원	26.2	16.4	9.5	11.8	22.8
70-99만원	17.7	6.1	4.1	4.5	14.6
100만원 ⁺	13.8	6.1	3.8	1.8	11.5
평균(만원)	57.8	41.0	27.9	31.6	51.7

<表 4-12> 生計自立與否別 月平均 生活費

(단위: 만원)

	유배우		무배우 결혼		무배우 기타		미혼	
	자립	의존	자립	의존	자립	의존	자립	의존
전국	76.3	51.9	56.3	41.8	49.8	21.9	40.6	38.4
도시	81.8	66.7	60.1	47.5	58.3	26.9	41.2	44.9
농촌	60.9	39.0	45.4	34.1	38.3	17.5	35.8	21.5

2-2. 貯蓄 및 負債

전국적으로 생활비의 貯蓄狀態는 58퍼센트의 가구가 다소나마 貯蓄을 하고 있는 반면 42퍼센트(도시:36.6%, 농촌:54.6%)는 저축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家口類型別 저축을 하지 못하는 율은 유배우 가구에서 37퍼센트(도시:32.7%, 농촌:49.0%)에 불과하지만 결손가구는 61퍼센트(도시:57.0%, 농촌:70.0%), 기타가구는 72퍼센트(도시:67.8%, 농촌:75.8%) 그리고 미혼가구는 32퍼센트(도시:28.6%, 농촌:54.6%)로 지역간 차이가 현저하다. 地域別 貯蓄을 하는 경우 月平均 貯蓄額은 전국이 38만 2천원 수준으로 도시가구에서 39만 5천원, 농촌가구에서 33만 8천원으로 평균 30만원 수준이다. 이를 家口類型別로 보면 유배우 가구중 저축을 하는 경우 月平均 貯蓄額은 39만 2천원인데 비해 무배우 가구는 31-32만원(결손가구:31만4천원, 기타가구:31만 7천원)으로 미혼가구(34만원)보다 저축액이 적은 양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전국 家口중 負債를 안고 있는 가구는 29퍼센트에 달하며, 負債가 있는 가구의 家口當 負債額은 1천 118만 6천원 수준이다. 地域別 負債家口率은 도시가구중 23퍼센트, 농촌가구중 43퍼센트로 농촌가구의 負債率이 높다. 그러나 부채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할 때 負債額은 농촌가구보다 도시가구가 더 많다. 家口類型別 負債率은 무배우 결손가구(주로 편부모 가구)의 약 1/3이 부채를 안고 있으며, 유배우 가구는 30퍼센트, 무배우 기타가구는 21퍼센트 수준이다.

地域別, 家口類型別 負債率은 유배우 가구가 무배우 가구보다 높고, 무배우가구는 결손가구(대개 편부모가구)가 기타가구나 미혼가구보다 높다. 다시 말해 도시는 무배우 결손가구(28%)에서, 농촌은 유배우가구(46%)가 가장 높지만, 負債額은 도시의 유배우가구(1,310만원), 농촌의 미혼가구(1,122만원)가 가장 많다. 그렇다 하더라도 負債額이 상대적으로 적은 무배우 결손가구와 기타가구는 생활비나 저축형태를 고

러할 때 負債額이 이들 가구에 큰 負擔이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表 4-13> 家口類型別 貯蓄現況

(단위: %)

	유배우 가구	무배우 가구		미혼 가구	전체
		결손가구	기타가구		
전국	(13,278)	(1,424)	(1,405)	(796)	(16,903)
저축못함	37.3	61.1	71.6	32.2	41.9
- 9만원	1.3	2.2	3.7	1.1	1.6
10-29만원	20.9	17.4	12.0	25.3	20.1
30-49만원	21.3	11.1	6.3	28.0	19.5
50만원 ⁺	19.2	8.2	6.5	13.4	16.9
평균(만원)	39.2	31.4	31.7	33.6	38.2
도시	(9,529)	(982)	(739)	(688)	(11,838)
저축못함	32.7	57.0	67.8	28.6	36.6
- 9만원	0.8	2.1	3.1	1.0	1.1
10-29만원	20.9	17.5	12.4	26.6	20.4
30-49만원	23.5	13.4	8.4	29.4	22.1
50만원 ⁺	22.1	9.9	8.3	14.4	19.8
평균(만원)	40.5	33.0	35.4	33.5	39.5
농촌	(3,749)	(442)	(666)	(108)	(4,965)
저축못함	49.0	70.1	75.8	54.6	54.6
- 9만원	2.7	2.3	4.4	1.9	2.9
10-29만원	20.9	19.1	21.5	25.5	11.3
30-49만원	15.7	5.9	3.9	19.4	13.3
50만원 ⁺	11.7	4.5	4.5	7.4	10.0
평균(만원)	35.0	26.5	26.2	34.5	33.8

生計自立與否別 貯蓄 및 負債率은 자립가구에서 저축율도 높고, 부채율도 높다. 이러한 점은 생계자립의 경우 생활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무배우 결손가구는 생활자립의 경우 저축가구가 47퍼센트, 의존가구는 19퍼센트인데 비해 기타가구는 자립의 경우 저축가구율은 44퍼센트 이고, 依存의 경우 저축가구율은 10퍼센트로 對照를 이룬다. 또 負債率은 무배우 결손가구의 경우 自立과 依存

家口間에 큰 차이가 없지만 무배우 기타가구는 自立과 依存家口間에 부채에서 거의 두배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自立家口는 저축율도 높지만 부채율도 높다는 것이다.

<表 4-14> 家口類型別 負債現況

(단위: %)

	유배우 가구	무배우 가구		미혼 가구	전체
		결혼가구	기타가구		
전국	(13,230)	(1,415)	(1,405)	(790)	(16,840)
부채없음	69.7	67.2	78.7	87.3	71.0
-100만원미만	0.3	1.2	1.1	0.6	0.5
100-290만원	4.2	7.5	5.4	2.2	4.5
300-490만원	3.8	6.1	3.3	1.6	3.9
500-990만원	7.4	8.0	4.4	3.4	7.0
1,000만원 ⁺	11.5	10.0	7.0	4.8	13.1
평균(만원)	1,185.9	756.4	880.2	818.3	1,118.6
도시	(9,470)	(973)	(739)	(681)	(11,863)
부채없음	76.6	72.0	85.0	89.9	77.0
-100만원미만	0.2	0.7	0.7	0.3	0.3
100-290만원	2.6	6.1	3.4	1.6	2.9
300-490만원	2.3	5.2	1.2	1.8	2.4
500-990만원	5.8	7.0	2.8	3.4	5.6
1,000만원 ⁺	13.2	8.9	6.9	3.1	11.9
평균(만원)	1,309.8	778.8	1,169.1	681.9	1,234.9
농촌	(3,760)	(442)	(666)	(109)	(4,977)
부채없음	53.8	56.6	71.8	71.6	56.8
-100만원미만	0.6	2.3	1.7	2.8	0.9
100-290만원	8.2	10.6	7.7	5.5	8.3
300-490만원	7.7	8.1	5.6	0.9	7.3
500-990만원	11.6	10.2	6.2	3.7	10.5
1,000만원 ⁺	18.1	12.2	7.2	15.6	16.1
평균(만원)	1,024.0	724.6	709.6	1,121.9	971.1

生計類型別 月平均 貯蓄額은 유배우 가구는 생활자립과 依存의 경우 큰 차이가 없지만 무배우가구는 약 10만원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

고 있다. 즉 무배우 가구중 생활자립 가구의 저축액은 약 30만원 수준인데 비해 생활의존 가구의 저축액은 20만원 수준이다. 이러한 양상은 농촌지역에서 저축율이 낮긴 하지만 저축액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表 4-16 참조). 한편 負債額은 미혼가구를 제외하고는 생계자립 가구가 생계의존 가구보다 많으며, 무배우 결혼은 생계자립 가구가

<表 4-15> 生計自立與否別 貯蓄 및 負債率¹⁾

(단위: %)

	유배우		무배우 결혼		무배우 기타		미 혼	
	자립	의존	자립	의존	자립	의존	자립	의존
저축가구								
전국	65.8	30.8	47.2	19.2	44.3	9.6	77.1	14.5
도시	69.6	33.1	49.4	24.3	49.5	7.1	79.0	17.6
농촌	55.0	28.6	41.1	12.2	37.3	11.9	61.8	6.3
부채가구								
전국	31.0	31.4	32.8	35.0	27.7	13.6	13.5	10.4
도시	25.0	23.6	27.6	32.9	19.2	8.8	11.4	4.8
농촌	47.7	39.0	47.2	37.8	39.1	17.8	29.5	25.8

註: 1) 전체가구중 저축과 부채가 각각 있는 가구의 비율임.

<表 4-16> 生計自立與否別 貯蓄額 및 負債額¹⁾

(단위: 만원)

	유배우		무배우 결혼		무배우 기타		미 혼	
	자립	의존	자립	의존	자립	의존	자립	의존
저축액								
전국	39.4	33.9	33.0	22.0	33.5	21.5	33.9	21.3
도시	40.6	36.9	34.4	23.5	35.8	31.2	33.8	21.8
농촌	35.3	30.8	28.1	18.0	29.3	16.5	35.2	17.5
부채액								
전국	1213.1	868.0	866.3	488.5	956.6	696.2	818.2	819.2
도시	1316.6	1184.1	876.4	498.9	1231.3	993.8	682.3	675.0
농촌	1067.9	690.8	850.4	476.9	776.3	567.1	1202.2	891.3

註: 1) 저축가구(10,024가구) 및 부채가구(5,058가구)만을 대상으로 함.

약 866만원인데 비해 생계의존 가구는 489만원 수준이고, 무배우 기타 가구는 생계자립 가구는 957만원인데 비해 생계의존 가구는 657만원으로 결손가구 보다 많다.

이러한 負債는 대개 事業資金(44.6%)이나 住宅購入(26.1%) 또는 教育費(10.5%)를 위해서 진 경우이다. 負債事由를 가구유형별로 보면 무배우 가구는 사업자금(31.4%)이나 주택구입(26.8%) 및 교육비(14.6%) 외에도 의료비나 생활비 때문에 진 경우가 많다. 이를 地域別로

<表 4-17> 家口類型別 負債事由¹⁾

	유배우 가구	무배우 가구		미혼 가구	전체
		결손가구	기타가구		
전국	(4,602)	(542)	(363)	(107)	(5,614)
피복비	0.3	0.4	0.8	0.9	0.3
식품비	1.8	5.5	5.5	0.0	2.3
주거비	26.3	26.8	20.7	34.6	26.1
교육비	10.2	14.6	9.6	2.8	10.5
의료비	5.5	13.8	14.0	9.3	6.9
사업자금	46.7	31.4	39.1	40.2	44.6
기타	9.3	7.6	10.2	12.1	9.2
도시	(2,497)	(312)	(122)	(71)	(3,002)
피복비	0.4	0.3	1.6	1.4	0.5
식품비	1.6	4.8	4.1	0.0	2.0
주거비	36.7	34.9	32.8	42.3	36.5
교육비	7.8	13.8	7.4	1.4	8.3
의료비	4.8	14.7	13.9	9.9	6.4
사업자금	36.8	21.5	28.7	29.6	34.7
기타	11.8	9.9	11.5	15.5	11.7
농촌	(2,105)	(230)	(241)	(36)	(2,612)
피복비	0.1	0.4	0.4	0.0	0.2
식품비	2.0	6.5	6.2	0.0	2.8
주거비	13.9	15.7	14.5	19.4	14.2
교육비	13.0	15.7	10.8	5.6	12.9
의료비	6.3	12.6	14.1	8.3	7.6
사업자금	58.4	44.8	44.4	61.1	56.0
기타	6.2	4.3	9.5	5.6	6.4

註: 1) 부채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2가지 이상 응답한 경우 모두 포함함.

보면 도시는 주택구입 등 住居費 때문에 진 경우가 많은(36.5%) 대신 농촌은 事業資金(營農資金) 때문에 부채를 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第4節 家口類型別 生計實態

1. 生活費 充當方法

家口の 生活費 充當은 家口主가 生業에 종사함으로써 얻어지는 收入으로 생활하는 경우, 家口主와 그 외 家族의 收入으로 생활하는 경우, 父母, 兄弟나 親戚의 도움으로 생활하는 경우, 生活保護 對象으로 선정되어 政府의 支援으로 생활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및 이자소득 등 財産所得으로 생활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형태중 어느 한가지 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두가지 이상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本 節에서는 家口類型別 生活費 充當方法을 통해 이를 生計自立 與否와 아울러 검토코저 한다.

<表 4-18>과 같이 전체 가구중 가구주 및 가족원의 수입으로 생활을 하는 가구는 85퍼센트를 차지하며, 부모, 형제 또는 친척의 도움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9퍼센트, 政府支援이나 財産所得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각각 3퍼센트 수준이다. 이러한 양상을 地域別로 보면 가족의 수입으로 생활하거나 또는 財産所得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농촌에서 보다 도시에서 다소 높은 편이며, 父母, 兄弟 및 親戚의 도움이나 政府支援으로 생활한다는 경우는 도시에서 보다 농촌에서 높은 편이다.

家口類型別 家族의 收入으로 생활하는 가구는 有配偶 家口에서 가장 많아 90퍼센트에 이르고, 無配偶 其他家口는 55퍼센트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父母, 兄弟 및 親戚의 도움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무배우 기타가구가 30퍼센트로 가장 많고, 政府支援 역시 무배우 결혼가구가 12퍼센트로 가장 많아 무배우 가구의 生活依存率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地域別 가족수입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도시에서 8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농촌에서는 79퍼센트 수준이다. 父母, 兄弟 및 親戚의 도움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농촌이 14퍼센트인데 비해 도시는 7퍼센트로 대조를 이루며, 農村家族의 分化와 함께 家族間 또는 親族間 紐帶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表 4-18> 家口類型別 生活費 充當方法¹⁾

(단위: %)

	유배우 가구	무배우 가구		미혼 가구	전체
		결혼가구	기타가구		
전국	(14,205)	(1,786)	(1,606)	(826)	(18,423)
가족수입	89.9	70.8	54.5	84.6	84.7
부모·형제·친척	6.1	12.3	30.1	10.7	9.0
정부지원	0.8	12.3	10.4	3.1	2.8
재산소득	2.8	3.0	3.8	0.8	2.8
기타	0.5	1.7	1.1	0.7	0.6
도시	(10,118)	(1,208)	(831)	(711)	(12,868)
가족수입	91.4	73.3	56.2	86.8	87.1
부모·형제·친척	4.2	11.8	26.5	9.8	6.6
정부지원	0.4	8.8	10.0	1.8	1.9
재산소득	3.6	4.1	5.8	1.0	3.6
기타	0.5	2.0	1.6	0.6	0.7
농촌	(4,087)	(578)	(775)	(115)	(5,555)
가족수입	86.3	65.4	52.8	71.3	79.1
부모·형제·친척	10.9	13.1	34.1	15.7	14.4
정부지원	1.7	19.6	10.8	11.3	5.0
재산소득	0.8	0.9	1.7	-	0.9
기타	0.4	1.0	0.6	1.7	0.5

註: 1) 2가지 이상 응답한 경우 포함하였으며, ()는 응답수입(가구수=17,112가구).

이러한 가운데도 無配偶 其他家口는 家族의 收入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1/2에 불과하고, 生活依存率은 家族 내지 親族支援이 30퍼센트,

政府支援이 10퍼센트를 차지한다. 生活依存率은 도시보다 농촌이 높고, 농촌의 무배우 기타가구는 가족이나 친족에 의존율이 1/3을 차지한다. 이러한 점은 무배우 기타가구가 단순히 배우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다. 家族共同體의 有機性은 가족이 부부와 자녀로 구성하는 외형적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구조적 특성이 共同體의 凝集力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묘한 潛在力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조적 결손은 기능적 결손이 불가피해 지고, 이를 補完하기 위한 生活支援은 支援 그 자체로만 의미를 내포할 뿐 근본적으로 問題解決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生活自立 및 依存

전국적으로 家族收入으로 생활하는 가구(15,674가구)는 가족수입 한가지만으로 생활하는 경우와 家族收入 外 其他收入, 즉 두가지 이상의 수입원으로 생활하는 가구로 구별된다. 여기서 가족수입 외 기타수입은 가족 및 친족의 지원, 정부지원, 사회단체의 지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地域別로 살펴보면 家族收入 만으로 생활하는 가구는 도시(94.2%)가 농촌(89.3%)보다 많고, 家族收入과 其他收入으로 생활하는 가구는 농촌지역(10.7%)이 많아 분포면에서 도시(5.8%)의 약 2배에 이른다.

<表 4-19> 家族收入으로 생활하는 家口分布

(단위: %, 가구수)

	가족수입만으로 생활	가족수입+타 방법으로 생활	전 체
전 국	92.8(14,547)	7.2(1,127)	100.0(15,674)
도 시	94.2(10,616)	5.8(658)	100.0(11,274)
농 촌	89.3(3,931)	10.7(469)	100.0(4,400)

가족생활을 家族收入만으로 영위하는 경우는 全國적으로 93퍼센트로 7퍼센트는 가족수입 외에 依存해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家口란 뜻이다. 이들 가구중 생활을 全적으로 依存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을 家口類型別로 보면 무배우 결손가구가 가족수입만으로 생활하는율이 78퍼센트로 가장 낮고, 미혼가구는 97퍼센트로 가장 높다. 가족수입 및 기타 방법으로 생활하는 경우는 무배우 결손가구에서 22퍼센트에 달하고, 무배우 기타가구(15.8%), 유배우 가구(5.4%), 미혼가구(3.1%)의 順으로 地域別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全體 家口중 家族收入으로 생활하는 가구와 政府支援으로 생활하는 가구의 구성율은 <表 4-21>과 같다. 먼저 家族收入으로 생활하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91퍼센트에 이르며, 이는 유배우 가구에서 95퍼센트로 가장 높고, 무배우 기타가구에서는 62퍼센트로 가장 낮다.

家族收入에 의한 自立은 도시보다 농촌이 낮으며, 무배우 가구에서 낮다.

<表 4-20> 家口類型別 生活費 充當方法: 家族收入 中心

(단위: %)

	유배우 가구	무배우 가구		미혼 가구	전체
		결손가구	기타가구		
전 국	(12,768)	(1,264)	(876)	(699)	(15,607) ¹⁾
가족수입	94.6	78.0	84.2	96.9	92.8
가족수입 및 타방법	5.4	22.0	15.8	3.1	7.2
도 시	(9,242)	(886)	(467)	(617)	(11,212)
가족수입	95.5	81.0	87.8	96.9	94.1
가족수입 및 타방법	4.5	19.0	12.2	3.1	5.9
농 촌	(3,526)	(378)	(409)	(82)	(4,395)
가족수입	92.2	70.9	80.2	96.3	89.3
가족수입 및 타방법	7.8	29.1	19.8	3.7	10.7

註: 1) 무응답 67가구 제외.

<表 4-21> 家口類型別 家族收入 및 政府支援으로 生活하는 家口率¹⁾
(단위: %)

	유배우 가구	무배우 가구		미혼 가구	전체(가구수)
		결손가구	기타가구		
가족수입가구					
전 국	94.9	87.5	61.9	87.3	91.2(15,607)
도 시	95.7	88.7	62.6	89.4	92.7(11,212)
농 촌	93.0	84.9	61.0	73.9	87.6(4,395)
정부지원가구					
전 국	0.8	15.2	11.8	3.2	3.0(521)
도 시	0.4	10.6	11.1	1.9	2.0(243)
농 촌	1.8	25.4	12.5	11.7	5.5(278)

註: 1) 가구유형별 총가구중 가족수입으로 생활하는 가구 및 정부지원을 받는 가구의 비율임.

政府支援으로 생활하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3퍼센트를 차지하며, 이는 무배우 결손가구(15.2%)와 무배우 기타가구(11.8%)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며, 地域別로는 농촌의 무배우 결손가구중 약 1/4이 政府支援으로 생활을 영위한다.

第5節 家口類型別 生活問題

1. 負擔 生活費目

家口類型別 生活費중 負擔되는 生活費目은 전체가구중 教育費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그 외는 衣食住費중 피복비를 제외한 食品費(24.3%), 住居費(19.1%)에 부담이 높다. 한편 公課金과

慶弔費의 負擔은 10퍼센트 수준이다. 地域別 가장 負擔이 되는 生活費는 도시에서는 教育費(36.2%)가 가장 높은 반면 농촌에서는 食品費(28.2%)가 가장 높다. 두번째로 부담이 되는 生活費는 도시에서는 食品費(22.8%)인데 비해 농촌에서는 教育費(27.1%)로 도시·농촌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教育費와 食品費에서 과반수가 생활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家口類型別 負擔 生活費目は 유배우가구와 결혼가구는 教育費, 食品費, 住居費의 順으로 비슷한 양상이나 기타가구는 食品費(37.0%)가 가장 큰 부담이 되고, 그 외 住居費(20.1%), 醫療費(16.7%)의 부담율이 높다. 그러나 未婚家口는 住居費(36.6%), 食品費(28.0%), 教育費(10.9%)의 順으로 가구유형별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이를 地域別로 보면 도시의 유배우 및 무배우 결혼가구는 教育費의 負擔이 가장 크고, 무배우 기타가구는 食品費가, 그리고 미혼가구는 住居費의 부담이 가장 크다. 이러한 점은 농촌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이지만 미혼가구는 다소 차이를 보여 도시보다 食品費의 비율이 높은 점이 특징이다.

2. 生活問題

家口類型別 生活問題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전체 가구중 1/4에 달하고, 도시가구중 28퍼센트, 농촌가구중 20퍼센트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대개 經濟問題와 子女問題로 집약된다. 이러한 양상은 농촌가구에서 더 심하다. 家族生活에서 經濟問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이는 무배우 기타가구에서 가장 높은 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子女問題로 결혼가구의 약 1/3이 자녀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健康問題를 지적하는 경우는 유배우가구와 결혼가구에서 큰 차이가 없지만 기타결혼 가구는 24퍼센트나 된다.

<表 4-22> 家口類型別 負擔이 되는 生活費目¹⁾

(단위: %)

	유배우 가구	무배우 가구		미혼 가구	전체
		결혼가구	기타가구		
전국	(14,632)	(1,567)	(1,500)	(846)	(18,545)
없음	0.1	0.1	0.3	0.1	0.1
피복비	1.7	1.3	1.2	8.2	1.9
식품비	22.8	24.4	37.0	28.0	24.3
주거비	18.0	19.0	20.1	36.6	19.1
교육비	37.3	33.7	10.9	10.9	33.7
의료비	6.0	8.6	16.7	3.4	7.0
공과금/경조사비	10.1	8.9	10.7	6.6	9.9
기타	4.0	4.1	3.0	6.1	4.0
도시	(10,659)	(1,102)	(810)	(729)	(13,300)
없음	0.1	0.1	0.1	0.1	0.1
피복비	1.8	1.6	1.9	9.1	2.2
식품비	21.7	22.3	34.2	26.7	22.8
주거비	18.1	21.0	24.0	37.9	19.7
교육비	39.8	34.5	14.1	11.1	36.2
의료비	4.9	8.4	14.0	2.6	5.6
공과금/경조사비	10.2	8.8	10.4	6.7	9.9
기타	3.4	3.3	1.5	5.8	3.4
농촌	(3,973)	(465)	(690)	(117)	(5,245)
없음	0.2	0.0	0.6	0.0	0.2
피복비	1.3	0.4	0.4	2.6	1.2
식품비	25.7	29.5	40.3	35.9	28.2
주거비	17.9	14.2	15.7	29.1	17.5
교육비	30.6	31.8	7.2	9.4	27.1
의료비	8.8	9.0	20.0	8.5	10.3
공과금/경조사비	9.9	9.0	11.0	6.0	9.9
기타	5.6	6.0	4.8	8.5	5.6

註: 1) 2가지 이상 응답한 경우 모두 포함한 것이며, ()는 응답수임.

이처럼 가족문제는 家族構成 및 生活樣相과 밀접한 관계를 내포한다. 즉 자녀가 있는 경우는 教育問題를,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經濟問題를, 또 노인이 있는 경우는 健康問題를 지적하고 있다.

<表 4-23> 家口類型別 家庭 내에서 가장 큰 問題

(단위: %)

	유배우 가구	무배우 가구		미혼 가구	전체
		결혼가구	기타가구		
전국	(13,395)	(1,432)	(1,409)	(797)	(17,033)
문제없음	27.3	9.5	18.9	40.8	25.7
경제문제	31.0	36.7	38.7	33.9	32.2
자녀문제	25.2	33.5	9.5	4.1	23.6
건강문제	12.2	12.8	23.8	4.8	12.9
부양 및 갈등문제	1.8	4.3	3.7	2.6	2.2
기타	2.6	3.2	5.5	13.8	3.4
도시	(9,615)	(990)	(741)	(687)	(12,033)
문제없음	29.4	11.1	21.7	43.1	28.2
경제문제	29.9	35.3	37.4	32.9	31.0
자녀문제	25.0	33.7	8.9	4.4	23.6
건강문제	11.0	12.8	23.2	4.1	11.5
부양 및 갈등문제	1.9	3.9	4.3	2.2	2.2
기타	2.8	0.3	0.3	0.8	3.5
농촌	(3,780)	(442)	(668)	(110)	(5,000)
문제없음	21.9	5.9	15.7	26.4	19.8
경제문제	33.7	40.0	40.1	40.1	35.3
자녀문제	25.6	33.0	10.2	2.7	23.7
건강문제	15.3	12.7	24.4	9.1	16.1
부양 및 갈등문제	1.3	5.0	3.0	5.5	2.0
기타	2.1	3.4	6.6	16.4	3.1

3. 生活에 대한 自體評價

家口類型別 生活水準에 대한 自體評價는 유배우 가구보다 무배우 가구 및 미혼가구에서 否定的 側面이 강하다. “현재 귀 댁의 生活수준은(이웃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 전체 가구중 “못사는 편”이라는 응답은 27퍼센트이다. 家口類型別로는 무배우 결혼가구가 53퍼센트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무배우 기타가구가 48퍼센트로 무배우가구가 유배우가구나 미혼가구에서 보

다 ‘못산다’고 생각하는 율이 높다. 반대로 ‘잘 사는 편’이라는 응답은 도시보다 농촌에서 그 율이 높고, 家口類型別로 유배우 가구가 도시·농촌 모두 가장 높은 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무배우나 미혼가구의 構造的 缺損家口가 有配偶 家口보다 否定的 性向이 높음은 가족 구성이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表 4-24> 家口類型別 生活水準의 自體評價

(단위: %)

	유배우 가구	무배우 가구		미혼 가구	전체
		결혼가구	기타가구		
전국	(13,431)	(1,438)	(1,412)	(800)	(17,081)
잘 사는 편	11.2	3.3	6.8	4.6	9.8
보통인 편	67.4	44.1	45.5	62.0	63.4
못 사는 편	21.4	52.6	47.7	33.4	26.8
도시	(9,646)	(995)	(744)	(690)	(12,075)
잘 사는 편	9.1	2.9	5.8	3.9	8.1
보통인 편	68.4	45.9	44.8	62.8	64.8
못 사는 편	22.4	51.2	49.5	33.3	27.1
농촌	(3,785)	(443)	(668)	(110)	(5,006)
잘 사는 편	16.4	4.3	7.9	9.1	14.0
보통인 편	64.7	40.0	46.4	57.3	59.9
못 사는 편	18.9	55.8	45.7	33.6	26.0

生活에 대한 滿足은 ‘만족하는 편’이 약 40퍼센트이고, ‘보통인 편’이 44퍼센트로 이를 합하면 84퍼센트가 보통 이상이다. 따라서 不滿率(17%)은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다. 生活에 不滿은 家口類型別로는 무배우가구가 기타가구보다 높은 편이다(무배우 결혼가구:34.6%, 기타가구:29.1%). 地域別 生活의 不滿率은 도시보다 농촌에서 높고, 家口類型別로는 농촌의 무배우 결혼가구가 가장 높아 39퍼센트를 나타내고 있다.

<表 4-25> 家口類型別 生活滿足의 自體評價

(단위: %)

	유배우 가구	무배우 가구		미혼 가구	전체
		결혼가구	기타가구		
전국	(13,429)	(1,438)	(1,410)	(800)	(17,077)
만족하는 편	43.7	20.0	23.9	32.8	39.6
보통인 편	42.8	45.3	47.0	48.3	43.6
불만인 편	13.4	34.6	29.1	19.0	16.8
도시	(9,642)	(994)	(742)	(690)	(12,068)
만족하는 편	43.8	21.3	22.9	32.9	40.1
보통인 편	43.0	45.9	44.3	47.5	43.6
불만인 편	13.2	32.8	32.7	19.6	16.3
농촌	(3,787)	(444)	(668)	(110)	(5,009)
만족하는 편	43.4	17.1	25.0	31.8	38.4
보통인 편	42.4	44.1	50.0	52.7	43.8
불만인 편	14.2	38.7	25.0	15.5	17.8

<表 4-26> 家口類型別 生活展望의 自體評價

(단위: %)

	유배우 가구	무배우 가구		미혼 가구	전체
		결혼가구	기타가구		
전국	(13,430)	(1,438)	(1,410)	(799)	(17,077)
좋아질 것	75.9	58.4	40.3	74.5	71.5
그저그럴 것	20.8	34.6	46.6	23.2	24.2
나빠질 것	3.2	7.0	13.1	2.4	4.3
도시	(9,644)	(994)	(742)	(690)	(12,070)
좋아질 것	78.4	60.7	39.8	76.1	74.4
그저그럴 것	19.3	33.2	48.4	21.7	22.4
나빠질 것	2.3	6.1	11.9	2.2	3.2
농촌	(3,786)	(444)	(668)	(109)	(5,007)
좋아질 것	69.8	53.4	40.9	64.2	64.3
그저그럴 것	24.7	37.8	44.6	32.1	28.7
나빠질 것	5.5	8.8	14.5	3.7	7.0

다음은 앞으로의 생활을 어떻게 展望하고 있는지 알아 본 결과 ‘좋아질 것’이라는 肯定的인 기대가 상당히 높은 편(71.5%)이고, 이는 농

촌보다 도시에서 肯定的인 傾向이 높다. 家口類型別 生活展望은 유배우가구와 미혼가구에서 약 3/4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반면, 무배우가구는 저조한 편이다. 특히 무배우 기타가구는 가장 낮아서 40퍼센트 정도만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으로의 生活에 대한 否定的 견해는 농촌이 도시보다 2배나 높고, 이러한 점은 무배우가구에서도 그렇지만 유배우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生活水準, 生活滿足, 生活展望을 종합해 볼 때 무배우가구가 유배우가구나 미혼가구 보다 否定的인 性向을 나타내는 것은 가족구조와 實생활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第6節 家口의 構造機能的 不均衡

1. 家口構造의 特徵

가족을 血緣中心의 關係로, 가구는 同居中心의 生活로 본다면 現代 家族은 가족가구(family household)가 증가하고 있다. 한 가족이 모두 함께 사는 경우는 1989년 전국 가구중 71퍼센트 였으나 1991년은 78퍼센트로 증가했다. 이러한 양상은 도시·농촌간 차이가 많아 1989년 농촌가구중 가족가구가 50퍼센트 였으나 1991년에는 57퍼센트로, 같은 기간에 도시가구중 가족가구는 81퍼센트가 85퍼센트로 증가했다. 이러한 이면에는 가족에 대한 인식이 동거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으로 생각하는 점에도 영향이 있다.

家族에 대한 認識의 變化와 同居形態는 가족의 再構成을 의미한다. 물론 남편이 職場事情으로, 또는 자식이 就學이나 就業을 위한 일시적 分居形態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이러한 가구는 分居期間이 길어지면서

獨立된 家口로 固着되는 경향이 현저하다. 특히 가족의 分居形態는 결혼을 통한 分嫁를 떠나서도 부부간에서 보다 부모자식간에서 보편화되고 있다. 出産調節이 생활화 되면서 次男 以下를 두는 경우가 지난 25년간 1/2로 減少했음에도 기혼부인중 長男과 같이 살겠다는 경우는 16퍼센트에 불과하고, 실제 자녀와 分居樣相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 學者들은 核家族化로 지칭하지만 核家族의 概念은 家族分化和 規模縮小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核家族에서 核의 의미는 求心體를 뜻하지만 가족은 夫婦中心으로 獨立된 가구를 구성하는 裏面에는 核을 잃은 또 다른 가족이 남게 된다. 이러한 가구는 老人家口, 偏父母 家口, 獨身家口 또는 未婚家口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도 無配偶 家口는 전체 가구중 21퍼센트를 점유하고, 이러한 無配偶 家口중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는 8.4퍼센트, 미혼자녀가 없는 경우는 8.3퍼센트, 그리고 未婚家口는 4.5퍼센트로 구성된다.

주거형태는 생활단위를 뜻한다. 같이 산다는 것은 생활을 위한 기능과 역할이 전제된다. 機能과 役割은 家口員의 數와 特性에 따라서 달라진다. 養育과 教育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이를 위한 支援이 필요하고, 부부가 모두 취업을 한 경우는 서로를 위한 役割補完이 뒤따라야 한다. 이처럼 공동생활은 구성원의 상호협력 및 역할보완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共同體의 構造的 特性과 役割關係는 주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조사에서 家口規模는 평균 3.5명이다. 부부중심으로 생각하면 부부와 평균 1.5명의 자녀를 둔 경우이다. 그러나 부부가 같이 사는 有配偶家口는 평균 3.9명이고, 배우자가 없이 미혼자녀와 같이 사는 無配偶家口는 3.0명, 미혼자녀가 없는 無配偶家口는 2.0명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한 가족이 모두 같이 사는 家族家口가 3/4에 달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나머지 1/4의 가구는 分居形態를 이루고 이러한 分居家口率은 농촌가구중 26퍼센트, 도시가구중 9퍼센트이다. 분거가구

의 平均 分居者는 1.6명으로 이들은 또 다른 독립된 가구를 이룬다. 따라서 家口主 特性은 미혼가구의 가구주가 1/3이 女性이고, 平均年齡은 30세, 就業率은 92퍼센트인 반면 無配偶 家口는 71퍼센트가 여성이 가구주이며, 平均年齡은 偏父母가 50세로 就業率이 81퍼센트, 老人 無配偶는 63세로 就業率이 56퍼센트이다.

이러한 양상을 고려할 때 家口構成은 産業化와 함께 가족의 意圖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就學이나 就業과 같은 生存戰略과 맞물려 지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가족의 분화에서 생산추구를 위한 생산가구는 소비가구를 남겨 놓고나 아니면 두 가구가 각기 다른 생산형태를 이룬다. 이처럼 個人役割의 多樣化와 家庭과 일터의 分離는 住居形態를 多樣化시키면서 血緣的 끈으로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관계는 공간적 분리가 肉體的, 情緒的 그리고 物質的 交換의 弱化, 扶養關係의 弱化로 이어지고 있다.

2. 家口의 生計類型

家口單位가 住居 및 生活 共同體라면 이들의 생활을 어떻게 영위하는지 주요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生活은 生計의 自立與否를 의미한다. 가구단위가 어떠한 형태건 일정한 수입을 갖고 있는 경우는 전체 가구중 87퍼센트에 이른다. 다시 말해서 13퍼센트의 가구는 家族이나 親戚에 依存(9.0%)하거나 政府에 依存(2.8%) 또는 社會團體(0.6%)에 依存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生計依存은 家口類型에 따라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有配偶 家口는 92퍼센트가 생계를 자립하고 있는 반면 偏父母 家口는 약 1/4이 의존가구이고, 其他 缺損家口는 42퍼센트가 의존가구이다.

地域別 가구의 生計類型은 전체 도시가구중 가족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가구는 88퍼센트인데 비해 농촌가구에서는 80퍼센트를 나타내고

있다. 生計를 依存하는 無配偶 其他家口는 농촌이 46퍼센트인데 비해 도시는 29퍼센트이고, 偏父母가구는 농촌이 34퍼센트인데 비해 도시가 22퍼센트이다. 生計依存은 주로 家族이나 親族에 依存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이러한 양상은 농촌의 無配偶 老人中 34퍼센트가 親族依存이고, 11퍼센트는 政府에 依存하고 있는데 비해 偏父母는 親族依存이 13퍼센트이고, 政府依存이 20퍼센트로 대조적이다.

家族 또는 親戚에 의한 生計依存은 주로 미혼자녀와 분거하면서 자녀들이 직장을 통해 번 돈을 부모에게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농촌가구중 약 42퍼센트(孔世權 外, 1992)가 分居家口이고, 이들 가구중 평균 1.7명이 分居者임을 감안하면 親族間 紐帶가 弱化되는 상황에서 생계지원은 父母나 子女에 의한 縱的 關係에서 主種을 이룬다. 그러나 농촌의 偏父母는 자녀들이 어리거나 또는 자녀들이 마땅한 직장을 갖기 어려운 관계로 政府依存이 많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家口形態別 生計類型은 전국 가구중 생활을 自立하고 있는 경우가 87퍼센트이고, 이는 도시가구에서 91퍼센트인데 비해 농촌가구에서는 79퍼센트이다. 이러한 양상은 有配偶 家口중 93퍼센트(도시:94.8%, 농촌:86.5%)이고, 偏父母 家口중 72퍼센트(도시:76.3%, 농촌:61.1%), 無配偶 其他家口중 56퍼센트(도시:60.1%, 농촌:49.7%) 그리고 未婚家口중 85퍼센트(도시 87.7%, 농촌:71.2%)이다. 즉 가구의 생계의존은 배우상태와 가구구조에 의해 달리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家口의 構成形態나 配偶關係는 家族을 論議하는데 주요 관심이 아닐 수 없다. 특히 核家族化가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家口의 共同生活은 부부간의 役割補完을 필수로 한다는 점에서 夫婦關係는 核家族에서 核을 이룬다. 이러한 점은 Blood와 Wolfe(1960)도 부부관계의 構造的 側面(분업, 권력관계 등)과 機能的 側面(경제, 자녀, 정서, 애정 등)의 다각적 접근을 지적하고 있다. 말하자면 부부관계는 家族

生活에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役割協力 뿐만 아니라 情緒的 紐帶와 삶의 質을 위한 共生의 意味를 내포한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 가구는 부부관계가 없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1인 가구는 1960년에 2.3퍼센트에 불과했으나 1991년에는 9.7퍼센트로 증가하면서 無配偶 家口는 전체 가구의 1/4에 달하고 있다. 마치 夫婦와 子女中心의 核家族 형태가 증가하는 이면에는 相對的으로 核이 없는 노인가구, 이혼가구, 사별가구 및 미혼가구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核이 없는 가구의 증가는 情緒紐帶와 役割補完이 어려운 機能的 缺損(생활의존, 정서고립, 개인주의 등)이 증가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부부관계는 教育水準의 向上과 役割의 專門化에서 새로운 關係定立이 요구된다. 즉 家父長制度에서 부부간이 從屬關係를 강조했다면 오늘날은 平等을 기초로 한 友愛關係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 家口는 다양한 形態를 이루고 있다. 家族이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점으로 家口가 構成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役割과 價値를 달리하는 가운데 짜여지는 형태가 그것이다. 따라서 農村家口는 子息을 도시로 보낸 老夫婦만이 사는 경우가 많고, 도시는 부모와 떨어져 就學이나 就業을 위한 分居家口가 散在하고 있다. 말하자면 家口形態는 그 자체만으로 意味를 지니지 않고 성원의 役割과 價値 및 生活를 뜻하며, 이를 기초로 우리는 生活樣式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 가족이 모두 함께 사는 家族家口(family household)는 3/4을 차지하고, 나머지 약 1/4은 分化 및 混合의 形態이다. 물론 한 가족이 모두 함께 살아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가족의 分化와 混合에는 그 裏面에 役割의 不調和로 가족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가족생활이 성원의 協力으로 이루면서 構造의 分化는 役割의 分化와 混亂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 章에서는 構造的 缺損이 機能的 缺損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論議코져 한다.

第5章 缺損家口の 生計類型

産業化에 따른 家族形態의 多樣化에서 과연 어떤 가족이 缺損이고, 어떤 가족이 正常일까? 缺損의 의미는 配偶者와의 解婚이라는 構造的 側面만으로 논할 수 없다. 家族이 獨立된 生活을 기본요건으로 한다면 依存的인 경우는 機能的 缺損이 아닐 수 없다. 그런가 하면 가족의 共同生活이 성원간의 和合과 協力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葛藤과 不和의 지속은 精神的 缺損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本章에서는 현재 政府(가정복지사업)가 福祉對象으로 삼고 있는 偏父家族, 偏母家族 및 少年·少女 家族 등 構造的 缺損과 또 生活自立이 어려운 零細家族과 같은 機能的 缺損중 구조적 결손의 범주를 중심으로 機能的 缺損을 검토코자 한다. 그렇다고 편부모 가족과 같은 구조적 결손이 모두 政府的 保護對象은 아니고, 이들 중 生活自立이 어려운 缺損家族이 福祉對象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政府가 가정복지 대상으로 삼는 構造的 缺損의 범주에 해당하는 家口는 1,449家口로 이는 전체 調査完了 家口(17,275가구)중 8.4퍼센트에 해당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된 가구는 이들 構造的 缺損으로 판명된 家口중 追跡調査가 완료된 889家口로써 조사율은 61퍼센트에 불과하다. 이처럼 低調한 調査率은 결손대상자들이 다양한 生計形態를 유지하고 있어 조사원이 방문당시 대상자를 만날 수 없거나, 또 조사에 應答忌避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조사완료된 缺損家口만을 중심으로 缺損類型別 家口特性, 生活樣相, 缺損原因, 生計實態, 生活問題 및 福祉問題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본 분석에서 缺損家族의 類型別 分類는 다

음과 같다. 첫째는 偏父와 未婚子女로 구성된 가구(偏父家口), 둘째는 偏母와 未婚子女로 구성된 가구(偏母家口), 그리고 父母가 모두 死亡했거나 父母로 부터 遺棄된 未婚子女를 가족 또는 친족이 양육하고 있는 가구(其他 缺損家口) 등이다. 여기서 其他 缺損家口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모와 별거중인 만 20세 미만의 (外)孫子女를 (外)祖父 또는 (外)祖母가 양육하는 경우와 만 20세 미만의 청소년을 其他 親族이 양육하는 경우이다. 이들을 缺損類型別로 보면 偏母家口가 72퍼센트(641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偏父家口는 21퍼센트(186가구), 그리고 其他 缺損家口는 7퍼센트(62가구)로 전체 결손가구중 偏母家口가 약 2/3를 점유한다.

第1節 缺損家口의 一般特性

1. 缺損家口의 地域別 分布

缺損家口의 地域別 分布는 전체 결손가구중 도시지역이 69퍼센트, 농촌지역이 31퍼센트로 구성된다. 이는 1990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의 都市家口率 74.5퍼센트 보다 도시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이다. 缺損類型別 地域分布는 偏父家口중 도시구성율이 66퍼센트인 반면 偏母家口의 도시구성율은 73퍼센트, 그리고 其他 缺損家口의 도시구성율은 42퍼센트로 도시지역에는 偏母家口가 많은 대신 偏父家口와 其他 缺損家口는 농촌에 많은 양상이다. 이러한 양상은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생산연령의 離農現象과 離婚增加, 그리고 離婚婦人의 都市化 現象 등으로 농촌지역에 편부가 자식을 양육하거나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형태가 많다고 할 수 있다.

<表 5-1> 缺損家口の 地域別 分布

(단위: %, 가구)

	편부가구	편모가구	기타 결손가구	전 체
전국	20.9(186)	72.1(641)	7.0(62)	100.0(889)
도시	20.0(123)	76.7(465)	4.2(26)	100.0(614)
농촌	22.9(63)	64.0(176)	13.1(36)	100.0(275)

말하자면 농촌지역에서 解婚한 偏父는 농사를 떠나서 새로운 일 자리를 구하기가 어렵지만 偏母는 농촌 보다 도시에서 다른 일 자리를 구하기가 용이한데서 상대적으로 偏母는 도시에서 높은 구성율을 나타내고, 반면에 偏父와 其他 缺損은 농촌에서 높은 구성율을 나타내고 있다.

2. 缺損對象의 個人特性

2-1. 偏父母의 特性

偏父母 家口の 家口主는 대개(95%)가 偏父母 자신이며, 이들의 平均年齡은 偏父가 45.4세, 偏母가 45.7세로 대부분 40대 후반이다. 편부와 편모의 教育水準은 偏父가 偏母보다 높고, 또 농촌지역이 도시지역 보다 낮은 教育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宗教를 가진 偏父母는 54퍼센트(편부:39%, 편모:58%)로 이는 유배우 가구주의 41퍼센트 보다 높으며, 性別로는 남자는 낮고, 여자가 높은 상반된 양상이다(統計廳, 1993). 즉 宗教生活이 해혼가족의 정서안정에 도움을 준다면 이는 偏父에서 보다 偏母에서 宗教依存率이 더 높음을 엿볼 수 있다. 偏父母의 就業率은 86퍼센트로 偏父보다 偏母가 높다. 이러한 差異는 농촌지역의 偏父가 도시지역 보다 高齡이고, 자녀에 대한 依存率이 높은 반면 偏母는 生活力이 강한 면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表 5-2> 偏父母의 個人特性

(단위: %)

	편부가구			편모가구			전체		
	전국	도시	농촌	전국	도시	농촌	전국	도시	농촌
연령									
-29	0.5	0.8	-	2.4	1.7	4.0	1.9	1.5	2.9
30-39	24.9	25.4	23.8	27.3	30.0	20.0	26.7	29.1	21.0
40-49	47.0	50.8	39.7	36.8	31.1	30.3	39.1	41.7	33.5
50+	27.6	23.0	36.5	33.5	28.9	45.7	32.2	27.7	43.3
평균(세)	45.4	44.5	46.9	45.7	44.9	47.4	45.5	44.7	47.1
가구주율	93.0	90.2	98.4	95.2	97.2	89.8	94.7	95.8	92.1
교육수준									
국민학교 ¹⁾	37.8	23.8	65.1	54.7	44.6	80.7	50.9	40.2	76.6
중·고교	57.3	68.9	34.9	41.8	50.6	19.3	45.3	54.4	23.4
대학이상	4.9	7.4	-	3.5	4.9	-	3.8	5.4	-
종교									
없음	61.1	56.6	69.8	41.6	40.6	44.3	46.1	44.0	51.1
불교	25.9	30.3	17.5	31.6	30.7	33.9	30.3	30.6	29.5
개신교	7.6	9.0	4.8	18.0	20.8	10.9	15.6	18.3	9.3
가톨릭	4.9	4.1	6.3	7.3	6.8	8.6	6.8	6.3	8.0
기타	0.5	-	1.6	1.4	1.1	2.3	1.2	0.9	2.1
취업률	75.3	82.9	72.9	87.7	87.4	91.7	85.6	86.4	84.6
직종									
전문·사무직	17.8	21.7	9.3	16.0	18.0	10.7	16.4	18.9	10.3
판매·서비스직	14.8	19.6	4.7	40.0	47.4	16.4	33.4	41.3	13.3
농·어업	17.8	2.2	51.2	12.9	0.6	45.9	14.0	1.0	47.2
단순노무직	49.6	56.5	34.9	32.1	33.9	27.0	30.9	38.9	20.0
(실수)	(186)	(123)	(63)	(641)	(465)	(176)	(827)	(588)	(239)

註: 1) 무학포함

就業中인 偏父母의 就業職種은 서비스 및 판매직(33.4%)과 단순노무직(30.9%)이 主種을 이루며, 이는 도시에서 이들 두 직종이 80퍼센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농촌에서는 33퍼센트를 나타내고, 대신 농업이 47퍼센트를 차지한다. 偏父 및 偏母의 地域別 就業職種은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도시의 偏父는 취업율이 높고,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농촌의 偏父는 취업율이 낮고, 농업과 단순노무직 외 특별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偏母의 就業率은 일반 유배우부인의 취업율 34퍼센트(孔世權 外, 1992)보다

두배 이상이며, 이는 도시에서는 판매 및 서비스(47.4%)직이, 농촌에서는 농업(45.9%)이 주종을 이룬다.

2-2. 缺損兒童의 特性

부모의 사망이나 유기로 인한 缺損兒童은 도시(41.9%)보다는 농촌(58.1%)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편이다. 이들의 年齡分布는 14세 이하가 1/2을 넘으며(61.3%), 平均 年齡은 12.8세이다. 地域別로는 도시는 14세 이하가, 그리고 농촌은 15세 이상이 많으며, 平均 年齡으로는 도시는 12.4세 인데 비해 농촌은 13.0세로 농촌 결손아동의 연령이 약간 높은 편이다.

<表 5-3> 缺損兒童의 個人特性

	(단위: %)		
	전국	도시	농촌
연령			
- 9	14.5	15.4	13.9
10-14	46.8	53.8	41.7
15-19	38.7	30.8	44.4
평균(세)	12.8	12.4	13.0
성비	93.8	116.7	80.0
교육수준			
국민학교이하	43.3	46.2	41.2
중학교	31.7	38.5	26.5
고등학교	25.0	15.4	32.4
가구주와의 관계			
손자·소녀	79.7	76.0	82.4
외손자·외손녀	15.3	20.0	11.8
조카·조카딸	5.1	4.0	5.9
종교			
없음	62.7	68.0	58.8
불교	20.3	12.0	26.5
개신교	10.2	8.0	11.8
가톨릭	3.4	4.0	2.9
기타	3.4	8.0	-
(실수)	(62)	(26)	(36)

男女別 構成比는 도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많고, 농촌은 여자가 남자보다는 많다. 教育水準은 국민학교 이하가 40퍼센트 이상이며, 地域別로는 도시는 중학교 이하가 85퍼센트에 이르고, 고등학교 학력은 15퍼센트인데 비해 농촌은 중학교 이하 68퍼센트, 고등학교는 32퍼센트로 고등학교 학력자는 도시보다 농촌이 2배 이상 많다. 이들은 대부분 祖父母가 보호하고 있으며, 2/3정도가 宗教를 갖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 缺損兒童의 父母特性

다음은 缺損兒童의 父母에 관한 사항으로 이들의 父母가 모두 생존해 있다면 부모의 현재 年齡分布는 아버지는 40대 이후가, 어머니는 30대 이전이 높은 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平均 年齡을 보면 아버지는 40세, 어머니는 36세이고, 父母 모두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의 연령이 높은 편이다. 教育水準은 어머니 보다는 아버지가 높은 편이며, 宗教를 믿지 않는 경우는 부모 모두 60퍼센트 이상이다. 職業의 경우 아버지는 농·어업(25.0%), 기능직(20.8%), 판매·서비스직(18.8%) 順으로 많고, 어머니의 경우는 1/2이 가사일만 하는 경우이며, 그 다음으로는 농·어업(22.5%)과 판매·서비스직(12.5%)에 종사하는 율이 높은 편이다.

3. 缺損家口의 生活樣相

결손가구의 生活樣相으로는 다음의 몇가지 사항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결손가구의 自家所有率은 49퍼센트로 缺損類型別로는 其他 缺損家口(64.5%)가 가장 높은 율을 차지하고 偏父家口와 偏母家口는 각각 48퍼센트로 비슷한 수준이다. 地域別로는 도시보다는 농촌의 自家所有率이 높고 역시 其他 缺損家口의 自家所有率이 도시·농촌 모두 제일 높다.

<表 5-4> 缺損兒童 父母의 特性

(단위: %)

	아버지			어머니		
	전국	도시	농촌	전국	도시	농촌
연령						
-29	-	-	-	8.7	8.7	8.7
30-39	42.3	52.0	33.3	69.6	78.3	60.9
40-49	55.8	44.0	66.7	21.7	13.0	30.4
50+	1.9	4.0	-	-	-	-
평균(세)	40.2	39.6	40.7	36.3	35.8	37.0
교육수준						
국민학교이하	37.5	30.8	43.3	49.1	42.3	55.6
중·고교	60.7	65.4	56.7	50.9	57.7	44.4
대학이상	1.8	3.8	-	-	-	-
종교						
없음	69.1	64.0	73.3	64.8	57.7	71.4
불교	25.5	28.0	23.3	27.8	30.8	25.0
개신교	1.8	4.0	-	3.7	7.7	-
가톨릭	-	-	-	1.9	3.8	-
기타	3.6	4.0	3.3	1.9	-	3.6
직업						
무직/가사	4.2	9.1	-	50.0	58.8	43.5
전문·사무직	14.6	13.6	15.4	2.5	5.9	-
판매·서비스직	18.8	22.7	15.4	12.5	17.6	8.7
농·어업	25.0	4.5	42.3	22.5	5.9	34.8
기능직	20.8	27.3	15.4	2.5	-	4.3
단순노무직	16.7	22.7	11.5	10.0	11.8	8.7
(실수)	(56)	(26)	(30)	(54)	(26)	(28)

다음은 暖房用 燃料에 관한 사항으로써 기름이나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전체 결손가구중 1/2이상(57.6%)으로써 도시는 66퍼센트, 농촌은 38퍼센트 정도이다. 缺損類型別로는 偏母家口의 경우 가장 높은 율(59.7%)을 보이고 있으며, 其他 缺損家口의 경우 가장 낮은 율을 보이고 있다(41.9%). 地域別로는 도시는 편모가구가, 농촌은 편부가구가 기름, 가스를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는 율이 가장 높아 결손유형별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表 5-5> 缺損家口의 生活樣相

	편부가구	편모가구	기타 결손가구	전 체
자가소유율(%)	47.8	47.7	64.5	48.9
도시	32.5	36.9	38.5	36.1
농촌	77.8	76.1	83.3	77.5
기름, 가스난방(%)	55.4	59.7	41.9	57.6
도시	60.2	68.4	57.7	66.3
농촌	46.0	36.9	30.6	38.2
평균거주기간(년)	14.2	12.0	25.8	13.4
도시	7.2	6.8	12.0	7.1
농촌	28.4	25.9	36.2	27.7
월평균 생활비(만원)	53.0	50.2	36.4	49.8
도시	62.3	54.9	40.2	55.7
농촌	35.0	38.0	33.6	36.7
저축가구율(%) ¹⁾	31.3	42.3	9.7	37.7
도시	30.8	46.1	7.7	41.4
농촌	32.3	32.4	11.1	29.6
저축액(만원)	27.0	28.7	28.3	28.4
도시	31.5	29.7	27.5	29.9
농촌	19.0	25.1	28.8	23.8
부채가구율(%) ¹⁾	33.7	35.9	33.9	35.3
도시	26.9	33.8	26.9	32.1
농촌	46.8	41.5	38.9	42.3
부채액(만원)	702.5	741.7	722.0	732.7
도시	714.3	776.5	1130.0	777.9
농촌	690.3	668.7	547.1	659.3
(실수)	(186)	(641)	(62)	(889)

註: 1) 저축과 부채가 있는 가구의 비율임.

현지역에 居住한 平均期間을 보면 도시는 7.1년이나 농촌은 28년으로 농촌의 居住地 移動率이 훨씬 낮다. 缺損類型別로는 편모가구가 다른 가구보다 평균 거주기간이 짧은 것으로 보아 居住地 移動이 잦았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其他 缺損家口의 경우는 동 가구의 친족의 거주기간으로 실제 同居兒가 親族과 同居한 期間은 8년 정도이다(도시:7.5년, 농촌:8.9년).

月平均 生活費의 規模는 50만원 정도로 도시지역은 56만원인데 비해 농촌지역은 37만원으로 생활비 규모는 역시 도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缺損類型別로는 도시지역은 偏父家口(62.3만원)의 생활비가 가장 많고, 其他 缺損家口(40.2만원)는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농촌의 경우는 其他 缺損家口의 생활비 규모가 가장 크고(38만원), 偏母家口(35만원)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다음은 결혼가구의 유형별 貯蓄 및 負債額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 가구중 貯蓄을 하고 있는 가구는 1/3이상으로 농촌보다는 도시가구중에 저축가구가 많은 편이다. 缺損類型別로는 偏母家口가 저축하는율이 가장 높고, 저축액도 가장 많은 편이다.

地域別로는 다소 차이가 있어 도시는 偏父家口(31.5만원)가, 그리고 농촌은 其他 缺損家口(28.8만원)가 저축을 많이 하고 있다. 負債가 있는 家口도 전체 가구의 1/3이상이나 地域別로는 농촌가구중 부채가구가 더 많으며, 缺損類型別로는 도시는 偏母家口중에, 농촌은 偏父家口중 부채를 진 가구가 많았다.

<表 5-6> 地域別, 缺損類型別 負債事由¹⁾

(단위: %)

	편부가구			편모가구			기타 결혼가구			전 체		
	전국	도시	농촌	전국	도시	농촌	전국	도시	농촌	전국	도시	농촌
피복비	-	-	-	0.4	0.6	-	-	-	-	0.3	0.5	-
식품비	10.0	11.8	8.3	5.5	5.2	6.1	8.0	-	11.1	6.6	6.0	7.4
주거비	24.3	32.4	16.7	27.0	32.2	15.9	16.0	28.6	11.1	25.6	32.1	15.4
교육비	11.4	8.8	13.9	17.2	15.5	20.7	16.0	14.3	16.7	16.0	14.4	18.4
의료비	8.6	14.7	2.8	16.8	14.4	22.0	16.0	28.6	11.1	15.1	14.9	15.4
사업자금	40.0	26.5	52.8	25.0	21.8	31.7	44.0	28.6	50.0	29.3	22.8	39.7
기타	5.7	5.9	5.6	8.21	10.3	3.7	-	-	-	7.1	9.3	3.7
(실수)	(70)	(34)	(36)	(256)	(174)	(82)	(25)	(7)	(18)	(351)	(215)	(136)

註: 1) 부채가 있다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2가지 이상 응답한 경우 모두 포함 되었음.

그러나 平均 負債額은 농촌보다는 도시가구가 더 많았으며, 도시에는 其他 缺損家口(1130.0만원)가, 그리고 농촌은 偏父家口の 負債額(690.3만원)이 제일 많은 편이었다. 이들 缺損家口가 負債를 지게 된 理由로는 事業資金(29.3%)과 住居費(25.6%) 때문이 1/2이상으로, 도시는 住居費 때문에, 그리고 농촌은 教育費 때문에 부채를 진 경우가 가장 높은 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농촌은 教育費 때문에 부채를 진 경우가 40퍼센트나 되고 있어 농촌 결손가구의 教育費 負擔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第2節 缺損家口の 缺損原因

가족은 家族單位 자체에 의해서, 또는 生存條件과의 관계에 의해서 轉移的 再構成(trans-reformation)을 반복한다. 따라서 힐(R. Hill, 1981)은 가족에 대한 접근을 1) 制度的 側面, 2) 構造機能的 側面, 3) 相互作用의 側面, 4) 狀況的 側面 그리고 5) 家族發達の 側面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말하자면 가족은 社會·生物學的 構造物로 다각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점은 가족의 결손요인을 논하는데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러나 가족의 결손은 독립적 생활을 기초로 그러한 생활이 얼마만큼 균형과 조화를 이루느냐는 관점이다. 즉 가족이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면 이러한 공동체는 夫婦關係를 軸으로 相互協力을 통한 生活自立이 원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의 構造, 機能 및 價値는 共同體 成立의 基本要件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 要件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는 점으로 결손도 논의될 수 있다. 즉 夫婦關係를 기초로 하지 않는 가족, 相互協力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족, 그리고 生活自立이 어려운 가족은 정상가족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가족의 본질이 社會·生物學的 複合性을 내포하고 있어 缺損狀

態나 原因糾明은 간단치 않다. 다만 推論的 觀點은 구조적 解婚家族, 기능적 依存家族 그리고 정서적 葛藤家族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하겠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전통가족이 가족중심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가족문제 역시 성원간의 공동노력으로 해결해 왔다면 현대가족은 개인중심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가족문제를 개인의 노력으로 만 해결할 수 없게 되면서 缺損問題는 深化되고 있다는 것이다.

現代家族의 問題는 다음과 같은 점으로 要約할 수 있다. 의료발전에 의한 平均壽命의 延長, 피임보급에 따른 少子女 形成, 기능분화에 따른 役割의 多樣化, 취업형태에 따른 家族分化, 그리고 개인의식 고취로 인한 共同體 意識 弱화 등이 扶養關係를 瓦解시키면서 결손가족이 增加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혼 및 사별의 증가로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수 없거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반면 출산조절과 개인역할의 다양화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부부간 또는 부모자식간의 부양관계가 와해되고 있는 점이다. 이처럼 現代家族의 問題는 특정 요인이 특정 결과로 이어지는 단순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構造, 機能 및 價値의 複合關係에 의한 것으로 家族缺損은 가족 자체에 의한 것이나 사회적 영향에 의한 것만으로 해석할 수 없는 모호성을 내포한다.

1. 缺損類型別 解婚原因

家族缺損은 構造, 機能 및 價値를 따로 떼어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이 세가지 要件이 상호 밀접한 關聯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本節에서 缺損原因은 일부 조사자료를 기초로 構造的 缺損의 結果論的 側面과 이러한 결과가 機能的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에 대해서만 언급코저 한다. 먼저 家口의 構造的 缺損類型은 偏父家口, 偏母家口 그리고 其他 缺損家口로 대별하고, 그 原因을 부부간 死別, 離婚 및 別居(유기, 행방불명 등 포함) 등으로 생각할 때 이들 요

인의 地域別 比較樣相은 <表 5-7>과 같다. 동 표에서 대부분의 구조적 결손은 配偶者의 死別(64.7%)에 의한 것이고, 離婚은 20퍼센트, 別居는 16퍼센트를 점유한다. 이를 地域別로 보면 도시의 경우 配偶者의 死別에 의한 결손은 62퍼센트, 離婚에 의한 결손은 23퍼센트 그리고 別居에 의한 결손은 16퍼센트인데 비해 농촌에서는 배우자의 死別에 의한 결손이 72퍼센트, 離婚에 의한 결손이 13퍼센트 그리고 別居에 의한 결손은 15퍼센트 수준이다.

이러한 樣相은 1984년 韓國女性開發院(金貞子外, 1984)의 조사에서 배우자 死別이 84퍼센트, 離婚이 6퍼센트 그리고 別居가 10퍼센트인 점과 대조적이다. 즉 지난 10년간 缺損原因의 構成率은 離婚이나 別居에 의한 경우가 현저했다는 점이다. 특히 地域別 缺損類型別 缺損原因의 구성은 본조사에서 偏父의 경우 死別이 31퍼센트, 離婚(35.7%) 및 別居(33.0%)가 69퍼센트이고, 도시에서는 死別이 28퍼센트, 離婚(44.3%) 및 別居(27.9%)가 72퍼센트이며, 농촌에서는 死別이 38퍼센트, 離婚(19.0%) 및 別居(42.9%)가 62퍼센트인 반면 偏母는 死別에 의한 경우가 76퍼센트(도시:71.1%, 농촌:90.1%)이고, 離婚에 의한 경우는 13퍼센트(도시:16.0%, 농촌:5.2%) 그리고 別居는 11퍼센트(도시:12.9%, 농촌:4.7%)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양상에서 우리는 이제 가족결손이 배우자의 사별과 같은 不可避한 要因에 의한 것 만이 아니라 이혼이나 별거와 같은 人爲的 要因에 의한 경우가 보편화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偏父는 再婚하는 경우가 많아 缺損原因別 分布는 偏母와 차이가 많지만 편모 역시 도시에서 이혼 및 별거율이 1984년 17퍼센트가 1994년 29퍼센트로, 그리고 농촌에서도 2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증가한 점은 관심을 두어야 할 점이다. 이와는 달리 其他 缺損家口 同居兒의 경우 이들 父母는 45퍼센트만이 死別에 의한 경우이고 55퍼센트가 離婚, 別居 및 遺棄에 의한 경우이다.

<表 5-7> 地域別 缺損類型別 解婚原因

(단위: %, 명)

	편부가구	편모가구	기타 결혼가구	전 체
전 국	(185)	(629)	(58)	(872)
사별	31.4	76.3	44.8	64.7
이혼	35.7	13.0	39.7	19.6
별거	33.0	10.7	15.5	15.7
도 시	(122)	(457)	(26)	(605)
사별	27.9	71.1	50.0	61.5
이혼	44.3	16.0	34.6	22.5
별거	27.9	12.9	15.4	16.0
농 촌	(63)	(172)	(32)	(267)
사별	38.1	90.1	40.6	71.9
이혼	19.0	5.2	43.8	13.1
별거	42.9	4.7	15.6	15.0

이를 地域別로 보면 도시지역에서 1/2이 死別에 의한 경우이고, 離婚이 35퍼센트, 別居 및 其他가 15퍼센트를 점유한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과 달리 41퍼센트가 死別이고, 離婚은 44퍼센트 그리고 別居 및 其他는 16퍼센트를 점유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離婚 및 別居로 인한 자녀유기는 도시보다 농촌에서 높다. 특히 산업화·도시화에서 女性의 都市移動이 많았고, 농촌에서 사는 여성들도 생활조건이 열악한 농촌보다는 도시를 선호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결혼한 부인의 이혼율 증가와도 관련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家族缺損을 유발하는 死別과 離婚의 直接要因은 무엇일까? 본 조사에서 夫婦間 解婚이 配偶者의 死亡으로 인한 경우는 전국적으로 65퍼센트 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配偶者의 死亡이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 보면 62퍼센트가 病死에 의한 것이고, 16퍼센트가 交通事故, 10퍼센트는 其他事故 그리고 12퍼센트는 自殺 및 其他 要因에 의한 것이다. 缺損類型別 死別要因은 偏父의 경우 81퍼센트가 배우자의 사망이 病死에 의한 것이고, 12퍼센트는 自殺 및 기타 要因에 의한

사망이다. 또 偏母는 배우자의 사망이 病死에 의한 경우가 61퍼센트, 交通事故가 17퍼센트, 其他事故가 10퍼센트 그리고 自殺 및 其他要因에 의한 사망이 11퍼센트를 차지한다. 그러나 其他 缺損家口 兒童의 父母는 病死에 의한 사망이 30퍼센트, 事故에 의한 사망이 35퍼센트 그리고 其他 要因에 의한 사망이 35퍼센트로 偏父母와는 다른 樣相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疾病管理나 事故豫防은 壽命延長 뿐만 아니라 缺損豫防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분명하다. 특히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과 부부간 갈등으로 인한 이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家族의 缺損豫防은 夫婦關係에 초점이 모아진다. 여기서 우리는 사망은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혼은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혼은 어떤 원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서 離婚은 夫婦解婚중 20퍼센트를 차지한다. 즉 結손가족에서 다섯 가족중 한 가족이 이혼에 의한 結손이라는 뜻이다. 離婚의 直接原因은 夫婦間 葛藤을 뜻하는 性格差異에 의한 경우가 32퍼센트이다. 다음은 配偶者의 不貞이 20퍼센트, 家族間 不和는 14퍼센트, 經濟問題는 10퍼센트, 扶養忌避는 8퍼센트, 虐待 및 暴力은 6퍼센트 그리고 其他 要因은 11퍼센트로 다양하다.

缺損類型別 離婚原因은 偏父와 其他 缺損은 性格差異와 家族間 不和로 인한 이혼이 각각 過半數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偏母는 配偶者의 不貞(29.0%)과 性格差異(26.9%)가 過半數를 차지한다. 缺損類型別 地域別 死別 및 離婚의 原因은 도시지역의 偏父중 配偶者의 死別로 인한 경우는 91퍼센트가 病死로 인한 것이며, 離婚한 偏父의 경우, 그 離婚原因은 性格差異(44.7%)와 家族間 不和(16.5%)가 대부분이다. 농촌지역의 死別한 偏父중 2/3는 그 배우자가 病死한 경우이고, 離婚한 경우는 家庭不和(26.3%), 性格差異(18.4%) 및 配偶者의 不貞(18.4%)

등의 이유로 이혼을 한 것이 대부분이다. 都市地域 偏母중 남편이 사망한 경우 그 남편의 死亡原因은 62퍼센트가 病死로 인한 경우이며, 離婚으로 인한 편모의 離婚事由는 配偶者의 不貞(28.9%)과 性格差異(28.1%)가 대부분이다.

<表 5-8> 缺損類型別 死別原因 및 離婚事由

(단위: %)

	편부가구	편모가구	기타 결손가구	전 체
사별원인	(58)	(472)	(23)	(553)
병사	81.0	61.4	30.4	62.2
교통사고	3.4	17.4	17.4	15.9
기타사고	3.4	10.4	17.4	10.0
기타	12.1	10.8	34.8	11.9
이혼·별거사유	(123)	(145)	(32)	(300)
배우자의 부정	11.4	29.0	9.4	19.7
학대, 폭력	4.9	8.3	3.1	6.3
성격차이	36.6	26.9	34.4	31.7
부양기피	6.5	8.3	9.4	7.7
가족간 불화	19.5	7.6	18.8	13.7
경제적 문제	11.4	9.0	12.5	10.3
기타	9.8	11.0	12.5	10.7

농촌지역 편모중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편모의 경우 남편이 病死한 율은 60퍼센트가 된다. 그러나 其他 缺損家口 兒童의 父母의 死別 및 離婚 原因은 편부모와 달리 지역별 차이가 현저하다. 도시지역에서는 病死로 인한 사별이 46퍼센트인 반면 농촌지역은 其他 原因(자살 및 기타 사망)이 1/2을 점유하고, 이혼은 도시지역에서 配偶者 不貞(23.1%)과 經濟的 問題(23.1%) 및 其他(23.1%)가 많은 대신 농촌지역은 性格差異(52.6%)가 대부분이다. 물론 其他 缺損家口 아동의 부모는 사례수의 제약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렵지만 偏父母의 경우보다

가족이 解體되기전 더 많은 問題를 안고 있었음을 類推할 수 있다.

<表 5-9> 地域別 缺損類型別 死別原因 및 離婚事由

(단위: %)

	편부가구		편모가구		기타 결손가구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사별원인	(34)	(24)	(319)	(153)	(11)	(12)
병사	91.2	66.7	62.1	60.1	45.5	16.7
교통사고	-	8.3	18.5	15.0	18.2	16.7
기타사고	2.9	4.2	11.0	9.2	18.2	16.7
기타	5.9	20.8	8.5	15.7	18.2	50.0
이혼·별거사유	(85)	(38)	(128)	(17)	(13)	(19)
배우자의 부정	8.2	18.4	28.9	29.4	23.1	-
학대, 폭력	2.4	10.5	8.6	5.9	-	5.3
성격차이	44.7	18.4	28.1	17.6	7.7	52.6
부양기피	9.4	-	5.5	29.4	15.4	5.3
가족간 불화	16.5	26.3	7.8	5.9	15.4	21.1
경제적 문제	10.6	13.2	10.2	-	15.4	10.5
기타	8.2	13.2	10.9	11.8	23.1	5.3

다음은 이들 其他 缺損家口 兒童이 현재 生存하고 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떨어져 살고 있는 具體的인 理由는 무엇인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이들 同居兒 父母의 生存與否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52퍼센트가 生存해 있으며, 死亡한 경우는 39퍼센트이고, 生死를 모르는 경우가 10퍼센트 정도이다. 어머니의 경우는 生存해 있는 경우는 68퍼센트, 死亡한 경우는 13퍼센트이고, 生死를 모르는 경우가 19퍼센트나 되고 있다. 地域別로는 死亡한 경우와 生死를 모르는 경우는 농촌보다 도시가 높은 편이다. 이들이 현재 生存하고 있는 부모와 別居하게 된 理由는 아버지의 경우는 기타의 이유로 별거중인 경우가 33퍼센트로 가장 많으며, 地域別로는 도시는 家出과 其他 理由(30.8%)가 가장 많고, 농촌은 其他(35.3%) 및 職場(29.4%)때문에 별거중인 경우가 65퍼센

트나 된다. 어머니의 경우는 再婚이 가장 큰 이유(39.5%)이며, 아버지와
의 별거이유와는 달리 職場때문에 별거중인 율은 5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地域別로 볼 때도 도시, 농촌 모두 再婚이 가장 높은 율을 나타
내고 있다(도시:35.3%, 농촌:42.9%). 父母의 家出로 인한 別居는 어머니
보다는 아버지가, 그리고 농촌보다는 도시에서 그 율이 높은 편이다.

<表 5-10> 其他 缺損家口의 同居兒 父母의 生存與否, 別居理由, 接觸頻度 및
再婚與否 (단위: %)

	아버지			어머니		
	전국	도시	농촌	전국	도시	농촌
부모의 생존여부	(62)	(26)	(36)	(62)	(26)	(36)
생존	51.6	50.0	52.8	67.7	69.2	66.7
사망	38.7	42.3	36.1	12.9	26.9	2.8
모름	9.7	7.7	11.1	19.4	3.8	30.6
부모와의 별거이유 ¹⁾	(30)	(13)	(17)	(38)	(17)	(21)
가출	20.0	30.8	11.8	18.4	23.5	14.3
재혼	23.3	23.1	23.5	39.5	35.3	42.9
직장	23.3	15.4	29.4	5.3	11.8	-
기타	33.3	30.8	35.3	36.8	29.4	42.9
부모와의 접촉빈도 ¹⁾	(32)	(14)	(18)	(49)	(19)	(30)
전혀 연락안됨	37.5	42.9	33.3	59.2	57.9	60.0
연락가능/못만남	25.0	28.6	22.2	22.4	15.8	26.7
가끔 만남	31.3	21.4	38.9	16.3	26.3	10.0
자주 만남	6.3	7.1	5.6	2.0	-	3.3
부모의 재혼여부*	(26)	(13)	(13)	(27)	(15)	(12)
재혼안했음	69.2	69.2	69.2	48.1	60.0	33.3
재혼했음	30.8	30.8	30.8	51.9	40.0	66.7

註: 1) 부모 각각의 생존자만 해당됨.

父母와의 接觸頻度は 전혀 연락이 안되는 경우는 아버지는 38퍼센트 정도인데 비해 어머니는 59퍼센트이며, 만날 수 있는 경우도 아버지는 38퍼센트, 어머니는 18퍼센트로 연락도 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경우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경우 그 율이 더 높다.

한편 1994년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이 실시한 “少年/小女 家庭에 대한 生活實態와 政策課題” 研究結果(金應錫·李尙憲, 1994)는 소년/소녀 가족중 父母가 모두 死亡한 경우는 25퍼센트이고, 모두 生存한 경우는 12퍼센트, 偏母狀態(아버지만 사망)는 58퍼센트, 偏父狀態(어머니만 사망)는 4퍼센트 그리고 生死를 모르는 경우가 1퍼센트 이다. 여기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는 病死가 62퍼센트, 交通事故가 17퍼센트, 其他事故 및 其他要因이 각각 9퍼센트와 8퍼센트이고, 어머니는 病死가 66퍼센트, 交通事故가 14퍼센트 및 其他原因이 14퍼센트 이다. 또 부모가 생존해 있지만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의 경우는 行方不明이 68퍼센트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어머니의 경우는 行方不明이 47퍼센트, 이혼(11.0%) 및 재혼(38.3%)이 1/2에 이른다. 부모의 가출 및 이혼은 아버지의 경우 夫婦葛藤(47.6%)과 經濟的 貧困(17.5%)에 의한 것이고, 어머니의 경우도 經濟的 貧困(36.7%)과 夫婦葛藤(31.0%)이 주요 이유이다.

2. 家族形成 및 解體時期

다음은 이들 결손가구의 결손원인과 관련하여 家族形成 時期와 解體時期를 알아보기 위해 偏父母는 그들의 結婚年齡 및 解婚當時 年齡을, 그리고 其他 缺損의 경우는 同居兒 父母의 結婚 및 解婚當時 年齡을 알아보았다. 이들의 결손원인별 결손대상의 결혼시 연령과 해혼시 연령 및 현재의 연령은 <表 5-11> 및 <表 5-12>와 같다. 먼저 동표에서 缺損類型別 結婚時 平均年齡은 편부가 27세, 편모가 23세 그리고 기타 결손가구 아동의 아버지는 25세, 어머니는 22세이다. 여기서 偏父母의 結婚年齡은 同居兒의 부모보다 많아 동거아의 부모는 무婚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를 缺損原因別로 보면 偏父는 배우자가 死別한 경우가 27.3세, 離婚한 경우는 26.7세 그리고 別居중인 경

우는 27.3세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다. 그러나 偏母는 死別한 경우 22.6세, 離婚 및 別居의 경우는 각각 24.3세와 24.7세로 사별 보다는 이혼 및 별거의 경우 다소 높다. 한편 동거아 아버지의 경우 死別 보다 離婚 및 別居에서 결혼연령이 높은 반면 어머니는 사별 및 이혼 보다 별거에서 결혼연령이 낮다.

<表 5-11> 偏父母家口의 解婚原因別 平均 結婚年齡, 解婚年齡 및 現在年齡
(단위: 세)

	편부가구				편모가구			
	사별	이혼	별거	전체	사별	이혼	별거	전체
결혼연령								
전국	27.3	26.7	27.3	27.1	22.6	24.3	24.7	23.0
도시	27.8	26.9	26.6	27.0	22.9	24.5	24.6	23.4
농촌	26.6	25.8	28.2	27.2	21.9	23.0	25.3	22.1
해혼연령								
전국	44.5	36.9	37.5	39.5	39.8	33.7	33.2	38.3
도시	44.8	36.5	36.8	38.9	38.9	34.1	32.9	37.3
농촌	44.1	38.6	38.3	40.6	41.6	30.7	35.6	40.7
현재연령								
전국	51.9	42.0	42.8	45.4	47.2	40.1	41.3	45.7
도시	52.2	41.8	41.4	44.6	46.7	40.2	41.3	44.9
농촌	51.5	43.0	44.4	46.9	48.4	39.6	41.3	47.6

편부, 편모 및 동거아 부모의 解婚時 平均年齡은 편부가 39.5세, 편모는 38.3세 그리고 동거아의 아버지는 33.1세, 어머니는 29.9세로 편부모 보다는 동거아의 부모가 낮다. 이러한 양상은 이들 동거아들이 어릴 적에 부모를 잃었거나 유기되었음을 의미한다. 缺損原因別로 보면 死別한 편부의 경우 해혼당시 즉, 배우자가 사망할 당시 평균연령은 44.5세이고 死別한 편모의 경우 해혼당시 평균연령은 39.8세이지만 離婚 및 別居時 年齡은 편부는 37세경, 편모는 33세경으로 이혼 및 별거는 남자가 30대 중반에, 그리고 여자는 30대 초기에 이루지고 있음

을 엿볼수 있다. 특히 同居兒는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와 死別當時 연령이 35세이나 離婚 및 別居時 아버지 연령은 31세이고, 어머니의 경우 아버지와 死別時는 32세, 離婚 및 別居時는 각각 29세와 26세로 사별보다 이혼 및 별거가 낮은 연령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地域別 解婚時 年齡은 일반적으로 도시보다 농촌에서 다소 높다. 그러나 偏父의 이혼시 연령은 도시가 36.5세, 농촌이 38.6세이지만 偏母는 도시가 34.1세, 농촌이 30.7세로 오히려 농촌이 빠른 편이다. 이와는 달리 동거아의 부모는 偏父母와 相反된 양상을 나타낸다. 동거아 아버지는 배우자와 死別時 연령이 도시에서 평균 37세이지만 농촌에서는 33세이고, 어머니는 배우자와 死別時 연령이 도시에서 평균 33세이지만 농촌에서는 31세이다. 또 아버지의 離婚時 연령은 도시가 평균 28세, 농촌이 34세인 반면 어머니의 離婚時 연령은 도시가 25세, 농촌이 30세로 死別은 농촌이 빠른 대신 離婚은 도시에서 빠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편부 및 편모의 현재 연령은 45세와 46세이며, 同居兒의 부모가 있다면 부모의 연령은 아버지가 40세, 어머니는 36세로 지역별 해혼양상에 따라서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결혼유형 및 해혼원인별 結婚期間은 <表 5-13>과 같다. 동 표에서 偏父가 結婚當時부터 配偶者와 解婚할 때까지의 기간은 12.8년이고, 偏母의 경우는 15.6년, 그리고 其他 缺損兒童 父母의 결혼기간은 6.0년으로 偏母의 결혼기간이 가장 길고, 其他 缺損兒童의 父母의 경우는 가장 짧아 결혼한지 6년 만에 解婚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를 解婚原因별로 보면 偏父의 경우 배우자와 死別한 경우 결혼기간은 18.3년으로 가장 길고, 離婚 및 別居한 경우는 약 10년 내외이다. 그러나 偏母의 경우 結婚時 부터 死別할 때까지의 기간은 17.4년이며, 離婚 및 別居한 偏母는 9년 내외이다. 이러한 양상은 기타 결혼아동 부모의 경우 解婚原因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 地域別 結婚期間은 도시보다 농촌이 길며, 그 중에서도 農村 偏母의 結婚期間이 가장 길다.

<表 5-12> 其他 缺損家口 兒童의 父母의 解婚原因別 平均 結婚年齡, 解婚年齡 및 現在年齡 (단위: 세)

	아버지				어머니			
	사별	이혼	별거	전체	사별	이혼	별거	전체
결혼연령								
전국	24.8	25.1	26.3	25.1	21.7	21.8	20.2	21.6
도시	25.1	23.9	24.5	24.5	22.1	21.5	*	21.1
농촌	24.5	25.9	*	25.8	21.3	21.9	*	22.1
해혼연령								
전국	35.0	31.7	31.4	33.1	32.0	28.5	25.6	29.9
도시	36.6	27.8	30.5	32.3	33.1	25.3	23.3	29.0
농촌	33.1	34.4	*	33.9	30.8	*	*	30.7
현재연령								
전국	41.7	39.1	39.1	40.2	38.3	35.4	31.8	36.3
도시	42.3	37.2	36.5	39.6	38.8	34.3	29.3	35.8
농촌	40.9	40.4	41.8	40.7	36.8	37.7	36.1	37.0

註: *는 실수가 적어 제외함.

<表 5-13> 缺損類型 및 解婚原因別 平均 結婚期間 (단위: 년)

	편부가구	편모가구	기타 결손가구
전국	12.8	15.6	6.0
사별	18.3	17.4	5.1
이혼	10.3	9.9	6.2
별거	9.8	8.5	6.8
도시	12.2	14.3	5.1
사별	18.4	16.2	5.3
이혼	9.5	10.2	4.1
별거	10.5	8.0	6.8
농촌	13.9	19.0	6.8
사별	18.3	19.9	5.0
이혼	13.0	8.4	8.0
별거	8.7	13.0	-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家族缺損은 夫婦關係와 密接한 關聯이 있음을 뜻한다. 가족이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생활을 영위하면서 이들 關係의 瓦解 내지 訣別은 役割의 不調和 현상을 보이고, 이는 經濟의 貧困, 情緒的 不安 그리고 生活의 混亂으로 이어져 缺損을 초래한다. 다시 말해서 가족결혼은 부부간의 사별, 이혼 및 별거와 같은 構造的 側面的 결혼이 役割混亂, 生活依存 등 機能的 側面과 공동체 유지에 凝集力 弱化和 扶養體系 瓦解 등 價值的 側面으로 이어지면서 생활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왜 나타나고 있을까? 가족문제는 복잡·다양해서 그 원인을 획일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다만 가족이 構造, 機能 및 價值的 複合體라면 산업화에 따른 機能變化와 함께 이러한 세가지 요인이 均衡과 調和를 이루지 못하는 現象을 家族問題라고 하겠다.

第3節 缺損家口の 生計類型

1. 缺損家口の 生計實態

앞 장에서 家口類型別 生計實態를 살펴보았듯이 본 장에서는 缺損家口の 生計實態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構造的으로 缺損인 家口の 機能的 側面的 缺損與否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며, 또한 缺損類型別 生計實態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缺損類型別 生活費 充當方法을 살펴보면 <表 5-14>와 같다. 동 표에서 볼 때 결혼가구중 家族收入으로 생활하는 가구는 67퍼센트에 달하고 외부의 도움을 받는 가구는 약 1/3(33.5%)에 달한다. 生計費 支援은 政府支援이 18퍼센트에 달하고, 家族 및 親族에 의한 支援이 11퍼센트, 그리고 其他 支援이 5퍼센

트에 이른다. 이를 地域別로 보면 도시가구에서 家族의 收入에 의존하는 경우는 70퍼센트, 농촌가구에서는 59퍼센트 이다. 반면에 政府支援에 의한 생활비 충당은 도시가구에서 13퍼센트인데 비해 농촌가구는 27퍼센트로 두배에 이른다. 이로써 가족수입 외에 다른 지원을 받는 경우는 도시가구 보다 농촌가구에서, 그리고 偏父母 家口보다 其他 缺損家口에서 依存的인 경향을 엿볼 수 있다. 특히 其他 缺損家口는 약 30퍼센트가 政府支援을 받고, 親族支援도 26퍼센트에 달한다.

<表 5-14> 地域別 缺損類型別 生活費 充當方法¹⁾

(단위: %)

	편부가구	편모가구	기타 결손가구	전 체
전 국	(224)	(856)	(99)	(1,179)
가족수입	71.9	68.2	39.4	66.5
부모·형제·친척도움	8.9	9.3	26.3	10.7
정부지원	17.0	16.8	28.3	17.8
민간단체·기타	2.2	5.6	6.1	5.0
도 시	(145)	(597)	(45)	(787)
가족수입	77.2	71.4	35.6	70.4
부모·형제·친척도움	8.3	9.2	24.4	9.9
정부지원	11.7	12.2	28.9	13.1
민간단체·기타	2.8	7.2	11.1	6.6
농 촌	(79)	(259)	(54)	(392)
가족수입	62.0	61.0	42.6	58.7
부모·형제·친척도움	10.1	9.7	27.8	12.2
정부지원	26.6	27.4	27.8	27.3
민간단체·기타	1.3	2.0	1.9	1.8

註: 1) 2가지 이상 응답한 경우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는 응답수에 대한 비율임.

缺損家口의 生計類型은 먼저 生計를 自立하고 있느냐, 아니면 依存하고 있느냐로 구분할 수 있고, 依存하고 있다면 이는 다시 部分依存이냐 아니면 全的依存이냐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결손가구의 生計類型은 生活費 充當方法을 중심으로 분류한 것으로 完全自立은 가족의 수입

또는 재산소득(집세, 이자 등)으로 생활하는 경우이고, 部分依存은 가족의 수입과 다른 지원(친족, 정부 또는 기타 지원)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이며, 完全依存은 가족수입은 없이 다른 지원만으로 생활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缺損家口の 生計類型을 <表 5-15>와 같이 분류했다. 동 표에서 결손가족중 가족수입으로만 사는 完全自立은 66퍼센트로 전체 결손가족의 2/3에 해당하며, 가족의 수입과 외부의 도움으로 사는 소위 部分依存은 24퍼센트, 그리고 가족의 수입이 전혀 없이 외부의 도움으로만 사는 完全依存은 10퍼센트에 이른다. 이러한 양상을 地域別로 보면 都市地域의 결손가구는 完全自立이 73퍼센트, 部分依存이 20퍼센트, 그리고 完全依存은 7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農村地域의 결손가족은 完全自立이 1/2을 점유하고, 部分依存은 34퍼센트 그리고 完全依存은 16퍼센트로 지역간 차이를 엿볼 수 있다.

<表 5-15> 地域別 缺損類型別 生活自立與否

(단위: %, 가구)

	편부가구	편모가구	기타 결손가구	전 체
전 국	(186)	(641)	(62)	(889)
완전자립	73.7	67.1	25.8	65.6
부분의존	14.0	26.1	37.1	24.3
완전의존	12.4	6.9	37.1	10.1
도 시	(123)	(465)	(26)	(614)
완전자립	80.5	73.3	23.1	72.6
부분의존	12.2	20.9	38.5	19.9
완전의존	7.3	5.8	38.5	7.5
농 촌	(63)	(176)	(36)	(275)
완전자립	60.3	50.6	27.8	49.8
부분의존	17.5	39.8	36.1	34.2
완전의존	22.2	9.7	36.1	16.0

註: 완전자립: 가족의 수입이나 재산소득으로만 생활하는 경우
 부분의존: 가족의 수입과 기타 다른 지원을 받아 생활하는 경우
 완전의존: 가족의 수입없이 다른 지원으로만 생활하는 경우

또한 결손유형별로는 偏父家口중 가족생계의 完全自立은 74퍼센트로 이는 도시지역 편부가구가 81퍼센트인데 비해 농촌지역 편부가구는 60퍼센트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 偏父家口중 完全依存은 전국이 12퍼센트로, 도시지역 편부가구는 7퍼센트인데 비해 농촌지역 편부가구는 22퍼센트로 구성면에서 농촌지역이 도시지역 보다 3배나 높다. 이와는 달리 偏母家口는 전국적으로 完全自立이 67퍼센트, 完全依存은 7퍼센트로 편부가구 보다 完全自立 및 完全依存率은 낮지만 部分依存率은 높다. 이러한 양상은 地域別로 도시지역 편모가구의 完全自立과 完全依存率은 각각 73퍼센트 및 6퍼센트인데 비해 농촌지역 편모가구는 完全自立이 51퍼센트, 完全依存이 10퍼센트로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기타 결손가구는 가족생계의 完全自立이 26퍼센트에 불과하며, 完全依存이 37퍼센트를 점유한다. 이를 地域別로 보면 도시지역 기타 결손가구의 완전자립과 완전의존은 각각 23퍼센트 및 39퍼센트인데 비해 농촌지역 기타 결손가구의 完全自立과 完全依存은 각각 28퍼센트 및 36퍼센트로 지역간 차이는 크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偏父家口는 生活自立率이 偏母家口나 其他缺損家口 보다 높은 편으로 地域別로도 비슷한 양상이다. 그러나 完全依存率의 경우는 다른 양상을 보여 其他缺損家口가 가장 높은 율을 보이고 있으며, 偏母家口 보다는 偏父家口의 율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其他缺損家口의 경우 完全自立率은 26퍼센트인데 비해 完全依存率은 37퍼센트로 가장 높은 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대개 부모를 잃거나 부모가 자식을 외면한 소년/소녀 가족으로 조부모나 기타 친족에 의해 보호를 받는 極貧對象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가족의 構造的缺損은 그 자체가 機能障碍로 이어지면서 經濟能力을 低下시키고, 그 결과가 貧困問題로 歸結되고 있음은 家族解體와 貧困問題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家族收入 家口

다음은 生活費 充當方法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家族의 收入으로 생활하는 家口를 대상으로 그 家구의 特性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가족의 수입만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缺損家口(完全自立)은 64퍼센트에 달하고, 이는 도시가구에서 69퍼센트, 농촌가구에서는 50퍼센트를 차지한다. 이를 결혼유형별로 볼 때 偏父家口の 生計自立은 75퍼센트(도시:81.3%, 농촌:61.9%)이고 偏母家口는 64퍼센트(도시:68.9%, 농촌:50.6%) 그리고 其他缺損家口는 26퍼센트(도시:23.1%, 농촌:27.8%)이다.

여기서 가족의 수입은 결혼유형에 따라서 다양하다. 가족의 생계를 가구주 혼자 담당하는 경우는 64퍼센트에 달하며, 이는 偏父家口가 71퍼센트, 偏母家口는 62퍼센트, 그리고 其他 缺損家口는 44퍼센트로 其他 缺損家口의 과반수가 수입원이 2명 이상이다. 가족의 生計責任은 약 78퍼센트가 家口主에 의하며, 偏母家口의 약 1/4은 子女에 의해 생활을 영위한다.

<表 5-16> 缺損類型別 家族收入 家口の 全體 缺損家口에 대한 比率 (단위: %)

	가족수입만으로(N=565)				가족수입과 기타방법(N=231)			
	편부	편모	기타결혼	전체	편부	편모	기타결혼	전체
전 국	74.7	63.9	25.8	63.5	14.5	28.2	37.1	26.0
도 시	81.3	68.9	23.1	69.4	13.0	23.8	38.5	22.3
농 촌	61.9	50.6	27.8	50.2	17.5	39.8	36.1	34.2

결혼가구의 生計 主責任者の 職業은 서비스 및 판매직이 29.3퍼센트, 농업(10.5%)을 비롯한 단순노무직(37.0%)이 47퍼센트이다. 또 이들의 從事上 地位는 자영업이 33퍼센트, 상용직이 35퍼센트 그리고 기타 임시직 또는 일용직이 32퍼센트이다.

缺損類型別 生計 主責任者の 就業形態를 보면 偏父家口는 농업(15.5%)을 비롯 단순노무직(46.5%)이 62퍼센트로 대부분이고, 偏母家口는 서비스 및 판매직(35.7%)과 단순노무직(33.3%) 및 사무직(23.6%)이 93퍼센트로 대부분이며, 其他 缺損家口는 농업(43.8%)과 단순노무직(43.8%)이 4/5를 차지한다. 한편 이들 生計 主責任者の 月平均 收入은 71만원으로, 偏父家口는 78만원, 偏母家口 69만원 그리고 其他 缺損家口는 58만원 이다.

이러한 생활비에 대한 자체평가는 1/2 이상이 부족한 상태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缺損類型別로 보면 偏父家口의 48퍼센트, 偏母家口의 53퍼센트 그리고 其他 缺損家口의 56퍼센트가 부족감을 나타내고 있어 其他 缺損家口에서 生活問題가 가장 심각함을 엿볼 수 있다. 缺損類型別 生活樣相은 구축적 결손이 기능적 결손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는 생활의 빈곤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를 동반하는 惡循環의 고리를 생각할 수 있다. 즉 劣惡한 生存條件, 낮은 教育水準 및 貧困의 世襲이 缺損의 原因이 된다면 결손상태는 또 다시 그러한 상황으로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家族收入과 其他 方法으로 지원받아 생활하는 가구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缺損家族중 가족에 의한 經濟的 收入 외에 기타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26퍼센트에 이르고, 이는 地域別로 도시가 22퍼센트, 농촌이 34퍼센트를 차지한다. 缺損家口의 類型別로는 偏父家口가 15퍼센트(도시:13.0%, 농촌:17.5%)에 해당하며, 偏母家口는 28퍼센트(도시:23.8%, 농촌:39.8%) 그리고 其他 缺損家口는 37퍼센트(도시:38.5%, 농촌:36.1%)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들 가족중 생계활동에 참여하는 대상이 2명 이상인 경우가 22퍼센트 수준으로 가족수입만으로 생활하는 가구의 36퍼센트 보다 낮으며, 生計 責任者는 역시 가구주인 경우가 가장 높아 83퍼센트로 가족수입만으로 생활하는 생계자립 가구(78.3%) 보다 높다.

<表 5-17> 缺損類型別 家族收入으로만 生活하는 家口 關聯事項 (단위: %)

	편부가구	편모가구	기타결손가구	전 체
총 수입원수				
1명	71.0	62.4	43.8	64.0
2명+	29.0	37.6	56.3	36.0
생활비 주책입자				
가구주 본인	86.1	75.2	87.5	78.3
자녀	11.7	23.0	12.5	20.0
기타	2.2	1.7	-	1.8
직업 ¹⁾				
전문·사무직	24.1	23.6	6.3	13.2
서비스·판매근로자	14.0	35.7	6.3	29.3
농·어업	15.5	7.4	43.8	10.5
단순노무직	46.5	33.3	43.8	37.0
종사상 지위 ¹⁾				
고용주, 자영업자	33.1	32.7	33.3	32.8
임금·봉급자(상용직)	31.5	36.5	40.0	35.3
임금·봉급자(기타)	35.4	30.9	26.7	31.8
월평균수입 ¹⁾				
-19만원	0.8	1.1	6.3	1.2
20-49만원	16.4	21.4	31.3	20.5
50-69만원	27.9	34.1	37.5	32.7
70-99만원	24.6	20.8	12.5	21.5
100만원+	30.3	22.7	12.5	24.2
평균(만원)	78.4	69.2	57.8	71.0
생활비 충분여부				
충분한 편	14.6	13.4	6.2	13.5
별지장 없는 편	37.2	33.5	37.5	34.5
부족한 편	48.2	53.1	56.3	52.0
(실수)	(138)	(407)	(16)	(561)

註: 1) 생활비 주책입자의 직업, 종사상 지위 및 월평균 수입임.

生計 主責任者の 職業은 농업을 비롯한 단순노무직이 가장 많으며, 특히 偏父家口는 65퍼센트에 이른다. 한편 偏母家口는 단순노무직 (34.2%)가 가장 많고, 다음은 서비스·판매직(27.5%)으로 이 두가지 직

중이 과반수이상이다. 그러나 其他 缺損家口는 농업(36.8%)과 단순노무직(47.4%)이 이들 가족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從事上 地位는 日用雜給 내지 零細自營者임을 생각할 수 있다.

<表 5-18> 缺損類型別 家族收入 및 其他方法으로 生活하는 家口 關聯事項
(단위: %)

	편부가구	편모가구	기타결손가구	전 체
총 수입원수				
1명	84.0	79.0	59.1	77.6
2명+	16.0	21.0	40.9	22.4
생활비 주책임자				
가구주 본인	80.0	83.4	81.8	82.9
자녀	16.0	12.7	13.6	13.2
기타	4.0	3.9	4.5	3.9
직업 ¹⁾				
전문·사무직	13.0	21.6	10.5	19.5
서비스·판매근로자	8.7	27.5	5.3	23.4
농·어업	13.0	16.8	36.8	18.2
단순노무직	65.2	34.2	47.4	38.8
종사상 지위 ¹⁾				
고용주, 자영업자	23.8	25.2	27.8	25.2
임금·봉급자(상용직)	14.3	28.2	22.2	26.2
임금·봉급자(기타)	61.9	46.6	50.0	48.5
월평균수입 ¹⁾				
-19만원	-	8.3	38.9	10.2
20-49만원	45.5	40.1	16.7	38.6
50-69만원	45.5	33.1	33.3	34.5
70-99만원	4.5	10.8	5.6	9.6
100만원+	4.5	7.6	5.6	7.1
평균(만원)	51.3	51.0	37.0	49.7
생활비 충분여부				
충분한 편	8.0	5.4	-	5.2
별지장 없는 편	12.0	21.4	20.0	20.2
부족한 편	80.0	73.2	80.0	74.6
(실수)	(25)	(181)	(22)	(228)

註: 1) 생활비 주책임자의 직업, 종사상 지위 및 월평균 수입임.

이와 관련 生計 主責任者の 月平均 收入은 50만원 수준으로 가족 수입으로만 생활하는 自立家口の 수입인 71만원 보다 훨씬 적은 편이다. 缺損類型別로는 偏父母家口가 51만원 수준이나 其他 缺損家口는 37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데 부족감은 약 3/4에 해당하는 가구에서 호소되고, 이러한 양상을 缺損類型別로 볼 때 偏父家口와 其他 缺損家口는 약 4/5가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3. 政府支援家口

그렇다면 결손가구중 정부보호는 어느 정도나 될까? 앞의 <表 5-14>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결손가구중 政府支援 保護對象은 18퍼센트를 차지한다. 이를 결손유형별로 보면 偏父母 家口는 17퍼센트, 그리고 其他 缺損家口는 28퍼센트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정부 보호대상자의 保護形態를 보면 居宅保護(28.8%) 및 自活保護(46.7%) 등 生活保護가 3/4을 차지하며, 缺損保護는 20퍼센트에 불과하다. 결손유형별 政府支援 樣相은 偏父家口는 自活保護(51.1%) 및 居宅保護(38.3%)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偏母家口는 自活保護(47.2%) 및 缺損保護(27.0%)에서 그리고 其他缺損은 居宅保護(53.1%) 및 自活保護(37.5%)에서 대부분을 점유한다. 그러나 여기서 父子家口에 대한 정부지원은 1995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동 조사를 실시할 당시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재량에 의한 것이었음을 첨언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결손가구에 대한 政府支援은 주로 生活保護의 次元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 결손유형별 役割支援(role support)이나 情緒支援(emotional support)은 매우 微弱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政府支援 내용은 生計費, 養育費 및 教育費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제한적이지만 상담서비스, 주택알선 및 취업알선 등의 기타지원도 있

다. 政府支援의 頻度는 定期的인 경우가 78퍼센트이고, 나머지는 非定期的이며, 이러한 지원이 생활에 도움 정도는 약87퍼센트의 가족에서 肯定的인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결혼가구중 가장 많은 문제를 내포하는 其他 缺損家口는 정부지원이 생활에 큰 보탬이 된다는 경우가 59퍼센트에 이른다.

<表 5-19> 缺損類型別 政府支援 對象 關聯事項

	(단위: %)			
	편부가구	편모가구	기타결혼가구	전 체
선정대상				
거택보호	38.3	21.9	53.1	28.8
자활보호	51.1	47.2	37.5	46.7
결혼보호가정	4.3	27.0	-	19.5
기타	6.4	3.9	9.4	5.1
지원내용 ¹⁾				
생계비 지원	41.5	27.7	47.6	33.0
아동양육/교육비 지원	24.5	46.5	33.3	40.7
기타	34.0	25.7	19.0	26.3
기타 지원내용 ¹⁾				
상담지원	36.0	44.9	47.6	43.7
임대주택 입주우선권	32.0	29.6	28.6	29.9
취업알선 및 사회복지 시설이용 등	16.0	14.3	9.5	13.9
기타	16.0	11.2	14.3	12.5
정기적 지원여부				
정기적	69.2	78.0	86.2	77.6
비정기적	30.8	22.0	13.8	22.4
생활도움정도				
크게 보탬이 됨	37.2	26.1	59.4	32.2
보탬이 되는 편	53.5	60.6	21.9	54.5
별로 보탬이 안됨	9.3	12.2	15.6	12.2
전혀 보탬이 안됨	-	1.1	3.1	1.2
(실수)	(47)	(178)	(32)	(257)

註: 1) 2가지 이상 응답한 경우를 포함하였으며, %는 응답수에 대한 비율임.

다음 <表 5-20>은 生活依存 家口中 政府支援을 받고 있는 가구의 분포를 결손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동 표에서 전국적으로 生活依存 狀態에 있는 결손가구의 政府支援 受惠率은 72퍼센트에 이르며, 이는

<表 5-20> 缺損類型別 生活依存 家口中 政府支援 받는 家口の 比率¹⁾

(단위: %)

	편부가구	편모가구	기타 결손가구	전체(실수)
전 국	81.6	71.6	65.2	72.2(221)
도 시	75.0	62.1	65.0	64.3(108)
농 촌	88.0	85.1	65.4	81.9(113)

註: 1) 생활을 의존한다는 경우는 편부 49가구, 편모 211가구, 기타 결손 46가구임.

도시에서 64퍼센트, 농촌에서 82퍼센트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缺損類型別로 보면 偏父家口가 82퍼센트(도시:75.0%, 농촌:88.0%)이고 偏母家口는 72퍼센트(도시:62.1%, 농촌:85.1%) 그리고 其他 缺損家口는 65퍼센트(도시:65.0%, 농촌:65.4%)로 농촌지역 偏父母 家口の 政府支援 受惠率이 가장 높다. 반대로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가구는 어떠한 경우일까? 이들 가구중 過去 政府支援을 받았던 가구는 14퍼센트에 불과하며, 대부분(77%)이 자활보호 대상이었다. 대상에서 除外된 理由는 정부보호가 소득수준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초과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중 약 1/2이 정부보호를 원하고 있다. 정부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가구중 정부지원을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의 이유는 약 2/3가 “도움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거나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이며, 14퍼센트는 “신청방법을 몰라서”, 15퍼센트는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 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表 5-21> 缺損類型別 政府 非支援 對象 關聯事項

(단위: %)

	편부가구	편모가구	기타 결손가구	전 체
선정경험여부	(89)	(311)	(23)	(423)
선정된 적 없음	92.1	83.0	95.7	85.6
선정된 적 있음	7.9	17.0	4.3	14.4
선정대상명 ¹⁾	(6)	(46)	(*)	(53)
생활보호(거택보호)	16.7	10.9	-	11.3
생활보호(자활보호)	83.3	76.1	*	77.4
기타	-	13.0	-	11.3
탈락이유	(5)	(42)	(*)	(48)
재산, 소득기준 초과	60.0	28.6	-	31.3
부양의무자 규정	20.0	28.6	-	27.1
기타	20.0	42.9	*	41.7
재선정 희망여부	(6)	(50)	(*)	(57)
비희망	83.3	48.0	-	50.9
희망	16.7	52.0	*	49.1

註: 1) 과거에 정부 보호대상으로 선정된 경험이 있는 경우만 해당됨.

*는 실수가 적어 제외함.

<表 5-22> 缺損類型別 政府 非支援 對象이면서 選定經驗 없는 대상 關聯事項

(단위: %)

	편부가구	편모가구	기타 결손가구	전 체
신청경험여부	(81)	(254)	(22)	(357)
신청경험 없음	100.0	96.5	95.5	97.2
신청경험 있음	-	3.5	4.5	2.8
신청하지 않는 이유 ¹⁾	(80)	(242)	(21)	(343)
도움필요 없어서/ 별도움 안될것 같아서	71.3	63.6	57.1	65.0
도움주는 줄 몰라서/ 신청방법 몰라서	10.0	14.9	19.0	14.0
자격기준미달/초과	11.3	16.1	19.0	15.2
신청시기 놓쳐서 등	7.5	5.4	4.8	5.8

註: 1) 정부 보호대상으로 선정된 경험이 없는 대상중 신청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됨.

第4節 缺損家口의 生活問題

配偶者와의 解婚, 父母와의 離別이 構造的 缺損이라면 그러한 결과는 機能的 缺損은 물론 情緒的 缺乏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男便을 잃은 婦人, 婦人을 잃은 男便 그리고 父母를 잃은 子息은 상대방의 몫까지 감당해야 하는 役割의 過重과 情緒의 缺乏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족의 공동생활이 紐帶와 協力을 기초로 하면서 그 均衡의 喪失은 貧困과 葛藤을 내포한다.

1. 生活問題

構造的 缺損은 그와 관련된 많은 問題를 발생시켜 缺損家口의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다. 우선 이들이 실제 생활에 있어 부딪치는 問題는 생계를 책임지던 가족을 잃게 됨으로써 經濟的 困難에 직면하게 되고, 그 외 家事問題, 子女養育上의 問題, 家族扶養 問題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表 5-23> 地域別, 缺損類型別 負擔되는 生活費目¹⁾

(단위: %)

	편부가구			편모가구			기타 결손가구			전 체		
	전국	도시	농촌	전국	도시	농촌	전국	도시	농촌	전국	도시	농촌
피복비	0.5	0.8	-	1.4	1.8	0.5	-	-	-	1.1	1.5	0.3
식품비	23.8	17.1	37.5	20.1	17.7	26.5	20.6	28.6	15.0	20.9	18.1	27.3
주거비	22.8	28.7	10.9	17.9	19.7	13.2	13.2	17.9	10.0	18.6	21.3	12.3
교육비	37.8	37.2	39.1	41.7	43.7	36.5	42.6	35.7	47.5	41.0	42.1	38.6
의료비	8.8	10.1	6.3	7.5	6.2	11.1	11.8	10.7	12.5	8.1	7.2	10.2
공과금/경조사비	4.7	4.7	4.7	8.0	7.6	9.0	7.4	3.6	10.0	7.3	6.9	8.2
기타	1.6	1.6	1.6	3.3	3.3	3.2	4.4	3.6	5.0	3.0	3.0	3.1
(실수)	(193)	(129)	(64)	(702)	(513)	(189)	(68)	(28)	(40)	(963)	(670)	(293)

註: 1) 부담되는 생활비목이 있다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2가지 이상 응답한 경우 모두 포함되었음.

이러한 점에서 이들 결손가구의 生活問題 등을 살펴보았다. 우선 이들 缺損家口에 負擔이 되는 生活費目은 무엇인가 알아본 결과 教育費가 가장 높은 율(41.0%)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食品費(20.9%), 住居費(18.6%) 등이다. 도시·농촌별로도 교육비의 부담이 가장 큰 것은 공통적인 사항이나 그 외 부담되는 비목으로 도시는 住居費를, 농촌은 食品費를 들고 있으며, 그 외 농촌에서는 도시보다 醫療費와 公課金 및 慶弔事費의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缺損類型別로도 비슷한 양상이나 教育費의 경우 농촌 기타 결손가구의 율이 가장 높아 48퍼센트에 이른다.

각 家口類型別 가장 큰 問題는 무엇인가하는 질문에 아무런 문제 없다고 응답한 가구는 도시에 9퍼센트, 농촌에 3퍼센트로 대부분 나름 대로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 중 가장 높은 율을 차지한 것은 經濟問題로 40퍼센트 정도이고, 그 다음은 子女問題(35%), 家族健康問題(11%) 등 이었으며, 도시·농촌별로도 별다른 차이는 없었다.

<表 5-24> 地域別, 缺損類型別 生活에서의 어려움

(단위: %)

	편부가구			편모가구			기타 결손가구			전 체		
	전국	도시	농촌	전국	도시	농촌	전국	도시	농촌	전국	도시	농촌
없음	8.1	9.8	4.8	7.2	9.3	1.7	1.6	-	2.9	7.0	9.0	2.6
경제적문제	32.4	33.6	30.2	41.1	38.7	47.4	39.3	50.0	31.4	39.1	38.1	41.4
자녀문제	29.2	30.3	27.0	36.8	36.7	37.1	26.2	11.5	37.1	34.5	34.4	34.8
가족건강	11.4	9.8	14.3	9.9	9.7	10.3	14.8	15.4	14.3	10.5	10.0	11.7
가족부양·갈등	10.8	9.0	14.3	3.0	3.2	2.3	14.8	19.2	11.4	5.4	5.1	6.2
기타	8.1	7.4	9.5	2.0	2.4	1.1	3.3	3.8	2.9	3.4	3.4	3.3
(실수)	(185)	(122)	(63)	(638)	(463)	(175)	(61)	(26)	(35)	(884)	(611)	(273)

家口類型別로도 모두 經濟問題와 子女問題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 되었으며, 특히 偏母家口의 경우 그 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 외 其他

缺損家口の 경우는 家族健康問題와 家族扶養, 葛藤問題 등도 각각 15퍼센트 정도로 다는 家口類型보다 높은 율을 보였다.

2. 生活에 대한 自體評價

다음은 이들 결손가구가 스스로 평가하는 生活水準과, 현재 생활에 대한 滿足度, 그리고 향후 생활에 대한 展望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결손가구의 生活水準은 自體評價에서 “못산다”는 경우가 62퍼센트 이고, “잘산다”는 경우는 2퍼센트 미만이다. 이를 缺損類型別로 보면 “못산다”는 경우가 편부가구에서 58퍼센트 수준이고, 편모가구는 61퍼센트 그리고 기타 결손가구는 81퍼센트로 기타 결손가구에서 “못산다”는 경우가 가장 많다. 한편 현재 생활에 대한 滿足은 전체 결손가구중 15퍼센트이고, “불만인 편”은 41퍼센트이다. 缺損類型別 生活滿足은 편부가구가 11퍼센트, 편모가구가 17퍼센트 그리고 기타 결손가구는 7퍼센트로, 不滿率은 기타 결손가구가 60퍼센트인 반면 편모가구는 39퍼센트로 차이가 많다.

결손가구의 生活展望은 전체 결손가구중 1/2 이상(54%)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肯定的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은 편모가구가 60퍼센트로 가장 높고, 편부가구는 43퍼센트 그리고 기타 결손가구는 26퍼센트로 가장 낮다. 결국 배우자를 잃은 편부모나 부모를 잃은 소년/소녀는 대부분 가난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생활에 대한 불만은 많지 않다. 또 결손가구라고 모두가 가난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 만은 아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만족하는 경우는 편부에서 10퍼센트를 상회하고, 편모는 17퍼센트에 이른다. 그러나 부모를 잃은 소년/소녀는 조부모나 기타 친족에 의존하거나 또는 그들 만으로 독자적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는 점에서 빈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缺損類型別 生活水準은 편부모의 경우 농촌이 도시보다 못산다는 의식

과 생활에서 不滿 그리고 앞으로의 展望도 밝지 못하다. 그러나 기타 결혼가구는 도시가 농촌에서 보다 못산다는 의식, 생활에서 불만이 많은 대신 앞으로 생활전망은 농촌에서 보다 도시에서 긍정적 면을 나타내고 있다. 또 缺損原因別 生活水準은 사별에서 보다 이혼에서 못산다는 의식, 생활에서 불만 및 앞으로 전망도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양상은 대개 이혼이 결혼초기에 지속적인 부부갈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생활기반이 조성되지 못한 반면, 사별은 상당기간 결혼생활을 지속하다가 발생한 意外的 결과라는 점에서 생활기반이 조성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젊은 층의 離婚은 高齡層의 死別보다 더 많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분명하다.

<表 5-25> 缺損類型別 生活水準, 生活滿足 및 生活展望

	편부가구	편모가구	기타 결혼가구	전 체
	(단위: %)			
생활수준				
잘 사는 편	1.1	2.2	1.6	1.9
보통인 편	41.3	36.7	17.7	36.3
못 사는 편	57.6	61.1	80.6	61.7
생활만족				
만족하는 편	10.8	16.7	6.5	14.8
보통인 편	47.6	44.6	33.9	44.5
불만인 편	41.6	38.7	59.7	40.7
생활전망				
좋아질 것	43.8	59.6	25.8	54.0
그저그럴 것	44.9	34.1	51.6	37.6
나빠질 것	11.4	6.3	22.6	8.5
(실수)	(185)	(639)	(62)	(886)

그렇다면 결혼가구의 生活依存狀態에 따른 生活水準, 生活滿足 및 生活展望은 어떠한가? 생활수준의 自體評價에서 “잘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表 5-26> 地域別 缺損類型別 生活水準, 生活滿足 및 生活展望 (단위: %)

	편부가구		편모가구		기타 결손가구	
	도시	농촌	도시	농촌	도시	농촌
생활수준						
잘 사는 편	0.8	1.6	2.2	2.3	-	2.8
보통인 편	44.3	35.5	38.4	32.4	11.5	22.2
못 사는 편	54.9	62.9	59.5	65.3	88.5	75.0
생활만족						
만족하는 편	10.7	11.1	17.9	13.6	7.7	5.6
보통인 편	50.0	42.9	46.2	40.3	26.9	38.9
불만인 편	39.3	46.0	35.9	46.0	65.4	55.6
생활전망						
좋아질 것	48.4	34.9	59.8	59.1	30.8	22.2
그저그럴 것	40.2	54.0	33.5	35.8	53.8	50.0
나빠질 것	11.5	11.1	6.7	5.1	15.4	27.8
(실수)	(122)	(63)	(463)	(176)	(26)	(36)

대상중 생활의존은 거의 없다. 그러나 가족의 수입으로 생활자립을 하면서 못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현저하다. 결국 잘살고/못살며, 자립하며/의존하는 형태는 잘살기 때문에 자립하고, 못살기 때문에 의존하는 점으로만 歸結되지는 않는다.

缺損類型別 生活水準, 生活滿足 및 生活展望에 대한 각각의 백분율 분포는 편부가구중 가족수입으로 생계를 자립하고 있지만 못산다(36.4%)거나 보통인 편(35.9%)이 72퍼센트로 대부분이고, 못살기 때문에 의존하는 경우는 11퍼센트에 불과하다. 이러한 양상은 편모가구의 경우도 못살거나 보통이면서 생계를 자립하는 경우가 65퍼센트에 달하며, 못살기 때문에 의존하는 경우는 6퍼센트에 불과하다. 그러나 기타 결손가구는 못살기 때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68퍼센트에 이른다.

<表 5-27> 缺損類型別 生活依存 與否別 生活水準, 生活滿足 및 生活展望
(단위: %)

	편부가구(N=185)			편모가구(N=639)			기타결손가구(N=62)		
	완전 자립	부분 의존	완전 의존	완전 자립	부분 의존	완전 의존	완전 자립	부분 의존	완전 의존
생활수준									
잘 사는 편	1.1	-	-	1.9	0.3	-	1.6	-	-
보통인 편	35.9	3.8	1.6	31.0	4.7	0.9	11.3	4.8	1.6
못 사는 편	36.4	10.3	10.9	34.1	21.1	5.9	12.9	32.3	35.5
생활만족									
만족하는 편	9.7	1.1	-	13.8	2.5	0.5	4.8	1.6	-
보통인 편	37.8	5.4	4.3	31.7	10.7	2.2	8.1	9.7	16.1
불만인 편	25.9	7.6	8.1	21.5	13.0	4.2	12.9	25.8	21.0
생활전망									
좋아질 것	36.2	4.3	3.2	42.6	14.6	2.4	6.5	9.7	9.7
그저그럴 것	30.8	8.1	5.9	20.2	10.3	3.6	16.1	16.1	19.4
나빠질 것	6.5	1.6	3.2	4.1	1.3	0.9	3.2	11.3	8.1

缺損家口의 類型別 生活滿足은 생활의존과 관련을 갖고 있지만 대개는 불만 내지 보통의 성향이다. 偏父중 생활자립과 생활만족을 동시에 누리는 경우는 10퍼센트에 불과하며, 이러한 경우는 偏母에서 14퍼센트, 其他缺損이 5퍼센트이다. 또 生活依存 與否別 生活展望은 생활자립의 경우에서 긍정적 기대가 많지만 기타결손은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 즉 편부모는 생활자립과 생활기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가 높지만 기타결손인 소년/소녀는 依存과 懷疑의 성향이 강하다. 우리는 이러한 양상에서 결손가족이 경제적 측면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또 앞으로의 생활도 부유한 것만을 원치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부모를 잃은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기대하고, 배우자를 잃고 자식과 사는 편부모는 자식에 대한 기대도 클 수 있다. 따라서 缺損福祉는 經濟的 支援이 우선될 수 있지만 役割支援 및 情緒支援 역시 경제지원에 뒤질 수 없다.

第5節 缺損家口의 福祉問題

1. 缺損家口의 特徵

缺損家口를 解婚家口만으로 보는 점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偏父, 偏母 또는 無依託 兒童이 생활자립이 어려움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영세가족과 아울러 결손가족의 생활보호를 주요 복지서비스로 여겨왔다. 그렇다면 缺損家具, 즉 解婚家口의 特徵은 어떠한가? 偏父, 偏母 및 其他 缺損家口(無依託 兒童)는 전체 가구중 8.4퍼센트를 점유한다. 또 缺損家口중 偏父家口는 21퍼센트, 偏母家口는 72퍼센트, 其他 缺損家口(無依託 兒童家口)는 7퍼센트로 구성된다.

결손대상의 平均年齡은 偏父가 45.4세, 偏母가 45.7세로 비슷하며, 其他 缺損兒童은 12.8세이다. 이러한 편부(93.0%), 편모(95.2%)는 95퍼센트가 자신이 가구주이며, 缺損兒童은 대부분이 조부모나 친족에 의존하고 있다. 취업율은 편부가 75.3퍼센트, 편모가 87.7퍼센트 그리고 결손아동의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金應錫 등(1994)의 정부가 생계를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장 가족의 追求調査는 이들중 26.4퍼센트가 소년/소녀의 단독가구이고, 취업율은 11퍼센트 임을 밝히고 있다.

편부모 가족은 유배우 가족보다 가난한 상태이고, 이들중 약 1/3이 依存狀態(도시:29.6%, 농촌:41.3%)이다. 生活依存은 政府依存이 17.8퍼센트(도시:13.1%, 농촌:27.3)인 반면 親族依存이 10.7퍼센트(도시:9.9%, 농촌:12.2%)로 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缺損類型別 生活依存은 部分依存이 24.3퍼센트, 完全依存이 10.1퍼센트 그리고 完全自立은 65.6퍼센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生活依存은 결손아동이 74.2퍼센트로 가장 많고, 편모는 32.9퍼센트, 편부는 26.3퍼센트이지만 完全依存은 결손아동이 37.1퍼센트, 편부가 12.4퍼센트 그리고 편모가 6.9퍼센트이다. 결손가족중 생활

의존은 대부분 構造缺損이 機能缺損으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이러한 점은 결혼대상의 대부분이 低學力層으로 구성되고, 單純勞務職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할 때 經濟水準이 낮고 家族生活도 役割補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서 엿볼 수 있다.

2. 缺損類型別 解婚原因

가족결혼은 약 2/3(64.7%)가 배우자의 死別에 의한 경우이다. 그러나 편부는 配偶者의 死別이 31퍼센트에 불과하고, 결혼아동은 45퍼센트인데 비해 편모는 3/4(76.3%)에 달한다. 이러한 양상은 偏父는 再婚이 많고, 缺損兒童은 家庭不和에 의한 家族解體가 많은 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지역별 해혼상태는 離婚 및 別居가 농촌보다 도시에서 많은 離婚母의 도시집중과도 無關하지 않다.

配偶者의 死別은 62.2퍼센트가 病死로 인한 경우이다. 偏父는 부인의 病死로 인한 경우가 81.0퍼센트, 偏母는 남편의 病死로 인한 경우가 61.4퍼센트이다. 그러나 缺損兒童은 父母의 病死는 30.4퍼센트로 교통사고(17.4%) 및 기타사고(17.4%)에서 높은 율을 나타내고 있다. 離婚의 경우는 性格差異로 인한 이혼이 가장 많은 31.7퍼센트를 점유한다. 다음은 配偶者의 不貞(19.7%)이고, 셋째는 家庭不和(13.7%), 넷째는 家庭經濟(10.3%)이다. 性格差異로 인한 離婚은 偏父(36.6%)가 가장 많고, 配偶者 不貞은 偏母(29.0%)에서 가장 많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配偶者 死別이 최근에 이를 수록 病死로 인한 경우보다 交通事故 및 其他事故로 인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급속한 産業化에서 安全對策의 未備로 인한 각종 事故死는 人命損失은 물론 그 결과가 家族缺損으로 歸結된다는 점이다. 또 解婚要因중 離婚 역시 최근에 이를 수록 급속한 增加趨勢이다. 結婚의 自律化에서 離婚에 대한 認識도 높아지면서 결혼초기에 性格差異나 配

偶者 不貞과 같은 요인으로 離婚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夫婦問題가 家族問題의 核心을 이루고 있음을看過해서 안될 것이다.

3. 家族缺損의 豫防 및 對應

결손가족을 論하면서 이러한 가족형성이 意圖的인 것이 아니고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면 이를 위한 豫防과 對應策이 요구된다. 먼저 가족결손이 病死의 경우보다 事故死에 의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면 社會的 安全對策은 물론 개인들의 安全意識 鼓吹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산업화가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인명을 담보로 해 왔다면 물질적 풍요가 인간에게 무엇을 가져 왔는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交通事故 1위, 또는 事故死 1위 등은 그것이 社會指標만이 아니라 주요 가족의 缺損指標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家族缺損의 原因은 事故死만이 아니다. 離婚 및 別居의 增加는 선진국의 事例만이 아니다. 최근 年間 4萬件을 헤아리는 離婚數는 그 累積結果가 缺損家族은 물론 缺損兒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離婚 및 別居의 事由가 대부분 결혼초기에 性格差異나 配偶者 不貞 또는 家庭不和와 같은 것이라고 볼 때 왜 結婚을 하고, 結婚生活를 어떻게 영위해야 하는지에 대한 婚前教育의 必要性和 또 결혼후 “참 부부”, “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結婚教育의 必要性 및 부부문제나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相談프로그램 등의 必要性은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缺損家族의 福祉問題이다. 缺損福祉는 制限的일 수 없지만 救貧보다 自活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自活은 物質支援, 役割開發, 情緒支援 및 役割支援을 통하여 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基盤造成 및 能力開發을 뜻한다. 그것은 救貧福祉가 생활에 일시적으로 도움은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缺損굴레를 벗어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족의 複合性 내지 力動性은 缺損의 豫防 및 對應도 간단할 수 없다. 가족결손을 健康概念에 따라서 構造, 機能 및 價値 등 3차원으로 논의하였지만 실제로는 어떤 경우가 缺損이고, 어떤 상태가 正常인지 구분이 模糊한 경우가 많다. 이는 가족의 構造, 機能 및 價値가 각기 獨立的인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關聯을 갖고, 자체의 문제를 共同으로 해결하는 가운데 결손이 補完되거나 隱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個人的 疾病이 자체의 치료나, 또는 자신도 모르게 치유되는 것과 같다.

이처럼 인간이 家庭를 準據로 家族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음은 家族制度는 원초적 福祉制度로 이는 가족에 의한 추구를 理想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이 늘 健康한 狀態만을 유지할 수 없듯이 家族도 항상 正常的일 수 없다는 점에서 家族福祉는 제한적일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생활이 어려운 가족이나 특정 대상을 위한 물질적 지원은 救貧福祉에 불과한 것이며, 보다 중요한 점은 自立能力 開發과 自立基盤 造成이라 하겠다. 그것은 救貧福祉가 일시적으로 生活에 도움은 줄 수 있을 지라도 근본적 貧困解決에 도움을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第6章 家庭福祉事業의 現況과 問題

第1節 家庭福祉事業의 現況

保健福祉部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家庭福祉事業은 家庭이 돌볼 수 없는 老人, 兒童 및 女性에 대한 施設保護와 아울러 家事役割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의 保育事業, 保護事業 및 健全育成, 여성의 福祉增進, 自立支援 및 活動支援은 물론 노인인의 能力開發, 生活保障, 在家保護 및 福祉增進 그리고 家庭을 대상으로 한 家庭儀禮 및 墓地制度에 관한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가정복지사업은 要保護 對象을 중심으로 한 社會保護 내지 福祉支援과 健全家庭 育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복지사업은 다양한 福祉要求에 대한 對應의 次元에서 보다 일정한 政府豫算과 關聯法내지 規定을 준거로 한정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公共體系라 하겠다. 따라서 서비스 조직은 中央과 市·道, 區·市·郡 및 洞·邑·面에 이르는 行政組織을 기초로 하며, 복지사업 從事員의 대부분은 公務員으로 구성되어 있다.

家庭福祉는 전통적으로 가족의 固有機能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사회발전과 함께 가족의 일부 기능을 사회가 대행하면서 가족생활은 그들의 노력만으로 獨立된 생활이 어렵게 되었고, 또 가족이 돌볼 수 없는 대상을 사회가 보호하기 위한 制度를 福祉制度로 여겨왔다. 이러한 제도는 우선적으로 전체 가족을 대상으로 한 所得保障을 위한 生活保護(公的扶助)·國民年金(公的年金)과 아울러 아동을 위한 少年少女 世帶保護와 母子保護를, 장애인을 위한 生計補助와 就業斡旋을, 그리고 노인을 위한 老齡手當과 雇傭促進 등이 있고, 醫療保障 프로그램은 의

료보험과 의료보호를, 住宅保障은 영구임대주택제도를, 그리고 사회서비스는 相談서비스와 保育서비스 및 在家서비스 등을 생각할 수 있다.

<表 6-1> 對象別 主要 家庭福祉事業

대 상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	사회서비스
아동 및 청소년	생활보호 모자보호 소년소녀	의료보험 의료보호	영구주택	상담서비스 보육서비스 재가서비스
장애인	생활보호 생계보조 취업알선	의료지원 보장구 지원	영구주택	재가서비스 복지서비스 가정봉사제
노 인	국민연금 생활보호 노령수당 고용촉진 경로우대 세계감면	의료보험 의료보호 건강진단 가정간호	영구주택	가정봉사제 탁노서비스 단기보호제 노인교실 노인회관 경노당 지원
여 성	직업보도	의료보험 의료보호	영구주택	상담서비스 윤락자 선도 미혼모 보호 성폭력보호 결혼 서비스
전 체	생활보호 국민연금 세계감면	의료보험 의료보호	주택임대	상담서비스 복지관 이용

그러나 이상과 같은 福祉事業은 어디까지나 家族中心의 問題豫防, 要求充足 및 必要對應이라기 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救貧의 福祉와 問題中心의 事後福祉 및 事例中心의 制度福祉라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본 장에서는 기존 家庭福祉事業을 評價하면서 앞으로 要求되는 가족 자체의 福祉基盤造成과 缺損家庭의 自立支援 및 가족문제의 豫防治療와 같은 機能的 福祉를 어떻게 接木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물론 다양한 가족특성과 복지요구 등을 감안할 때 모든 가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복지사업은 없으리라 본다. 다만 最善의 福祉

는 가족이 자체적으로 自立할 수 있는 福祉增進이고, 次善의 福祉는 복지함양을 위한 문제의 豫防과 治療이며, 窮極의 福祉는 복지능력 상실을 社會가 支援하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1. 家庭福祉事業의 基本方向

정부가 추진중인 家庭福祉의 基本方向은 노인, 아동 및 부녀 등 脆弱階層에 대한 社會保護 내지 家庭保護와 보육서비스 확대를 통한 여성활동의 便益提供, 健全家庭을 위한 올바른 家庭儀禮 誘導, 그리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墓地文化 改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방향에 따라서 兒童福祉는 보육사업의 확대실시, 요보호 아동의 발생예방, 아동의 가정보호 강화, 무의탁 아동의 사회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婦女福祉는 모자가정의 자립지원,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 여성의 능력개발, 피해여성의 사회보호 및 부녀복지 시설 내실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老人福祉는 高齡化 社會에 대비한 자활능력 개발과 가족부양의 확립, 재가복지를 위한 서비스 확대 및 사회보장 체제의 확립 등을 위해 다각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保健福祉部, 1995).

이와 같은 事業方向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측면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는 급속한 산업화과정으로 인한 家族의 分化, 解體 및 逸脫로 가족이 돌볼 수 없는 無依託 對象의 社會保護와 事前豫防이고, 둘째는 가족의 기능축소 및 역할확대에 따른 여성역할의 전환을 위한 保育事業, 셋째는 물질주의 및 개인주의 의식의 팽배에 따른 虛禮虛飾 및 過消費 風潮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家庭儀禮의 定立이고, 넷째는 國土의 效率的 活用을 위한 火葬文化 誘導가 그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행 가정복지는 家族的 차원의 生活改善에서 보다 社會的의 次元에서 生活保護 내지 生活規制의 성격을 지닌다고 하겠다.

2. 家庭福祉事業의 主要內容

2-1. 老人福祉

老人福祉의 기본방향은 所得保障, 醫療保障, 住宅保障 그리고 社會 서비스 등을 통해 安樂한 老後生活을 保障(保健福祉部, 1995)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업은 敬老孝親 意識擴散을 위해 孝행자의 발굴포상, 어버이 날 및 경로주간 설정, 敬老優待制度(공공서비스 요금감면 및 노인 승차권 지급)의 실시이다. 다음은 노인의 奉養意識을 提高하기 위한 각종 稅制惠澤(상속세 및 소득세의 공제와 양도소득세 면제) 부여와 노부모를 모시는 자녀에게 奉養手當 支給, 住宅資金 활증지원이며, 세째는 老後所得 保障을 위한 老齡手當(70세 이상 거택, 시설 및 자활보호자) 지급과 人力銀行(취업상담 및 알선) 설치, 共同作業場 운영이다. 넷째는 健康한 老後生活을 위한 定期健康診斷制度 실시와 在家福祉(가정봉사원 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의 확대 실시와 結緣사업과 경로식당 운영이고, 다섯째는 餘暇善用을 위한 경로당, 노인교실 및 휴양소 설치 지원이다. 여섯째는 각종 老人福祉施設의 運營費 支援과 機能補強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료 양노시설 및 노인요양시설을 정부가 운영함과 아울러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 및 시설보강을 위해 지원한다. 일곱째는 有料老人福祉施設 설치운영으로 이는 개인이나 기업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유료양로원, 유료요양원 및 유료 복지주택의 지도관리 이다.

2-2. 兒童福祉

아동복지의 기본방향은 要保護 兒童의 健全育成, 發生豫防 및 自立 支援을 위한 相談서비스 強化, 施設運營의 內實化 등 다각적 노력을

경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사업은 첫째로 “어린이 날” 기념행사를 통한 愛護思想 고취이고, 둘째는 아동복지위원회를 통한 복지증진, 相談事業의 擴大實施, 迷兒 및 棄兒의 一時保護所 설치운영이다. 셋째는 兒童의 家庭保護로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自立支援과 국내외 입양사업 촉진 및 가정위탁사업 강화이다. 넷째는 兒童施設의 運營 內實化와 운영비 지원이며, 다섯째는 不遇兒童 結緣事業과 兒童自立센터 운영비 지원이다. 한편 保育事業은 저소득 밀집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國公立 保育施設을 설치하며, 직장 및 사업장에 직장 보육시설을, 기타 지역에 민간 보육시설을, 그 외는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保健福祉部, 1995), 보육대상은 만 6세미만의 아동이고, 보육은 단순한 보호 및 양육만이 아닌 교육과 영양, 건강 및 안전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2-3. 婦女福祉

부녀복지의 기본방향은 要保護女性の 福祉增進, 低所得 母子家庭의 自立支援 및 女性の 社會參與 擴大이다. 이를 위한 사업은 첫째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을 위한 相談事業과 윤락여성의 善導事業 및 미혼모 발생예방 및 보호이다. 다음은 母子家庭의 自立支援을 위한 임대주택 우선공급, 생업자금 융자, 취업훈련 확대 및 자녀 교육비 지원이다. 셋째는 婦女福祉施設로 모자보호 시설과 일시 보호시설 운영이고, 넷째는 日軍 慰安婦의 생활안정이다. 그 외는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여성단체의 운영지원 및 각종 봉사활동의 전개 등이다.

2-4. 偏父保護

離婚率 및 死別率의 증가와 함께 모자가정은 정부지원이 있어 왔지만 부자가정은 방치상태 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1995년

부터 부자가정의 經濟的 支援을 통한 生活安定과 子女教育을 도모하고 있다. 父子家庭은 어머니가 없거나 있어도 家事勞動 能力이 없거나 家계운영을 아버지가 담당하는 가정으로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低所得層 父子世帶를 말한다. 이러한 가구는 1994년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12,814세대에 이르고, 이 중 약 1/2이 생활보호 대상이며, 나머지 6,333세대는 저소득층이다. 이들을 위한 政府支援은 자녀의 학비와 양육비 지원, 생업자금융자 및 생활비 지원(모자가정 지원기준 적용)이고 家事支援은 結緣擴大, 정기지원 및 학습지원 등이다(保健福祉部,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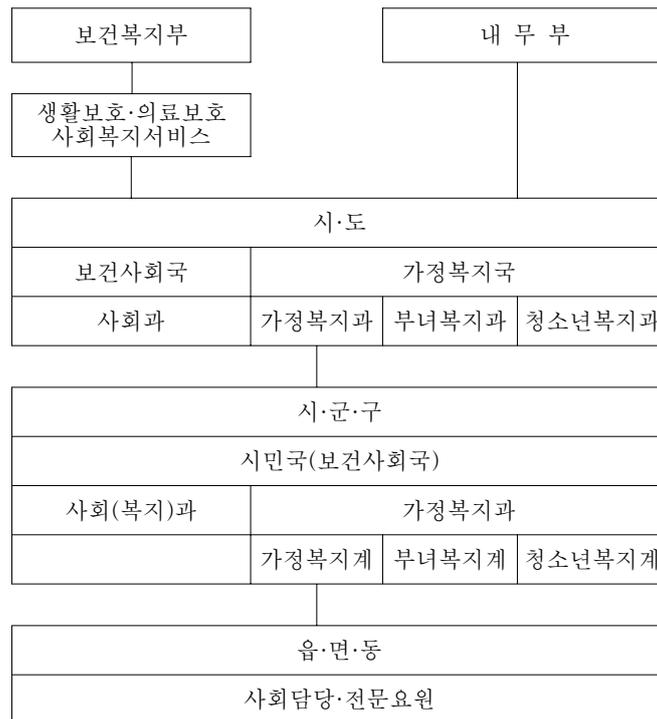
3. 家庭福祉事業 組織

가정복지를 위한 政府組織은 中央의 保健福祉部 家庭福祉審議官室(局)을 중심으로 市·道の 家庭福祉局 및 區·市·郡의 家庭福祉課로 이어진다. 保健福祉部の 가정복지심의관실은 家庭福祉課, 老人福祉課, 兒童福祉課 및 婦女福祉課로 구성되어 있으며, 市·道單位的 가정복지국은 家庭福祉課, 婦女福祉課 및 兒童福祉과(또는 청소년과)로 나누어 관련 업무를 분담하며, 區·市·郡단위는 家庭福祉課를 중심으로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洞·邑·面단위는 社會係 내지는 福祉係에서 모든 복지업무를 관장토록 하고있다.

이러한 조직체계는 가정복지업무가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선조직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逆피라미트(pyramid)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업무에 있어서는 중앙과 市·道, 구·시·군 및 동·읍·면이 달라 中央은 企劃業務를 관장하고, 市·道는 調整業務를 관장하고, 區·市·郡과 洞·邑·面은 執行業務를 관장하고 있다.

가정복지조직은 가정복지와 관련된 업무만을 관장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서비스중 생활보호와 장애복지는 保健福祉部の 社會福祉審議官

室이 관장하고 노인복지, 아동복지 및 부녀복지는 家庭福祉審議官室이 관장하며, 장애인 고용촉진은 勞動部가, 특수교육 및 유아교육은 教育部가, 청소년 육성은 文化體育部가, 그리고 교정복지는 法務部가 주관한다. 이처럼 가정복지업무의 유관부처별 분화는 福祉企劃의 連繫性未備로 일선단위에서 업무집행에 混亂이 가중되고 있다. 그것은 시·도 단위에서 생활보호와 장애복지를 保健社會局이 관장하고, 노인복지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및 부녀복지는 家庭福祉局이 관장하면서 편부모 가정, 노인 독신가정 그리고 소년소녀 세대는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으로 구성되어 업무집행에 혼란이 뒤따르는 점에서 유추된다.



[그림 6-1] 現行 家庭福祉事業의 傳達體系

그러나 가정복지사업은 保健福祉部를 주축으로 綜合企劃이 수립되고, 이는 시·도 및 구·시·군 단위를 통하여 동·읍·면 단위까지 시달되는 上意下達式 형태이다. 이러한 서비스체계는 서비스 공여자의 자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인 개인이나 가족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음은 물론 서비스도 官僚的 性格을 벗어나기 어렵다. 말하자면 對象者 選定에서 부터 實狀을 고려하기 보다 一律的으로 정해진 基準에 의거, 대상이 선정되고, 서비스의 내용 역시 예산에 맞추어 공여되어야 함으로 수혜자는 만족할 수 없는 경우가 많게 된다. 또 이러한 支援體制는 대상별 복지를 기초로 영세가정은 生活保護課에서, 노인가족은 老人福祉課에서, 편모가족은 婦女福祉課에서, 편부가족은 家庭福祉課에서 그리고 소년소녀 세대는 아동복지과에서 관장하며, 구·시·군 및 동·읍·면 단위는 가정복지과 및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정복지가 對象別 問題中心으로 이루어지면서 下部組織은 連繫性이 결여되는 업무중복과 편중 및 혼선도 없지 않다. 業務重複과 業務混線은 생계비 및 교육비 지원이 대상위주로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점이며, 業務偏重은 복지수요 변화에서 특정 부서의 업무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다른 부서는 감소되고 있는데 따른 점이다. 가정복지조직의 또 다른 관심은 기획 및 조정업무에 비해 일선단위의 執行業務의 脆弱性이다. 중앙 및 시·도단위는 몇개의 課를 통합하는 局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동·읍·면은 1-2명의 임시직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모든 복지업무를 관장하면서 복지서비스보다 福祉行政을 위주로 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점은 이제까지 사회복지 내지 가정복지가 救護形態만을 취하면서 서비스의 다양화 및 능률화를 기하지 못한 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第2節 人力 및 豫算

산업화에 따른 생산기능의 기업화 및 복지기능의 전문화 등은 가족생활을 가족의 노력으로만 영위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제 가정은 더 이상 私的 生活單位로만 생각할 수 없고, 社會的 支援이 없이는 가족생활도 어렵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사회는 가족을 보호하며, 가족을 위한, 가족에 의한 생활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복지서비스가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복지는 家族 自體의 努力에서 家族과 社會의 共同努力으로 이루어지는 役割補完으로 轉換이 요구되고, 사회는 이를 위해서 가족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 開發과 이를 공여하기 위한 장치가 뒤따라야 한다.

어떠한 형태의 가정복지 이권 가족을 위한 특정 사업은 이를 위한 일정한 豫算과 人力 그리고 組織을 필수로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가정복지사업의 인력과 예산은 중앙과 지방, 정부와 민간 등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어 정확한 파악이 쉽지 않다. 1993년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의 조사는 市·道 및 區·市·郡 單位の 가정복지분야 공무원은 약 2,241명에 이르고(曹愛姐, 1993), 洞·邑·面 단위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약 3,000명을 배치하고 있다(문경태, 1994). 그러나 동·읍·면 단위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생활보호 업무와 가정복지 업무를 겸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그 외 민간 사회복지 분야에서 종사하는 인력을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1. 從事人力의 特性

가정복지분야 종사인력은 시·도 및 구·시·군 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1993년 현재 2,241명으로 市·道 單位는 약 274명이 근무하고, 區·市·郡 單位는 약 1,967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을 地域別로 보면

直轄市 및 廣域市가 가정복지국 산하 3개과에 각 과별로 평균 7명씩 배치되며, 道廳 單位는 가정복지국 산하 3개과에 각 과별로 평균 5명씩 배치된다. 한편 區·市·郡 단위는 지역별 차이가 많아 서울의 區廳 單位 가정복지과는 10명 이상씩 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郡廳 單位의 가정복지과는 4-5명씩 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가정복지사업은 시·도 및 구·시·군 단위를 중심으로 동·읍·면 단위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지원을 받아 대상지역의 노인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및 부녀복지사업을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을 관장하는 실정에 있다.

가정복지분야에 勤務하는 公務員은 女子가 58퍼센트를 차지하며, 40歲 未滿의 연령과 高等學校 以下の 학력이 각각 62퍼센트를 점유한다(孔世權 外 1993). 이들의 약 1/2은 별정직 공무원이며, 별정직은 여성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정복지분야 공무원의 직급은 7級 以下가 63퍼센트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는 13퍼센트에 불과하며, 전체 공무원 在職期間은 13.5년에 이르지만 現職勤務期間은 3.7년에 불과하다. 이상과 같은 가정복지 공무원의 개인특성을 시·도와 구·시·군을 비교하면 市·道 單位가 구·시·군 단위 보다 男子의 비율(시청:54%, 도청:71%)이 높고, 高齡과 高學歷, 高職級, 長期勤務 및 一般職 公務員으로 구성율이 높다. 가정복지분야 공무원은 약 1/2이 別定職 여성으로 이들은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머지 1/2의 일반직은 평균 1년 반을 주기로 인사이동이 단행되어 가정복지 분야에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가정복지사업은 정부가 추진중인 사업으로만 한정될 수 없다. 현재 가족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여러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복지의 한계는 모호할 수 있지만 정부가 추진중인 가족계획이나 가족보건 및 가족교육도 가족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일선 가정복지요원은 이러한 분야의 지식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 뿐만이 아

나라 가정복지가 가족의 생활개선이나 결손보호에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한 접근은 간단치 않다. 그것은 어느 사회에서나 가정을 私的 생활단위로 여기면서 남의 간섭을 금기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는 관련업무에 대한 專門的 知識 뿐만 아니라 별도의 對人接觸에 관한 技術과 經驗도 요구된다. 이처럼 복지행정은 일반행정과 달리 專門性이 要求되는 분야라 하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일선요원에 대한 훈련을 계속해 왔지만 職務教育을 한번도 받지 않은 대상이 과반수(56%, 1993)에 이르고, 직무교육을 받은 경우는 平均 1회 정도에 불과하다. 가정복지분야 공무원들이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직렬별로 行政職이 약 80퍼센트에 이르며, 구·시·군 단위(50-62%)보다 시·도 단위(60-78%)에서 높다. 한편 職務教育을 받은 공무원들의 教育內容이 업무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은 28.2퍼센트가 “매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고, 53.4퍼센트는 “도움이 된 편이다”라는 의견으로 약 4/5가 職務教育에 대한 肯定的 反應을 나타내고 있다. 가정복지분야 공무원들의 직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배적이며, 이는 교육을 받은 경험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비경험자에서 보다 훨씬 높다(曹愛姐, 1993).

2. 事業別 豫算規模

1995년 가정복지분야의 總 豫算規模는 1,927億원 수준으로 이는 1994년의 1,439억원 보다 약 488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保健福祉部 총 예산 19,839억원에 비하면 9.7퍼센트에 불과하다. 사업별 豫算分布는 保育事業이 전체 가정복지 예산중 43퍼센트를 차지하며, 老人福祉 예산은 32퍼센트, 兒童福祉 예산은 17퍼센트 그리고 婦女福祉 예산이 6퍼센트로 구성되어 있다. 가정복지 豫算概要는 첫째 가정에서 부양하지 못하거나 보호받기 힘든 무의탁 노인, 아동, 부녀 그리고 부랑인의

사회보호를 위한 施設擴充, 運營費 支援, 生計保護 및 醫療保護이며, 둘째는 예방적 복지서비스로써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요보호아동의 교육비지원과 여성취업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보육사업의 확대, 노인의 생활보호를 위한 노령수당 지급, 低所得 偏父母家族과 少年少女世帶를 위한 생계비 및 교육비 지원 등이다.

<表 6-2> 家庭福祉分野 事業別 豫算分布:1995

사업구분	사업예산(백만원)	백분율(%)	비고
가정복지	3,303	1.7	부자복지
보육사업	83,406	43.3	탁아시설
아동복지	32,586	16.9	-
노인복지	61,227	31.8	-
부녀복지	11,581	6.0	모자복지
망향동산	563	0.3	관리지원
전 체	192,666	100.0	-

資料: 大韓民國政府, 1995年度 豫算
財政經濟院, 1995年度 豫算概要

가정복지예산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保育事業(43%)과 老人福祉事業(32%)의 예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먼저 保育事業豫算은 國庫補助(829억원) 외 地方費(944억원) 및 自費負擔(227억원) 등을 포함한 총 2,000억원으로 계정되고 있으며, 이는 施設運營費(1,471억원)와 施設機能 補強費(529억원)로 구성된다. 施設運營費는 종사자의 인건비와 수당, 저소득 아동의 보육비, 교재, 교구 및 차량지원 등을 뜻하며, 施設補強費는 보육시설 신축, 보육시설 증개축, 시설보수 및 장비구입 등을 의미한다.

한편 老人事業豫算은 國庫補助(607억원)外 地方費(311억원) 및 自費負擔(13억원)을 포함한 총 931억원으로 계정되며, 이는 경상보조(723억원)로서 경로당 운영(87억원)과 건강진단(11억원), 노령수당(486

억원), 주간보호(3억원) 및 시설보호(135억원) 등이며, 노인시설 보강비(208억원)는 양로시설 신·증·개축(26억원), 요양시설 보강(43억원), 치매세타 설치(77억원), 노인복지회관 신축(42억원) 및 실버토피아(20억원) 등이다. 이상과 같은 사업예산은 가정복지사업이 주로 要保護 對象者의 生計支援과 施設保護에 편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豫防福祉를 生産福祉로, 그리고 保護福祉를 消費福祉로 간주한다면 보호대상의 계속적 증가는 결국 정부예산의 한계를 초래할 것임은 자명하다.

第3節 家庭福祉의 問題點

가정복지의 문제는 사회변화에 따른 缺損家族의 增加와 福祉要求의 多樣化에 있다.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왜 요보호 대상은 계속 증가하고 있을까? 서구사회가 산업화와 함께 결손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복지제도를 고안해 왔다면 전통복지는 가정복지로 생각할 수 있다. 社會福祉와 家庭福祉는 두 영역간의 구분이 명확치 않다. 카머맨과 칸(Kammerman & Kahn, 1978)은 政府가 가족을 위하여 베푸는 明示的(explicit: 의도적인 탁아복지, 아동복지, 가족상담, 소득보장, 세제혜택 및 주택정책 등) 또는 暗示的(implicit: 간접적인 지역개발, 도로건설 및 이민정책 등)인 모든 施策을 가족정책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 보고 있다.

짐머맨과 모엔 및 스콜(Zimmerman, 1988; Moen & Schorr, 1987)은 가족구성원중 개인을 獨立的이 아닌 集合的으로 다루거나 개인을 다루더라도 가족과 연계시켜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家族政策과 社會政策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여성, 노인 및 장애인을 별개의 문제로 다루는 각종

복지정책은 가족정책이 아니다. 말하자면 가족정책은 특정 대상을 家族과의 關係를 통해서, 또 社會와의 關係를 통해서 다루려는 입장이다.

따라서 家庭福祉事業은 가족의 독립된 생활과 그러한 생활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與件造成과 社會的 適應力을 제고하기 위한 機能調整, 役割開發 및 價値觀 定立 등으로 이를 가족에 의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를 수 있도록 하면서 法的·制度的(가족법, 연금제도, 보험제도 등)으로 가족을 보호하고 해체된 가족의 施設保護와 특수 장애인의 社會保護를 위한 노력이라 하겠다.

그러나 가정복지는 缺損豫防을 병행하지 않는 한 對象爲主의 救護福祉는 한계성이 예측된다. 이러한 점은 (1) 출산력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부양구조가 변하면서 자녀를 갖지 않는 가족에서 扶養關係의 단절이 나타나고, (2) 여성취업은 보육수요와 가사역할의 대행이 요구되고, (3) 사회병리의 증가가 가정파괴로 이어지는 점에서 엇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정복지사업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1. 福祉需要의 多樣化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와 함께 核家族化 현상의 보편화, 무분별한 외래문화의 유입, 個人主義 意識의 팽배, 性意識의 開放化 등이 家族間의 紐帶弱화와 缺損家族 및 要保護 對象을 증가시키고 있다. 결국 가정복지사업이 결손가족의 救護福祉에만 치중한다면 보호대상의 증가로 救護福祉는 限界가 예상되고, 이들 대상의 발생예방을 위한 機能福祉를 추진하면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인해 구호복지조차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進退兩難의 국면에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가정복지가 가족단위의 복지여건 조성 and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사업은 가족단위의 빈곤과 질병

그리고 결손의 해결만으로 한정될 수 없고 빈부격차나 의료수혜 등 社會的 公共 서비스의 機會不均等과 같이 가족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社會的 條件과도 불가분의 관련을 갖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생산기능의 기업화에서 취업이 용이치 못하면 이는 개인은 물론 가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그 외 교육, 의료, 교통, 통신, 문화 등이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면서 이러한 서비스 受惠가 制限의 일 때 가족생활의 質的 向上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2. 法的·制度的 問題

1961년 生活保護法을 필두로 제정되기 시작한 社會福祉關聯法과 政策들은 國民福祉向上의 장기적인 틀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의 時代的·社會的 要求에 따라 急造됨으로써 각 法規間에 連繫性이 없고 支援對象에 대한 業務가 重複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福祉支援體制를 갖고 있지 못하다. 『社會保障에 관한 法律』은 社會保障審議委員會에 관한 사항외에는 그 내용이 없어 법의 제정목적인 社會保障制度的 確立과 그 效率的인 發展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3년 제정된 이래 한차례의 改正作業도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社會福祉 關聯法은 그 目的을 具現하기 위해 각 委員會가 構成되어 있는데 이들 委員會의 所屬은 國務總理, 保健福祉部 長官, 保健福祉部, 그리고 서울市·廣域市·道 등 4가지로 구분된다. 그런데 각 법률의 서열과 각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의 구속력이 서로 맞지 않아 法體系間에 一貫性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社會福祉事業法은 『生活保護法』, 『兒童福祉法』, 『老人福祉法』, 『障礙人福祉法』, 『母子福祉法』, 『영유아복지법』, 그리고 『淪落行爲防止法』 등 7가지 법에 관한

보호 및 복지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이들 법의 根據法으로 볼 수 있는데, 「社會福祉事業法」의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 「老人福祉法」의 노인복지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재정경제원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되어 있어 법의 목적과 각 법에서 구성한 위원회의 위원간의 불일치가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권에서도 알 수 있는데, 「社會保障에 관한 法律」, 「영유아보육법」, 「障礙人福祉法」의 각 위원회는 관련 부처에 대한 협조요청권이 있으나 「社會福祉事業法」의 사회복지위원회는 협조요청권이 없어 關聯法 相互間 그리고 關聯 部處間의 連繫性이 缺如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현재의 對象別 福祉는 동일 대상에 대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체계상 部處別로 分離·管掌됨으로써 전체적인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과 그 시행과정에서 혼돈이 야기될 수 있으며, 업무협조 및 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는 등 效率的인 福祉投資가 되지 않고 있다.

한편 각 법규에 의한 각각의 보호내용도 백화점 나열식으로 종류만 많았지 복지대상의 자립기반 조성과 실익에 도움이 되는 법과 지원정책은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이다. 이 결과 국가적으로 막대한 재원과 복지서비스를 투입하고서도 복지대상자의 삶의 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부모의 가난과 무지가 자녀에게 세습되는 惡循環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현 法과 制度의 問題點을 파악하여 복지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련 행정관계자와 법률가, 사회복지 및 가족복지 전문가의 심도있는 討議와 政策開陣이 요구된다.

社會福祉關聯法은 현재 社會福祉 내지 家庭福祉의 問題點의 파악과 아울러 關聯法 및 制度上의 問題點을 同時에 檢討함으로써 改正 및 制定이 요구된다. 즉 社會福祉 서비스가 家庭이 돌볼 수 없는 對象

이나 缺損家庭을 위주로 한다면 家族解體를 豫防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缺損家族의 자활프로그램, 또 無依託 對象의 보호 프로그램 등이 相互 連繫를 이룰 수 있도록 福祉制度의 開發과,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關聯法의 改正 및 制定이 요구된다. 결국 家庭福祉가 家族을 對象으로 家族福祉를 자체적으로 增進시키기 위한 것 이라면 家族福祉法에는 兒童과 老人 및 女性과 관련 복지내용이 統合되어야 하고, 社會福祉가 가족이 돌볼 수 없는 對象을 위주로 社會가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社會福祉法은 對象別 社會保護의 體系化를 위한 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3. 福祉서비스의 問題

현행 家庭福祉事業은 보건복지부가 설정한 복지내용을 중심으로 이를 시·도, 구·시·군 및 동·읍·면 단위에 이르는 행정조직을 통해서 일정한 대상에게 전달하는 上意下達式 傳達體系로 특징을 지닌다. 다시 말해서 가족의 요구나 필요에 의한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정부가 一方적으로 정한 복지내용과 복지목표를 일정한 豫算의 범위내에서 特定 家族내지 特定 對象에게 전달되는 복지서비스가 그것이다. 이러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은 一線組織의 脆弱性이다. 가정 복지조직은 중앙단위인 保健福祉部(가정복지심의관실)를 중심으로 시·도 단위인 가정복지국과 구·시·군 단위인 가정복지과 등 일정한 조직체계를 이루고 있으나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동·읍·면 단위는 사회계(또는 복지계)를 두고 각종 복지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다양한 복지업무를 제한된 인력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이다.

말하자면 일선 洞·邑·面 單位의 社會福祉 擔當 또는 社會福祉 專門 要員(별정직)은 生活保護를 비롯한 老人福祉, 婦女福祉, 兒童福祉는 물론 각종 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실정에 있어 福祉行政 만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이 실시한 두 조사(윤혜미 외, 1991; 박경숙 외, 1992)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일선 복지요원은 복지업무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유사업무를 겸임하는 경우가 43퍼센트에 이르고 있음은 현행 가정복지사업이 복지서비스라기 보다는 일종의 福祉行政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가정복지사업의 또 다른 문제는 福祉組織의 多元化에 따른 業務의 混亂이다.

<表 6-3> 洞·邑·面 單位의 社會福祉要員의 兼任 業務量

(단위: %)

담당업무의 종류	1991년 조사	1992년 조사
일반 담당업무	56.4	57.4
복지서비스	16.4	18.4
일반행정	15.5	12.8
지역복지	8.4	7.5
보건위생	3.3	3.9

資料: 윤혜미·김근식, 사회복지전문요원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p. 52.

朴慶淑·姜惠奎, 社會福祉事務所 模型開發,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2, p.28.

현행 保健福祉部의 福祉政策은 생활보호를 중심으로 한 公的扶助(사회복지심의관실)와 醫療保險(의료보험국)과 國民年金(국민연금국)을 중심으로 한 社會保險,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社會福祉서비스(家庭福祉審議官室)로 대별된다. 이러한 복지업무중 社會保險은 행정지원에 의한 독립된 조직에 의해서 수행하고 있지만 公的扶助와 福祉서비스는 시·도 단위의 경우 보건사회국 사회과에서 공적부조 및 장애복지를, 그 외 사회복지 서비스는 가정복지국에서 수행하면서 동·읍·면 단위에서는 이러한 모든 업무가 社會係로 취합된다. 결국 가정단위를 기초로 한 유사한 복지업무가 각기 다른 조직을 통해서 계획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일선 동·읍·면의 사회복지요원은 업무의 중복과 혼란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曹愛姐, 1993).

또 가정복지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잦은 人事移動으로 현직 평균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이며, 가정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도 갖지 못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전문지식을 갖지 못한 가정복지분야 공무원은 업무한계의 모호성, 업무내용의 복잡·다양성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가능하다면 다른 직종으로의 轉職을 원하고 있다. 물론 모든 복지업무가 전문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복지서비스는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할 때 현행 가정복지는 명목상의 서비스일 뿐 실재는 행정적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가정복지가 제한된 조직, 인력 및 예산 등을 기초로 選別的 福祉메뉴(selected service menu)만을 전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第7章 家族政策의 方向과 課題

第1節 政策背景

國家나 社會는 家族이 돌볼 수 없는 대상을 위주로 이들을 보호하며, 更生의 터전을 마련하려 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福祉서비스로, 生活支援을 公的扶助로, 또 健康의 보호를 醫療保險制度로 여긴다. 이러한 양상은 産業化와 함께 發展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産業化가 家族의 一部를 雇傭하면서 그대신 가족생활을 돌보는 役割補完의 형태가 아니다. 産業化와 함께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소위 鳧손가족이 늘어나면서 국가나 社會가 이를 保護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취해지는 형태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福祉서비스나 公的扶助 또는 保險制度는 家族缺損과 無依託 對象의 증가와는 無關하다. 家族이 解體되니까 이를 친족도 돌볼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국가나 社會가 保護하는 경우인 것이다.

가족은 獨立된 生活單位로 일정한 構造와 機能 및 價値를 필수로 하며 이러한 要件의 相互補完으로 共同體가 유지된다. 그러나 産業化는 가족의 일부 機能만을 社會가 代行하면서 構造의 分化, 役割의 混亂 및 價値의 乖離가 가족의 해체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社會福祉는 家族福祉에 기초를 두지 않는 한 성공할 수 없고, 家族解體를 豫防하지 않는 한 한계성은 불가피해 진다. 이러한 점에서 家族政策은 家族開發의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고, 家族開發은 社會구조에 따른 가족의 構造, 機能 및 價値의 不均衡 내지 不調和 現象을 調整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산업화에 따른 家族崩壞는 어떠한 점에 緣由하는 것일까? 가족은 사회구성의 기본단위로 사회가 변하면서 가족도 변할 수밖에 없다. 産業化에 따른 家族의 변화는 肯定的인 면과 否定的인 면을 내포한다. 肯定的인 면은 生産機能의 企業化로 家事勞動의 減少, 出産力의 低下로 養育負擔의 輕減, 個人役割의 多樣化로 自律性 增大, 生産體制의 機械化로 物質的 豊饒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또 否定的인 면은 役割의 多樣化, 自律性 增大 및 個人主義 意識 鼓吹로 가족간 紐帶弱화, 葛藤深化, 扶養瓦解 그리고 家庭破壞(이를테면 이혼, 유기, 일탈, 비행 등)의 증가 등 일련의 家族崩壞 현상이다. 이러한 점은 家族制度가 人間生活을 構造化 하기 위한 틀로 이는 사회구조의 변화에서 伸縮性을 지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오늘날 산업화에 따른 家族問題는 다음과 같은 점으로 要約할 수 있다. 첫째는 扶養體系의 瓦解이다. 가족부양은 부부간 또는 부모자식간 서로가 서로를 위한 肉體的, 精神的 그리고 物質的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출산력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은 扶養構造를 변화시키면서 일부 가족은 扶養關係의 단절이 豫告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즉 “多産少死”의 人口類型에서는 많은 자녀수를 두면서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年少 扶養比는 높지만 “少産少死”의 人口類型에서는 적은 자녀수를 두면서 노령화가 진전되어 子息이 父母를 奉養하는 老齡 扶養比는 높아진다. 이러한 점은 출산조절의 보편화와 함께 婦人當 合計出産率(total fertility rate:TFR)은 2.1 이하로 유지되고, 平均壽命은 약 80세에 접근되면서 전체 부부중 1명만의 자녀를 원하는 경우가 약 1/3에 달하고, 또 자녀중 “아들이 없어도 된다”는 경우는 약 1/5 수준(孔世權 外, 1992)에 이르게 되어 父母扶養을 子息에게 依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이다.

家族扶養은 出産力 低下에 따른 父母子息間의 相對的 比로만 생각

할 수 없다. 어느 사회에서나 男兒選好 意識은 家族制度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듯이 한국 가족에서 父系制度는 長男이 부모를 모시고, 딸은 結婚과 함께 出嫁外人으로 삼는 生活慣習에서 비롯되는 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최근에 이를 수록 젊은 부부들은 “아들이 없어도 된다”는 認識이 늘어나면서 자신들의 노후도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겠다는 관념이 증가하고 있음은 父系制度의 修正은 물론 家族扶養도 또 다른 틀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少子女觀 形成과 함께 男兒選好 意識의 弱化는 전통적 家族扶養 體制의 일대 變革이라는 점에서 주요 관심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부모들이 스스로 생활을 자립할 수 있는 경우는 문제가 적을 수 있지만 생활을 의존해야 하는 경우는 문제가 심각해지며, 또 부양이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측면의 부양을 고려하면 이는 사회부양 체제가 미비된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은 1991년 全國을 대상으로 한 標本調査에서 15-49세 既婚婦人중 “아들이 없어도 관계 없다”는 의견이 28퍼센트에 이르고, 그들의 노후는 자녀와 따로 살고 싶다는 의견이 72퍼센트에 이르고 있는 점에서도 유추될 수 있다. “아들이 없어도 관계 없다”는 의견은 부인의 年齡別로 15-24세는 41.4퍼센트, 25-29세는 36.0퍼센트, 그리고 30-34세는 31.3퍼센트에 이르며, 教育水準別로는 대학 이상의 학력에서 34.7퍼센트, 고등학교의 학력에서 34.3퍼센트, 자녀수별로는 자녀가 없는 경우는 46.7퍼센트, 또 아들이 없는 경우는 44.9퍼센트를 나타내고 있다. 婦人特性別 노후에 자녀와의 別居希望은 연령별로 15-24세는 71.9퍼센트, 25-29세는 77.5퍼센트, 30-34세는 76.2퍼센트에 이르며, 教育水準別로는 대학 이상의 학력에서 78.6퍼센트, 고등학교의 학력에서 76.4 퍼센트, 또 자녀를 한명도 두지않은 경우는 72.2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인(90.3%)은 자녀를 원하고, 자녀를 원하

는 부인중 원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에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사실(63.2%)로 생각하며, 자녀를 원치 않는 부인중 원치 않는 이유는 자녀에게 기대할 것이 없거나(40.6%) 자녀양육의 어려움(31.4%) 때문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는 意圖的 또는 非意圖的 家庭破壞 現象의 급격한 增加이다. 여기서 意圖的 家庭破壞는 이혼을 비롯한 人身賣買, 子女遺棄, 性暴行, 落胎, 家庭逸脫 및 人命殺害 등을 뜻하고, 非意圖的 家庭破壞는 각종 産業事故, 災害事故 및 交通事故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家族病理나 社會病理는 그 자체로 만 한정되지 않고, 그 被害는 가족이 堪當해야 하며, 그 結果는 가족해체 및 가족결손으로 이어진다. 최근의 離婚率은 결혼한 부부중 年平均 10퍼센트(연간38,827건:1986-1990)를 상회하며, 離婚事由는 부부간 不和로 인한 것이 약 4/5를 상회하고 있다(統計廳, 1994). 子女遺棄는 연간 약 5천건(保健社會部, 1994)을 상회하며, 이는 未婚母에 의한 경우가 43퍼센트를 차지한다. 한편 각종 사고로 인한 死亡者는 연간 2만명 수준에 이르고, 사고로 인한 障礙者는 20만명에 달한다(統計廳, 1993). 그러나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약 3/4은 男子이고, 15-64세 연령이 4/5에 달하고(統計廳, 1994) 있음은 이들의 대부분이 家計를 責任지고 있는 男子임을 고려할 때 사고로 인한 사망은 엄청난 家庭被害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産業化·都市化에 따른 社會구조의 多變化에서 과연 가족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社會와는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까? 이러한 설명은 가족이 社會의 相對的 構造物이 아닌 人間생활을 構造化한 틀이라는 점에서 간단치 않다. 그러나 오늘날 가족의 변화는 대개 形態의 縮小化, 機能의 專門化 그리고 價値의 個別化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형태는 이른바 大家族(실은 擴大家族)이 少家族(소위 核家族)으로 規模가 縮小되고, 機能은 社會와의 分化에서 役割의

多様化와 専門化가 이루어지고, 價値觀은 家族中心이 個人中心으로 바뀌어진 점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家族制度가 인간 생활을 構造化 한 틀로 변해가는 생활양식과 인간행위를 얼마만큼 포용할 수 있는냐는 점이다. 말하자면 家族制度가 얼마만큼 인간의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냐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家庭破壞는 偶發的 現象이 아닌 制度가 慣習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개인의 欲求를 充足시키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現象일 수 있다.

어느 시대에서나 家庭破壞 現象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家庭破壞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급속한 증가와 아울러 내용 역시 多樣하다. 부모가 낳은 자식을 버리거나 殺害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식이 부모를 버리거나 죽이는 일도 예사롭지 않다. 이러한 양상은 性意識의 開放과 婚前 性行爲의 增加, 落胎技術의 發展과 人工 妊娠中絶의 盛行 등 結婚과 性, 妊娠 그리고 出産이라는 人間 再生産의 倫理的 高리가 崩壞된 점과 無關할 수 없다. 그 뿐만이 아니다. 人類 歷史에서 一夫一妻制와 함께 強姦과 賣淫의 역사는 오랜 것 이지만 오늘날 性은 強要되지 않는 性關係(賣淫 및 不倫 등)가 強要되는 性關係(強姦 및 性暴行 등)를 부추기면서 人間의 尊嚴性 喪失은 물론 家庭破壞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社會構造의 多變化와 함께 자신 만을 생각하는 個人主義 意識이 가정과괴로 이어지고 있음은 간과될 수 없는 점이다.

세계는 가족생활에서 構造, 機能 및 價値의 不全現象이다. 가족의 共同生活은 扶養關係를 기초로 한다. 扶養은 “혼자 살아갈 能力이 없는 사람을 돌봄”을 뜻하지만 가족생활은 서로를 필요한 存在로 여기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가운데 영위한다. 즉 肉體的, 精神的 그리고 經濟的 要件의 交換關係가 그것이다. 따라서 夫婦나 父母子息도 愛情關係나 養育關係만으로 유지되지 않고, 共生關係(cross inter-dependence:CID)의 성격

을 지닌다. 夫婦가 서로를 사랑하고,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것은 사랑때문만이 아닌 精神的 安慰, 役割補完, 그리고 老後依存과 같은 報償心理를 내포한다. 이처럼 共同體 生活은 構造와 機能 및 價値가 맞물려져야 하지만 오늘날 가족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産業化와 함께 構造의 單一化, 機能의 專門化, 役割의 多樣化 및 價値의 個別化는 공동체적 생활에 逆機能的 關係를 지닌다.

家族의 복잡한 交換關係는 일정한 條件이 전제된다. 일정한 條件이란 바로 구조와 기능 및 가치의 複合關係를 말한다. 우리는 核家族 形態가 진전되면서 “집안”이라는 概念이 무너졌음을 인식한다. 집안은 넓은 의미에서 氏族의 門中을 뜻한다. 그러나 오늘날 가족은 부부와 1-2명의 자녀가 같이 살면서 親族은 집안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은 家族이 規模의 縮小만이 아닌 關係의 斷折, 즉 交換의 斷折을 말한다. 결국 祖父母로부터 사랑과 존경에 대한 체험을 갖지 못한 자녀가 가족의 紐帶나 實存的 삶의 理致를 터득할 리 없듯이 이제 가족은 따질 일도 따지지 않는 “感性家族”이 대수롭지 않은 일도 따져야 하는 “理性家族”으로 변하고 말았다(김재은, 1994).

특히 家族機能의 社會化와 함께 가정과 일터의 分離, 가족이 함께 지내는 時間의 短縮은 가족의 統制力 弱화를 의미한다. 엄격했던 家族規範에서 풀려난 自律에는 自制와 責任이 뒤따라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自律에는 個人主義만 조장했다. 自律性 증대와 個人主義 의식은 가족 생활에 양면성을 내포한다. 家父長的 家族制度가 개인에 대한 抑壓으로 개인의 發展을 저해시켰다면 個人主義는 共同生活의 統合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점은 주부들의 役割增大 및 地位向上이 姑婦葛藤과 夫婦離婚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결국 현대가정은 가족 성원이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家族中心의 價値가 각자 役割과 主張을 달리하는 個人中心으로 변하면서 家族互

解의 위험이 높아진 점은 주요 관심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個人들은 家族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정한 指針을 갖지 못한 채 자신만을 생각하는 個人主義가 家族扶養의 忌避내지는 家族解體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가족문제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해체의 증가로 인한 사회보호를 요하는 대상이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선진사회도 産業化와 함께 가족해체로 인한 無依託 對象을 사회가 보호하기 위해 福祉制度를 마련해 왔지만 그것이 理想的인 모델일 수는 없다. 그것은 복지제도가 가족해체의 事後裝置에 불과할 뿐 가족해체를 豫防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家族政策은 논의될 수 있는 것이며, 가족정책은 가족을 더 이상 私的 生活單位로만 생각할 수 없고, 社會發展에 걸맞는 家族開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焦點이 있다.

第2節 政策骨格

1. 概念的 定義

家族政策은 국가가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을 위해, 또는 가족의 요구를 기초로 계획된 각종 施策이나 事業을 뜻한다. 모든 정책이 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가족과 관련된 施策이나 事業은 가족을 위해, 또는 가족의 요구에 의한 경우 보다 국가의 統治나 國益을 위한 경우가 많아 이들 시책이나 사업을 가족정책으로 지칭하기 보다 단위 사업별 정책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은 家族이 社會構成의 기본단위이면서 私的 生活單位라는 점에서 가족의 自律性 保障을 위한 干涉을 禁忌視하는 認識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가족과 관련된

施策이나 事業은 가족생활을 어떻게 영위해야 하느냐는 直接的인 면에서 보다 間接的으로 家族의 保護나 生活支援, 또 秩序維持를 위한 法的 側面이 대부분이다.

家族과 관련된 施策이나 事業은 일반사업과 구분이 명확치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家族政策은 가족의 本質을 고려한 家族中心의 社會政策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가족의 독립된 생활이 일정한 구조와 기능 및 가치를 필수로 한다는 점에서 가족생활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는 점이 그것이고, 가족이 사회구성의 기본단위는 가족과 사회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점에서 사회는 가족을 위해, 또 가족은 사회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점이 그것이다. 말하자면 가족의 독자적 생활을 보장하며, 생활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제공은 물론 문제의 예방과 해결, 더 나아가서 해체된 가족의 사회보호를 포괄한다.

가족정책은 가족이 多機能的 特性和 사회와의 複合關係로 존재하듯 多角的 측면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은 國家政策도 마찬가지 이다. 國家政策이 國民統合과 民生解決 및 生活安定을 목표로 한다면 이러한 점은 家族政策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그렇지만 가족이 사회구성의 기본단위로 존재하듯 가족정책은 국가정책의 하위개념에서 相互補完性을 지녀야 한다. 즉 국가는 가족을 위해서, 또 가족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그것이다. 따라서 가족정책은 국가가 가족을 위해 베푸는 일방적 시책이 아니라 국가와 가족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을 말한다. 즉, 국가는 가족을 保護하며, 국가의 利益이 가족에 還元되어야 함은 물론 가족은 國益을 위해 貢獻하는 有機的 關係가 그것이다.

그러나 가족정책에 대한 一般的 認識은 아직도 零細家族의 生活保護, 缺損家族의 生活支援 그리고 老人, 兒童 및 婦女를 대상으로 한

각종 福祉서비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家庭福祉事業은 對象爲主나 問題爲主 또는 手段爲主로 이루어지면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개발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認識은 전통적 가족중심의 생활에서 家庭을 私的 생활단위로 여기고 干涉을 禁忌視하는 점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국가는 가족을 干涉하는 施策보다 가족의 保護나 問題解決에 치중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은 가족의 노력만으로 생활이 어렵게 되면서 가족정책은 가족의 생활보호나 역할지원의 형태가 취해지기 시작했다.

어떻든 가족이 獨立된 生活單位로 자체적인 생활이 어렵다면 이는 主要 問題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왜 依存的 家族이 늘어나고 있을까? 의존적 가족은 생산기능의 사회화에서 취업이 어렵거나 사회적 영향에 의한 家族缺損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오늘날 가족문제는 가족에 의한 경우보다 사회적 영향에 의한 경우가 많아 이제 가족문제는 더 이상 私的 問題로만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오늘날 가족정책은 明示的 또는 暗示的인 兩面性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Kamerman & Kahn, 1978; Zimmerman, 1992). 明示的 측면은 意圖的 측면이고, 暗示的 측면은 間接的 측면이다. 즉 干涉을 배제하면서 保守性을 유지하려는 家族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接近이 그것이라 하겠다.

2. 政策目標

가족정책의 基本目標은 가족이 사회구성의 基本單位인 동시에 인간의 再生産 單位라는 인식에서 獨自的인 생활과 생활에서 自律性 保障 그리고 생활의 質을 提高하기 위한 점에 기초를 둔다. 이를 위해 먼저 法的 制度的 側面은 獨自的 生活을 위한 住居의 自由(分家 및 分居 등), 個人의 尊嚴(平等 및 權利 등), 그리고 生活의 自由(結婚과 出産, 慣習 및 儀禮 등)를 保障한다. 다음은 構造·機能的 側面에서 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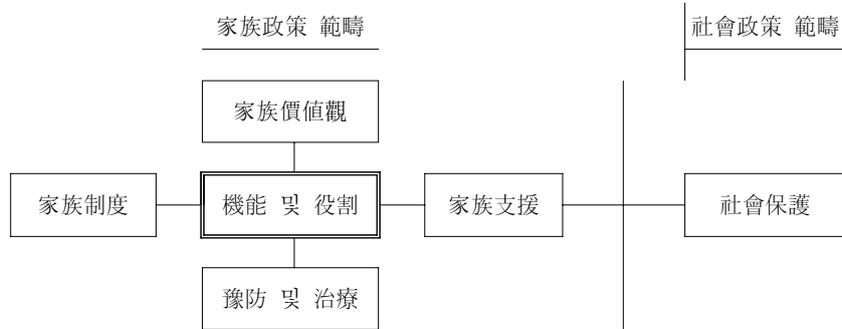
活의 質을 높이기 위한 機能調整, 役割開發 및 價値定立과 生活與件造成, 問題의 豫防 및 治療 등 生活改善을 誘導한다. 셋째는 가족의 解體와 缺損의 경우 이들 가족을 社會가 保護하면서 自活與件을 造成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은 가족의 獨自性 및 自立性을 保障하면서 安定된 生活與件的 造成, 社會的 適應力 提高, 質的 生活의 誘導에 기초를 둔 것이다.

3. 基本骨格

家族政策의 基本骨格은 전술한 바와 같은 基本目標을 토대로 한다. 즉 급속한 社會변화에 따른 社會적 適應力을 提高하면서 生活의 安定과 質的 生活을 誘導하며, 問題의 豫防과 治療를 통한 해체를 防止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러나 실제 가족정책은 이러한 점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模糊性을 지닌다. 따라서 象徴的 意味를 내포하는 政策目標의 客觀化와 一般的 合意導出, 政策手段의 開發 및 接近戰略의 實現性은 매우 중요시 된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정책은 먼저 家族의 本質이 고려되어야 한다. 家族의 本質은 共同生活을 기초로 하고, 共同生活은 扶養關係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은 가족이 原初的 福祉의 單位로 가족정책은 가족복지를 근간으로 基本骨格이 형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음은 가족의 獨立的 생활이 構造와 機能 및 價値를 필수로 한다는 점은 이러한 요건의 복합關係를 가족정책이 어떻게 調整함으로써 생활의 安定과 質的 生活을 도모하도록 하느냐는 점이 주요 觀點인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시 되는 점은 家族價値 이다. 가족가치는 包括性을 내포하지만 家族이 關係를 통해서 이루고, 生活이 關係를 기초로 영위된다는 점에서 가족가치는 關係의 價値로 생각할 수 있다. 인간이 結婚을 통해 家族을 이루고, 子女를 낳아 키우며, 서로간의 協力으

로 共同生活을 영위하는 점을 家族으로 본다면 왜 結婚을 하고, 子息을 낳고, 같이 사는 지에 대한 일반적 認識이 그것이다. 그러나 家族價値는 이러한 점 만으로 局限되지 않는다. 인간이 結婚과 出産을 宿命的인 것이 아니고, 選擇的인 것이라는 인식과 性を 再生産의 道具가 아닌 쾌락의 道具라는 인식이 보편화 되어 問題가 되고 있다면 이는 정책적 관심이 아닐 수 없다.



註: 여기서 家族制度는 국가가 가족을 보호하며, 가족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法的, 制度的 支援을 뜻하며, 家族 價値觀은 가족의 공동체 의식과 부양의식 함양을 위한 規範定立을 의미한다. 가족의 기능 및 역할은 사회구조의 다변화와 함께 가족과 사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機能調整(출산조절, 취업고취, 교육확대, 부양지원 등) 및 役割開發(가사분담, 자녀교육, 건강증진, 직능개발 및 역할확대 등)을 도모하며, 가족문제의 예방 및 치료는 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여 가족 자체에 의해서나 또는 가족과 사회의 공동노력으로 문제의 예방과 치료에 기여함을 뜻함. 家族支援은 결혼가족에 대한 생계지원, 역할지원 및 정서지원은 물론 일반가정에 대한 역할지원(보육지원, 간병지원, 가사역할 및 교육지원 등)을 포괄한다. 社會保護는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아동, 노인 및 부녀를 비롯한 무의탁 대상에 대한 생활보호는 물론 정신질환자, 특수장애자, 특수요양자, 부랑아 및 마약중독자 등의 管理保護 등 施設保護를 뜻한다.

[그림 7-1] 家族政策의 基本骨格과 部門別 相互關係

셋째 가족의 독립된 생활은 일정한 기능과 역할을 필수로 한다. 가족기능은 (1) 生産機能, (2) 出産機能(再生産 機能), (3) 教育機能, (4) 扶養機能을 필수로 하며(Murdock, 1949; 한남제, 1994), 機能遂行에는 成員의 役割과 社會와의 關係가 요구된다. 그러나 산업화에 따른 가족의 기능분화는 構造分化, 役割混亂 및 價値乖離 등이 동반되면서 가족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가족의 변화에 의한 가족문제, 가족문제로 인한 가족해체, 가족해체에 따른 무의탁 대상의 증가는 家族問題만이 아닌 주요 社會問題가 아닐 수 없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기본골격은 [그림 7-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政策骨格은 가족이 社會構成의 基本單位인 동시에 獨立된 生活單位라는 가족의 本質과 機能 및 役割 그리고 價値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가족정책은 政府의 일방적 特定 施策이나 制度만으로 한정될 수 없다. 社會變動과 함께 가족이 어떠한 모습으로 存在하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 가족의 未來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감안하면서 機能과 役割 및 價値의 定立과 問題의 豫防 및 解決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족정책은 가족문제의 解決이나 가족이 돌볼 수 없는 대상의 社會保護라는 점만으로 局限될 수 없고, 가족의 機能調整과 役割開發, 價値定立을 통한 自立力 強化와 성원간의 凝集力 提高를 통한 扶養體系의 確立과 그러한 생활로 삶의 質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力動的인 政策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第3節 接近方案

1. 接近戰略

家族政策의 接近戰略은 가족정책이 어떻게 하면 生活에 有用性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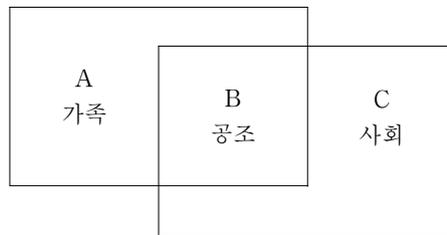
높일 수 있으나에 초점이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家族政策은 다양한 家族特性과 福祉要求가 파악되어야 한다. 家族特性은 가족 인구학적 측면을 말하며, 福祉要求는 가족생활의 구조기능적 측면을 의미한다. 여기서 가족 인구학적 측면은 개인을 原子(atomistic)로, 가족을 分子(molecular)로 간주되는 集合概念이다. 즉 인구학이 개인의 집합을 하나의 집단으로 여기듯 가족정책은 각각의 가족단위 보다 지역단위 내지 국가단위의 가족을 하나의 家族集團(family demography or demography of family)으로 간주하는(黑田俊夫, 1989) 관점이다. 따라서 가족인구학은 가족의 규모와 기능 및 역할 그리고 가치와 같은 靜態的 側面과 결혼과 출산, 이동, 출가, 이혼 및 사망과 같은 動態的 側面, 그리고 가족의 생활주기(family life cycle)와 같은 力動的 側面을 모두 포괄한다.

가족복지의 측면은 단순한 缺損家族을 위한 福祉서비스만이 아니다. 가족의 構造, 機能 및 價値의 측면에서 어떤 問題를 안고 있으며, 그러한 問題는 왜 나타났고,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이 요구되는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가족의 人口學的 特性과 가족의 福祉要求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것은 가족에서 結婚과 出産, 移動과 出嫁 그리고 離婚과 死亡이 人口現象인 동시에 가족의 變化와 福祉要件이 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가족의 構造的 缺損은 人口現象에 의한 것이고, 機能的 缺損은 構造的 結果에 의한 것이라면 복지수요는 이러한 점을 모두 포괄한다. 따라서 家族政策은 地域別 家族의 特性과 生活實態 그리고 機能 및 役割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관련 問題의 豫防과 解決을 위한 對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화와 함께 家族의 變化는 현저해졌고, 그러한 變化가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瓦解와 解體로 이어지고 있다면 이는 주요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은 가족해체가 가족적 영향보다 사

회적 영향이 큰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家族政策의 接近은 家族과 社會의 有機的인 共助體制가 요구된다. 이러한 점은 가족이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회가 가족의 기능을 지원하는 相互補完 體制를 의미한다. 한 예로 가족의 特定 役割을 지역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는 어렵거나 또는 다른 役割을 遂行하기 어려울 때 社會는 이를 위한 支援 내지 對應策을 강구하고, 가족은 사회의 役割支援을 수용하면서 또 다른 역할에 參與하는 가족과 사회의 役割共助, 役割補完 및 役割分業이 그것이다. 따라서 家族支援은 이웃이나 사회의 一方的 支援만이 아니라 가족의 共同參與가 요구되고, 가족이 特定 役割을 支援받는 대신 가족은 이웃과 社會를 위해 또 다른 일로 貢獻하는 有機的 補完體制가 開發되어야 한다.

가족정책에서 家族開發 및 家族福祉를 위한 가족과 사회의 役割協力에 관한 이론적 모형은 [그림 7-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7-2] 家族政策에서 家族과 社會의 理論的 役割分擔 模型

[그림 7-2]와 같이 A는 정상적인 가정이라 하더라도 가족개발을 통한 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사회의 복지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접근이다. 여기서 가족개발은 사회발전과 함께 가족의 사회적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출산조절과 같은 機能調整, 사회참여의 확대를 위한

役割開發, 가사역할의 능률화를 위한 필요한 知識과 技術의 普及 등을 의미한다. B는 가족 자체로 독립된 생활이 어렵거나 특정 역할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이를 가족과 사회의 공동노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다. 즉 家族相談을 통한 가족문제의 해결, 역할지원 및 역할대행을 통한 役割補完과 문제해결 그리고 생계지원을 통한 自立誘導 등이 그것이다. 또 C는 가족의 해체로 가족이 돌볼 수 없는 무의탁 대상이나 가족에서 逸脫된 대상의 社會保護를 말한다. 여기서 A와 B, 그리고 C는 가족주기에 따라서 A는 B로, B는 A로, 그리고 C는 B나 A로 바뀌어질 수 있으며, 또 이들 가족은 사회적 공동체로 C의 경우를 최소화 하면서 A의 경우를 증대시키기 위한 政策的 接近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概念을 전제로 政策接近은 가족정책의 基本骨格을 토대로 한다. 먼저 가족의 法的·制度的 측면은 국가가 가족생활을 保障하며, 가족을 保護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家族法에서 性別 不平等 要件의 개선과 아울러 脆弱階層을 위주로 한 對象別 福祉法을 가족중심의 家族福祉 基本法의 制定이 요구된다. 다음은 가족의 共同體 意識提高를 위한 價値觀 定立과 가족의 사회적 適應力을 높이기 위한 機能調整, 役割開發 및 問題의 豫防과 治療 등은 이에 관한 필요한 知識과 技術의 보급이 요구되고, 가족의 役割支援 및 生計支援을 통한 役割擴大와 自活能力 提高는 이에 필요한 관련 서비스가 隨伴되어야 하며, 無依託 對象의 社會보호는 施設保護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정책은 정책수행을 위한 일정한 事業組織과 關聯人力 및 所要豫算을 필요로 한다. 또 사업의 效率化를 위해서는 從事人力에 대한 訓練과 사업관리를 위한 指導監督, 사업개발을 위한 研究 및 評價, 그리고 사업의 活性化를 위한 豫算支援 등이 뒤따라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가족정책은 가족에 대한 敎育과 弘報 및 관련 서비스를 政策手段으로 하고, 이를 위한

訓練, 指導監督, 研究評價, 豫算支援 등을 기초로 한다.

2. 事業開發

家族政策이 家族의 本質과 特性을 고려한 國家의 施策이라면 이는 일정한 형태만으로 한정될 수 없다. 이는 가족이 성원간의 협력으로 독립된 생활과 그러한 생활로 만족을 누리는 점을 본질로 한다면 家族政策은 없어도 家族은 存在하고, 어떠한 政策도 多樣한 모든 가족을 滿足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정책은 現實的 家族問題를 기초로 문제의 豫防과 治療, 결손의 保護와 支援, 그리고 생활의 改善과 質的인 向上에 초점을 두게 된다. 그렇다면 오늘날 가족은 무엇이 問題이고, 그러한 문제는 왜 나타나고 있는 것 일까? 가족문제는 구조, 기능 및 가치의 不調和로 인한 점이 일반적 이다 (Goode; 1982). 즉 가족생활이 가족관계에 의해서 보다 사회와의 관계에 의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共同體의 有用性 弱化, 扶養體系의 瓦解 및 家族規範의 崩壞가 그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구조의 多變化에 따른 複合的인 要因에 의한다. 산업화에서 생산기능의 기업화와 복지기능의 전문화는 개인역할의 다양화를 초래했고, 역할추구 및 역할확대를 위한 가족분화 및 출산조절이 가능케 되면서 그 결과는 扶養關係의 瓦解로 이어지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출산조절은 부모들이 적은 자녀수를 두면서 딸만 두거나, 아예 자녀를 갖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면서 父系制度의 수정도 불가피해졌다. 또 結婚과 性的 自律化는 離婚의 自律化와 婚前 및 婚外의 性關係도 늘어나 이러한 결과는 結婚과 性, 妊娠 및 出産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再生産 倫理의 崩壞는 물론 인간의 尊嚴性 마저 喪失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윤리는 지켜질 수 없고, 가족윤리의 붕괴는 곧 家族의 瓦解를 뜻한다.

결국 현대가족은 가족관계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와의 관계에 의한 構造·機能的 次元에서 瓦解 및 解體가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위해서 가족정책은 問題의 豫防과 解決을 위한 對應的 次元이 요구된다. 즉 家族倫理의 失蹤을 전제로 倫理再建을 위한 家庭教育의 強化 및 社會教育의 擴大나, 가족기능의 調整과 개인역할의 開發을 위한 출산 조절 및 技術教育의 適實化나, 가족문제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相談事業의 擴大나, 家事役割의 合理化를 위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제공은 물론 社會的 代行 및 支援(육아, 간병 및 가사 등) 體制의 擴大나, 결손 가족의 保護를 위한 사회적 支援體制의 確立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요약하면 가족의 機能調整과 役割開發을 위한 관련 서비스 및 기술교육, 家族問題의 豫防과 治療를 위한 상담서비스, 가족생활의 役割代行 및 役割支援, 가치관 정립을 위한 家庭教育 및 社會教育, 缺損家族의 社會保護 및 自活支援 그리고 사회적 가족생활의 保障과 保護를 위한 規範的 또는 制度的 支援이 그것이다.

그러나 家族政策에서 관련사업은 특정 분야로만 한정시키기 어렵다. 다만 가족의 독립된 생활과 그러한 생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에서 家族開發 및 家族福祉가 요구된다.¹⁾ 家族開發은

1) 즉 가족복지사업의 대상으로 현재의 요보호 대상과 같은 문제발생가족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일반적으로 정상가족이라는 일반가족들도 가족개발 측면에서 지원함으로써 가족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정상가족까지 사업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 가족문제를 예방·해결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로 가족의 안녕은 물론 사회의 안정과 함께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함에 따른 복지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로서 구조·기능적으로 정상범주에 속하는 가족인 경우 가족생애주기와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족역할개발을 도와주고, 구조·기능적으로 결함을 가진 가족은 그 가족이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영구보호가 필요한 복구불가능 가족 및 개인은 인간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함은 물론 그들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악화를 지연시키며 현재의 상태에서 최상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의 독립된 생활을 위한 役割範疇로 이를 위해서는 就業教育 및 就業斡旋 등을 통한 생산성 증대와 출산조절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生活改善 및 家事分擔을 통한 生活의 合理化 그리고 營養管理 및 健康管理을 통한 健康增進이 그것이다. 또 家族福祉는 가족생활의 安定과 福利를 위한 영역으로 이를 위해서는 문제의 예방과 치료를 통한 健全生活 유지, 缺損保護(생활보호, 교육보호 및 의료보호 등)를 통한 自活育成, 役割支援(보육지원, 간병지원 및 가사지원 등)을 통한 役割擴大 그리고 家族保護(폭력퇴치, 범죄예방, 일탈보호 및 사고예방 등)를 통한 生活安定이 그것이다.

3. 接近方法

가족정책은 영역의 廣範性, 내용의 多樣性에 비추어 일정한 政府組織만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따라서 동 정책은 관련 民間組織은 물론 地域社會 中心의 自願組織 構築이 요구된다. 여기서 정부조직은 保健福祉部를 중심으로 한 市·道, 區·市·郡 및 邑·面·洞에 이르는 家庭福祉組織을 의미하며, 民間組織은 각종 福祉事業과 關聯組織, 宗教團體, 企業體 등을 뜻한다. 또 지역사회 중심의 自願組織은 婦女會, 青年會 및 4H클럽과 같은 自生組織으로 이러한 조직들은 조직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역할을 담당토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福祉體系 構築이다. 그것은 家族政策이 정부가 志向하는 특정 目標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安定과 생활의 質을 높이기 위한데 있고, 家庭福祉가 가난하고 문제가 있는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의 健康管理, 生活改善, 役割支援 및 問題의 豫防과 治療를 비롯한 결손가정의 再活支援 등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조직 역시 관련 조직에

대한 재조정이 요구된다. 최근 정부는 區·市·郡單位의 保健機能과 福祉機能을 통합하는 保健福祉事務所의 構築을 검토중에 있다. 이러한 점은 관련업무의 연계성을 위주로 업무의 統合과 調整이라는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으나 과연 福祉業務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고, 保健業務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事業目標와 內容開發 및 接近方法은 아직 開發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政府계획과 관계없이 地域中心 家族開發院(Community-Based Family Development Center)의 설치를 제안한다. 지역중심 가족개발원은 건강과 복지의 원초적 産室이 家庭이고, 가족의 協力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健康保護나 福祉實現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家族開發 및 家庭福祉를 통한 사회건강 내지 사회복지도 가능케 된다는 점에서 이다.

지역중심 家族開發院은 구·시·군 단위의 政府組織중 保健機能 및 福祉機能의 통합과 관련 專門機關의 協助體制 構築, 관련 自願組織의 育成 등을 총괄한다. 이러한 조직은 앞에서 제시한 가족정책이 목표로 하는 가족개발과 가정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이는 곧 정부가 지향하는 國民福祉의 增進이라는 國政目標와도 일치된다. 특히 최근 정부는 경제성장과 국민복지가 병행할 수 있는 “生産的 福祉”를 통한 “삶의 質 向上”이라는 旗幟아래 새로운 福祉制度의 개발을 構想중에 있다. 결국 이러한 福祉制度는 家庭福祉의 強化를 뜻한다. 그것은 가정을 떠나서 국가나 사회가 가족기능을 대행하는 福祉制度의 開發은 家族의 無用性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福祉制度는 生産的 福祉는 물론 삶의 질과 逆行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가정을 삶의 준거로, 가족을 生活의 伴侶로 여기고 있는 한 家庭은 영원한 福祉의 搖籃으로, 가족은 福祉의 同伴者로 남겨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生産的 福祉는 가족문제의 豫防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고, 또 삶의 質의 向上은 가족생활의 開發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대개는 福祉의 概念을 가난을 돕거나, 便益을 提供하는 점 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점도 따지고 보면 국가나 사회와의 관계에서 보다 가족과 이웃 또는 직장과의 관계에서 추구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福祉는 면에서 追究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生活속에서 追究되는 것이라면 地域社會 中心 福祉體系는 이를 어떻게 構築하고 어떻게 運營하느냐는 점이 주요 關鍵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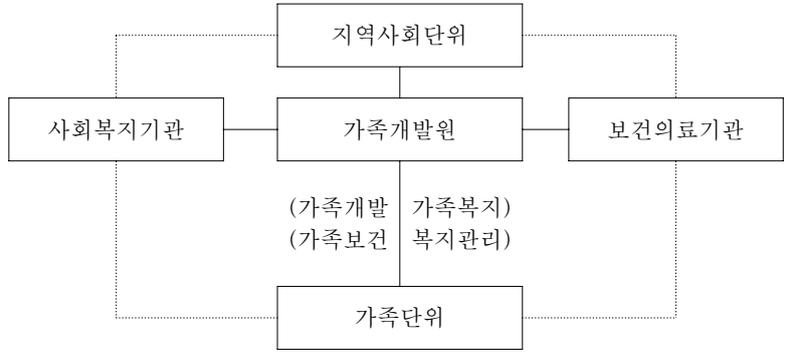
地域中心 福祉體系의 構成은 정부조직을 주축으로 民間組織과의 有機的인 協助體制로 운영됨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한 조직은 먼저 福祉與件을 造成하기 위한 機能이 요구된다. 福祉與件 造成은 福祉基金의 造成, 福祉人力의 養成 및 福祉組織의 整備 등을 의미한다. 여기서 福祉資金의 造成은 정부지원에 의한 豫算確保는 물론 民間支援에 의한 基金造成을 포괄하며, 福祉人力 養成은 福祉分野 公務員의 人力 充員과 專門訓練을 통한 人力養成, 그리고 自願奉仕 人力確保와 이들에 대한 訓練을 말한다. 福祉組織 整備는 家族開發 및 家庭福祉를 위한 部門別 弘報教育 및 서비스 體制를 위한 조직정비 및 접근체제의 구축을 의미한다. 다음은 이러한 조직이 가족개발과 가족복지를 위해 계몽교육 내지 관련 서비스를 무엇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요구과약 및 사업개발과 이러한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研究評價, 指導監督 및 事業支援인 것이다.

이러한 조직체계는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그 하나는 정부의 既存組織을 統廢合하여 새로운 조직을 구축하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機能上 連繫性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조직의 再編은 정책추진에 效率性을 기대할 수 있지만 기존조직의 統廢合에 따른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고, 또 機能上 連繫性

유지는 각 조직의 指導體系나 追求하는 目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상 混線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保健 및 福祉는 人口構造의 老齡化와 疾病構造의 慢性化를 고려할 때 가족단위에서 서비스 受惠는 상호 補完性이 要求되고 있지만 서비스 供給은 서로 다른 技術的 接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異質性을 내포한다. 즉 보건서비스는 醫療人力으로 가능할 수 있고, 복지서비스는 福祉要員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할 때 지역사회 단위에서 이들 인력의 확보와 협력은 주요 관건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家族政策의 多樣性 및 複合性을 일정한 조직체계로 함축시키면서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한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특히 保守的 性格을 내포하는 家族을 대상으로 意識과 行動을 변화시키면서 생활의 合理化를 위한 機能調整과 役割開發, 生活改善을 위한 건강조성과 역할지원 및 갈등해소 등 가족문제의 예방과 치료는 특정 전문인력의 노력만으로 이루질 수 없으며, 가족과 이웃 및 지역사회의 공동협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地域社會 單位의 家族政策 接近組織은 다음과 같은 [그림 7-3]의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지역사회 단위는 구·시·군단위를 의미하며, 家族開發院은 가족개발, 가족보건, 가족복지 및 복지조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保健機能과 福祉機能의 統合形態를 뜻한다. 또 이러한 조직은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가족의 요구에 따른 관련사업을 전개하며, 사회복지 기관과 보건의료 기관은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내의 관련 민간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組織은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에서 대부분의 가족이 物質的 豊饒를 누리고 있음에도 家族의 瓦解와 解體가 증가되고 있음을 감안, 이를 體系적으로 豫防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家族問題의 豫防이나 解決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가족의 解體現象을 외면하고 “社會福祉”나 “삶의 質”은 論議될 수 없다.



註: 동 그림에서 中心은 事業의 執行組織이고, 날개는 事業의 支援組織임. 여기서 地域社會는 구·시·군단위를 뜻하며, 家族開發센터는 家族을 中心으로 한 保健福祉 및 家族問題의 종합적 해결을 위한 中心體를 말한다. 家族開發센터의 기능중 家族開發은 가족의 사회적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機能調整(출산조절 및 취업확대)과 役割開發(기술교육 및 역할분담) 그리고 가치정립(가정교육 및 인성교육)을 통한 生活改善을, 家族保健은 가족의 건강생활을 위한 건강지식 및 건강기술의 보급과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家族福祉는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역할지원, 생활보호 및 기술지원을 그리고 福祉관리는 가정복지를 위한 기금조성, 인력개발 및 조직정비 등을 말한다. 또 지역단위의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기관과 보건의료기관은 각급 民間社會福祉團體, 保健醫療機關을 말한다.

[그림 7-3] 家族政策 接近을 위한 地域社會 中心 組織體系

그것은 가정이 원초적 복지단위인 동시에 생활의 준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일이 그렇듯 부정적 시각의 출발은 부정적 결과를, 긍정적 시각의 출발은 긍정적 결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1960년대 이후 貧困問題를 해결하기 위해 “잘 살아 보자”는 새마을運動과 人口增加 抑制를 위한 家族計劃 運動을 펼쳐 온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運動의 시작도 否定的 視角이 많았고, 각자 나름대로 평가를 달리할 수 있지만 生活意慾 鼓吹와 國民意識 集約으로 경제발전에 기틀이 된 점은 분명하다.

모든 社會運動이 그렇듯 國民的 共感帶와 體系的인 推進이 없이는 成功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家族政策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는 지난 한 세대를 걸쳐 經濟開發에만 沒頭하면서 家정을 돌보지 못하고 이웃을 멀리해 왔던 결과가 社會分裂 내지는 家族解體를 촉진시키게 되었다면 이제 家族을 中心으로 한 共同體 意識 整備와 이웃과 “더불어 살기 운동”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바로 이러한 운동이 家庭을 기초로 家族을 中心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가족정책의 주요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물론 家族政策은 전혀 새로운 政策도 아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인간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고, 이러한 점을 가정중심으로 펼쳐 보자는 것이 가족정책인 것이다. 그러나 가족의 多樣性을 감안하면 이러한 정책이 모든 가정에서 다 必要한 것도 아니고, 또 劃一的일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뒤따른다. 이러한 점에서 家族政策은 정책접근에 앞서 지역단위별 가족의 특성과 가족의 요구, 그리고 계획된 政策의 메뉴(political menu)에 대한 選好度를 把握하기 위한 家族生活 實態調査가 先行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가족생활실태조사는 지역단위별 사업계획의 수립과 사업량의 추정은 물론 서비스대상과 서비스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사업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 家族政策의 接近은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選別的 啓蒙教育 및 관련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出産 調節이 필요한 대상에는 避妊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고, 役割支援이 요구되는 가정은 役割支援이 隨伴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몽교육 및 서비스는 서비스 인력의 제한성을 감안하여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보다 지역단위별 특정 서비스센터를 두고 집단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家庭訪問을 통하지 않고 서비스 提供이 어려운 특수한 경우는 訪問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家族政策에서 教育 및 서비스는 일정한 형태만으로 한정되는 것보다 가족의 변화에

따른 多樣化가 요구된다. 따라서 家族政策은 현재 家庭福祉事業과 같은 中央中心의 固定된 메뉴(menu)를 벗어나 地域中心의 評價制度의 도입과 아울러 평가결과 還流體系(feedback system)의 유지, 그리고 事業執行에 融通性을 지녀야 한다.

第4節 法的·制度的 支援

1. 家族 關聯法의 現況

한국의 家族法은 民法에서 親族法 및 相續法으로, 福祉法은 社會保障에 관한 法律 및 社會福祉事業法으로 대별된다. 여기서 가족법은 가족제도의 유지 및 존속과 관련 사항을, 社會福祉法은 가족이 돌볼 수 없는 대상의 社會保護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한국의 가족법이 家族中心의 안정된 생활과 사회적으로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는 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福祉法은 家族解體를 사회가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제정 또는 개정이 계속되어 왔다. 따라서 本節은 社會保障 및 社會福祉關聯法을 중심으로 논의코자 한다.

社會保障에 관한 法律(1963. 11. 5. 제정)은 憲法 제34조의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社會保障制度의 확립을 위해 제정(제1조) 되었다. 여기서 社會保障은 社會保險에 의한 供給여와 무상으로 시혜되는 公的扶助로 구분하고(제2조), 사회보장은 정부가 주체가 되며, 필요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하되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제3조)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제정 당시 의도와는 달리 대부분의 조항이 삭제되어 死文化된 상태이다.

<表 7-1> 家族關聯法の 類型

유형	관련법	주요성격
가족법	친족법 및 상속법	조정, 통제
사회보험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산재보상보험	사회보장
사회부조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 산재구호	사회보장
가족복지 서비스	노인복지, 장애복지, 모자복지, 아동복지 영유아보육 가정의례, 묘지/매장 청소년, 모자보건 입양특례, 윤락방지	가족보호 결손지원 역할지원 허례방지 건전생활 특수보호

한편 社會福祉事業法(1992. 12. 전문개정)은 生活保護法, 兒童福祉法, 老人福祉法, 障礙人 福祉法, 母子福祉法, 영유아 福祉法, 淪落行爲 防止法 등 7가지 법에 의한 보호와 복지를 중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책임지고(제4조), 동 사업을 위한 사회복지위원회를 두며(제5조), 관련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사회복지사무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제6조), 그 외 법인 및 시설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社會福祉事業基金法(1980. 12. 31. 제정)은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부금품 모집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社會福祉制度는 1960년대 이후 産業化와 함께 發展해 왔다. 즉 산업화에 따른 가족해체 및 결손가정의 증가를 사회가 보호하기 위해 대상별 복지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關聯 法을 制定 및 改正함으로써 결손가족의 생활보호와 역할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法體系는 대상의 중복과 행정위주의 서비스 나열로 一貫性이 缺如되고 問題中心의 保護와 救貧의 形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表 7-2> 家族關聯 社會福祉事業法의 主要內容 및 制定時期

법률명칭	주요 내용	제정 및 개정
생활보호법	생활능력이 없는 자의 생계보호 및 자활지원	1961년 제정 1982년 전문개정
아동복지법	요보호아동(18세 미만)의 시설보호 및 자립지원	1961년 제정 1981년 전문개정
노인복지법	노인(65세 이상)에 대한 시설보호사업	1981년 제정 1989년 전문개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호 및 각종 복지서비스	1981년 제정 1989년 전문개정
모자복지법	모자가정의 복지급여, 자활지원 및 시설보호	1989년 제정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6세 미만)에 대한 시설보육 및 가정보육	1991년 제정 -

<表 7-3> 福祉類型別 對象區分

복지유형	연령구분					복지서비스
	6	9	18	24	65	
생활보호						생계, 자활, 교육, 의료, 해산, 장제
아동복지						상담, 시설, 자활
모자복지						생계, 자활, 교육, 시설
영유아보육						시설
입양특례						입양알선
청소년						육성, 수련
노인복지						수당, 자활, 의료, 시설, 재가
장애복지						재활, 의료, 생계, 시설

이러한 점은 生活保護法(1982. 12. 31. 전문개정)이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들의 최저생활을 보장(제1조)하기 위한 生計, 醫療, 自活, 教育, 解産 및 葬祭의 보호 등 6가지 보호를 기초로

하고 있지만 아동복지, 노인복지 및 모자복지법도 그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서도 알 수 있다. 결국 대상별 복지나 가족중심의 복지는 구빈적 형태를 떠나서 큰 차이가 없으며, 법이 정하는 서비스는 名目上の 형태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2. 家族福祉基本法 制定

이상과 같은 사회복지관련법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복지법은 국민의 “삶의 質”을 增進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상호연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현재 문제중심의 개별복지를 가정으로 함축시키면서 가족해체의 예방을 위한 家族福祉基本法이 필요하다. 여기서 제안하는 가족복지기본법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은 복지의 원초적 단위로 어떠한 형태의 사회복지도 가정을 대신하기 어렵다는 점과 2) 가족해체의 증가는 현재 무의탁 대상과 결손가정을 위주로 한 事後福祉의 限界性에서 요구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家族福祉는 가족의 기능조정, 역할개발 및 가치정립을 통한 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가족개발과 가족문제의 예방과 치료, 결손가족의 자활복지, 무의탁 대상의 사회보호를 기초로 하는 가족복지 및 사회보호를 위한 事業開發 關聯 法の 整備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가족복지관련법이 제정, 개정되는 경우 가족복지기본법의 기본정신과 운영원칙에 부합되도록 하며, 복지서비스 및 관련제도의 개발에 있어서도 상호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기초로 家族福祉基本法의 制定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基本理念에서 가족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가족은 사회구성의 기본단위로 가족의 안정이 사회의 안정에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과, 둘째는 責任의 主體로 가

족은 모두가 공동체를 위한 책임을 지며, 국가나 사회는 가족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셋째 가족과 관련된 정책을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다루기 위한 家族政策開發委員會 및 家庭福祉調整機構 등을 두어 정책개발 및 사업관리에 효율화를 위한 점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第5節 地域中心 福祉體制 構築

1. 地域化의 必要性

地域中心 家族福祉는 地域社會가 중심이 되어 자체의 與件下에서 福祉體制 構築과 福祉資源 開發을 통한 福祉基盤 造成으로 福祉를 實現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가족의 본질이 독자적 생활과 자체적 福祉의 실현을 理想으로 하고 있듯이 家族福祉는 자체에 의한 점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를 위한 地域社會의 支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地域社會는 家族의 독자적 생활을 위한 與件造成과 家族問題의 豫防과 解決을 위한 도움은 물론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知識과 技術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福祉는 먼 곳에서 追求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個人的 努力과 家族의 協力에 의해서 이룩하며, 2차적으로는 이웃과 地域社會의 協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다.

이러한 형태는 현행 政府主導의 특정 指針에 의한 上意下達式 福祉體制를 地域社會를 중심으로 相扶相助의 氣風을 造成하면서 福祉實現을 위한 노력을 政府가 支援하는 下意上達式 福祉體制로의 轉換을 의미한다. 여기서 福祉形態는 전통적으로 가난을 돕기 위한 救貧的 形態를 벗어나 가족이 스스로 生活의 自立과 삶의 質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면서 社會的 適合性을 提高하기 위한 機能調整, 役割開發 및 生活改善 등을 포함하는 機能的 形態를 말한다. 이러한 福祉形態는 福祉의 窮極的 目標가 인간의 삶의 質을 높이려는데 있고, 삶의 질은 生活에서 추구될 수 있으며, 생활은 家庭을 準據로 家族과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福祉制度는 原初的으로 家族制度를 기초로 하며, 아무리 社會가 福祉制度를 이상적으로 고안한다 하더라도 이는 家族制度를 대신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다.

그렇다고 家族福祉가 地域社會의 노력만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산업화와 함께 家族生活이 家族과 社會의 유기적인 관계로 가능하듯 家族福祉 역시 家族과 地域社會의 共助體制는 물론 정부의 財政支援과 각종 福祉制度와의 連繫로 가능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여기서 강조되는 점은 福祉가 貧困이나 疾病과 같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점 뿐만 아니라 問題의 豫防과 아울러 보다 나은 삶을 위한 方案이 동시에 講究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家族制度를 福祉制度의 原形으로 삼으면서 家族問題의 豫防과 治療, 가족을 통한 삶의 質 提高, 그리고 缺損家族의 社會的 保護와 支援이 그것이다. 특히 최근 정부는 地方 自治制를 준비중에 있다. 地方自治制는 統治體制의 地域分權 만이 아닌 지역특성을 고려한 地域開發과 福祉 基盤 造成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본 연구가 제시하는 地域中心 福祉 體制 構築이 정부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2. 體制構築

地域中心 福祉體制는 政府 主導的 福祉體制의 地域化 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地域社會가 중심이 되어 地域特性을 고려한 體制構築과 基盤造成을 통한 福祉實現을 위한 노력이 그것이다. 또 福祉體制는 일정한 模型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알맞도록 構築되어야 한다.

즉 農村地域은 그들 지역에 적합한 體制를 構築해야 하고, 工團地域은 이들 지역에 적절한 體制를 構築해야 한다. 여기서 地域社會는 區·市·郡 單位를 의미하며, 福祉體制는 福祉實現을 위한 求心體로서 이와 관련된 制度, 組織, 人力, 事業 및 財政 등을 총칭한다. 이러한 복지체제는 새로운 형태보다 구·시·군 단위의 家庭福祉課와 保健所를 중심으로 再組織하며, 이의 名稱은 家族開發院(Family Development Center:FDC 가칭)으로 함을 提案한다.

여기서 家族開發院의 명칭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첫째 현재 일선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福祉”는 일반적으로 가난을 돕는다는 점에서 “있는 者와 없는 者”간의 從屬關係라는 違和感을 생각할 수 있고, “保健”은 肉體的 疾病의 豫防이나 治療만으로 생각하는 偏狹性을 내포하며, 家族은 대부분의 인간이 家庭을 準據로 가족과 더불어 살고 있다는 親密感에서 이다. 다음은 健康과 福祉는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추구될 수 있는 것으로 家庭을 原初的 單位로 하며, 家族의 協力이 없이는 健康이나 福祉의 實現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다. 셋째 健康과 福祉는 醫療人 내지 福祉要員의 專有物이 아니라 一次的으로 家族에 의해서, 生活改善을 통해서 追求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다.

이러한 점에서 家族開發院은 지역중심 복지와 건강의 求心體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管掌토록 한다. (1) 社會變化에 따른 가족의 構造·機能的 適合性을 提高하며, (2) 生活改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3) 家族問題(건강문제 포함)의 豫防과 治療를 통한 安定된 生活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4) 가족과 사회가 役割分擔을 통해 生活의 能率化를 모색하며, (5) 缺損家族의 自立基盤 造成과 社會保護를 통한 自活策을 모색하며, 그리고 (6) 가족해체로 인한 無依託 對象의 社會保護를 통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 외 지역중심 복지사업

을 위한 福祉行政은 基盤造成과 資源開發 및 事業管理 등의 業務가 附加된다. 이와 같은 업무를 영역별로 다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表 7-4> 地域中心 家族開發院의 業務內容

업무영역	업무범주	업무내용	비 고
가족개발	기능조정	출산조정, 기능분담	가족의 구조, 기능 및 가치를 통한 생활개선 과 삶의 질 제고
	역할개발	기술교육, 역할확대	
	생활개선	의식개혁, 제도개선	
	가족보건	건강보호, 질병관리	
가족복지	가족보호	문제예방, 문제치료	가족문제의 예방과 치료, 역할지원 및 가족 을 통한 결손예방과 결손가족의 사회 보호
	역할지원	역할대행, 역할보완	
	결손보호	생계보호, 자활조성	
	시설보호	생활보호, 건강보호	
복지관리	기반조성	기금조성, 사업개발	지역중심의 복지사업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 관리
	자원개발	조직개발, 인력개발	
	사업관리	조직관리, 인력활용	
	시설관리	시설운영, 시설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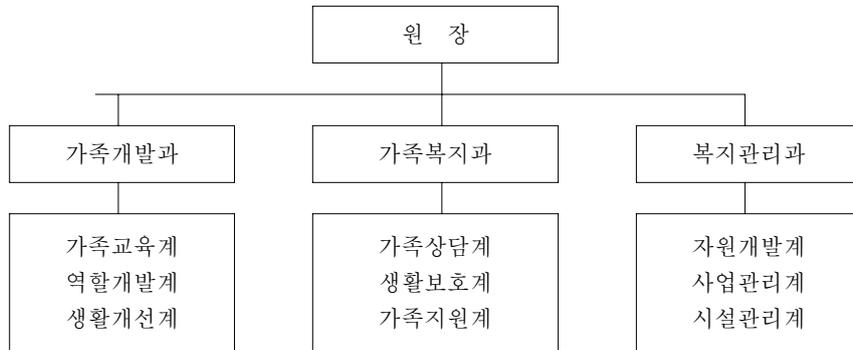
3. 組織改編

이상과 같은 業務를 기초로 한 家族開發院의 組織은 다음과 같은 점을 전제로 한다. 첫째로 동 組織은 기존의 保健 및 福祉와 관련 組織을 근간으로 家族問題의 豫防과 解決을 위한 綜合的 接近體制로 再構成하며, 둘째 組織의 形態는 지역특성과 가족요구를 고려한 多元的 이고 伸縮性 있는 형태를 지녀야 한다. 따라서 동 조직은 院長을 중심으로 家族開發과 家族福祉 및 福祉管理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각 부

문별 從事人力은 최소한 약 10명 내외로 총 31명을 필수로 한다. 이는 가족개발, 가족복지 및 복지관리의 業務가 政府가 정하는 일정한 形態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타나는 多樣한 問題를 包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가족의 기능조정과 역할개발을 위한 출산조절, 기술교육 및 취업확대 등만 하더라도 이는 주민들의 福祉需要 創出과 福祉欲求 充足이라는 점은 간단할 수 없다.

지역중심 家族開發院의 組織形態는 [그림 7-4]와 같다. 동 조직에서 部署別 名稱은 業務內容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業務機能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家族開發課는 가족문제의 예방과 생활의 질적 개선을 목적으로 家族教育(기술교육, 인성교육 및 보건교육 등)과 役割開發(취업알선, 여가선용 및 피임확대 등) 및 生活改善(가정경영, 역할분담 및 가정의례 등) 등을 위주로 하며, 家族福祉課는 가족문제의 치료와 해결을 위한 점에서 家族相談(문제예방, 문제치료 및 관련 서비스 등)과 生活保護(생계보호, 교육보호 및 건강보호 등) 및 家族支援(역할지원, 보육지원 및 간병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다. 또 지역사회 家族開發事業을 위한 福祉管理課는 資源開發(기금조성, 사업개발 및 인력개발 등)과 事業管理(조직관리, 인력활용 및 사업확대 등) 및 施設管理(시설지원, 시설활용 및 시설확대 등) 등을 중심으로 한다.

이상과 같은 조직은 家族開發과 家族福祉를 위주로 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구·시·군 단위의 保健 및 福祉와 관련조직은 다양하다. 먼저 保健組織은 保健所 法(법령 제1169호)에 의거 保健所가 중심이 되며, 동 조직은 지역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保健行政課, 保健指導課, 醫藥課 및 地域保健課(서울시의 경우)나 保健行政係, 豫防醫藥係 및 家族保健係(기타 지역)로 구분하고, 邑·面 單位에는 家族計劃, 母子保健 또는 結核要員을 배치하고 있다.



[그림 7-4] 地域社會中心(區·市·郡 單位)의 家族開發院 組織(案)

또 福祉組織은 社會福祉事業法을 근거로 生活保護, 老人福祉, 兒童福祉 및 母子福祉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며, 이는 社會課에 社會係, 家庭福祉課에 家庭福祉係, 婦女福祉係 및 靑少年 福祉係를 두고, 洞·邑·面 單位는 社會擔當 및 專門要員을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두 組織은 保健組織이 1960년대 초기부터 발전해 온 반면 福祉組織은 1980년대 중기부터 擴大되기 시작하면서 1995년부터는 이 두 조직을 統合하는 “保健福祉事務所”(假稱)의 有用성이 검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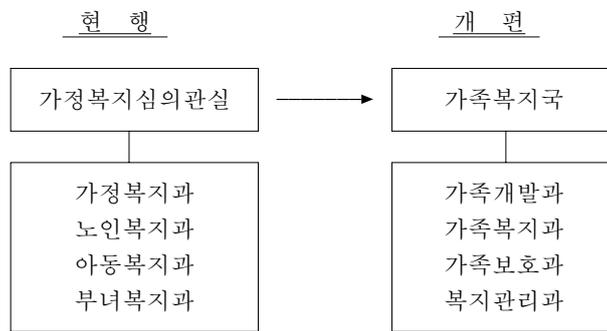
물론 保健福祉事務所는 어떠한 형태로 構築할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家族開發院의 조직을 제안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이는 保健組織이 疾病豫防 보다 疾病治療에, 또 福祉組織이 貧困豫防 보다는 貧困救濟에 치중하면서 만성질환이나 결손가족의 증가에 豫防策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이다. 물론 疾病과 貧困은 인류의 宿命的인 課題였던 것 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화와 함께 이러한 문제가 완화되면서 또 다른 관심은 健康水準과 生活의 質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健康水準과 生活의 質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점이 모두 一次的으로 家族

生活을 통해서 추구될 수 있음은 保健福祉事務所가 가족단위를 기초로 家族開發에 중점을 두지 않고는 가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다.

家族開發院의 設立과 아울러 구·시·군 단위의 保健·福祉組織은 三元化가 필요하다. 즉 社會制度的 차원에서 醫藥, 食品, 衛生, 環境 및 傳染病管理는 保健環境課의 新設로 一元化 하며, 國民年金, 醫療保險, 勞動福祉 및 福祉施設 등은 社會課에서 총괄토록 하고,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保健·福祉 서비스는 家族開發院이 관장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따라서 동·읍·면 단위는 地方組織이 改編되지 않는 한 기존의 保健要員과 福祉要員을 중심으로 家族教育, 家族相談, 家族保健 및 福祉管理를 위해 4명씩의 要員을 배치할 것을 제안한다. 이들은 지역단위의 家族開發, 家族福祉 및 家族健康의 業務를 관장하면서 구·시·군 단위의 家族開發院과 유기적인 관계로 相關事業을 효율적으로 展開하기 위한 것이다. 즉 福祉問題나 健康問題의 需要는 近接性에서 供給이 圓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다. 그렇다고 洞·邑·面 단위의 4명의 要員과 區·市·郡 단위 家族開發院의 專門要員 만으로 모든 업무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家族問題의 複合性 내지 力動性은 분야별 專門要員과 그외 要員의 공동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해결이 어렵다. 따라서 地域社會 단위의 自願奉仕人力의 활용은 물론 관할 지역내의 保健, 福祉 및 行政 등 專門家의 諮問은 물론 協助가 요구된다.

구·시·군 단위 家族開發院의 構築과 아울러 保健·福祉事業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市·道 및 中央 단위의 조직도 改編이 요구된다. 먼저 市·道 單位 組織은 현재 保健社會局과 家庭福祉局을 중심으로 關聯業務의 再調整이 필요하다. 保健社會局은 保健制度에서 醫藥管理, 食品管理, 衛生管理, 傳染病 管理 및 環境管理 등의 業務를 總괄하는 保健開發局(가칭)으로 再編과 福祉制度는 國民年金, 醫療保險, 勞動福祉 및 福祉施設 등을 總괄하는 社會開發局的 新設, 그리고 가족을 대

상으로 가족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각종 保健·福祉 서비스, 이를 테면 母子保健, 家族計劃, 豫防接種, 一般診療, 老人福祉, 兒童福祉, 保育事業, 靑少年 福祉 및 婦女福祉 등은 家族開發, 家族福祉 및 福祉管理 등으로 改稱하여 家族開發局으로 再調整할 것을 제안한다.



註: 여기서 家族開發課의 업무는 가족과 관련 법적·제도적 면, 가족기능 조정을 위한 출산조절, 역할확대를 위한 역할개발 및 생활개선을 위한 가족교육 등의 업무를, 家族福祉課는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족보건, 가족문제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상담서비스 및 가족생활의 능률화를 위한 역할지원 등의 업무를, 家族保護課의 업무는 결손가족의 생활보호, 문제가족의 가사지원 및 해체가족의 사회보호 등의 업무를, 그리고 福祉管理課는 가족복지를 위한 기금조성, 가족복지 관련조직의 지원육성, 자원봉사 인력개발 그리고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육성 등의 업무를 말한다. 이와 같은 업무내용은 실제 행정전문가에 의한 재조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림 7-5] 保健福祉部 家族福祉關聯 組織의 改編案

한편 中央單位 組織은 대부분 기획업무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社會福祉政策室을 대상으로 논의코저 한다. 社會福祉政策室은 社會福祉審議官室과 家庭福祉審議官室로 구분된다. 여기서 社會福祉審議官室은 福祉政策課, 福祉資源課, 生活保護課 및 障礙人福祉課로 분류되고, 家庭福祉審議官室은 家庭福祉課, 老人福祉課, 兒童福祉課 및 婦女福祉

課로 분류된다. 이러한 조직의 재편은 社會福祉 차원과 家族福祉 차원이다. 여기서 社會福祉 次元은 社會制度的 側面, 즉 福祉政策, 資源開發, 福祉制度 및 福祉施設 등을 생각할 수 있고, 家族福祉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家族開發, 家族福祉, 家族保護(생활보호) 및 福祉管理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업무분장은 별도로 고려되어야 함을 전제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가족과 관련조직의 改編案을 현재의 조직과 개편의 조직을 비교하면 [그림 7-5]와 같다.

第6節 社會的 支援方案

1. 支援의 必要性

어느 사회에서나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특히 韓國社會는 儒敎文化를 배경으로 개인 보다는 가족을 중시하는 성향이 有別하다. 가족의 협력으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가정을 生活의 場으로 여기는 家族中心 生活이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중심의 생활은 산업화와 함께 개인중심의 생활로 바뀌면서 役割混亂 및 價値乖離가 家族解體를 촉진시키고 있다. 말하자면 성원의 협력에 의한 家族生活이 役割補完으로 가능케되면서 부부들은 友愛關係를 주장하고, 父母子息은 獨立生活을 選好하면서 意識과 役割의 不調和가 가족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은 傳統的 틀로 만 維持될 수 없고, 새로운 차원의 價値定立이 요구되는 것이다.

家族價値는 가족이 얼마만큼,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일반적 認識을 말한다. 이러한 점은 가족이 관계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關係價値로 생각할 수 있다. 異性之畝의 婚姻制度로 가족이 이루어 지고, 부부들

은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夫婦關係는 어떻게 묶어야 하고, 父母子息이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느냐는 점은 社會規範에 준해 왔다. 이처럼 가족의 독립된 생활은 습해진 價値와 성원간의 秩序를 필수로 한다. 여기서 습해진 價値는 서로를 필요한 存在로 여기면서 서로를 아끼는 마음가짐을, 성원간의 질서는 서로를 위한 犧牲과 奉仕를 기초로 하는 부양관계를 뜻한다. 말하자면 공동체적 의식과 공동체의 유지가 그것이다. 따라서 가족의 공동생활은 일방적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하지 않는다. 부모들이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그 이면에는 자신들의 노후를 자식에게 의존하고 싶은 기대도 내포한다. 그것이 家族倫理이고, 家族關係며, 家族價値인 것이다.

그러나 가족가치는 이에 관한 認識에 앞서 너무나 當然한 것 처럼 여기는 慣習的인 측면을 내포한다. 따라서 자식들은 부모들의 일방적 사랑과 봉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부모들의 노후를 외면 함은 물론 무분별한 가출과 부모유기, 더 나아가서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코 자식들 만 한정되지 않는다. 無責任 한 婚前 및 婚外 性關係, 妊娠中絶의 盛行, 子女虐待 및 遺棄 그리고 자식을 殺害하는 경우 등은 극단적 事例로 만 생각할 수 없다. 결국 家庭教育의 不在가 家族價値의 失蹤으로, 이는 다시 社會倫理의 崩壞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일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가정이다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어느 시대, 어떤 사회나 善惡이 存在 하지만 家族價値의 失蹤으로 非倫理的 그리고 反道德的 行爲가 만연되고, 이러한 결과가 家庭破壞로 이어지는 惡循環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는 결코 所望스러운 것 일 수 없다.

어떠한 共同體도 秩序는 생명으로 여기듯 이는 家族도 예외일 수 없다. 家父長制度가 自律과 平等에 의해 崩壞되었다면 民主化에는 새로운 秩序가 뒤따라야 했다. 그러나 오늘날 가족은 統制力을 喪失한

채 自律과 平等만 주장되고 있다. 그렇다고 자율은 標準模型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형태나 다양한 가치는 나름대로 질서가 요구되지만 그렇지 못하다. 어떤 면에서는 無秩序, 無規範이 共同體의 解體를 부추기는데도 모른다. 가족이 없는 자신을 한번 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인간은 부모로부터 태어나 가족과 더불어 살며, 끝내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임종의 시간을 원한다. 그러나 오늘날 가족에 대한 관심은 相對的이다. 가족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것이 가족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점으로 변했다. 과연 가족은 필요치 않은 것일까? 가족이 필요치 않다면 가족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은 어디서 대행할 것인가?

2. 家族價値의 定立

家族價値의 定立은 가족이 어떻게 構成되고, 어떻게 維持되며, 어떻게 生活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적 측면이 아니다. 중요한 점은 왜 가족이 필요한 것이고, 개인들이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役割意識, 協力意識 또는 倫理意識이 그것이다. 이러한 점은 理論的 틀에 의존하기 보다 生活에서 터득해야 할 實踐倫理이다. 즉 가족이 서로를 필요한 존재로 여기는 關係意識,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扶養意識, 그리고 서로가 더불어 살기 위한 共同意識이 그것이다. 이러한 점은 산업화와 함께 役割獨立, 生活自立 및 干涉排除 등 個人主義 意識으로 幼弱해지고 말았다. 특히 家庭教育의 실종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일정한 指針조차 갖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의 過保護와 學業成績 만을 강조하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간섭을 배제하는 상황에서 共同生活과 扶養體系는 와해되고 있다.

家族價値는 이에 대한 認識에 따라서 生活을 달리하고, 生活의 安定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러나 오늘날 物質主義, 個人主義 그

리고 享樂主義는 “돈이면 안되는 것이 없다”는 인식과 “남이야 어떻든”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고, “내일 일은 그때 생각하자”는 찰라주의가 社會分裂과 家族解體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불어 살기” 위한 가치는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하다. “더불어 살기”란 어느 누구도 그러한 뜻을 모르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실천이 문제이고, 관습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바로 그 자체가 의식 때문이다. 오늘날 문민정부는 사회개혁 내지 의식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이 쉽지 않은 것은 그릇된 관습과 개혁에 대한 의지, 그리고 추진방법 때문이다.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관습은 가정을 토대로 하지 않고는 정립되기 어렵다. 이를 위해 한가지 예를 든다. 우리는 1960년대이후 가족계획 운동을 펼칠 당시 대부분의 식자들이 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반대했던 경험을 기억한다. 그러나 이 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정부의 꾸준한 노력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더불어 살기” 위한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주요 관심이 아닐 수 없다. 家族危機나 社會危機에 대한 인식은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다만 여기서 주장은 人類가 20세기간 貧困과 疾病이라는 사슬에 生存世界를 묶어 왔었다면 21세기는 지난 세기의 物質主義 및 科學主義라는 사슬이 意識世界를 묶는 價値混亂이 社會問題로 대두될 것이 自明하다는 것이다. 결국 科學化는 유대와 협력을 기초로 한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생존이 어렵다는 점에서 “더불어 살기” 위한 운동은 더 늦기 전에 가족을 중심으로, 가정에 기초를 두어야 함을 제안한다. 특히 “더불어 살기” 운동은 특정 정부기관이나 사회단체의 일시적 호소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부조직은 물론 사회단체 및 가족의 참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운동은 體系화된 持續的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가족계획운동의 추진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 꾸준한 노력, 그리고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같은 소위 三位一體의 조건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불어 살기 위한 운동도 이는 정부조직과 사회단체 및 국민적 참여가 전제되고, 가족개발 차원의 다양한 사업과 일관된 조직 그리고 지속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더불어 살기 위한 운동은 가족 가치관 정립과 공동체 의식 제고를 통한 實踐倫理의 生活化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한 倫理綱領 設定과 行動指針의 開發은 범국민적 차원에서 大統領 또는 國務總理 直屬의 家族倫理再建委員會(假稱)를 구성해 준비토록 하고, 이를 위한 운동은 保健福祉部에 家族倫理實踐委員會(假稱)를 두어 부처간 업무조정을 담당하며, 일선조직은 가정복지조직을 기초로 함을 제안한다.

또 이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民間次元의 政策支援이 요구되며, 이는 大韓家族計劃協會의 機能調整을 통해 담당토록 함이 효과적일 수 있다. 즉 家族倫理再建委員會는 윤리강령 설정, 행동지침 개발 및 운동방향 설정의 업무를 관장하며, 家族倫理實踐委員會는 각급 부처 및 민간단체와 기능조정, 범국민적 운동전개,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大韓家族計劃協會는 정책지원 및 사업추진의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1) 家族倫理再建委員會(假稱): 家族倫理再建委員會는 가족가치 정립과 공동체 의식 제고에 필요한 倫理綱領 審議, 行動指針 開發 등을 목적으로 學界, 宗教界, 言論界, 法曹人, 文化界 및 政治界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구성한다. 특히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운동은 범국민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 위원회는 大統領 또는 國務總理 직속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원회의 주요역할은 (1) 家族倫理綱領設定, (2) 倫理實踐 指針開發 및 (3) 國民運動 推進諮問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동 위원회는 특정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일시적 자문기구의 성격 보다는 常設機構의 성격이 바람직 하다. 그것은 윤리재건이 일시적 자문 보다는 실제 운동참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2) 家族倫理實踐委員會(假稱): 범국민적 윤리실천은 政府組織, 社會團體 및 民間組織을 기초로 전개함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다양한 조직의 참여를 유도하며, 역할의 분담을 위해서는 가족윤리실천위원회와 같은 조정기구가 필요하다. 家族倫理實踐委員會는 保健福祉部가 家庭福祉審議官室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保健福祉部에 두어 部處間, 機關間 調整業務를 관장토록 하며, 일선조직을 통한 운동전개는 가정복지조직을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가족윤리와 관련사항이 정부 부처(교육부, 문체부, 법무부, 내무부, 정부 제2장관실 등)를 비롯한 각급 사회단체(종교단체, 언론기관, 각급 민간단체 및 기업체 등)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이다.

3) 大韓家族計劃協會: 대한가족계획협회는 1961년에 창설되어 우리나라 家族計劃運動을 전개해 온 유일한 民間組織이다. 따라서 동 가족윤리실천운동은 가족개발의 차원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정책지원과 운동전개는 이러한 분야에 경험을 가진 민간조직을 필수로 한다. 가족윤리실천 운동을 위한 大韓家族計劃協會의 참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안한다. 첫째 대한가족계획협회는 국민들의 의식개혁을 기초로 한 家族計劃運動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經驗을 갖고, 둘째 동 협회는 시·도 및 구·시·군 단위에 이르는 一線組織이 구축되어 있으며, 셋째는 일선조직은 계몽·교육 및 홍보를 위한 訓練된 人力과 이에 필요한 機資材를 具備하고 있다는 점에서도이다.

第8章 結論 및 提言

第1節 問題의 提起

본 研究는 가족이 獨立된 生活單位이면서 社會構成의 基本單位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獨立된 生活單位는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維持·存續하는데 일정한 構造, 機能 및 價値를 필수로 하며, 社會構成의 基本單位는 家族과 社會가 有機的인 관계로 共存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家族은 개인을 묶는 共同體로, 또 社會와의 連結고리로 관계를 기초로 하며, 그러한 關係는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물질적 交換의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나 家族에 대한 認識은 대개 이를 母胎로 생각하면서 그 存在는 당연한 것이고, 生活은 慣習的으로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 家族間 莫逆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한 存在로 여기고, 서로를 위한 共同體 意識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가족생활에 存在 價値 내지 共同體 意識의 喪失은 이의 瓦解나 解體도 불가피하며, 이러한 결과는 社會混亂으로 이어짐도 明若觀火하다.

그렇다면 왜 家族을 擧論하고, 家族政策을 論議하는 것일까? 우리는 지난 한 세대를 걸쳐 貧困問題를 克服하기 위한 經濟發展을 서둘렀다. 그러한 가운데서 “잘 먹고, 편히 살자”는 物質主義와 便宜主義, 그리고 “자신만 생각”하는 個人主義는 和合보다 分裂을, 妥協보다 反目을, 그리고 信賴보다 不信을 助長하면서 이웃을 잃고, 親戚을 멀리했고, 가족간 葛藤도 심해졌다. 따라서 父母子息은 서로가 立場을 달리하면서 떨어져 살아야 하고, 夫婦間도 헤어져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가족의 分化와 夫婦간의 訣別은 그 자체만으로 한정되지 않

는다. 父母子息間 分居는 世代間 斷絶을 내포하면서 扶養問題가 제기 되고, 夫婦間의 訣別은 자식에 대한 養育問題가 뒤따른다.

人間이 홀로살 수 없기에 結婚을 통해 夫婦關係를 맺고, 子息을 낳아 키우면서 家族과 더불어 삶을 理想的인 형태로 여겨 왔다면 이러한 형태는 오늘날 어떠한 모습으로 存在하고, 어떻게 영위되고 있을까? 인간의 外貌는 거울(mirror)을 통해서 건줄 수 있지만 가족의 實狀은 파악할 길이 없다. 다만 學者들은 核家族化를 들먹이고, 家父長制度를 비판하며, 庶民들은 “잘 사는 집”, “화목한 가정”을 이상적 모델로 생각할 뿐이다. 마치 家族制度는 固定된 틀로, 또 家族生活을 慣習으로 묶어 왔지만 오늘날에는 制度의 테두리를 벗어난 生活과 慣習을 固守하려는 意識의 二重構造가 가족제도이고, 가족생활인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전통규범을 고수하면서 근대생활을 영위하는 형태가 그것이다. 따라서 잘 산다는 基準은 物質的 豊饒가 尺度이고, 和睦은 큰 소리가 나지 않는 점으로 여기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사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가 和睦인지 따지려 들지도 않는다.

現代家族은 傳統家族과 달리 서로 같은 일을 해서 生活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일을 하면서 같이 사는 形態이다. 産業化에 따른 生産機能의 企業化로 就業을 하지 않고는 生計가 어렵고,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는 教育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아침이면 한 가족이 學校나 職場으로 헤어졌다가 저녁이면 다시 만나는 離合集散의 生活을 反復한다. 여기서 就學과 就業은 이러한 점 만을 남겨놓지 않았다. 教育期間의 延長과 婚前役割의 多樣化는 婚期를 늦추었고, 취학과 취업이 居住地內에서 어려울 때 가족은 떨어져 사는 형태도 불가피해 졌다. 또 많은 자녀수는 養育과 教育은 물론 役割의 負擔과 障礙가 된다는 점에서 적은 수의 子女를 두려는 성향도 보편화되었다.

산업화에 따른 가정과 일터의 分離, 役割의 多樣化 그리고 少子女

形成은 그 자체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러한 결과로 개인들이 가족의 統制에서 벗어나면서 自律性 增大와 個人主義 意識이 共同體 意識을 弱화시키면서 家族崩壞를 조장하고 있다. 家族崩壞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 家族이 結婚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生活이 夫婦中心으로 이어지면서 夫婦間의 解婚을 構造瓦解로 본다면 이로 인한 生活自立의 어려움은 機能不全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가족은 構造와 機能이 불가분의 관계를 이룬다. 사회구조의 다변화에서 家族의 解體는 다음 두 가지 要因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離婚과 別居 및 遺棄 등과 같은 家族的 要因이고, 다른 하나는 各種事故, 人身賣買 및 人命殺害 등과 같은 社會的 要因이다.

이러한 現象에서 注目되는 점은 가족이 結婚을 통해 이루고, 獨立된 生活을 基本要件으로 하면서 家族 共同體를 어떻게 維持해야 하는 점이다. 個人役割의 多樣化에서 아예 結婚을 않거나, 結婚後 자녀를 두지 않으려 할 때 父系制度는 修正이 불가피해 지고, 生活의 便宜性을 강조하면서 世代間 別居가 普遍化될 때 扶養體系는 瓦解될 수밖에 없다. 또 家族扶養을 經濟的 側面만으로 생각하면서 肉體的 情緒的 측면의 소홀은 疾病構造의 慢性化와 人口의 老齡化 및 各種 事故로 인한 不具의 增加를 감안할 때 扶養不全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본 研究는 現代家族의 問題點을 診斷하면서 調查資料를 통한 缺損樣相과 生計實態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問題豫防과 缺損福祉를 위한 家族政策을 開發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다.

第2節 家族問題와 缺損實態

가족문제는 複雜·多樣해서 劃一化하기 어렵다. 그러나 가족문제는

대개 家族關係 내지 社會關係에서 비롯된다. 특히 産業化와 함께 가족과 사회는 有機性이 강조되면서 가족문제는 가족 자체에 의한 경우보다 社會的 要因에 의한 影響이 많다. 즉 家族機能의 社會化에서 가족이 社會構造에 適應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회가 가족을 包容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構造·機能的 不均衡과 不調和가 그것이다. 말하자면 사회가 發展된 만큼 가족도 開發되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가운데서 家族解體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無依託 對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實例는 家族分化, 夫婦離婚, 子女遺棄, 扶養忌避 및 家庭破壞 등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家族問題는 家族解體일 수 있다. 産業化에 따른 物質的 豊饒와 生活에 便宜性이 제공된 이면에 家族關係의 瓦解 내지 人間性 喪失로 家族解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주요 社會問題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인간이 家庭을 原初的 福祉單位로 여기면서 독자적인 생활을 영위해 왔다는 점에서 가족해체는 근본적 家族制度의 수정이나 아니면 또 다른 틀로 福祉制度를 構築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國家는 가족이 돌볼 수 없는 對象을 사회가 보호하기 위한 福祉策을 강구해 왔지만 이는 家族制度의 補完에 불과 할 뿐 家族制度를 代身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解體豫防이 병행되지 않는 福祉制度는 限界性이 豫告된다.

가족해체는 가족이 結婚을 통해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結婚의 解體, 즉 解婚을 解體로 보는 시각(構造的 側面)과 가족생활을 성원간의 協力으로 이룬다는 점에서 生活依存을 解體로 보는 시각(機能的 側面)이 있다. 따라서 가족문제는 그 解體結果인 缺損狀態를 통해서 類推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결손은 아직 概念定意가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構造·機能的 측면에서 結婚解體를 構造缺損으로, 生活依存을 機能缺損으로 전제하면서 이를 기초로 缺損狀態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결과 전국 家口중 構造·機能的 正常(가구주가 배우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자립의 경우)은 73퍼센트를 점유하고, 構造·機能的 缺損(가구주가 해혼상태에서 생활의존의 경우, 소위 편부모 영세가구)은 7퍼센트이다. 그런가 하면 構造正常·機能缺損(가구주가 배우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의존의 경우, 소위 영세가구)은 6퍼센트이고, 構造缺損·機能正常(가구주가 무배우 상태에서 생활자립의 경우, 소위 편부모 자립가구)는 15퍼센트에 이른다.

이러한 樣相에서 우리는 全國 家口중 構造缺損이 21퍼센트, 機能缺損이 13퍼센트를 점유하면서 構造缺損중 약 1/3은 機能缺損으로 이어진 점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 構造缺損을 보다 細分化하면 家口主가 解婚狀態에서 未婚子女와 同居中인 경우(8.4%)와 그렇지 않은 경우(8.3%), 그리고 家口主가 未婚狀態인 경우(4.7%)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에서 家口主가 有配偶 狀態인 경우의 生活依存率은 8퍼센트에 불과하지만 無配偶 狀態에서는 32퍼센트로 거의 4배에 달하여 配偶關係와 生活依存은 有意한 關係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生活依存은 配偶狀態를 떠나서도 가구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無配偶 狀態에서 未婚子女를 둔 경우는 家口主가 젊은 층(평균연령:32세)으로 구성되어 生活依存이 28퍼센트에 불과하지만 未婚子女가 없는 경우는 老齡層(평균연령:68세)으로 구성되어 45퍼센트에 달한다.

生活依存은 지역별로 都市家口 보다 農村家口에서 높다. 이는 農村家口가 都市家口 보다 老齡層으로 구성되고, 離農現象에 따른 家族分化에서 가구주가 일을 하려 해도 마땅한 일거리를 찾기 어려운 就業與件과의 관련성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가구중 政府가 관심을 두고 있는 偏父母家口와 其他 缺損家口의 生計實態는 다음과 같다. 偏父(186가구) 및 偏母(641가구)는 家口主가 解婚狀態에서 未婚子女와 동거중인 경우이고, 기타 缺損家口(62가구)는 20세 미만 兒童이 父母와 離別狀態에서 血族 내지

親族에 依存하는 경우이다. 이들 缺損家口의 생활실태는 缺損類型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기집을 가진 경우는 48퍼센트이고, 缺損期間은 평균 13년이다.

缺損家口의 月平均 生活費는 50만원 수준이며, 이들 가구중 다소나마 생활비의 일부를 貯蓄하는 가구는 31퍼센트, 負債를 가진 가구는 34퍼센트이다. 缺損家口의 缺損原因은 死別에 의한 경우가 65퍼센트(偏父:31.4%, 偏母:76.3%, 缺損兒童의 父母:44.8%)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離婚(19.6%) 및 別居(15.7%)에 의한 경우이다. 여기서 死別은 대개가 病死(62.2%)로 인한 경우이며, 交通事故(15.9%) 및 其他事故(10.0%)도 상당한 수준을 점유하고 있어 注目된다. 또 離婚事由는 性格差異(31.7%)로 인한 이혼이 전체 離婚의 약 1/3을 차지하고 配偶者의 不貞(19.7%), 家庭不和(13.7%) 및 家庭經濟(10.3%) 등 離婚事由는 다양하다.

缺損家族의 生計類型은 가족의 收入으로만 生活하는 完全自立이 2/3(65.6%)를 점유하며, 家族收入 外 外部依存으로 生活하는 部分依存이 1/4(24.3%), 그리고 전적으로 外部에 依存하는 完全依存이 1/10(10.1%)에 해당된다. 이러한 양상은 지역별로 차이가 많아 농촌지역 缺損家口는 약 1/2이 依存狀態이며, 完全依存은 도시지역 缺損家口에서 8퍼센트에 불과하지만 농촌지역 缺損家口에서는 16퍼센트에 달한다. 缺損類型別 生計自立與否는 完全自立이 偏父家口에서 74퍼센트(도시:80.5%, 농촌:60.3%), 偏母家口에서 67퍼센트(도시:73.3%, 농촌:50.6%)인데 비해 其他 缺損家口는 26퍼센트(도시:23.1%, 농촌:27.8%)에 불과하다. 이러한 양상은 缺損類型別로 농촌지역 偏父母 家口는 도시지역 偏父母 家口보다 依存率이 높은 대신 其他 缺損家口는 도시지역에서 依存率이 높다. 生活依存은 政府支援(29.4%), 親族支援(18.4%) 및 其他支援(7.3%)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전체 支援의 1/2 이상이 政府支援이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때 가족의 構造缺損은 機能缺損을 同伴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産業化에 따른 離農現象과 世代間 分居現象은 扶養期待와 달리 부모자식간 扶養斷絶이 惹起되고, 離婚의 增加와 配偶者 死別 및 子女遺棄 등은 役割의 不調和로 독립된 생활이 어려운 機能缺損을 誘發하고 있다. 여기서 構造缺損의 主要要因인 解婚은 死別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지만 이는 최근에 이를 수록 離婚 및 別居(유기 및 行방불명)의 증가로 인한 점에 관심을 갖게된다. 또 가족결손은 전통 사회에서 가족간 또는 친족에 의해서 保護되어 왔지만 오늘날은 親族間 紐帶가 弱化되면서 이를 국가나 사회가 돌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따라서 政府는 缺損家族과 無依託 對象을 중심으로 生活保護에 중점을 두어 왔지만 이러한 점 만으로 家庭福祉는 限界가 예측된다. 이러한 점은 家族解體로 인한 無依託 對象의 증가, 福祉豫算의 制約, 福祉要求의 多樣化에 따른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즉 노인, 아동 및 여성 등 脆弱階層을 위주로 한 救貧福祉는 이들 대상의 증가를 豫防하지 않는 한 限界를 피할 수 없고, 가족의 社會參與가 늘어나면서 사회가 家事役割을 지원하지 않는 한 役割混亂이 家族問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家族政策은 家族의 保護와 問題의 豫防 및 對應이라는 측면이 要求된다.

第3節 家族政策의 接近方案

그렇다면 家族政策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推進해야 하는 것 일까? 家族政策은 社會政策의 下位概念에서 家族의 本質을 고려한, 家族을 對象으로, 家族을 위해 그리고 家族과 社會의 要求에 따른 明示的 또는 暗示的 제반 施策을 말한다. 즉 家族生活을 통해 삶의 質을 提高하며, 生活의 安定과 問題의 豫防과 解決을 위한 (1) 共同體 意識 提高

를 위한 價値定立, (2) 社會的 適應力 提高를 위한 機能調整 및 役割開發, (3) 問題의 豫防과 治療를 위한 相談서비스, (4) 缺損家族의 生活自立을 위한 役割支援 및 生計保護, (5) 無依託 解體家族의 社會保護 그리고 (6) 法的, 制度的으로 家族을 保護하기 위한 政策을 말한다. 이러한 점은 급속한 産業化 過程에서 家族의 瓦解 및 解體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3-1. 家族政策의 基本骨格: 家族政策의 基本骨格은 다음과 같은 領域이 요구된다. 첫째는 法的, 制度的 측면이고, 둘째는 價値觀 측면이며, 셋째는 機能과 役割의 측면, 넷째는 豫防과 治療의 측면, 다섯째는 支援과 自活의 측면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는 社會的 保護의 측면이다. 이처럼 家族政策의 다양한 領域은 가족생활이 다양한 要件을 필수로 하며, 要件의 充足은 家族과 社會의 有機的 關係로 가능하다는 점에서이다. 따라서 가족정책의 다양한 領域은 그것이 각기 獨立的인 것이 아니라 連繫性을 지니면서 家族과 社會의 要求에 附合되어야 한다.

3-2. 家族政策의 接近戰略: 家族政策은 理念的 틀만으로 가능할 수 없다. 이를 기초로 한 法的 基盤과 接近戰略이 요구된다. 먼저 법적 기반은 이제까지 家族法이 家族을 私的 單位로 여기면서 制度維持와 社會保護에 중점을 두고, 家族福祉는 家族이 돌볼 수 없는 對象을 위주로 救貧的 福祉의 形態만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家族의 解體는 또 다른 틀로 이를 包容하지 않고는 制度維持 조차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機能의 分化에 따른 役割의 多樣化에서 構造分化, 役割混亂, 離婚增加 및 家庭破壞 등에서 엿볼 수 있다.

말하자면 傳統社會가 家族福祉를 家族中心의 自給自足 형태로 家族制度로 대신해 왔다면 現代社會에서는 家族福祉를 個人中心의 分業 形態에서 가족의 자체적 努力만으로 追求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가족은 자체적 生活改善을 위한 노력은 물론 社會的 役割

支援을 통한 生活補完, 家族問題의 豫防과 治療, 그리고 解體家族의 社會保護를 위한 家族開發法과 家族福祉를 기초로 하는 家族福祉基本法이 요구된다.

다음 接近戰略은 家族의 本質을 고려한 家族과 社會의 共助體制가 요구된다. 여기서 共助體制란 社會가 家族을 돕는 대신 家族은 社會에 貢獻하는 有機的 關係를 말한다. 그러나 産業化에 따른 核家族化와 個人役割의 多樣化에서 가족은 家內役割과 家外役割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역할갈등이 불가피해 졌다. 즉 가사역할의 完全自立, 部分依存 또는 完全依存과 같은 형태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경우 部分依存 내지 完全依存은 역할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족생활이 어렵게 되었다는 점에서 家族과 社會의 共助體制는 家族資源의 社會化(가족이 사회를 위한 지원)를 통한 家族支援(사회가 가족을 위한 지원)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社會組織이 家族으로부터 남는 人的, 物的 資源을 動員하여 이를 필요한 家族에게 再活用하는 家族資源의 再配分 體制(family resources recycling system)가 그것이다.

3-3. 地域中心 福祉體制: 이러한 점을 기초로 政策推進은 地域中心 福祉體制를 理想으로 한다. 여기서 地域中心은 區·市·郡 單位를 말하며, 福祉體制는 家族開發(기능조정, 역할개발, 생활개선 및 가족건강 등)과 家族福祉(역할지원, 결손보호, 문제의 예방/치료 및 사회보호 등) 및 福祉管理(기반조성, 자원개발, 조직관리 및 사업운영 등)를 效率的으로 추진하기 위한 組織構築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조직은 地域社會內的 專門機關 및 自願組織의 協力體系를 포괄한다. 그것은 家族福祉가 원초적으로 家庭을 單位로, 家族의 協力을 理想으로 하면서, 이를 위해 이웃과 지역사회의 지원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다.

3-4. 共同體意識 提高: 家族政策은 家族福祉의 廣의의 개념이다. 家族福祉가 가족이 돌볼 수 없는 無依託 對象을 위주로 한 生活保

護나 缺損保護에 중점을 둔다면 家族政策은 모든 家族을 대상으로 解體豫防과 自活支援의 性格을 지닌다. 이러한 점에서 家族政策은 國民的 合意와 社會的 支援이 요구된다. 여기서 國民的 合意는 共同體 意識의 필요성에 대한 同意이고, 社會的 支援은 가족에 대한 認識의 轉換과 倫理의 再建을 위한 社會運動에 대한 同參이다. 그것은 이제 家族이 더 이상 私的 單位로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家族과 社會는 共存의 運命에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가족은 사회의 지원이 없이 존재할 수 없고, 社會安定은 家族安定이 없이 期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共同體 意識은 家族統合은 물론 社會統合의 기초가 되며, 家族倫理는 家族이 지켜야 할 道德的 基準만이 아니라 人間이 “더불어 살기” 위한 生存倫理인 것이다.

이러한 認識의 轉換은 가정을 토대로 慣習化 되어야 한다. 따라서 “더불어 살기” 운동은 家族政策의 일환으로 國民運動이 요구된다. 오늘날 家族解體는 社會構造 변화에 따른 物理的 要因에 의한 영향만이 아니다. 個人主義 意識의 澎湃로 人間의 尊嚴性 상실이 悖倫意識을 부추긴데 있다. 따라서 “더불어 살기” 위한 운동은 社會統合은 물론 家族安定의 차원에서 倫理綱領의 設定과 이를 위한 實踐倫理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더불어 살기”운동은 가족 자체에 의해서나 일부 社會團體의 노력만으로 기대될 수 없다. 우리가 지난 한 세대를 걸쳐 貧困退治를 위해 “잘 살아 보자”는 經濟發展을 서둘러 왔다면 앞으로 “더불어 살기” 위한 共同體 意識이 조성되지 않고는 家族의 安定은 물론 社會의 安定을 期待할 수 없기 때문이다.

第4節 家族政策을 위한 提言

가족에 대한 認識은 개인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가족이 社會를 위해 構成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또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存在한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結婚을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子女의 出産 역시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면 出生家族(family of orientation)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出産家族(family of procreation)은 選擇的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족에 대한 認識은 오늘날 가족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가족정책이나 가족복지도 가족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없이는 砂上樓閣에 불과할 수 있다.

본 提言은 家庭을 原初의 福祉의 單位로, 家族은 福祉의 主役임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인식은 社會福祉가 家族福祉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補完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社會福祉가 家族福祉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存立하기 어렵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인식은 대개 이를 일종의 制度的 틀로, 생활은 慣習의 영역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식과 달리 오늘날의 가족은 서로가 헤어져 사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가정의 테두리의 共同生活을 어떻게 새로 定立해야 하는지에 대한 課題를 안게 되었다. 예를 들면 子息은 누가 기르고, 父母는 누가 모시느냐는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점은 오늘날 離婚과 死別 그리고 遺棄의 增加로 전국적으로 약 1/5의 가구가 配偶關係를 갖지 않고, 이들 중 1/3은 生活을 依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말하자면 가족은 構造缺損이 機能退化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산업화로 인한 物質的 豊饒와 生活의 便宜性이 인간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 산업화에 따른 役割의 專門化는 社會共同體를 강조하면서 家族共同體를 瓦解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떻든 오늘날 家族解體가 증가하

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계속될 兆朕이 분명하다. 바로 이러한 점이 家族問題이다. 결국 가족은 어떤 形態를 이루고, 어떻게 사느냐는 점이 問題가 아니라 生活을 依存하거나, 그러한 生活에 滿足할 수 없는 데 問題가 있다.

따라서 家族政策은 가족이 돌볼 수 없는 대상의 保護와 解體의 豫防은 물론 生活의 質을 높이기 위한 家族開發에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家族開發은 간단치 않다. 社會가 發展된 만큼 家族도 開發되어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지만 이는 家族의 本質을 고려하지 않고는 가능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家族政策은 앞에서 제시한 基本骨格을 토대로 지속적 접근과 범국민적 참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家族政策은 먼저 기존 家庭福祉事業을 바탕으로 對象 爲主를 家族中心으로, 救護形態는 役割開發로, 保護中心은 參與誘導로 전환되어야 한다.

家族政策은 일정한 政策메뉴(political menu)를 그대로 전달하는 형태가 아니라 地域實情에 맞는 福祉메뉴를 開發하여 이를 가족의 要求에 充足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가족의 독립된 生活을 위한 自立基盤造成과 가족과 社會간 機能調整 및 役割開發을 통한 生活의 質提高를 위한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점은 가족 자체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웃과 地域社會의 共助體制가 요구된다. 家族과 社會의 共助體制는 그것이 自發的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誘導하고 支援하기 위한 역할이 뒤따라야 한다. 바로 이러한 노력이 家族政策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家族政策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먼저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할 때 現代家族은 個人主義意識의 澎湃가 共同體意識의 약화로 家族解體가 촉진되고 있다. 가족의 共同體意識은 가족의 關係意識을 말한다. 전통가족이 가족관계를 규범적 틀로 묶어왔다면 현대가족은 물질적 교환관계로 변하면서 交

換媒體가 성립되지 않을 때 가족관계는 와해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은 家族의 本質에 대한 認識의 缺如를 뜻한다.

따라서 家族政策에는 家族教育이 포함되어야 한다. 家族教育은 가정내에서 父母가 子女에 대한 교육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족교육은 광범하다. 夫婦關係와 참 부부의 역할, 父母子息의 關係와 참 부모의 역할 및 바람직한 자녀의 역할, 가족의 共同生活에 필요한 生活規範, 家族과 社會와의 關係 등 다양하다. 이러한 점은 부모들이 家族을 理解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모들에게만 의존할 수 없다. 이제 家族教育은 學校教育 및 社會教育의 일환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家族問題의 豫防 및 治療이다. 현대가족에서 家族葛藤은 家出과 遺棄 및 離婚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예로 이혼이 結婚初期에 성행되고, 離婚事由가 性格差異나 配偶者 不貞 및 家庭不和로 집약되는 점은 결국 高等教育을 받은 現代人의 晩婚과 自律婚이 문제가 많다는 점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가족생활의 力動性을 고려하면 生活情報과 生活計劃은 合理的 가족생활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婚前教育和 家族相談, 그리고 합리적인 가족생활 프로그램은 가족문제를 緩和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는 가족의 機能調整 및 役割開發이다. 가족의 기능조정(再生産機能)인 出産調節에 全面的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子女出産은 부모만을 위한 점에서 이루어질 수 없고, 子女와 家族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養育을 전제하지 않는 出産이나 扶養이 고려되지 않는 調節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家族制度의 修正과 出産調節을 같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役割開發은 가족건강과 생활개선에 필요한 知識과 技術의 보급은 물론 평생교육을 통한 社會參與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自我開發을 뜻한다.

넷째는 缺損家族의 保護이다. 현재 가족은 부부간 해혼과 같은 구조

적 결혼의 약 1/3이 生活의 自立이 어려운 기능적 결혼이며, 또 子女教育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이들 가족에 대한 政府의 生活保護와 學費支援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러한 점 만으로 국한하지 말고, 缺損特性에 따른 役割支援 및 情緒支援을 통한 自立基盤 造成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缺損福祉는 劃一的일 수 없는 것이고, 이웃과 地域사회와의 협력을 기초로 多角的 接近이 요구된다. 결국 어떠한 형태의 福祉라도 이는 가족을 대상으로 問題豫防과 問題解決을 並行하는 차원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參考文獻

- 孔世權, 朴仁和, 曹愛姐 外, 『韓國 家族構造의 變化』,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7.
- 孔世權, 曹愛姐 外, 『韓國家族의 機能과 役割變化』,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0.
- 孔世權, 曹愛姐, 金勝權, 孫聖姬, 『韓國에서의 家族形成과 出產行態』,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2.
- 孔世權, 曹愛姐, 金勝權, 『家族의 變化와 家族政策』,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3.
- 孔世權, 曹愛姐, 金應錫, 『人口의 老齡化와 老人家口의 特性』, 『1991 全國 出產力 調查 特別分析』,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2.
- 孔世權, 曹愛姐, 『缺損家族의 類型別 福祉需要에 관한 研究』,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4.
- 孔世權 曹愛姐, 『家族의 變化: 그 觀點과 爭點』, 『韓國青少年研究』, 第5卷, 第1號, 韓國青少年開發院, 1994.
- 權熙琬, 『夫婦關係의 意識에 관한 研究』, 『韓國家族의 夫婦關係』, 社會文化研究所, 1992.
- 金根祚, 『未婚母와 社會問題』, 『現代社會와 女性』, 峨山社會福祉事業財團, 1986.
- 金敏子, 孔世權, 曹愛姐, 『結婚한 婦人의 媳父母와의 同居形態』, 『保健社會論集』, 第11卷, 第2號,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1.
- 金應錫, 李尙憲, 『少年/少女家族의 福祉支援 方案』, 家族政策의 方向과 課題에 관한 세미나 자료,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4.
- 金貞子 外, 『偏父母家族의 支援方案에 관한 研究』, 韓國女性開發院, 1984.
- 金貞子 外, 『低所得層 母子家族에 관한 研究』, 韓國女性開發院, 1988.

- 김재은,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家族의 使命과 放送』, 放送과 家族 세미나, 放送委員會, 1994.
- 문경태, 『公共福祉 傳達體系의 確立方案』, 『社會福祉』, 第121號, 1994.
- 保健福祉部, 『老人福祉事業指針』, 1995.
- 保健福祉部, 『兒童福祉事業指針』, 1995.
- 保健福祉部, 『保育事業指針』, 1995.
- 朴慶淑, 姜惠奎, 『社會福祉事務所 模型開發』,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2.
- 朴純一 外, 『最低生計費 計測調查研究』,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4.
- 변화순, 『韓國의 家族政策에 관한 綜合的 接近』, 『家族』, 宇石, 1989.
- 徐文姬, 『婦人の 結婚과 再婚에 影響을 미치는 社會人口學的 및 結婚 關聯要因』, 『保健社會論集』, 第13卷, 第2號,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3.
- 安啓春, 『家族生活의 變化와 家族問題』, 『韓國의 人口問題, 現在와 未來』, 人口問題研究所, 1995.
- 안병철, 서동인(역), 『家族社會學』, 을유문화사, 1992.
- 윤혜미, 김근식, 『社會福祉 專門要員制의 發展方向에 관한 研究: 問題點과 改善方向』,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1.
- 李佳玉, 徐美卿 外, 『老人生活實態 分析 및 政策課題』,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4.
- 李時伯, 『人口變動과 社會發展 政策』, 『韓國의 人口問題, 現在와未來』, 人口問題研究所, 1995.
- 李效再, 『이데올로기와 가족』, 『現代家族과 社會』, 教育科學社, 1993.
- 林鍾權 外, 『未婚男性의 性行態에 관한 研究』,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4.
- 전병재, 『우리 가족 과연 위기인가?』, 『우리 가족 이대로 좋은가?』, 가족·문화연구회 심포지움, 첫번째 모임, 가족·문화연구회, 1994.
- 정기원, 김만지, 『우리나라 入養의 實態分析』,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3.
- 曹愛姐, 孔世權, 『最近 韓國女性의 結婚行態』, 『1991 全國 出產力 調査 特別分析』,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2.

- 曹愛姐, 『一線 家庭福祉業務實態』, 家庭福祉政策의 方向과 課題 세미나 發表資料, 韓國保健社會研究院, 1993.
- 李光奎, 조지 A. 드 보스 外, 『가족』, 후기산업사회의 세계공동체, 서울 올림픽 국제학술대회, 1989.
- 李光奎, 『韓國의 家族과 宗族』, 民音社, 1990.
- 崔聖載, 『社會政策과 家族』, 『現代家族과 社會』, 韓國家族學會 編, 教育科學社, 1993.
- 최양부, 오내원, 『農村家族의 解體와 消滅: 충남 부여군 S마을 事例』, 『現代家族과 社會』, 教育科學社, 1993.
- 統計廳, 『人口 및 住宅센서스』, 1972.
- 統計廳, 死亡原因 統計年報』, 1989.
- 統計廳, 『婚姻·離婚統計 作成結果』, 1991, 10.
- 統計廳, 『韓國의 社會指標』, 1993.
- 韓國保健社會研究院, 『總量部門:人口分野計劃, 第7次 經濟社會發展 計劃』, 1991.
- 韓南濟, 『韓國의 産業化와 家族機能의 變化』, 『韓國青少年研究』, 第5卷 第1號, 韓國青少年開發院, 1994.
- 韓南濟, 『産業化와 家族規範의 變化』, 『韓國 健全家庭의 發展方向』, 韓國 家庭福祉政策研究所, 1994.
- 厚生省人口問題研究所, 『獨身青年層의 結婚觀と子供觀』, 『第9次 出産力 調査』, 第2次 報告書, 1989.
- 黑田俊夫, 家族變貌の時代, 『日本の人口と家族』, アジア人口·開發協會, 1989.
- Blood R. O. Jr. and D. M. Wolfe, *Husband and Wife: The Dynamics of Marital Living*, Free Press, 1960.
- Burgess, Ernest W., Locke, Harvey J. and Thomes, Mary M., *The Family, From Institution to Companionship*, 3rd ed., Cincinnati, American Book Co., 1963.

- Cherlin, Andrew, *Marriage, Divorce, Remarriag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 Cockburn, C. and Hecló, H., *Income Maintenance for One-parent Families in Other Countries*, Appendix 3 of the Report of the Committee on One-parent Families, Cmnd 5629, London, HMSO, 1974.
- Fletcher, Ronald, *The Family and Marriage in Britain*, 3rd ed., Harmondworth, Penguin, 1973.
- Office of Population Censuses and Surveys, *General Household Survey Monitor 84/1*, London, HMSO., 1984.
- Goode, William J., *World Revolution and Family Patterns*, New York, Free Press., 1963.
- Goode, William J., "Family Disorganization", in Merton, R. and Nisbet, R. A. (eds),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66.
- Goode, William J., *The Family*, Prentice-Hall, Inc., Englewoode Cliffs, New Jersey, 1982.
- Han, Seung Hyun, *Recent Trend of Fetal Infant Death Rates and Determinants in Korea*, Yonsei University, 1989.
- Hunt, J. and Hunt, A., "Marxism and the Family". *Marxism Today*, 1974. Kamerman S. B. & A. J. Kahn, *Family Policy, Government and Families in Fourteen Countr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Haskey, John, "Marital Status Before Marriage and Age at Marriage: Their Influence on the Chance of Divorce", *Population Trends* 32, 1983.
- Kamerman, S. B. & A. J. Kahn, *Family Policy: Government and Family in Fourteen Countr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8

- Levitan, San A., and Belous, Richards., *What's Happening to the American Famil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1.
- Moen, P. & L. Schrr, "Family and Social Policy" in *Handbook of Marriage and Family*, edited by M. B. Sussman & S. K. Steinmets, New York: Plenum Press, 1987.
- Murdock, George P. "The Universality of the Nuclear Family", in Bell, N. W. and Vogel, E. F.(eds), *A Modern Introduction to the Family*, Rev. ed., New York, Free Press, 1968.
- Nye, F. L. and Berardo, F. M., *Emerging Conceptional Frameworks in Family Analysi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81.
- Office of Population Censuses and Survey, *General Household Survey Monitor, 84/1*, London, HMSO, 1984.
- Parsons, Talcott, "The Social Structure of the Family", in Anshen, R.N.(ed.), *The Family: Its Function and Destiny*, New York, Harper & Row., 1949.
- Parsons, Talcott, "The American Family: Its Relations to Personality and to the Social Structure", in Parsons, T. and Bales, R. F.,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New York, Free Press., 1955.
- Parsons, Talcott, "The Kinship System of the Contemporary United States", and "Age and Sex in the Social Structure of the United States", in Parsons, T. *Essays in Sociological Theory*, Rev. ed., New York, Free Press., 1964.
- Parsons, Talcott, "The Normal American Family", in Adams, B. N. and Weirath, T., *Readings on the Sociology of the Family*, Chicago, Markham Publishing Co., 1971.
- Romanyshyn, J. M., *Social Welfare : Charity to Justice*, New York, Random House, 1971.
- Smith, Dorothy, "Women, the Family and Corporate Capitalism", *Berkely Journal of Sociology*, 1975.

Sweet, James A., and Larry L. Bumpass, *American Families and Household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90.

Wolinsky, Fredric D., *The Sociology of Health, Principles, Practitioners, and Issues*, 2nd ed.,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1988.

Zimmerman, S. I., *Understanding Family Policy: Theoretical Approache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1988.

Zimmerman, *Family Policies and Family Well-Being: The Role of Political Culture*,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1992.